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사회학박사 학위논문

장애인의 성년기 주요 생애 경험의 기회구조

- 대학진학, 취업, 결혼을 중심으로

2023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과학대학 사회학과

김 미 선

장애인의 성년기
주요 생애 경험의 기회구조

- 대학진학, 취업, 결혼을 중심으로

지도교수 이 재 열

이 논문을 사회학박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2년 11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 회 학 과
김 미 선

김미선의 박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23년 1월

위 원 장 권 현 지 (인)

부위원장 김 석 호 (인)

위 원 은 기 수 (인)

위 원 김 정 석 (인)

위 원 이 재 열 (인)

국 문 초 록

이 연구는 지역사회 거주 장애인을 대상으로, 이들의 성년기 주요 생애 경험인 대학진학, 취업, 결혼의 기회가 장애정책 및 장애담론과 맞물려 시기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였고, 사회경제적 조건에 의해 어떻게 구조화되는지를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기존의 장애인 생애 연구는 미시적 관점에서 장애인의 성년기 주요 생애 경험의 차이를 개인의 특성으로만 설명하는 개인적 환원주의에 그쳤었고 이에 대한 이론적 접근이 부재하였다. 이 연구는 장애인의 대학진학, 취업, 결혼을 구조적 제약 속 개인의 합리적 선택으로 보고, 그 기회구조를 밝히고자 하였다.

생애과정 관점에서 장애인의 성년기 주요 생애 경험은 그들이 살아온 역사적 배경에 따라 다르다. 그래서 세대 간에 큰 차이를 보여준다. 그리고 장애를 보는 패러다임인 사회모델과 의료모델 및 가족이 차지하는 중요성의 사회적 변화를 반영하여 대학진학, 취업, 결혼 등의 성년기 주요 생애 경험을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이념형으로 유형화했다. ‘자립적 사회모델형’은 결혼하지 않더라도, 고학력을 바탕으로 노동시장 참여를 통해 어느 정도 혈연가족으로부터 자립하는 유형이다. ‘혈연가족 의료모델형’은 결혼하기 어렵고 저학력으로 노동시장으로부터 소외되어 혈연가족에 의존하여 살아갈 수밖에 없는 유형이다. 혈연가족 의료모델형의 경우, 이들은 부양하고 돌봐줄 혈연가족이 없어진다면, 시설에 일신을 의탁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부부가족 의료모델형’은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있진 않지만, 배우자나 자녀들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유형이다. ‘부부가족 사회모델형’은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결혼도 하여, 노동시장과 가족 양측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유형이다.

장애담론에 대한 분석은 장애정책이라는 제도변화가 어떻게 장애인의 생애 경험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연관되었는지 확인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먼저, 장애정책과 신문기사를 통해 도출된 장애담론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 장애인 내부의 의식과 형식적 측면에서의 장애정책 내용은 의료모델에서 사회모델로 변화하였지만, 사회일반의 의식과 사회적 관행

은 여전히 의료모델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대학진학, 취업, 결혼 기회 등의 생애가 세대 간에 얼마나 달라졌는지를 살펴본 결과, 장애인의 학력 향상에도 불구하고 노동시장 성과의 개선이 없었고, 비혼화 경향이 심화됨에 따라 세대별 주된 생애과정 유형은 '부부가족 의료모델형'에서 '혈연가족 의료모델형'으로 바뀌었을 뿐 여전히 의료모델에 머물고 있었다. 한편, 최근에 태어난 여성 코호트에서 노동시장 성과에 있어 약간의 개선이 보이는데 이는 최근의 장애여성 고용정책의 성과로도 보이며, 부분적으로 '자립적 사회모델형'으로의 변화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어서 성년기 주요 생애 경험인 대학진학, 취업, 결혼기회에 작동하는 개인의 속한 사회경제적 배경과 그 교차성의 구조를 분석해본 결과, 어릴적 경제적 수준과 아버지의 학력과 같은 가족배경이 대학진학 여부를 결정지으며, 성별과 아버지의 학력을 교차했을 때 대학진학 가능성의 차이가 있었다. 저학력 아버지를 둔 장애여성의 경우, 저학력 아버지를 둔 장애남성보다 대학진학 확률이 낮았지만, 고학력 아버지를 둔 장애여성의 경우 고학력 아버지를 둔 장애남성보다 대학진학 확률이 다소 높았다.

가족배경은 교육수준을 매개로 취업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성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었는데, 남성의 경우 어릴적 경제적 수준이 교육수준을 매개로, 여성의 경우 아버지의 학력이 교육수준을 매개로 취업 여부에 영향을 미쳤다. 연령에 따른 학력별 효과의 차이는 분석집단에 따라 달랐다. 전체 혹은 남성을 대상으로 했을 때, 연령이 증가할수록 취업 여부에 미치는 학력별 효과의 차이는 감소했다. 반면, 여성을 대상으로 했을 때, 연령이 증가할수록 취업 여부에 미치는 학력별 효과의 차이는 감소하지 않았다.

2016년 미혼인 사람을 대상으로, 2021년까지의 결혼 이행을 사건사 분석한 결과, 성별과 가족배경에 따른 결혼 이행 확률의 차이가 없었던 반면, 종사상 지위와 근로소득에 따라 결혼 이행 확률에 차이가 있었다. 고용 지위가 불안정한 비상용직의 경우 결혼 이행 확률이 가장 높았던 반면, 비교적 안정적인 상용직 취업자의 경우 결혼 이행 확률은 비상용직보다

낮았다. 한편 미취업자의 경우 결혼 이행 가능성이 거의 없었다. 그리고 근로소득이 높을수록 결혼 이행 확률이 낮았다. 결혼 이행에 대한 직업지위와 성별의 교차성은 확인할 수 없었다.

장애정책 수준에서는 사회모델로 변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담론과 장애인의 성년기 주요 생애 경험의 세대효과를 관찰했을 때, 한국의 장애 패러다임은 여전히 의료모델에 머물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그래서 장애 패러다임을 실질적인 사회모델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물리적 장벽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장벽인 사회인식을 바꾸기 위한 다양한 교육적·문화적 접근이 필요하다. 또한, 좀 더 적극적인 장애인 고용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성년기 주요 생애 경험 유형은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라 대학진학, 취업, 결혼 이행 과정을 거쳐 '부부가족 의료모델형'에서 '자립적 사회모델형(상층, 고학력, 상용직)', '부부가족 사회모델형(중층, 중간학력, 비상용직)', '혈연가족 의료모델형(하층, 저학력, 미취업)'으로 분화한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장애인의 성년기 주요 생애 경험 유형에서도 계층화의 양상이 뚜렷하게 확인된다. 또한, 장애에 계층, 성별 등의 다른 속성이 중첩되었을 때, 또 다른 양상의 불평등이 발생한다. 이러한 생애 경험 기회구조의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접근이 필요하다.

주요어 : 장애인, 대학진학, 취업, 결혼, 생애 경험 유형, 교차성
학 번 : 2014-30055

목 차

제 1 장 서 론 ····· 1

제 1 절 문제제기 ····· 1

제 2 절 선행연구검토 ····· 10

1. 서구의 장애인 성년기 주요 생애 경험 연구 ····· 10
2. 국내의 장애인 성년기 주요 생애 경험 연구 ····· 13
3. 기존 연구가 답하지 못한 질문 ····· 16

제 3 절 이론적 자원 ····· 18

1. 생애과정 관점과 세대 개념 ····· 18
2. 장애 패러다임: 의료모델과 사회모델 ····· 21
3. 정상/규범 가족의 위기와 성년기 주요 생애 경험의 탈표준화 · 25
4. 장애인 생애 기회구조의 교차성 ····· 29

제 4 절 장애인 성년기 주요 생애 경험 유형과 설명틀 31

1. 장애인 성년기 주요 생애 경험 유형의 이념형 ····· 31
2. 설명틀과 각 장의 분석 내용 ····· 34

제 5 절 분석전략, 자료 및 방법 ····· 37

1. 분석전략 및 연구의 범위 ····· 37
2. 자료 ····· 39
3. 분석대상 ····· 41
4. 분석변수 ····· 45
5. 자료의 제약에 의한 분석의 한계 ····· 48

제 2 장 한국 장애정책 및 장애담론의 변화 ····· 50

제 1 절 자료 및 방법 ····· 50

1. 장애정책 ····· 50
2. 장애담론 ····· 52

제 2 절 시기 개괄 ····· 53
제 3 절 강력한 의료모델 시기 (식민지기~1988년) ····· 62
1. 식민지기・미 군정기 ····· 62
2. 대한민국 정부수립~1960년 ····· 64
3. 국가적 배제와 차별, 동정의 대상 (1961~1976년) ····· 65
4. 타자에서 불쌍한 이웃으로 (1976~1988년) ····· 70
제 4 절 의료모델 유지기 (1989~1996년) ····· 76
1. 주요 정책 ····· 76
2. 주요 토픽: 장애인 없는 장애정책 ····· 79
제 5 절 사회모델 도입기 (1998~2006년) ····· 82
1. 주요 정책 ····· 83
2. 주요 토픽: 적극적 행위 주체로서의 등장 ····· 86
제 6 절 사회모델 강화기 (2007년 이후) ····· 89
1. 주요 정책 ····· 89
2. 주요 토픽: 장애인 인권개념의 등장과 투쟁의 본격화 97
제 7 절 소결 ····· 104

제 3 장 대학진학, 취업, 결혼에 대한 세대효과 ···· 106
제 1 절 자료 및 방법 ····· 107
1. 자료, 대상 및 변수측정 ····· 107
2. 분석기법 ····· 109
제 2 절 분석결과 ····· 112
1. 대학진학: 사회모델의 점진적 실현 ····· 112
2. 취업: 의료모델의 유지 ····· 119
3. 결혼: 비혼화의 심화 ····· 132
제 3 절 소결 ····· 133

제 4 장 선별된 대학진학, 성별과 계층의 교차성 · 136
제 1 절 연구의 배경 ····· 136
1. 장애인 고등교육의 팽창 ····· 138
2. 대학진학률의 젠더 역전 ····· 140
제 2 절 이론적 배경과 비장애인 중심 기존 연구 검토 141
1. 대학진학에 미치는 부모의 계층효과 ····· 141
2. 대학진학에 미치는 성별 효과 ····· 142
3. 대학진학에 미치는 성별 계층효과 ····· 143
제 3 절 자료 및 방법 ····· 145
1. 자료 및 대상 ····· 145
2. 분석기법 ····· 145
제 4 절 분석결과 ····· 148
제 5 절 소결 ····· 152

제 5 장 취업에 대한 학력의 매개효과와 연령·학력의 교차성 · 154
제 1 절 연구의 배경 ····· 154
제 2 절 이론적 배경과 비장애인 중심 기존 연구 검토 158
제 3 절 자료 및 방법 ····· 160
1. 분석기법 ····· 160
2. 자료, 변수측정 및 분석대상 ····· 162
제 4 절 분석결과 ····· 166
제 5 절 소결 ····· 175

제 6 장 결혼에 대한 직업 지위의 효과 ····· 178
제 1 절 연구의 배경 ····· 178
제 2 절 이론적 배경과 비장애인 중심 기존 연구 검토 180
제 3 절 자료 및 방법 ····· 181

1. 분석기법 ····· 181
2. 자료, 변수측정 및 대상 ····· 183
제 4 절 분석결과 ····· 188
제 5 절 소결 ····· 197

제 7 장 결론 ····· 199
제 1 절 요약 ····· 199
제 2 절 함의 및 제언 ····· 201

<참고문헌> ····· 205

<부록> 장애인 성년기 주요 생애 경험 유형의 단층(斷層) · 226
1. 자료 및 방법 ····· 226
2. 분석 결과 ····· 231
3. 소결 ····· 240

<Abstract> ····· 242

표 목 차

<표 1-1> 장애의 의료모델과 사회모델의 비교 ····· 24
<표 1-2> 장애인 성년기 주요 생애 경험 유형의 측정과 특징 · 32
<표 1-3> 자료 및 방법 요약 ····· 38
<표 1-4> 분석 장애 유형 정의 ····· 44
<표 1-5> 분석 모집단과 표본 수 ····· 45
<표 1-6> 분석에 사용된 변수 ····· 47
<표 2-1> 한국 장애정책의 역사 구분 ····· 51
<표 2-2> 시기별 장애 패러다임과 주요 특징 ····· 57
<표 2-3> 시기별 장애인 관련 기사에서 등장하는 상위 빈도 단어(50개 내외) · 58
<표 2-4> 1966~1976년 장애인 관련 기사의 토픽별 키워드(15위까지) · 68
<표 2-5> 1966~1976년 장애인 관련 기사에 부여된 토픽 명 · 68
<표 2-6> 1977~1988년 장애인 관련 기사의 토픽별 키워드(15위까지) · 73
<표 2-7> 1977~1988년 장애인 관련 기사에 부여된 토픽 명 · 73
<표 2-8> 1989~1996년 장애인 관련 기사의 토픽별 키워드(15위까지) · 79
<표 2-9> 1989~1996년 장애인 관련 기사에 부여된 토픽 명 · 79
<표 2-10> 1997~2006년 장애인 관련 기사의 토픽별 키워드(15위까지) · 86
<표 2-11> 1997~2006년 장애인 관련 기사에 부여된 토픽 명 · 86
<표 2-12> 제1차-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실행 결과 · 93
<표 2-13> 2007~2012년 장애인 관련 기사의 토픽별 키워드(15위까지) · 97
<표 2-14> 2007~2012년 장애인 관련 기사에 부여된 토픽 명 · 98
<표 2-15> 2013~2017년 장애인 관련 기사의 토픽별 키워드(15위까지) · 100
<표 2-16> 2013~2017년 장애인 관련 기사에 부여된 토픽 명 · 100
<표 2-17> 2018~2022년 장애인 관련 기사의 토픽별 키워드(15위까지) · 101
<표 2-18> 2018~2022년 장애인 관련 기사에 부여된 토픽 명 · 101
<표 3-1> 장애인실태조사 분석대상의 성 및 시기별 분포 · 108

〈표 3-2〉 연령, 시기 및 코호트별 대학진학률(%) ····· 113
〈표 3-3〉 대학진학에 대한 APCD 모형 분석 결과 ····· 116
〈표 3-4〉 연령, 시기 및 코호트별 취업률(%) ····· 120
〈표 3-5〉 취업에 대한 APCD 모형 분석 결과 ····· 123
〈표 3-6〉 연령, 시기 및 코호트별 결혼율(%) ····· 126
〈표 3-7〉 결혼에 대한 APCD 모형 분석 결과 ····· 130
〈표 4-1〉 1970년대 이후 한국 고등교육의 팽창 ····· 138
〈표 4-2〉 장애인특별전형 실시대학 비율과 입학생 수 ····· 138
〈표 4-3〉 변수 분포 ····· 147
〈표 4-4〉 대학진학 로짓분석 결과(1) ····· 149
〈표 4-5〉 대학진학 로짓분석 결과(2) ····· 150
〈표 5-1〉 변수 분포 ····· 163
〈표 5-2〉 시변 변수(연속변수와 이분형 변수)의 기술통계 164
〈표 5-3〉 취업 여부에 대한 추정 결과(전체) ····· 167
〈표 5-4〉 취업 여부에 대한 추정 결과(남성) ····· 170
〈표 5-5〉 취업 여부에 대한 추정 결과(여성) ····· 173
〈표 6-1〉 미혼으로 남은 사람과 초혼으로 이행한 사람의 수 · 186
〈표 6-2〉 변수의 기술통계 ····· 187
〈표 6-3〉 초혼 이행에 대한 사건사 분석 결과(1) ····· 193
〈표 6-4〉 초혼 이행에 대한 사건사 분석 결과(2) ····· 194

그 림 목 차

[그림 1-1] 한국의 장애인 복지 지출 규모 ····· 3
[그림 1-2] 2017년 OECD 가입국의 GDP 대비 장애인 복지 지출 규모 · 4
[그림 1-3] 2007년 OECD 가입국의 장애 정책 지표의 국가별 점수 · 4
[그림 1-4] 2020년 장애인과 전체인구의 주요 생애 지표 비교 · 7
[그림 1-5] 1인 가구 비율과 20·30대 비혼율 추이 ····· 28
[그림 1-6] 교차성 예시 ····· 30
[그림 1-7] 장애인 성년기 주요 생애 경험 유형의 이념형 31
[그림 1-8] 전체 설명틀 ····· 34
[그림 1-9] 2장과 3장의 설명틀 ····· 35
[그림 1-10] 4장~6장의 설명틀 ····· 36
[그림 2-1] 국회의 장애 관련 발의 법안 수 추이 ····· 54
[그림 2-2] 시기별 워드 클라우드(TF-IDF degree 기준) Ⅰ · 60
[그림 2-3] 시기별 워드 클라우드(TF-IDF degree 기준) Ⅱ · 61
[그림 3-1] 대학진학률 코호트 추이(%) ····· 114
[그림 3-2] APCT 모형으로 추정된 대학진학의 코호트 효과 · 115
[그림 3-3] APCD 모형으로 추정된 대학진학의 코호트 효과 · 117
[그림 3-4] 취업률 코호트 추이(%) ····· 122
[그림 3-5] APCT 모형으로 추정된 취업의 코호트 효과 ···· 123
[그림 3-6] APCD 모형으로 추정된 취업의 코호트 효과 ··· 124
[그림 3-7] 결혼율 코호트 추이(%) ····· 127
[그림 3-8] APCT 모형으로 추정된 결혼의 코호트 효과 ···· 128
[그림 3-9] APCD 모형으로 추정된 결혼의 코호트 효과 ··· 130
[그림 3-10] 장애인의 성년기 주요 생애 경험 유형의 변화 경로 · 134
[그림 4-1] 성별과 아버지의 교육수준에 따른 대학진학 기대확률 · 151
[그림 5-1] 전체인구와 장애인의 성별 노동지표 비교 ····· 155

[그림 5-2] 연령에 따른 학력별 취업의 한계효과(전체) ····· 169
[그림 5-3] 연령에 따른 학력별 취업의 한계효과(남성) ····· 171
[그림 5-4] 연령에 따른 학력별 취업의 한계효과(여성) ····· 174
[그림 6-1] 성별 초혼 이행 생명표 ····· 188
[그림 6-2] 종사상 지위별 초혼이행 생명표 ····· 189
[그림 6-3] 교육수준별 초혼이행 생명표 ····· 190
[그림 6-4] 근로소득에 따른 초혼이행 생명표 ····· 190
[그림 6-5] 성별 종사상 지위에 따른 초혼 이행 생명표 ···· 195
[그림 6-6] 성별 근로소득에 따른 초혼 이행 생명표 ····· 196
[그림 7-1] 장애인의 성년기 주요 생애 경험 유형의 분화 경로 · 200

보존용 학위논문 정오표

페이지	정정 전	정정 후
p. 27 : 14	[그림 2-5]	[그림 1-5]
p. 43 : 5	<표 1-5>	<표 1-4>
p. 100 : 11	25위까지	15위까지
p. 101 : 2	25위까지	15위까지
p. 115 : 17	<표 3-6>	<표 3-3>

제 1 장 서 론

제 1 절 문제 제기

이 연구는 장애인이 성년기에 겪을 수 있는 여러 생애 경험 중에서도, 대학진학, 취업, 결혼에 주목하여,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자 한다. 첫 번째, 장애인의 대학진학, 취업, 결혼 기회는 장애정책 및 장애담론과 맞물려 시기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였는가? 두 번째, 장애인의 대학진학, 취업, 결혼 기회는 사회경제적 조건에 의해 어떻게 구조화되어 있는가?

2021년 12월 3일 서울 지하철 5호선에서의 투쟁을 시작으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은 최근(2023년 1월)까지 지하철 투쟁을 이어오고 있다. 전장연은 투쟁을 통해 장애인의 시민권 보장을 위한 장애인 권리예산 증액을 주장하였다. 시민권의 하위항목은 노동권, 교육권, 주거권(지역사회에서 살 권리) 등으로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장애인의 탈시설화[1]를 위한 예산을 현실화할 것, 중증장애인(특히, 발달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법을 제정할 것, 장애인 활동 지원[2]을 24시간 보장하고 비용을 국가가

1) 장애인의 탈시설화는 장애인이 장애인 생활시설로부터 나와 지역사회에서 비장애인과 함께 생활하는 것을 의미한다. 장애인 생활시설은 장애인이 거주하면서 재활 치료 등의 복지서비스를 받는 곳으로 정의되는데(임성택, 2012), 2013년 시점 1,397개 장애인 생활시설에 31,152명의 장애인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 중 지적장애인이 19,330명으로 약 62%를 차지하고 있다(박숙경, 2016). 지적장애인이 아니더라도, 장애인 생활시설에는 자립이나 재가돌봄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이 거주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한편, 장애인들을 보호한다는 명목과 구조적 폐쇄성으로 인해, 장애인 생활시설은 “인권의 사각지대”(임성택, 2012)이기도 하며, “고통의 기록이자 욕구와 희망이 무시되는 절망의 현장”으로 불리기도 한다(박숙경, 2016). 장애인 생활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경우 그룹홈과 자립홈에 거주하는 장애인 보다 자기 결정권이 보장되는 정도도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김용득·박숙경, 2008).

2) 장애인 활동 지원이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도로,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

부담할 것, 이동권을 보장할 것 등을 주장하였다. 하지만 그들의 투쟁은 일반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했다는 이유로 비판이 쏟아졌다. 장애인만큼은 아니지만, 지하철이라는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사회적 약자인 소위 서민들의 불편을 초래했다는 것이다[3]. 그리고 투쟁에 참여한 장애인과 활동가 30~40명이 업무방해죄, 집회시위법, 전차교통방해, 업무방해, 감염병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다[4].

194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1977년 '특수교육법' 제정을 시작으로 한국의 장애인복지는 거듭 발전해왔다. 1989년에는 '장애인복지법'이 제정됐으며, 1990년에는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졌다. 1997년부터는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을 실시하여, 5년마다 장애인복지를 위해 범부처 간 협력에 종합적 대책이 발표되고 있다. 2007년에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사회의 전 영역에 걸쳐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고,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2008년, 국회는 유엔이 채택한 2006년 '장애인 권리협약'을 비준했으며, 기초연금인 장애인연금을 도입하였다. 2011년에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중증장애인의 자립 생활이 점차 현실화되었으며, 2021년에는 '장애인에 대한 특수교육법'을 제정하여, 특수교육의 범위를 고등교육과 평생교육까지 확장하였다.

장애인 복지 예산도 1990년 통계가 집계된 이후부터, 지속 증가하고 있다([그림 1-1] 참조). 장애인 복지 예산은 2000년대 중반까지 비약적으로 성장하였고, 그 이후에도 GDP 성장과 함께,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동지원급여(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3) 데일리안 2022/02/23 ""할머니 임종 지키러 가야 한다" 청년 절규에도 장애인단체 "버스 타고 가라"" (https://www.dailian.co.kr/news/view/1086231/)
중앙일보 2022/04/21 "전장연 지하철 탄날…"빡세게 준비한 시험 못갔다" 학생들 눈물"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65301#home)
문화일보 2022/02/13 "전장연 시위에 30대男 "장애인 1명당 우주선 1대씩 줘야 관둘건가" 분통"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2091301039921305001)
문화일보 2022/07/01 "전장연 출근길 시위에 "나이 70 먹고 돈 벌러 가는데" 시민 절규"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2070101039921305001)
외 다수

4) 중앙일보 2022/04/10 "버스 지연시킨 전장연 활동가 檢송치…지하철 지연도 수사"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62269#home)

국제비교를 통해 한국 장애인 복지의 위치를 확인했을 때, 그 수준이 얼마나 미흡한지를 확인할 수 있다. 꾸준히 장애인 복지 예산이 증액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년 한국의 GDP 대비 장애인 복지 지출 규모는 0.60%로, OECD 가입국 37개국 중 33위로 최하위권에 속했다([그림 1-2] 참조). 또한, 2010년에 발간된 OECD의 보고서에 따르면 2007년 한국의 장애 정책 지표의 점수는 50점 만점, 평균 25.8점에 15점으로 당시 조사되었던 28개국 중 꼴찌였다([그림 1-3] 참조)[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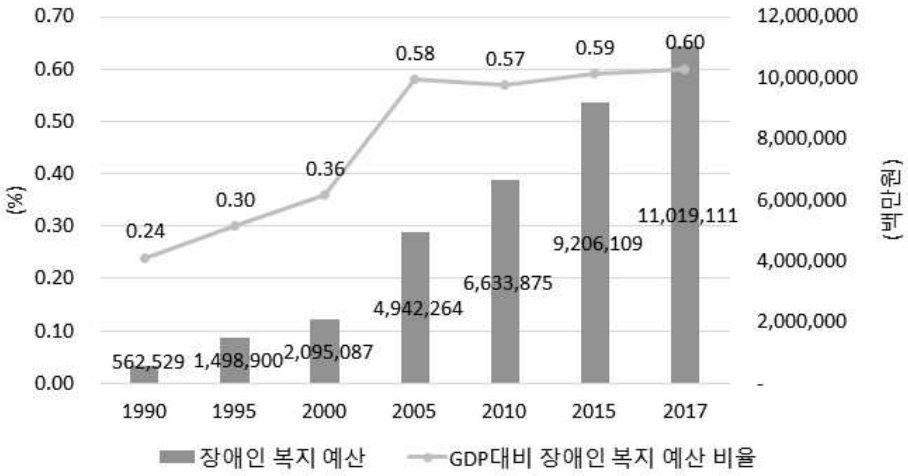

주: 장애인복지예산은 공적지출(public expenditures)만을 합한 것으로, 근로 무능력 관련 급여(Incapacity-related benefits)의 현금급여와 현물급여를 합한 수치이며, OECD(2014; 2021)의 *SOCX statistics*를 참고함.

출처: 한국장애인개발원 (2015:133; 2022:156) 「장애통계연보」

[그림 1-1] 한국의 장애인 복지 지출 규모

5) OECD(2010:103)의 장애 정책 지표는 10개 영역에 대해 각 0~5점의 점수를 부여하여, 총점의 범위는 0~50점이다. 구체적 항목은 (1) 복리후생 제도 적용 범위(benefit system coverage), (2) 최저 장애 수당(minimum disability benefit), (3) 완전 장애를 위한 수준(level for full disability), (4) 장애 수당 관대성(disability benefit generosity), (5) 장애 수당 영속성(disability benefit permanence), (6) 의학적 평가 규칙(medical assessment rules), (7) 직업 평가 규칙(vocational assessment rules), (8) 질병 수당 관대성(sickness benefit generosity), (9) 질병 수당 기간 (sickness benefit duration), (10) 질병 수당 모니터링(sickness benefit monitoring)이다. 한국의 경우, (1) 복리후생 제도 적용 범위, (2) 최저 장애 수당, (5) 장애 수당 영속성, (10) 질병 수당 모니터링을 제외한 6개 항목에서 최저 점수인 0~1점을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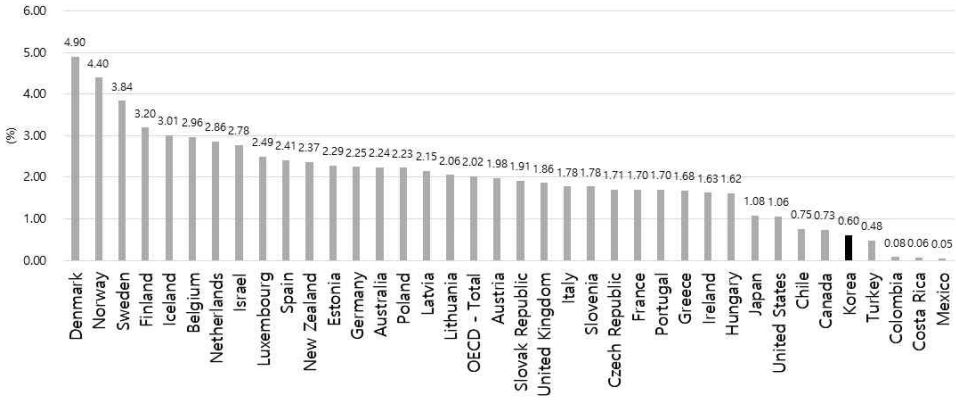

자료: OECD(2021) *SOCX statistics*

[그림 1-2] 2017년 OECD 가입국의 GDP 대비 장애인 복지 지출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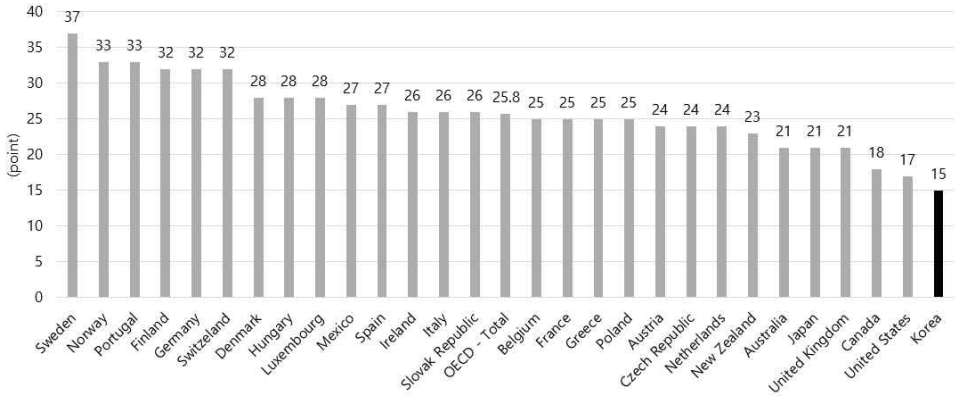

자료: OECD(2010:103)

[그림 1-3] 2007년 OECD 가입국의 장애 정책 지표의 국가별 점수

최근 정민섭(2021)은 OECD 27개 국가의 2015년 소득보장과 고용정책의 지출데이터를 활용하여 장애정책을 유형화하였다. 그는 장애정책 유형화를 위한 이념형으로, “보편적 발전형(소득보장과 고용정책 모두높은 수준)”, “소득보장 중심형(소득보장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 “고용정책 중심형(고용정책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 “보편적 비발전형(소득보장과 고용정책 모두 낮은 수준)” 으로 제시하였다(정민섭, 2021). 분석결과, 5개의 유형이 도출되었으며, 한국은 그중에서도 소득보장과 고용정책 수준이 매우 낮은 보편적 비발전형에 속했다[6].

그간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국제 수준에서 이렇게 열악한 한국 장애 현실은 장애인의 삶에 고스란히 배어있다. 그들의 삶은 여전히 고립되고, 배제되고, 소외되고, 비극적이다. 60대 지적장애인이 80대 노모와 함께 살아오다 살충제를 마시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7], 지적장애인 딸을 돌보던 말기 암 투병 중인 어머니가 딸을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으며[8], 최근에는 한국 자폐 스펙트럼 장애인의 평균 수명이 23.8살, 사망원인 1위가 자살이란 통계까지 등장하였다[9]. 이는 스웨덴, 미국 등 서구 국가의 자폐 스펙트럼 장애인의 평균 수명이 36~59세인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자폐성 장애인의 평균 수명이 낮은 원인이 장애인 개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한국사회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발달장애인[10] 삶의 비극성은 이들에 대한 사회적 지원이 부재한 상태에서 전 생애에 걸쳐 누적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은미・백은령(2010)에 따르면 영유아기에는 돌봄에 대한 사회적 지원이 부재하고, 학령기에는 공교육의 도움을 받더라도 발달장애인의 수준과 맞지 않고 부조화되며, 성인이 된 후에는 전환교육 및 직업교육의 부재로 자립이 어렵고 사회에 부적응하여 통합이 어려우며, 이어서 부모의

---

6) 보편적 발전형으로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핀란드, 네덜란드, 벨기에가 속했고, 소득보장 중심형으로 호주, 뉴질랜드, 스페인, 아이슬란드가 속했다. 고용정책 중심형에는 독일과 스위스가 속했고, 보편적 비발전형에 약한 소속을 보이는 국가로 영국, 프랑스, 오스트리아, 체코, 이탈리아, 포르투갈, 그리스가, 보편적 비발전형에 강한 소속을 보이는 국가로 캐나다, 미국, 아일랜드, 룩셈부르크가 있었다. 한편 보편적 비발전형에 매우 강한 소속을 보이는 국가로 터키, 일본, 칠레와 한국이 속했다(정민섭, 2021).

7) 비마이너 2013/02/22 “60대 지적장애인, 살충제 마시고 스스로 목숨 끊어” (https://www.beminor.com/news/articleView.html?idxno=4919)

8) 시사저널 2022/03/04 “‘지적장애 딸’ 살해 후 극단선택 시도한 말기암 50대 母” (http://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234344)

9) 한겨레 2022/10/05 “한국 자폐인 ‘수명’ 23.8살…27살 우영우는 우연히 살아남았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61389.html)

10) 지적장애인과 자폐 스펙트럼 장애인을 통칭하여 발달장애인이라 한다. 발달장애인의 경우, 고등학교 졸업 후 삶이 점차 사회로부터 소외되어감을 보여주는 연구가 많다. 2004년 충남의 한 특수학교 졸업생을 추적조사한 연구(김진호, 2004)에 따르면, 졸업생의 63%가 시설에 거주하고 있으며, 32%가 부모님과 함께 살면서 고립된 생활을 하고 있었다. 취업한 학생은 단 5%에 불과했다. 고등학교나 전공과를 졸업한 후에 평생교육기관을 통해 교육을 받고, 취업 알선으로 정규직으로 고용되더라도, 대체로 그 시간이 일과 중 4시간에 한정되어 그 외의 대부분의 시간을 집에서 혼자 무료하게 보내고 있었다(김민영・홍성두, 2016; 최옥순・김영일. 2009).

노화와 죽음 이후 지적장애인을 돌볼 공적 서비스의 부재로 발달장애인의 삶은 비극으로 종결되는 듯하다.

그런데 한국 장애인 일생의 비극성은 비단 발달장애인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조주희・조홍중(2012)은 한 뇌성마비 경도장애여성의 유소년기, 학령기 및 성인기의 경험을 보여준다. 그는 어린시절을 '입원과 치료의 나날'로 보냈으며, 특수학교에서 조차 제대로 된 교육을 받기보다는 더 심한 장애를 앓고 있는 친구의 '도우미 역할'을 해야만 했다고 하였다. 특수학교에서의 생활이 '우물 안 개구리'였다면, 일반학교로 옮겨서의 생활은 '우물 밖 개구리'였고 사회적 고립감을 경험하였다고 하였다. 대입을 준비했지만, 공부의 체력적 한계를 경험하며, 대학진학을 포기하였고 점차 신체적 고통이 심해지면서, 직업훈련도 중단했고, 일하는 것을 포기했다는 것이다. 성인이 되어서는 어머니와 단둘이 살게 되면서 점차 사회적으로 '고립'되어갔다고 한다. 신유리・김경미・김동기・유동철(2013)은 1950년대 및 1960년대에 태어난 7명의 뇌병변 및 지체 장애여성의 생애를 보여준다. 이들은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유년기를 보냈다. 절대적 빈곤의 시기를 살아오면서 여성 및 장애인으로서의 이중차별을 감내해야 했고, 이러한 배경 하에 정규교육을 거의 받지 못했다. 그들은 일단 취업은 했지만, 업무가 제한된 성역할수행에 한정되었으며 이마저도 적응하지 못해, 취업을 포기하거나 경력단절을 경험했다고 하였다. 또한, 불안정한 저임금 노동에만 고용되었을 뿐, 생계가 가능한 노동에는 진입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런데 오늘날 이와 같은 생애의 불안정성은 장애인뿐만 아니라 비장애인에게도 해당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의가 제기될 수 있다. 한때 한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산업화와 근대화가 진행된 사회에서 개인이 일정 기간 교육을 받고, 교육을 마치면 노동시장에 진출하여 일하고, 적정 나이에 도달하면 결혼하여 부모로부터 온전히 독립된 삶을 꾸리는 것이 하나의 표준으로서 자리 잡았었다. 하지만 이것은 일시적 현상에 불과했다. 한국의 경우, 1997년 경제위기 이후 교육 기간이 늘어났고, 노동시장에서 안정된 지위를 얻는 것이 어려워졌으며, 부모로부터의 독립을 미루는 등 표준

적 생애를 사는 것이 비장애인에게도 어려운 것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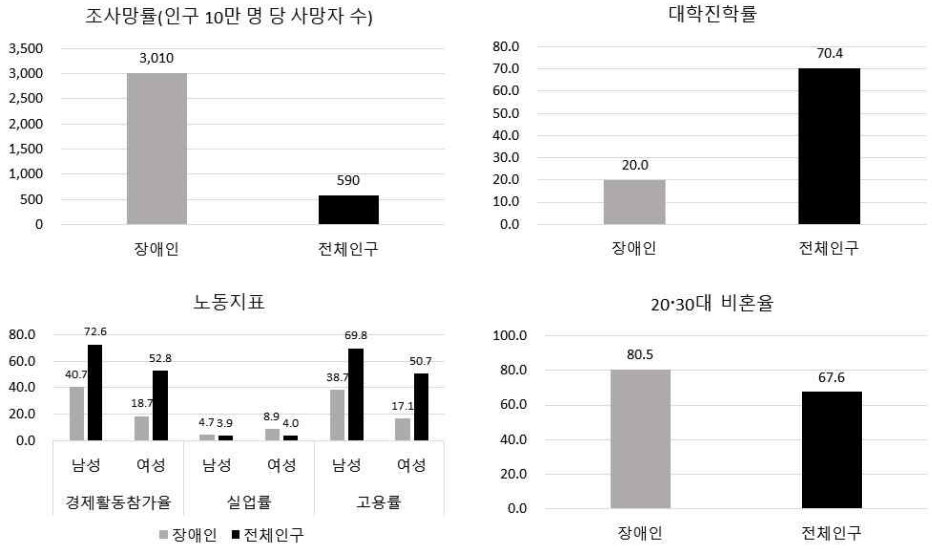

자료:
장애인 조사망률: 보건복지부(2020)「장애인건강보건통계」
전체인구 조사망률: 통계청(2020)「인구동향조사」
장애인 대학진학률: 교육부(2020)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전체인구 대학진학률: 한국교육개발원(2020) 「교육통계분석자료집」
장애인 노동지표: 보건복지부(2020) 「장애인실태조사」
전체인구 노동지표: 통계청(2020) 「경제활동인구조사」
장애인 비혼율: 보건복지부(2020) 「장애인실태조사」(저자가 원자료로 가중치 적용하여 직접 산출)
전체인구 비혼율: 통계청(2020)「인구총조사」

[그림 1-4] 2020년 장애인과 전체인구의 주요 생애 지표 비교

하지만 같은 구조적 위기 하에 장애인의 생애는 여전히 더 취약하다. [그림 1-4]는 2020년 장애인과 전체인구의 주요 생애 지표를 비교한 것이다[11]. 장애인 인구의 고령화를 감안하더라도, 장애인의 조사망률은 3,010명으로 전체인구 5배 이상이다[12]. 장애인 고등학교졸업생의 대학진학률은

11) 2020년 등록장애인 인구 약 253만3천 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5.1%를 차지한다. 즉 전체 인구의 지표는 비장애인의 지표로 보아도 무방하다.
12) 장애인의 기대 수명은 비장애인보다 더 짧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김정석・이진우・노승

20.0%로, 전체 고등학교졸업생의 70.4%보다 50.4%p 낮다. 노동지표에서의 차이도 뚜렷하다. 장애인의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은 전체인구의 그것보다 훨씬 낮으며, 장애인의 실업률은 전체인구의 그것보다 높다. 20・30대 비혼율도 전체인구보다 장애인에서 훨씬 높다.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의 장애정책은 점진적 발전을 거듭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적 비교 수준에서 한국의 장애인 복지 예산은 선진국 수준에 미치지 못하며, 장애정책 또한 최소한의 안전망을 제공할 뿐, 소득보장정책이나 고용정책은 모두 발전하지 않았다. 이러한 낮은 수준의 장애인 복지는 한국 사회에서 장애인이 비장애인보다 못한 불안정한 생애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제도적 지원이 불충분하니 비장애인에 비해 출발선이 뒤져있다. 그래서 장애인은 비장애인보다 못 배우고, 일도 못 하고, 독립적으로 사는 것이 어렵다. 하지만 섣불리 판단하기는 이르다. 더디긴 하지만 현재까지의 장애정책의 진전도 반세기 동안 장애계의 투쟁 결과이다. 또한, 장애인을 둘러싼 구조적 맥락의 변화는 단순히 제도의 내용 변화만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 다시 말해, 제도의 실천적 맥락(예. 장애담론)을 함께 파악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구조적 맥락은 장애인의 성년기 주요 생애 경험에도 영향을 미쳤다. 그래서 장애인의 성년기 주요 생애 경험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확인함으로써 이러한 구조적 실체[13]에 좀 더 가까이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장애인의 성년기 주요 생애 경험은 역사적 시간의 변화에 따라 다르게 형성되기도 하지만, 주어진 성별, 계층 등 사회경제적 조건에 의해 구조화되기도 한다. 처한 사회경제적 조건 하에서 최선의 행위를 하고, 그 결과가 생애로 나타나는 것이다. 한편, 그 사회적 조건이 장애 혹은 다른 사회경제적 조건과 결합하였을 때는 다른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 이를 '교차성'이라 하는데, 이 연구는 장애인의 성년기 주요 생애 경험을 구조화하

현, 2017).

13) 언급한 '구조적 실체'를 '사회적 포용', '레짐', '시민권' 등의 개념을 적용하여 이론화하고자 시도하였으나, 해당 개념을 통해 본 연구가 분석하고 있는 장애인의 생애를 이론적으로 내포(theoretical embedding)하기 어려웠다. 결과적으로 연구의 추상화 수준을 낮추게 되었고, 상대적으로 경험적 수준이 높아졌다.

는 교차성의 작동 양상을 드러내고자 한다.

제 2 절 선행 연구 검토

1. 서구의 장애인 성년기 주요 생애 경험 연구

서구에서 대학진학, 취업, 결혼 등의 성년기 주요 생애 경험을 종합적으로 다루는 연구는 주로 '성인기 이행(transition to adulthood)' 이란 주제로 발전해왔다[14].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구의 성인기 이행 연구를 검토하였을 때, 해당 연구는 크게 세 시기에 걸쳐 등장하고 유행하였다. 첫 번째는 1960~70년대로, 이 시기의 성인기 이행연구는 세대 간 사회이동(intergenerational social mobility)에 집중하여, 1949년 홀링스헤드(Hollingshead, 1949)의 *Elmtown's Youth*을 필두로, 콜만(Coleman, 1961)의 *The Adolescent Society,* 위스콘신학파의 지위획득모형(status attainment model) 연구로 막을 내린다. 이 시기의 성인기 이행 연구는 사회심리학적 요인와 제도적 요인이 어떻게 청년들의 가족배경과 교육적 성취, 직업적 성취, 임금 등을 매개하는지 집중하였다.

두 번째는 1980년대 중반, 미국 사회에서 흑인 미혼모의 증가, 청년 실업률 증가 등 인종, 계급 등에 따라 성인기 이행의 계층화가 발생한 시기이다. 이 시기 연구들은 인종, 계급, 문화적 배경 등의 사회적 범주 혹은 인구 집단 간에 나타난 성인기 이행의 연령규범과 순서규범의 차이에 주목하고 있다(Hogan and Astone, 1986). 또한, 이 시기에는 성인기 이행을 연령에 따른 성장을 의미하는 발달심리학적 관점을 넘어, 사회학적인 생애과정(life course) 접근이 비로소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호간과 애스톤(Hogan and Astone, 1986)은 성인기 이행에 관해 인구기반의 동학적 접근

14) 사회학에서는 현대사회의 성인기 이행을 일련의 생애 사건으로 특징된 과정(process marked by a series of events)으로 개념화했으며, 그 사건(event)은 주로 취업(finding a full-time job), 독립적 거주(independent living), 결혼 및 출산(having children)을 지칭한다. (예. Hogan and Astone 1986; Settersten Jr., Furstenberg Jr. and Rumbaut 2008; Shanahan 2000 외 다수). 이 연구 역시 대학진학, 취업, 결혼 등의 생애 사건을 다루고 있고, 이를 포괄하는 '성인기 이행' 개념을 적용하려 시도하였으나, 장애인의 경우 이러한 사건의 경험 여부가 성인으로 이행했다는 판단의 근거가 되기 어려우며, 장애와 비장애를 떠나, 스스로 인식하는 어른 됨의 증표(mark)는 이러한 생애 과업을 수행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연구결과(Arnett, 2004)를 수용하여, 무리하게 성인기 이행 개념을 적용하지 않았다.

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안하였고, 이후 성인기 이행에 대한 연구는 성장과 분화를 거듭했다.

세 번째는 2000년대 이후로, 이 시기의 성인기 이행 연구는 성인기 이행의 지체와 탈표준화가 글로벌하게 나타나는 현상에 주목하고 있다. 또한, 생애 이력을 관찰할 수 있는 자료가 누적되고, 성인기 이행에 관한 이론화[15]가 누적됨에 따라, 이론에 기반한 다양한 실증적 연구가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이 시기에 이루어진 연구는 근대적 성인기 이행 패턴이 어떻게 형성되었고, 어떻게 불안정해졌는지를 설명하는 데 집중하였다. 또한, 최근에는 문화・제도적 차이(Buchmann, 1989)로 성인기 이행의 차이를 설명하는 국가 간 비교연구도 등장하게 되었다(Billari and Liefbroer, 2010). 이 시기 그동안 주목받지 못했던 소수집단의 성인기 이행에 관한 연구들도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했는데, 장애인의 성인기 이행에 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도, 바로 이때부터라고 할 수 있다.

장애인의 성년기 주요 생애 경험에 관한 서구 많은 연구들은 장애인이 비장애인보다 교육받을 기회가 제한되고(Bento, 1996; Fuller, Bradley and Healey, 2004; Holloway, 2001; Riddell and Weedon, 2006), 취직이 어렵고(Driedger, 2003; Hasazi, Gordon and Roe, 1985; Kirchner and Smith, 2005; Robert and Harlan, 2006; Rylance, 1998; Wagner and Blackorby, 1996), 결혼하여 가족을 형성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MacInnes, 2011; Sitlington and Frank, 1990)을 밝히고 있다.

장애인의 성년기 주요 생애 경험에 관하여 종합적이면서 장애인 내부의 차이에 주목한 양적 연구가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장애청소년들의 성인기 이행을 추적 조사할 수 있는 자료[16]가 생성되기 시작하면서부터인데, 2003년 웰즈, 샌더퍼 및 호건의 연구(Wells, Sandefur and Hogan, 2003)가 최초다. 그들은 거주 형태와 취업 상태에 따라 잠재집단분석을 실시했다. 그리고 성별을 나누어 장애 여부, 장애 유형, 가구 소득, 인

15) Lesthaeghe and Jolly(1995), Lesthaeghe(2010) 및 Van de Kaa(1987)의 제2차 인구변천이론, Giddens(1990; 1992)의 개인화, Beck(1995)과 Beck and Beck-Gernsheim(2002)의 위험사회 등

16) 미국의 National Longitudinal Survey of Youth 1997(NLSY97), National Longitudinal Study of Adolescent Health(Add Health) 등

종 등에 따라 어떤 유형에 속하는지를 분석하였다. 그들의 연구에 따르면, 20세 시점 연구대상인 장애학생 중 40%가 의존적 삶 즉, 미취업 상태로 부모로부터 독립하지 못했으며, 미혼인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20살 시점 비장애 학생의 5%가 해당 상황에 놓인 것에 비하면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또한 지적장애(mental retardation)와 중복장애가 그들의 삶을 더욱 의존적으로 만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의존적 삶을 살 확률이 낮았다.

야누스(Janus, 2009)는 학생 여부, 경제활동상태, 독립적 거주, 결혼 여부, 출산 여부에 따라 5개의 잠재집단을 추출한 후 잠재집단을 종속변수로, 장애 유형, 가족의 사회경제적 지위, 한부모가정 유무, 인종 및 성별을 독립변수로 다항로짓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및 기타 장애를 가진 청년들이 비장애인 청년보다도 지연된 성인기 이행 유형(laggards)에 속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학습 장애를 가진 청년들의 경우 취업은 했지만, 독립된 거주와 결혼으로 이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에는 아베베, 헬네스 및 안데네스(Abebe, Helseth and Andenæs, 2019)의 연구와 치텀과 랜돌프(Cheatham and Randolph, 2022)가 장애인의 성년기 주요 생애 경험에 관해 종합적으로 경험적 연구를 수행했다. 최근 아베베 외(Abebe, et al., 2019)의 연구는 노르웨이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장애 여부, 교육 수준, 취업 상태, 복지수당의 수혜 여부로 나누어 성별, 부모의 학력, 정신적 건강 상태, 학업에 대한 자신감, 사회적 수용 등의 독립변수가 성년기 주요 생애 경험 여부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장애청소년이 비장애청소년보다 대학에 진학하기 어렵고, 실업일 확률이 높았으며, 복지수당을 더 많이 받았다. 또한, 이 연구는 장애 유무 외에도 배경 변수(성, 연령,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정신적 건강 상태, 학업에 대한 자신감, 사회적 수용 등의 차이를 확인했다. 치텀과 랜돌프(Cheatham and Randolp, 2022)는 고등학교 졸업 여부와 경제활동 참가를 종속변수로 장애 여부, 장애 유형, 장애 정도를 독립변수로 성인기 이행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장애가 있는 경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경제활동에

참여할 확률이 낮았으며, 인지장애가 있거나 심한 장애일 때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더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생애과정 관점을 장애인의 성년기 주요 생애 경험에 부분적으로 적용한 연구로 영국의 샤와 프레스틀리의 연구(Shah and Priestley, 2011)가 있다. 그들의 작업인 *Disability and Social Change: Private Lives and Public Policy*는 영국 장애정책의 역사적 변화가 세대별 장애인의 성년기 주요 생애 경험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왔는지를 50여 명의 서로 다른 세대(1940년대생, 1960년대생, 1980년대생) 장애인을 인터뷰함으로써 밝히고 있다. 그리고 전체 연구의 일부를 성년기 주요 생애 경험 중 노동시장 진입에 관한 것으로 할애하고 있다. 그런데 장애인 고용을 위한 공공정책과 제도가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이 주류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못하고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노동시장으로부터 주변화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Shah and Priestley, 2011). 오히려 제도화된 체계가 그들을 실업이나 질이 나쁜 일자리로 이동하게 한다는 것이다.

서구의 성인기 이행을 중심으로 한 성년기 주요 생애 경험 연구는 1990년대 말 자료가 구축되면서, 자료기반 분석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이 시기 연구들은 장애특성이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성년기 주요 생애 경험의 차이를 잘 보여주고 있지만, 국가의 제도적 맥락에 따른 생애 경험의 차이에 대한 연구는 극히 드물다. 거시 구조적 변화에 따라 생애 경험이 어떻게 다르게 구성되는지에 대한 접근은 거의 없다. 게다가, 생애 경험의 차이를 설명하는 이론적 접근도 찾기 어렵다.

2. 국내의 장애인 성년기 주요 생애 경험 연구

국내에서 장애인의 성년기 주요 생애 경험 연구는 특수교육학을 중심으로 특수교육을 받은 장애학생의 ‘성인기 전환[17]’을 중심으로 시작됐다. 주

17) ‘transition’이 사회학에서는 ‘이행(移行)’으로 특수교육학에서는 ‘전환(轉換)’으로 번역되어 사용되고 있다. 사회학에서는 ‘transition’이 다음 단계로 나아감을 의미한다면, 특수교육학에서는 ‘transition’을 다른 상태로의 변화로 이해하고 있는 듯하다.

로 성인기 ‘전환 교육’[18]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며 부분적으로 장애학생의 성인기 전환 실태(김진호, 2004; 박희찬, 2013; 이정기・안정우・백유순, 2002), 성공적 전환 요인(박승희・박현숙・박지연・이숙향, 2012; 조윤경, 2003; 조은별・서효정, 2020)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또한, 성인기 전환 연구는 주로 전환이 어렵다고 여겨지는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및 질적 연구를 중심으로, 전환이 특히 어려운 장애유형인 청년들에 대한 성인교육프로그램 개발이나 일자리 알선 등을 촉구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그 외에도 장애학 혹은 장애인 복지학 등의 분야에서 이루어진 생애사 연구를 통해 한국 장애인의 성년기 주요 생애 경험에 대한 모습이 부분적으로 확인되며, 개별 교육, 취업, 결혼 경험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존재한다.

조주희・조홍중(2012)은 뇌성마비를 앓고 있는 한 여성 경도장애인의 유소년기, 학령기 및 성인기의 경험에 대한 생애 내러티브 분석을 진행하였다. 신유리 외(2013)는 1950년대 및 1960년대에 태어난 7명의 장애여성의 생애를 사회적 배제 경험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은미・백은령(2010)은 지적장애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한 FGI를 통하여 지적장애 자녀의 생애주기에 따른 가족경험 및 지원욕구를 고찰하였다. 세 연구에서 모두 일관되게 학교 교육으로부터의 배제, 노동시장으로부터의 배제 경험이 관찰된다.

장애인 개인의 생애 경험을 통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생애사 연구 외에 교육성취, 취업, 결혼 영역 별로도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우선 특수교육학을 중심으로 장애학생의 고등교육성취에 대한 연구가 부분적으로 이루어졌다. 하지만 교육을 받는 장애학생 당사자의 경험보다는 교육프로그램이나 교육자의 인식에 관한 연구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손지영・정소라・김동일, 2011; 이숙향, 2010). 소수의 연구가 장애인 스스로가 제도권 교육을 어떻게 경험하고 인식하였는지 살피고 있으며, 대체로 장애유형별로 연구가 이루어졌다. 몇 가지 장애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논문을

18) ‘한국학술지 인용색인(www.kci.go.kr)’에서 ‘장애’, ‘성인’, ‘전환’을 키워드로 논문을 검색하면, 161편의 논문이 검색된다(2022년 10월 13일 기준). 이 중 112편이 ‘전환 교육’에 관한 논문이다.

살펴보자면 청각장애 대학생의 문화실태를 다룬 연구(김경진, 2004), 장애대학생의 대학 내 지원에 관한 당사자들의 인식 및 요구에 관한 연구(김미선, 2008), 대학에서의 학업지원에 대한 시각장애 대학생들의 인식과 요구에 관한 연구(김미선・박중휘, 2010a), 시각장애 대학생의 휴학과 복학에 관한 사례연구(김미선・박중휘, 2010b), 장애대학생의 취업 스트레스에 관한 질적 연구(김은실・손현동, 2009) 등이 있다.

장애인의 취업에 대해서는 소수의 질적 연구와 다수의 양적 연구가 이루어졌다. 김수희・정종화・문송애(2017)는 전 국가대표 유도선수인 전신마비 1급 지체장애인 J씨의 노동 생애를 로젠탈의 내러티브 생애사 연구방법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경제학 분야에서는 다양한 서베이 자료를 활용하여 장애인의 취업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하는 연구들이 다수 존재한다. 이들 연구에서 장애인의 취업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인구학적 요인(강동욱, 2004; 류정진・나운환, 2006; 백은령・오혜경・전동일, 2007; 어수봉, 1996; 유동철, 2000; 이선우, 1997; 정명현, 2003), 장애 관련 요인(이선우・김성희・임정기・권선진・유동철・이계존, 2001), 인적자본 요인(김동일, 김수정, 김경선, 2012; 김성희, 2010; 오세철, 2004; 오혜경, 2002; 이선우, 1997; 정병오, 2010), 사회적 지지 요인(강정한・양유민, 2013; 노승현, 2012; 심진예・전혜연, 2003; 오세란, 2008; 유동철, 2000; 이선우, 1997; 임효순・이홍직, 2009; 임종호・전동일, 2008)등이 이루어졌다.

장애인의 결혼에 관한 연구로 김미옥(2002), 유창민・오혜인(2016), 신선숙・김득연(2019), 김미선・신유리・김정석(2020)의 연구 등이 있다. 김미옥(2002)은 9명의 장애여성을 대상으로 청・장년기 삶의 체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를 진행하였다. 유창민・오혜인(2016)은 지체장애여성의 결혼과정과 결혼생활의 의미에 관해 질적으로 연구했다. 신선숙・김득연(2019)은 여성발달장애인의 결혼에 대한 부모의 인식을 연구하였다. 세 연구 모두 장애여성이 결혼으로 이행하는 것이 어렵고 결혼생활 또한 유지하기 어려운 현실을 드러냈다. 김미선・신유리・김정석(2020)은 장애인실태조사(2017)자료를 생명표 방법을 적용하여 성인기 이전에 장애가 발생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결혼 이행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다른 유형에 비

해 특히 지적장애인의 결혼 이행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다른 유형의 경우에는 결혼 이행의 성별 차이가 없었지만, 지적장애인의 경우에는 남성의 결혼 이행이 여성의 그것보다 더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의 경우 장애인의 성년기 주요 생애 경험에 대한 본격적이고 포괄적인 연구가 시작되었다고 보기 힘들다. 대다수의 연구가 장애 유형에 따라 대상을 분리하여 성년기 주요 생애 경험에 접근하고 있으며, 양적 자료에 기반한 연구의 경우 대부분 실태조사 수준에 머물고 있다. 생애 경험의 차이를 장애 특성에 의한 차이에 한정하다보니, 사회경제적 조건에 따른 차이에 대한 분석 또한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론적 설명 또한 당연히 부재하다. 게다가 서구에서 이루어진 연구와 마찬가지로, 거시적 맥락 변화에 따라서 장애인의 생애 경험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연구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3. 기존 연구가 답하지 못한 질문

미국을 중심으로 진행된 서구 장애인의 성년기 주요 생애 경험에 관한 연구들을 검토한 결과, 다수의 연구가 성년기 주요 생애 경험에 있어서 장애 여부가 어떤 차별을 낳는지, 어떤 장애 특성(장애 정도, 장애 유형 등)이 얼마나 더 생애 과업의 수행을 어렵게 하는지, 그리고 가족 배경이나 사회심리적 요소들이 생애 과업의 수행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줌으로써 장애인의 성년기 주요 생애 경험에 나타나는 사회 구조적 차별을 경험적으로 밝히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이론적 설명을 제시한 연구는 찾기 힘들다.

한국 장애인의 성년기 주요 생애 경험 연구 역시 서구의 연구와 마찬가지로 장애인의 생애 과업 수행이 비장애인에 비해 훨씬 어려우며, 수행하더라도 여러 가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한국의 경우 특수교육학, 장애인 복지학 등을 중심으로 장애인의 성년기 주요 생애 경험 연구가 주로 이루어졌는데 연구의 범위가 주로 소규모 서베이, 문헌 연

구, 그리고 소수 사례에 대한 질적연구에 한정되었다. 이러한 연구의 범위는 자료의 한계에 의해 제한되었다고 볼 수 있다. 대부분의 연구가 개인 연구자의 역량과 자원에 절대적으로 의존하여 한국 장애인의 생애에 대한 총체적이고 포괄적인 접근이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국내의 장애인 성년기 주요 생애 경험 연구는 특히 '생애사 연구'를 위주로 연구가 축적되었다. 즉 국내에서는 장애 특성이나 사회경제적 특성과 같은 내적 속성에 따라 장애인의 성년기 주요 생애 경험 양상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총체적으로 보여주는 연구를 찾기 힘들다. 게다가 성년기 주요 생애 경험 양상의 분화를 설명하려는 이론화 시도도 부재한 것은 물론이다.

장애인의 성년기 주요 생애 경험에 대해 질적인 접근을 하는가 양적 접근을 하는가를 떠나서, 지금까지 검토한 연구는 샤와 프레스틀리의 연구(Shah and Priestley, 2011)의 연구를 제외하고 대부분 한 세대 혹은 한 코호트 내에서 개인별 혹은 집단별 성년기 주요 생애 경험 양상(intra-cohort variability)을 관찰하였다는 공통점을 가진다. 이것은 기존의 비장애인 중심 생애과정 연구가 생애과정의 근대화 혹은 표준화 논의의 맥락에서 장기간에 걸친 코호트 비교 연구(long-term patterns in transition markers) 및 경제위기 등의 역사적 사건을 전후로 한 코호트 비교연구(short-term intercohort trends)로 확장 및 심화된 것에 비하면 매우 제한적이다. 앞에서 검토한 장애인 성년기 주요 생애 경험에 관한 연구들은 대부분 역사적 맥락을 고려하지 않았다. 즉 제도를 비롯한 거시적 맥락의 변화에 따라 장애인의 성년기 주요 생애 경험 양상이 어떻게 다르게 구성되어가는지에 대한 접근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기존 연구는 장애인의 성년기 주요 생애 경험 양상의 차이를 단지 장애 특성이나, 인종, 계층 등 소속된 배경의 개인 속성으로 환원시키고 있다. 즉 구조적 제약 속에서 발현되는 개인의 합리적 선택과 행위로서 장애인의 생애 경험에 접근하지 않고 있다.

제 3 절 이론적 자원

1. 생애과정 관점과 세대 개념

장애인의 성년기 주요 생애 경험에 접근하기 위해서 우선 생애과정[19] 관점을 택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생애과정이란, 진학, 취업, 결혼, 출산 등 생애 전반에 걸친 역할의 전환과 궤적을 표시하는 사건으로 정의된다(Alwin, 2013). 생애과정 관점은 기본적으로 생애과정을 '사회적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본다. 생애과정 관점에서 장애인의 성년기 주요 생애 경험의 양상은 내적 속성(예. 남성 대 여성, 노동자 계층 대 중산층)별로 다르게 나타나며, 역사적 제도적 맥락에 따라 다르게 구성된다(Clausen, 1991; Elder, 1968; 1998).

또한, 생애과정 관점에서 장애인의 성년기 주요 생애 경험 양상은 개인의 시간과 사회의 시간이 교차하는 지점이 어디냐에 따라 달라진다. 사회에서 일어난 각종 역사적 변화는 개인의 생애과정을 재구조화한다. 장애인의 삶에 있어 주요한 정책적, 환경적 변화(예. 교육정책, 고용정책 등)가 생애 어느 단계에 발생하였는가에 따라 장애인의 성년기 주요 생애 경험은 다르게 구성될 것이며, 이러한 차이는 장애인 내부에서 '세대' 간 변이(variation)를 야기할 것이다. 사회에서 일어나는 변화는 개인 생애의 재구조화로 이어지며, 따라서 성년기 주요 생애 경험은 세대마다 다르다. 이러한 의미에서, 제도의 변화나 역사적 사건 발생 등의 사회구조적 변화에 따라 다르게 구성되는 세대는 생애의 역사적 변화를 포착하는 기본 단위로서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여기서 세대란 사회학적으로 다양하고 복잡한 의미로 사용되기 때문에 이를 자세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

19) 생애과정 외에도 생애주기, 생애사, 생애단계 등 생애와 관련된 다양한 개념이 존재한다. 사회학에서 이상의 개념들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Alwin, 2013).

① 생애주기(life circle): '사회적으로 구성된' 아동기 및 중년기와 같은 수명에 걸쳐 일련의 단계

② 생애사(life history): 삶을 특징짓는 사건과 활동의 연대기

③ 생애단계(life stage): 아동기, 청소년기, 노년기와 같은 '연령별' 지위 또는 역할의 연속적인 단계

세대(generation)라는 용어는 일상적으로 윗세대와 아랫세대, 청년세대와 노년세대, 386세대, N포세대 등 매우 다양한 맥락에서 의미가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다. 이에 세대사회학자들은 꾸준히 세대의 용법 구분과 개념화를 시도하였다.

만하임(카를 만하임, 2020)은 세대를 "청(소)년기(17~25세)에 어떠한 중요한 역사적 사건에 영향을 받아 특정한 의식·문화·지식을 갖게 되는 동일한 혹은 유사한 코호트(들)로 정의" 한다. 1차 세계대전이 종식된 후, 전쟁 경험 여부와 이를 경험한 생애 단계에 따라 세대가 분화되고 세대 갈등이 심화되는 것을 목도하게 되면서, 그는 세대는 무엇이며, 세대는 어떠한 과정을 통하여 형성되는가에 대한 질문에서 세대사회학의 정초를 마련하였다.

만하임 이후 세대에 대한 학문적 관심은 근대가 완성된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서구에서는 20세기 후반, 한국에서는 21세기 초반이다. 그리고 세대연구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세대개념에 대한 명료화를 시도한다. 그 중 데이비드 커처(Kertzer, 1983:126; 허석재, 2015에서 재인용)는 세대를 맥락과 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① 친족 가계에서 같은 항렬에 속하는 사람들
② 동일한 시기에 태어난 코호트, 즉 출생집단
③ 동일한 생애 단계에 있는 사람들
④ 특정한 역사적 시기에 생존한 사람들

세대 개념에 이어 '코호트'도 세대 연구에서 사용되는 중요한 개념이다. 일반적으로 코호트는 동일한 혹은 인접한 기간에 출생한 집단을 의미한다. 코호트는 출생코호트, 초혼코호트 등으로 활용되기도 하며 이때에는 주요한 사건을 같은 시기에 경험한 집단으로 사용된다. 커처의 ②번 세대 정의에서 코호트는 세대구성의 기초단위가 된다고 볼 수 있다. 한동안 세대와 코호트의 개념 사용을 놓고 일부 학자들 사이에서 논쟁이 있었다. 세대라는 개념과 용어는 특정한 사회영역으로 제한하고, 다른 거시적 분석

에서는 코호트를 사용해야한다는 입장(Ryder, 1985; Glenn, 2005)과 명목적인 분석단위에 불과한 코호트는 '실제적 단위'인 코호트를 대체할 수 없다는 것(Fogt, 1982; Bude, 2000; 전상진, 2004에서 재인용)이 그것이다. 국내 세대사회학 연구자들은 이에 세대를 코호트로 대체할, 혹은 코호트를 배격할 하등의 이유가 없기 때문에(박재흥, 2001; 전상진, 2002) 논쟁의 해결점으로 코호트로 세대를 대체하지 않으면서, 코호트를 세대의 기초적인 단위로 간주할 것을 제안하였다(박재흥, 2003; 전상진, 2004).

장애인 내부에서 역시 세대 혹은 코호트에 따라 살아온 사회역사적 맥락이 다르고, 그에 따라 구성된 성년기 주요 생애 경험 또한 다를 수밖에 없다. 예컨대, 태아의 장애를 진단하는 기술의 발달, 장애인 차별금지법의 제정, 장애인 대학특례입학제도의 도입 등과 같은 제도적 변화를 생애의 어느 시기에 경험하였느냐에 따라 장애인 집단 내부에서 세대에 따른 성년기 주요 생애 경험의 양상은 다를 것이다.

2. 장애 패러다임: 의료모델과 사회모델

장애인의 성년기 주요 생애 경험은 그가 속한 시대 혹은 사회에서 장애를 바라보는 관점인 '장애 패러다임'에 따라 다르게 구성된다. 20세기 이후 장애 패러다임은 의료모델[20]과 사회모델로 대비된다[21].

의료모델은 장애의 원인이 개인의 신체에 있기 때문에 장애인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수동적 존재라고 보는 관점이다. 의료모델은 장애를 "개인의 물질적인 조건에 녹아있는 생물학적 결정주의 또는 개인적 비극으로 간주"하며, "한 사람의 기능적 제한은 장애인이 직면하는 불이익의 근원"으로 규정한다(박경수, 2007:69). "의료적 모델은 모든 사람이 바라는, 인간 기능의 최적 수준이 있다고 가정"하며(Leplège and Hunt, 1997:48; 조한진, 2013:79에서 재인용), 이러한 가정은 재활 전문가에 의해 의심 없이 받아들여져 왔다.

의료모델은 여전히 가장 영향력 있는 장애 패러다임이지만, 이 모델은 "어떤 종류의 기능적 어려움이라 할 수 있는 '손상(impairment)'만을

---

20) 의료모델은 개별적 모델의 가장 진화한 형태로, 생물학과 의학의 발전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그 전까지, 장애는 사회적으로 철저히 배제되거나, 종교적이고 도덕적인 방식으로 접근되었다(조한진, 2013:75-78). 고대 그리스에서는 장애인을 유기하거나 사회적으로 격리시키는 것이 당연시 여겨졌고, 중세시대에는 장애가 죄에 대한 형벌로 여겨지거나, 사람을 돌보아야 할 의무를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는 것으로 여겨졌다. 계몽주의 시대에는 과학을 통해 장애로 인한 결핍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란 믿음이 생기면서 '결손모델(deficit model)'이 등장하였다. 이는 의료모델의 모태가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결손을 제거할 방법이 개발되지 않으면서 19세기 '사회 진화론 모델'이 이를 대체하였다. 사회진화론의 입장에서는 장애가 과학을 통해서든 개인의 노력을 통해서든 개인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과 경쟁하여 생존할 수 있게 하는 변화만이 중요했다. 이러한 '적자생존'의 관점에서 우생학 지지자들은 더 강하게 다윈의 입장을 취했다. 우생학적 관점에서 장애인은 버려야 할 대상일 뿐만 아니라, 특히 그들의 번식을 막아 다음 세대에 장애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해야 했다. 우생학 운동은 19세기 말과 20세기 초 유럽과 미국 사회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미쳤고, 그 결과, 나치 정권 동안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 발달장애인, 기형이 있는 사람 등이 멸종의 대상으로 구분되어 약 25만 명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몰살되었다. 미국에서의 '우생학 모델(eugenics model)'은 부모들에게 장애자녀의 존재를 수치와 불명예로 여겨지게 하였고, 부모들은 장애 자녀들이 태어나면 곧바로 이들을 시설에 숨겼다.

21) 장애계에서 사회모델 관점의 한계에 대한 비판이 존재하고(톰 셰익스피어, 2013), 프레스틀리(Priestley, 1998)의 정치한 장애의 다중패러다임 개념도 있지만, 이 연구는 분석의 명료화와 간결화를 위해서 의료모델과 사회모델을 중심으로 이론을 구성하였다.

다룰 뿐, 조직과 문화의 산물, 즉 사회 정치적 해석으로서 ‘장애(disability)’를 다룰 수 없었기 때문에 비판” 받았다. 즉 의료적 모델은 손상과 장애 사이의 장애화(disablement)를 전제하고 있는 것이다(Reindal, 2000). 게다가 전문가에 의한 진단과 장애의 ‘낙인’은 강력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Rothman, 2003). 또한, 장애인들이 의료 전문가와의 빈번한 접촉을 통해, 치료와 평가를 받는데 이 과정은 손상을 가진 사람을 점점 더 의존적 위치에 놓이게 한다(Rothman, 2003).

사회모델은 장애의 원인이 장애에 대한 사회구조적 차별에 있다는 관점으로, 개인이 장애를 극복해야 한다기보다, 사회구조가 장애인에 맞게 변화해야 한다는 관점이다. 의료모델에 기반한 장애정책은 치료나 재활만을 중시할 뿐 장애인의 사회적 배제 등은 고려하지 않는다(Brisenden, 1986:176). 한편, 사회모델은 장애인 개인의 신체적 치료나 재활뿐만 아니라 사회구조적 요인의 변화를 통해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더욱 촉진시켜 사회통합을 이룰 수 있음을 강조한다(Oliver, 1996).

사회모델이 손상을 소홀히 여긴다는 비판이 있지만 사회모델 지지자들은 “장애가 손상을 가진 사람에게 덧붙여진 사회적 억압의 한 형태”라는 것을 강조한다(조한진, 2013:82). 또한, 사회모델은 손상의 신체적 경험과 장애의 사회적 경험을 가르는 인위적 경계와 함께 이원론적 사고형태를 재생산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하지만 사회모델 지지자들은 이분법적 관점이 아니라, 물리적・사회문화적 관점을 동시에 고려해야 함을 강조한다(조한진, 2013:82). 마지막으로 사회모델이 일부 선진국에서만 적용이 가능한 것이라는 비판에 대해 스톤(Stone, 2001)은 대부분 사회에서 사회모델이 촉진될수록 장애인의 삶은 나아질 것이라고 반박하였다. 사회모델은 “손상을 가진 사람이 직면한 내재적 어려움이 억압적인 사회환경에 의하여 더 심각해진다”고 주장한다(조한진, 2013:83). 특히, 제3세계 국가의 예는 이를 방증한다. 이들 사회에서 대부분의 장애인은 “사회적・정치적 불평등, 부정적인 문화적 고정관념, 교육, 고용, 보건, 경제적 지원 등에 대한 불공평한 접근과 지역사회에서의 일상생활에 대한 불공평한 접근에 의해 불이익을 당하고 있기 때문이다”(조한진, 2013:83).

의료모델과 사회모델의 주요 특징과 한계는 <표 1-1>에 자세히 정리되어 있다.

역사적으로 장애 패러다임은 의료모델에서 사회모델로 이행하고 있고, 과도기에는 대립하는 두 패러다임이 동시에 존재할 수 있다. 이를 장애정책과 장애담론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구조로서 장애정책과 장애담론은 장애인의 성년기 주요 생애 경험에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음을 제3장에서 경험자료 분석을 통해 보여줄 것이다.

<표 1-1> 장애의 의료모델과 사회모델의 비교

	의료모델	사회모델
핵심특징	• 개인적 비극 이론 • 장애는 개인 안에 존재하는 개인적 문제 • 의료 전문가의 역할은 신체적 혹은 지적 손상에 의한 부정적 결과를 치료하거나 개선시키는 것	• 사회적 억압 이론 • 장애인은 '장애를 초래하는 ' 세상에 살고 있음. • 장애인은 적합하지 않은 물리적 환경 그리고 부닥치게 되는 부정적인 사회적 태도에 의하여 현대사회로부터 조직적으로 배제되고 있음
관점	• 사회정책의 목표는 장애인으로 하여금 현대사회의 구조에 맞추거나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 • 상당수의 장애인들은 질 높은 재활을 받기를 희망함 • 서비스에서 이슈가 되는 것은 비장애인 전문가와 클라이언트 사이에서의 관계의 성격임 • 전문가의 기술·지식을 강조하며, 장애인은 소외 '비장애인 세상'의 요구에 적응하고 그 요구에 의해 관리·통제될 필요가 있음.	• 사회정책의 목표는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장애인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환경을 만드는 것 • 장애인은 사회 내에서 조직적인 사회적 배제에 부닥침. • 사회 변화는 장애인에게 시민으로서의 완전한 지위와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집단행동을 통하여 일어남 • 억압이라는 공통의 경험에 의해 연합된 장애인의 개인적·집단적 책임을 강조함 • 장애는 억압, 개인의 권리와 선택, 사회 변화, 권한 부여, 정치와 본질적으로 관계가 있음.
한계	• 장애는 순전히 의료적 현상으로 인식되며, 장애인이 살고 있는 정치적·경제적·사회적 환경을 인정하지 않음 • 장애인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결정하는 데 있어 역사적으로 의료 전문가에게 과도한 권한과 영향력이 부여되어 왔고, 전문가들은 변함없이, 본질상 의료적이 아닌 순전히 행정적인 결정을 내려옴	• 장애인을 억압이라는 공통의 경험에 의해 연합된 집단적·동질적 존재로 가정함. • 장애인 개인이 작용(agency)을 할 수 있고, 또 그 때문에 유사한 결과를 얻기까지 다른 전략을 고안할 수 있다는 사실을 참작하지 않음. • 장애 운동이 보는 방식처럼 억압되고 있다고 모든 장애인이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님. • 어떻게 사회가 손상을 가진 사람에게 실제로 '장애를 초래하는지' 인과적 관련성이 불분명하게 남아있으며, 쉽게 측정될 수도 없음. • 지적 손상을 가진 사람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함.

출처: Lang(2001: 314-315); 조한진(2013:85-86)에서 재인용

3. 정상/규범 가족의 위기와 성년기 주요 생애 경험의 탈표준화

장애인의 성년기 주요 생애 경험은 장애정책과 장애담론에 반영된 장애 패러다임에 따라 다르게 형성될 수도 있겠지만,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탈표준화 경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성년기 주요 생애 경험의 탈표준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생애과정의 표준화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생애과정의 표준화란 "근대 이전의 농경사회에서 자연 친족 및 공동체 규칙에 의해 개인의 생애과정이 지배받던 것으로부터의 변화"를 지칭한다(남춘호・남궁명희, 2012:96). 서구에서는 20세기 중반까지 아동노동의 금지, 보편교육의 확장, 혼인연령과 은퇴연령의 법제화, 가족임금제의 이데올로기적 확립과 핵가족의 형성, 실질임금과 구매력의 증가 등으로 교육-노동-은퇴로 이어지는 생애과정의 표준적 패턴이 형성되었다(Mayer, 2004:159-172; 이순미, 2014:70에서 재인용).

그런데 1970년대 이후 노동시장 유연화, 여성의 교육과 노동에서의 성취 증대로 인한 성별관계의 변화(Giddens, 2000), 복지국가의 약화 등으로 표준적 생애패턴이 약화되었다(이순미, 2014). 이러한 표준적 패턴의 약화를 생애과정의 탈표준화라 한다. 고학력화로 교육기간이 연장되면서 부모로부터 독립이 늦어졌으며, 결혼을 지연하거나 비혼의 삶을 택하는 사람들도 늘었다. 다양한 파트너쉽이 생겨났고, 출산을 미루거나 출산하지 않는 부부도 많아졌다. 이러한 총체적 변화가 생애과정 탈표준화의 증거이다.

한편 장경섭(2009)은 한국사회에서 나타난 생애과정의 탈표준화를 "압축적 근대성이 경제위기 및 구조조정과 맞물려" 발생한 '가족 위기'에 대한 대응으로 본다(장경섭, 2009:36). "압축적 근대성이란 시・공간적으로 이질적인 요소들이 공존하며 매우 복합적인 문명이 구성・재구성되는 상태"를 말한다(장경섭, 2009:15). 그리고 "이러한 압축적 근대성은 가족 중심적 삶을 통해 개인들에게 체현"되었다(장경섭, 2009:15-16).

한국인의 생애과정의 패턴이 형성된 맥락은 매우 압축적이었고, 그 양상이 매우 중층적이다. 한국사회는 식민지배, 미군정, 한국전쟁, 민주화, 경제위기,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등의 거시구조적 변화를 반세기만에 경험

하였고, 외부로부터 이식된 제도에 의한 권위주의적 체제는 사회를 제대로 통합하지 못하였다(장경섭, 2009:16). 그러한 상황에서 가족은 한꺼번에 다양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일종의 '기능적 과부하' 상태에 놓여있었고, 이러한 기능적 과부하 상황에서 경제위기와 구조조정이 닥치면서, 기존의 정상/규범 가족의 위기가 발생한다(장경섭, 2009:36). 이러한 가족의 위기 속에서 생애과정의 탈표준화 역시 빠른 속도로 진행되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한국의 생애 패턴은 짧은 역사 속에서도 코호트별 차이를 드러냈다. 즉, 전통적 생애 패턴, 표준적 생애, 탈표준적 생애패턴이 동시대에 존재한다. 이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연구로 남춘호・남궁명희(2012), 문혜진(2010), 이병희・장지연・윤자영・성재민・안선영(2010) 등이 있다. 이들 연구에 따르면, 1960년대 코호트까지 대부분의 구성원이 특정 연령 구간에 학생-취업-결혼-출산을 완료하는 생애과정의 표준적 패턴이 존재했다. 하지만 1970년대 코호트 이후부터는 이러한 패턴이 불안정화되는 탈표준적 양상이 나타났다.

또한, 기존 연구들은 성년기 주요 생애 경험의 탈표준화 양상이 성별과 계층에 따라 분화되어 감을 보고하였다. 생애과정의 탈표준화가 관찰된 1970년 이후에 태어난 코호트 대상 연구에 따르면, 성별과 계층에 따른 생애과정 패턴의 분화 양상이 더욱 뚜렷하게 관찰된다.

1970년대 이후에 태어난 코호트부터, 보편혼의 퇴색, 즉 '비혼'이 하나의 생애과정 패턴으로 등장하게 된다. 김소라(2007)는 여성의 비혼 선택이 기존 성, 가족 규범을 의문시하고 새로운 삶의 가치를 추구하는 현상으로 나타나게 되었음을 밝혔다. 한편 비혼이 주체적으로 선택한 라이프 스타일이라기보다는 IMF 이후 안정된 가정생활을 꾸리기가 어려운 조건의 남녀가 안정된 일자리를 찾을 때까지 결혼을 지연한 결과였다는 논의도 있다(박기남, 2011).

장미혜・정해숙・마경희・김여진・김연화・서연경(2011)과 정민우・이나영(2011)의 연구에 따르면, 남성은 결혼을 자연스럽고 직업적 성취를 위한 보완물로 여기는 반면, 여성은 결혼을 직업적 성취와 대립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크기 때문에 성별 비혼의 차이가 나타난다. 특히, 정민우・이나영(2011)은

중산층 이상의 경우, 소위 ‘정상적 생애규범’으로서의 취업과 결혼이라는 생애이행이 가능하지만, 하층의 경우, 가족의 경제적 조력을 기대하기 힘든 조건에서 부모 집에 머물며 부모를 경제적으로 부양해야 하거나, 비혼을 지속하면서 부모에게 더 의지하게 됨을 주장하였다.

한편 이순미(2014)는 1955~1974년생을 대상으로 성별 생애과정 패턴의 세대별 양상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남성의 경우, 최근 코호트까지 고학력자를 중심으로 표준적 생애과정의 패턴이 유지되었으나, 여성의 경우 탈성별화를 동반한 탈표준적 생애의 양상이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저학력 남성은 독립은 하지만, 가족형성이 어려워짐에 따라 개인화되고, 저학력 여성은 독립이 어려워짐에 따라 가족에게 다시 의지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순미(2014)는 한국인의 이러한 개인화와 가족화의 이중적 과정으로서 생애과정의 패턴 분화를 ‘복합적 탈근대화’로 개념화하였다.

[그림 2-5]는 형식적인 의미에서 정상/규범 가족의 위기와 성년기 주요 생애 경험인 결혼과 가족형성의 탈표준화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1인 가구 비율은 다소 점진적으로 증가하였다. 1975년 4.2%에서, 2020년에는 31.7%로 전체 가구의 약 3분의 1이 1인 가구이다. 20・30대 비혼율은 2000년 이후부터 급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는 1997년 경제위기의 여파로 해석되는데, 1995년 39.2%가 비혼이었던 반면, 2020년에는 67.6%가 비혼으로, 20・30대의 약 3분의 2가 비혼이다. 이러한 추이를 보았을 때 생애과정의 탈표준화 경향은 앞으로도 계속 심화될 것으로 추측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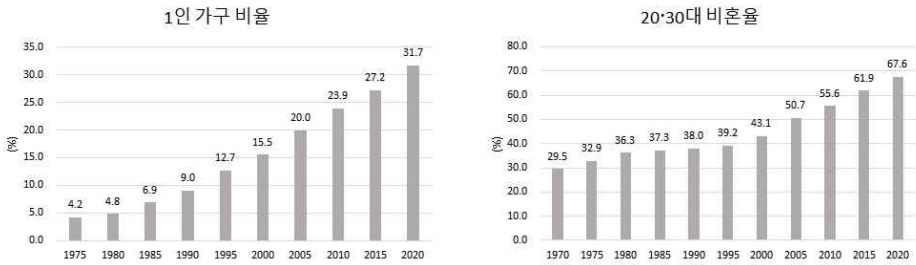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각 년도) 「인구주택총조사」

[그림 1-5] 1인 가구 비율과 20・30대 비혼율 추이

한국사회에서 가족은 장애인의 생존과 발전을 위해 거의 유일한 조직으로서 역할을 수행해왔다. 장애인을 돌보는 책임은 가족에게 있었으며, 장애인은 가족을 통해서 비로소 사회에 통합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가족 기능의 과부하 상태에 경제위기와 구조조정이 닥치면서 심화된 경제적 토대의 불안정성으로 인한 가족 위기가 발생했다. 가족의 위기는 장애인의 성년기 주요 생애 경험의 탈표준화 경향을 더욱 가속화시켰을 것이다. 특히 결혼으로 이어지는 생애과정의 표준적 패턴은 상당히 와해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4. 장애인 생애 기회구조의 교차성

이 논문은 또한 장애인의 사회인구학적 조건에 따른 성년기 주요 생애 경험 양상의 차이를 교차성 개념으로 포착한다. 교차성(intersectionality)이란, 하나의 차별받는 집단 내에서 다른 사회적 속성이 어떻게 중첩되어 작용하는지를 밝히는 개념(주윤정・양종민, 2020)으로, 이 연구는 장애라는 속성 내에서 계층과 성별이 교차했을 때 나타나는 성년기 주요 생애 경험 양상-대학진학, 취업, 결혼 이행-의 차이에 주목하고 있다.

20세기 중후반부터 불평등에 대한 사회학 연구들은 사회계층을 넘어 다른 사회적 구분에 의한 불평등을 탐색하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계층을 연구하기 위한 이론과 개념들은 최근 다른 형태의 불평등을 설명하기 위해 '교차성'이라는 개념이 도입하기 시작했다. 사회 불평등이 복잡하게 얽혀 개인의 삶을 형성하고 있다는 것이다.

교차성 이론은 생애의 불평등과 차이를 설명하는 데에 있어 계층을 넘어서 인종, 젠더, 섹슈얼리티, 장애 등 다양한 차이와 억압의 축이 맞물려 권력과 지배가 작동하는 방식과 구조를 다룬다(한우리, 2018). 교차성은 억압의 복잡성(complexity)과 그 안에서 행위자로서의 여성 혹은 장애인들이 만들어내는 저항의 역동성을 그려내는 데 유용한 관점을 제공한다.

최근 한국의 여성학과 장애학을 중심으로 교차성과 이중 혹은 다중 차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다(오혜경・김정애, 2000; 이나영, 2014; 홍찬숙, 2019). 하지만 교차성 혹은 다중차별이 어떻게 실제로 생애에서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경험연구는 거의 없다. 교차성 개념을 이론화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고, 국제적 규범으로서 다중차별 개념이 등장하고 있지만(예. UN장애인권리협약), 경험자료의 부재로 인해 실증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부분적으로 여성학에서 여성이라는 속성이 장애, 인종 등과 같은 사회적 열위의 속성과 결합했을 때 보다 다중적 차별을 경험한다는 수준의 논의가 존재할 뿐이다(오혜경・김정애, 2000).

[그림 1-6]은 이 논문에서 주요하게 다루는 교차성의 예시이다. 장애, 하층 및 여성이라는 사회적 속성은 이미 개별적으로 배제의 속성을 띤다. 그런데 이 배제의 속성들이 중첩되었을 때에 그 배제의 효과는 단순 합을 넘어서 나타날 수 있다. 하층장애인(B), 장애여성(C), 하층여성(D)과 같이 두 가지 배제의 속성이 중첩되었을 때의 효과는 개별효과가 배가된 형태로 나타나거나, 또 다른 형태의 차별로 나타날 수 있다. 하물며, 하층장애여성(A)이라는 세 가지 차별적 속성의 결합은 이중적 배제를 넘어서 제3의 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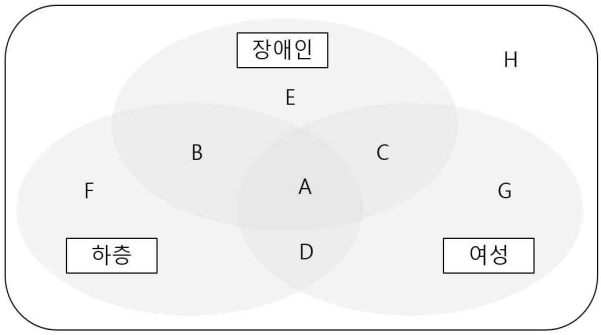

A: 하층 장애 여성 D: 하층 비장애 여성 G: 상층 비장애 여성
B: 하층 장애 남성 E: 상층 장애 남성 H: 상층 비장애 남성
C: 상층 장애 여성 F: 하층 비장애 남성

[그림 1-6] 교차성 예시

생애과정 관점은 사회집단마다 성년기 주요 생애 경험 양상이 다르다고 본다. 교차성을 생애과정 관점에 접목시키면, 성년기 주요 생애 경험 양상은 비단 장애인과 비장애인, 하층과 상층 및 남성과 여성 간에 다를 뿐 아니라, [그림 1-6]의 A부터 H에 이르는 8개의 집단에서 모두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장애인의 생애는 이처럼 여러 사회적 범주와 그 중첩 여부에 따라 사회역사적 경험을 개인의 시간에서 어느 시기에 경험하였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구성된다.

제 4 절 장애인 성년기 주요 생애 경험 유형과 설명틀

1. 장애인 성년기 주요 생애 경험 유형의 이념형

모든 장애인의 생애를 포괄할 수는 없지만, [그림 1-7]과 같이 장애 패러다임과 결혼 여부를 두 축으로 하여 네 개의 장애인 성년기 주요 생애 경험 유형의 이념형을 구성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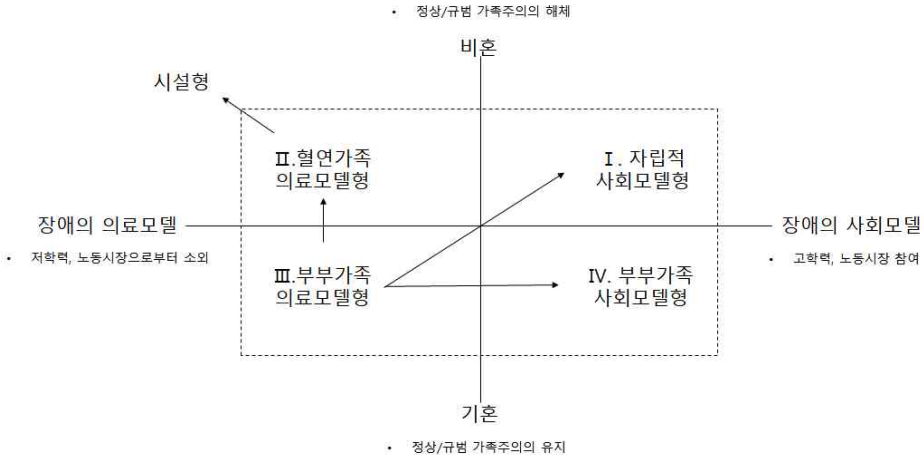

[그림 1-7] 장애인의 성년기 주요 생애 경험 유형의 이념형

이상의 두 축을 기준으로 구분된 네 개 이념형의 측정 방식과 특징은 다음의 <표 1-2>와 같다.

<표 1-2> 장애인 성년기 주요 생애 경험 유형의 측정과 특징

유형 명칭	측정	특징
Ⅰ. 자립적 사회모델형	대학진학 취업 비혼	• 사회모델이 우세하고, 비혼화가 진행된 시기에 나타나는 유형 • 혈연가족(주로 부모)으로부터 어느 정도 자립함. • 노동시장 참여를 통해 사회에 통합됨. • 심하지 않은 장애, 상층 • 현재 시점 청년층일 가능성이 큼.
Ⅱ. 혈연가족 의료모델형	대학 미진학 미취업 비혼	• 의료모델이 유지되고, 비혼화가 진행된 시기에 나타나는 주로 나타나는 유형 • 혈연가족(주로 부모)에게 의존적인 삶 • 노동시장 참여도 어려워 사회적으로 주변화되고, 소외됨. • 돌보아 줄 혈연가족이 없어지면, 종국에는 시설에 가게 될 가능성이 큼(시설형[22]). • 심한 장애, 하층
Ⅲ. 부부가족 의료모델형	대학 미진학 미취업 기혼	• 의료모델이 우세하고 보편혼이 지배적인 시기에 나타나는 유형 • 노동시장 참여는 어렵지만, 가족(여기서는 배우자 혹은 자녀)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음. • 현재 시점 중・고령층일 가능성이 큼
Ⅳ. 부부가족 사회모델형	대학진학 취업 기혼	• 사회모델이 도입되고, 보편혼이 유지되는 시기에 나타나는 유형 • 노동시장 참여도 하고, 결혼을 통해 가족(여기서는 배우자 혹은 자녀)으로부터도 보호받을 수 있음. • 심하지 않은 장애, 상층

22) [그림 1-0] ‘시설형’은 혈연가족 의료모델형에서 파생될 수 있는 또 다른 생애 유형이다. <표 1-0>에서도 언급했듯이, 혈연가족 의료모델형에서 돌보아 줄 혈연가족이 없어지게 되면, 현재의 한국 상황에서는 시설로 가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연구에서는 자료의 한계로 사실상 시설형이 직접적으로 포착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절대적 시설장애인의 수가 적지 않고(2013년, 약 3.1만 명(박숙경, 2016)), 장애 정책에 있어 매우 중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의 중요한 생애 유형으로서 언급하였다.

장애의 의료모델이 지배적인 시대에 장애인은 사회적응에 필요한 기본적인 교육밖에 받을 수 없어, 저학력에 머물 가능성이 크고, 노동시장 진입 경로가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비장애인과의 경쟁에서 도태될 가능성이 크다. 한편, 장애의 사회모델이 지배적인 시대에서는 장애인이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넓고, 노동시장 참여가 더 보장될 것이다.

결혼은 장애인의 성년기 주요 생애 경험 유형을 구분하는 또 다른 중요한 축이다. 보편혼이 지배적인 시대에서는 부부가족이 장애인이 속한 가족 유형의 다수를 차지할 수 있고, 비혼화가 확산된 시대에서는 혈연가족 혹은 1인 가구의 형태가 장애인이 속한 가족 유형이 다수를 차지할 수 있다.

시기별 사회모델이 수용된 정도와 보편혼의 퇴색 정도에 따라, 지배적인 장애인 성년기 주요 생애 경험 유형은 바뀔 수 있다. 즉, 시대별 사회모델의 수용 정도와 비혼화의 진행 정도는 장애인의 세대별 성년기 주요 생애 경험 양상에 반영될 것이다. [그림 1-7]은 시간의 변화에 따라 지배적인 장애인 성년기 주요 생애 경험 유형이 Ⅲ번 부부가족 의료모델형으로부터 다른 세 개의 유형인 Ⅰ번 자립적 사회모델형, Ⅱ번 혈연가족 의료모델형, Ⅳ번 부부가족 사회모델형으로 이행했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계층에 따라서 장애인 성년기 주요 생애 경험 유형이 분화될 수도 있다. 예컨대, 상층일수록 교육투자를 받을 수 있는 자원이 많고, 자원을 토대로 확보된 인적자본을 통해 노동시장에서도 유리한 지위를 점하게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사회모델형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계층적으로 상층에 해당하는 사람들일 가능성이 클 것으로 추측된다. 반대로 의료모델형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계층적으로 하층에 해당하는 사람들일 가능성이 클 것으로 추측된다.

또한, 미시적 관점에서, 장애인의 성년기 주요 생애 경험 유형은 결혼을 통해 정상/규범 가족주의를 유지했느냐, 혹은 결혼을 미루거나 하지 않음으로써 정상/규범 가족주의의 해체를 꾀했느냐로 구분할 수 있다. 결혼 여부에 따라 장애인의 성년기 주요 생애 경험 유형은 부부가족, 부모와 계속 함께 사는 혈연가족, 혹은 결혼은 하지 않았지만, 부모로부터는 자립한 가족 유형으로 분화된다.

2. 설명틀과 각 장의 분석 내용

[그림 1-8]은 이 논문의 주요 설명틀이다. 한 사회 혹은 한 시대의 장애 패러다임은 그 사회에 속한 장애인의 성년기 주요 생애 경험의 기회구조를 결정짓는 배경 혹은 주요 맥락으로 작용한다. 이 연구는 장애 패러다임을 장애정책과 장애담론을 통해 포착한 후 그리고 장애인의 성년기 주요 생애 경험인 대학진학, 취업, 결혼 이행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세대, 계층, 성별의 효과와 이들 속성 간의 교차성을 확인할 것이다. 한편 대학진학, 취업, 결혼 이행 사건의 경험은 서로 독립적이지 않고, 서로 연관이 있다. 대체로 이러한 사건 경험의 순서는 대학진학, 취업, 결혼 순이다. 학력은 취업에, 취업은 결혼 이행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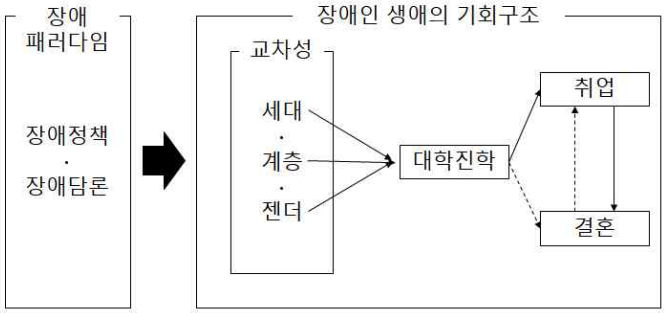

주: 화살표의 실선은 논문에서 직접적으로 밝히고자 하는 인과관계, 점선은 인과관계는 있으나, 이 논문에서는 주가 아닌 인과관계

[그림 1-8] 전체 설명틀

[그림 1-9]은 2장과 3장의, [그림 1-10]은 4~6장의 세부 설명틀이다. 2장과 3장이 장애정책과 장애담론의 변화 및 그것이 반영된 장애인의 세대별 성년기 주요 생애 경험 양상을 통해 장애 패러다임의 통시적 변화를 살펴본다면, 4~6장은 이러한 통시적 변화를 통제했을 때, 공시적으로 계층, 성별, 학력, 연령, 경제적 지위별로 장애인의 성년기 주요 생애 경험 양상이 어떻게 분화되는지를 보여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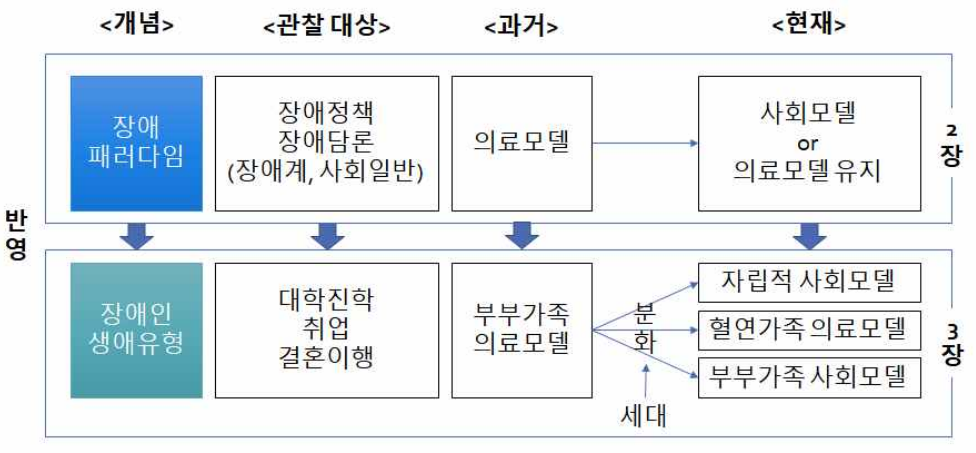

[그림 1-9] 2장과 3장의 설명틀

[그림 1-9]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장애 패러다임의 역사적 변화는 세대별 성년기 주요 생애 경험의 차이에 영향을 미친다. 시대별 장애정책과 담론에서 포착되는 장애에 대한 패러다임은 장애인의 세대별 성년기 주요 생애 경험 유형에도 반영된다. 그리고 장애 패러다임은 장애정책과 장애담론을 통해 포착하는데, 이때, 장애계와 사회 일반의 인식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글로벌한 수준에서 장애 패러다임은 의료모델에서 사회모델로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한국의 경우 아직은 과도기로 두 패러다임이 각축하며 공존하는 양상을 띨 것으로 추측된다. 이러한 양상은 장애인의 성년기 주요 생애 경험 유형에도 반영되어, 대학진학, 취업, 결혼 이행을 통해 측정된 장애인 성년기 주요 생애 경험 유형은 부부가족 의료모델에서 세대에 따라 분화되어 자립적 사회모델, 혈연가족 의료모델, 부부가족 사회모델이 공존하는 양상을 보일 것으로 추측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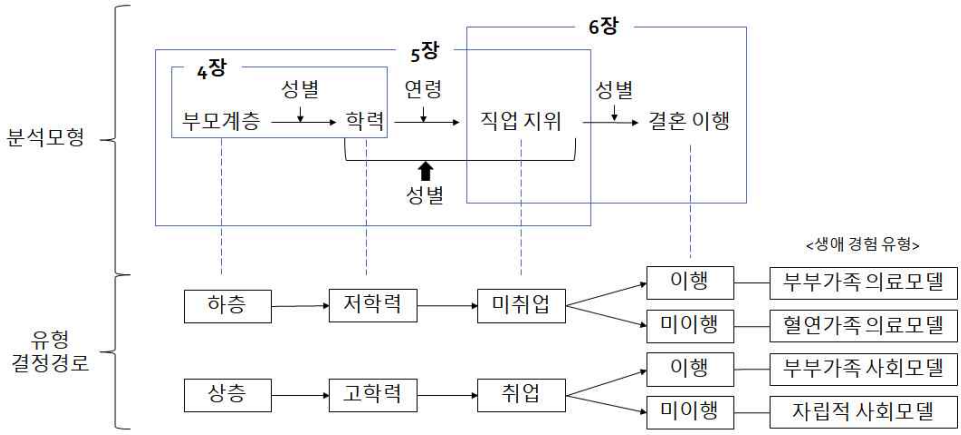

[그림 1-10] 4장~6장의 설명틀

[그림 1-10]은 4장~6장의 장애인 성년기 주요 생애 경험의 기회구조, 즉 성년기 주요 생애 경험의 결정 경로를 보여주는 분석모형이다. 4장에서는 계층에서 학력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검증한다. 부모계층이 대학진학에 미치는 영향과 부모계층과 성별의 상호작용 효과 즉, 계층과 성별의 교차성을 확인한다. 5장에서는 학력에서 직업 지위(취업 여부)로 이어지는 구조를 검증한다. 학력이 경제적 지위획득에 미치는 효과와 학력이 부모계층과 경제적 지위를 매개하는지를 분석하고, 연령과 학력의 상호작용 효과 즉, 연령과 학력의 교차성을 확인한다. 6장에서는 직업 지위가 결혼 이행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고, 직업 지위의 효과가 성별에 따라 어떻게 다른지, 즉 직업 지위와 성별의 교차성을 확인한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분석과정을 통해 장애인의 성년기 주요 생애 경험 유형을 결정짓는 기회구조를 경험적으로 파악한다.

제 5 절 분석전략, 자료 및 방법

1. 분석전략 및 연구의 범위

이 연구는 장애정책과 장애담론에 반영된 한국의 장애 패러다임을 확인하고 이러한 장애 패러다임, 즉 구조가 미시적 영역인 장애인의 성년기 주요 생애 경험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동일한 구조적 맥락과 장애 조건 하에서도 장애인의 성년기 주요 생애 경험 양상이 다르게 발현되는 과정을 교차성 개념을 적용하여 실증적으로 드러내고자 한다.

구체적인 분석전략 및 연구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우선, 문헌에 나타난 장애정책과 장애담론을 통해 장애 패러다임의 실체를 파악한다. 문헌의 범위는 보고서, 단행본, 논문 등의 2차 문헌과 1차 문헌인 신문기사이다.

생애를 관찰하는 사건으로서 대학진학 여부, 취업 여부 및 결혼 여부를 다룬다. 각 생애 사건을 세대 간 변화(inter-cohort trend)의 관점에서 연구한다. 연령-기간-코호트(APC) 분석을 통해 연령효과와 기간효과를 통제하여 코호트 효과를 추출한다. 그리고 대학진학, 취업, 결혼 사건을 일련의 인과관계로서 설정하고, 이전 사건의 발생 여부가 다음 사건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다.

각 사건이 세대(코호트), 성 및 계층 등의 사회적 속성에 따라 달라지는 양상을 살펴본다. 기존 연구는 주로 생애과정의 차이를 개인의 장애특성으로 환원하고 있다면, 이 연구는 이를 통제하고 즉, ‘장애특성이 같다고 가정했을 때’ 작용하는 사회인구학적 속성의 효과에 집중한다.

각 속성이 생애과정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기 위해 비장애인 중심의 단위이론(unit theory)과 경험연구를 참조한다. 비장애인 중심으로 이루어진 기존 생애과정 연구의 논의를 장애인에 적용하여 이론을 정교화(elaboration)한다.

연구대상을 성인이 되기 전에 장애가 발생한 장애인으로 제한한다. 성인이 된 이후의 생애 사건을 다루기 때문에 성인기가 시작되기 전에 장애가 발생한 사람들로 연구대상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선천적인 장애인과 유소년기(0~18세)에 장애가 발생한 사람[23], 여러 장애유형 중 지체장애인,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및 지적장애인을 연구대상으로 삼았다. 그 까닭은 이 유형이 18세 이전 장애가 발생한 장애인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분석의 간결화와 설명의 명료화를 추구했기 때문이기도 하다[24].

다음의 <표 1-3>은 이 논문에서 사용하는 자료 및 방법을 요약한 것이다. 이 절에서는 사용하는 자료, 분석대상 및 사용 변수들은 개괄한다. 그리고 상세한 분석대상, 변수측정 및 분석기법은 각 장에 상세히 기술하였다.

<표 1-3> 자료 및 방법 요약

<table>
<tr><th>분석 내용</th><th>자료</th><th>분석기법</th><th>분석대상</th></tr>
<tr><td>시기별 주제 및 담론</td><td>중앙일보 (1966~2022.11)</td><td>토픽 모델링 (LDA)</td><td>장애인 관련 기사의 제목과 본문</td></tr>
<tr><td>대학진학</td><td rowspan="3">장애인실태조사 2005, 2011년 및 2017년</td><td rowspan="3">APC 분석</td><td rowspan="3">18세가 되기 전에 장애가 발생한 18세 이상 66세 미만의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지체장애인, 시각 혹은 청각장애인 및 지적장애인</td></tr>
<tr><td>취업</td></tr>
<tr><td>결혼</td></tr>
<tr><td>대학진학</td><td rowspan="3">장애인고용패널조사 1~6차 종단조사 자료</td><td>이항로짓</td><td rowspan="3">18세가 되기 전에 장애가 발생한 2016년 18세 이상 시점 65세 미만의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지체장애인, 시각 혹은 청각장애인 및 지적장애인</td></tr>
<tr><td>취업</td><td>패널 프로빗</td></tr>
<tr><td>결혼 이행</td><td>이산시간 사건사 분석</td></tr>
</table>

23) 선천적 장애인과 유소년기에 장애가 발생한 사람들의 생애과정과 정체성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4) 다른 장애유형을 '기타 장애'로 합쳐서 분석대상에 포함 시킬 수 있지만, 이는 효과에 대한 설명의 모호함을 남길 수 있다.

2. 자료

(1) 장애인고용패널조사 2차 웨이브 1~6차 자료

장애인고용패널조사(Panel Survey for the Disabled, PSED)는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주관하여 진행한 조사로, 한국의 장애인을 대표하는 패널 약 5천 명을 대상으로 장애인의 경제활동상태를 비롯하여 직업적 능력, 고용서비스, 직업능력개발, 일상생활, 소득/소비 등 다양한 변수들을 동태적으로 파악하여 장애인의 노동시장 참여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실시한 종단면 조사이다(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장애인고용패널조사는 2008년에 1차 웨이브 조사가 실시되었으며, 2015년 8차 조사까지 2008년 1월 1일 15~75세의 등록장애인 5,092명을 대상으로 1년에 1회 추적조사가 이루어졌다(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성공적으로 1차 웨이브 조사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사망 등 불가항력적인 이유로 이탈 발생, 연령의 자연 증가로 청년층 소실, 장애인의 고령화 문제 등” 종단조사가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점이 누적되면서, 조사결과가 전체 장애인을 대표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2016년에 새로운 패널과 새로운 설계로 장애인고용패널 2차 웨이브 조사가 실시되었다(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2차 웨이브의 패널 모집단은 2016년 5월 15일 기준 한국에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으로, 생산가능인구인 15~64세 연령을 대상으로 하였다(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2015년 12월 31일 기준 보건복지부의 등록장애인 명부”를 표집 틀로, “전문가에 의한 연구결과에 따라 지역, 장애유형, 장애등급, 연령, 경제활동상태 등을 고려”하여 표본을 설계하였다(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또한 읍면동 수를 조절함과 동시에 “장애유형 및 장애등급별 적절한 표본을 추출하기 위해 이상 추출(two phase sampling)”을 적용하였다. 최종적으로 4,577명의 패널이 선정되어 1차 조사에 참여하였다(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장애인고용패널조사 2차 웨이브는 성, 연령, 출생연도, 14세 무렵 주관적 가구경제수준, 부모의 교육수준, 본인의 최종교육수준, 졸업여부, 취업

여부, 종사상 지위, 직업, 가구주 여부, 혼인상태, 미취학자녀 유무, 공적이전소득 유무, 혼인상태 등 매우 다양한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2) 장애인실태조사

장애인실태조사는 “장애인구 및 장애출현율을 파악하고 장애인의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를 파악하여 장·단기 장애인복지정책 수립 및 시행을 위한 기초자료를 생산” 하기 위해 시행된 조사이다(김성희・이연희・오욱찬・황주희・오미애・이민경・이난희・오다은・강동욱・권선진, 2017). 1980년을 시작으로, 1985년, 1990년, 1995년, 2000년, 2005년, 2008년, 2011년, 2014년, 2017년, 2020년에 조사가 실시되었다. 현재 2005년부터 2020년까지 자료가 공개되어 있으며,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2005년, 2011년 및 2017년 자료이다.

조사는 가구 및 장애판별조사, 그리고 장애인 심층면접조사로 구성된다. 가구 및 장애판별조사에서는 가구주와의 관계, 성, 연령, 장애등록여부, 장애등록연도, 등록장애유형, 장애등급, 가구규모, 세대구성, 가구 소득 및 지출, 주된 수입원, 주거형태 등이 조사되었다(김성희 외, 2017). 심층면접조사에서 장애 유형별 장애특성, 보건의료 및 건강, 일상생활지원, 장애인보조기기, 교육, 취업 및 직장생활, 사회 및 문화·여가활동, 결혼생활·여성 장애인, 생활만족도, 폭력 및 차별경험, 복지서비스 등을 주제로 조사가 이루어졌다(김성희 외, 2017).

2017년의 경우, 조사모집단은 전국 17개 시·도의 일반주거시설에 거주하는 일반가구 및 가구원이다(김성희 외, 2017). 즉 장애인 거주시설에 주거하는 장애인은 제외되었다.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의 90% 조사구로부터 2,001개 조사구 및 1,049개 예비 조사구로 총 3,050개 조사구를 추출하여, 2,001개 조사구에서 조사구 8개씩 1 표본조사구로 구성하여 총 250개 표본조사구를 추출” 하였다(김성희 외, 2017). 조사완료가구 36,200가구의 가구원 수는 91,405명이고 이들 가구원 중 장애인은 모두 6,549명인 것으로 나타나, 이들에 대한 심층면접이 이루어졌다(김성희 외, 2017).

장애인실태조사는 장애인의 성, 연령(출생연도), 최종학교, 졸업여부, 취업여부, 가주주 여부, 혼인상태, 공적이전소득여부, 혼인상태, 배우자 장애유무, 결혼연령 등이 파악할 수 있다. 장애인고용패널에서 조사한 부모의 교육수준이나 14세 무렵 가구경제수준과 같은 가족배경 문항은 포함하고 있지 않다. 즉, 장애인실태조사는 장애인고용패널에 비해 비교적 활용할 수 있는 일반문항이 적다. 하지만 같은 문항을 일정한 기간을 두고 반복 조사함으로써, 시계열 변화를 관찰할 수 있으며 연령-기간-코호트 분석(약칭, APC 분석)이 가능하다.

3. 분석대상

이 연구는 '18세가 되기 전에 장애가 발생한 2016년 조사 시점 18세 이상 65세 혹은 66세 미만의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지체장애인, 시각 혹은 청각장애인 및 지적장애인'을 연구대상으로 삼았다. 여기서 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장애인복지법 제2조 장애인의 정의 등)[25],

이 연구는 만 18세 이상인 장애인을 연구대상으로 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이 연구는 장애인의 생애 단계에서 성인기 이후의 생애 사건에 주목하고 있다. 다시 말해, 관찰하고자 하는 성인기의 시작 시점을 언제로 설정한 것인가에 따라 연구대상은 달라질 수 있다. 민법상 성인이 되는 시기는

25) WHO의 1980년 국제장애분류(ICIDH: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Impairment, Disabilities and Handicaps)에 의하면 장애는 질병(disease)으로부터 단계적으로 손상(Impairment), 불능(disability) 그리고 불리(handicap)의 차원으로 진행된다(WHO, 1977:11). "손상은 심신의 구조적・기능적 손상 자체를 의미하고, 불능은 손상에 의한 개인적 차원에서 일상생활 활동에 나타나는 이차적 장애를 의미하며, 불리는 손상과 불능으로 인한 사회적 차원에서 경험하는 불이익으로서 편견, 차별 등을 의미"한다(김성희・이민경・오욱찬・오다은・황주희・오미애・김지민・이연희・강동욱・권선진・백은령・윤상용・이선우, 2020: 114). 1997년에는 ICIDH의 개념을 발전시킨 ICIDH-2를 발표하였는데, 이는 장애를 손상(impairment), 활동(activity), 참여(participation)로 구분하였다. 2001년에는 ICIDH의 개정판인 국제 기능 장애, 건강분류(ICF: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Functioning, Disability and Health)가 발표되었다(세계보건기구, 2001). ICF는 건강영역과 건강관련 영역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한 사람의 기능과 장애가 건강조건(질병, 질환, 상해, 외상 등)과 배경요인 간의 복합적인 상호관계로 인식하는 것이다(김성희 외, 2020: 115).

만 19세이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대체로 18세 무렵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입학하게 된다. 즉 이 시기를 실질적으로 이 연구가 주목하고 있는 생애 사건이 시작되는 시점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만 18세 이상으로 연령 범위의 하한선을 설정하였다.

분석대상의 연령 상한선을 65세 미만 혹은 66세 미만으로 제한한 이유 첫 번째는 장애인고용패널조사의 조사 대상이 경제활동인구인 만 65세 미만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 이유는 분석 표본의 크기와 상관이 있다. 장애인의 기대 수명은 비장애인보다 짧다(김정석・이진우・노승현, 2017). 특히 선천적으로 장애가 있거나, 유년기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 그 생존율은 더 떨어진다. 게다가 나이가 듦에 따라 장애인을 보살펴주던 부모도 고령으로 더 이상 자녀를 돌보기 어렵게 되면서 자녀를 시설에 위탁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즉 고령으로 갈수록, 19세 이전에 장애가 발생한 장애인이 분석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감소한다. 이러한 이유로 연령 범위의 상한선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또한, 이 연구는 18세 이전에 장애가 발생한 사람으로 연구대상을 한정한다. 이 연구는 장애가 성인기 이후의 생애 사건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하므로 장애가 성인기 이후의 생애 사건에 영향을 미치려면 장애의 발생 시기가 성인기가 시작되는 18세 이전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연구는 성인기인 18세 이후 장애가 발생한 중도장애는 분석대상에서 제외한다.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장애인[26]은 장애인 생활(혹은 거주)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혼자 혹은 가족과 함께 살고 있는 장애인을 뜻한다.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장애인으로 분석대상을 한정한 이유는 조사가 설정한 표본의 특성 때문이다. 장애인고용패널조사와 장애인실태조사는 지역사회에

26) 종래에 장애인실태조사 및 장애인고용패널은 '재가(在家)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다. 재가 장애인은 말 그대로 집에서만 살아가는 장애인을 뜻한다. 이는 기존의 시설중심의 장애인복지가 지속되었고, 지역사회에 대한 사회적 지원이 부재한 상태에서 가족에 고립된 장애인의 삶의 표현일 수 있다(곽정란, 2013). 또한, 장애인복지가 나아갈 방향이 탈시설과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됨에 따라(조성은・이방현・고경환・김수진・김회성・안수란・오욱찬・유재언・이아영・임정미・이동석・길현종・김조설・양재진・윤홍식・이주영・최원규・최요한・김재현, 2019; 김정석・곽정란・김미선・박세경, 2022), '재가 장애인'이라는 표현 대신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장애인'으로 표현을 대체하였다.

거주하는 장애인만을 분석대상으로 삼고 있다. 따라서 장애인 생활시설에 거주 중인 장애인은 조사의 범위에서 벗어나, 분석대상에서 제외했다[27].

이 연구는 우선, 장애유형[28]을 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및 지적장애로 한정하였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2018년 12월 31년 개정)에 의한 각 장애유형 별 정의는 구체적으로 다음 <표 1-5>와 같다. 장애 유형을 4가지로 한정한 이유는 장애 유형에 따라 생애가 매우 다른 양상을 띨 것으로 추측되어 이를 통제해야 하는데, 4개의 장애 유형을 제외한 11개의 장애 유형은 사례 수가 적어 비교분석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27)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에 대한 조사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시설장애인의 생애는 거의 알려져 있지 않다. 하지만 추측건대,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대학진학, 취업, 결혼이라는 생애이행사건을 경험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이다.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생애에 대한 사회적·학문적·정책적 관심과 개입이 필요하다.

28) 현 장애인복지법 시행령(2018년 12월 31년 개정) 상 장애유형은 15개(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안면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 간장애, 호흡기장애, 장루·요루장애, 뇌전증장애, 지적장애, 정신장애, 자폐성장애)로 분류된다.

<표 1-4> 분석 장애 유형 정의

지체장애인	가. 한 팔, 한 다리 또는 몸통의 기능에 영속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 나.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골(指骨 : 손가락 뼈) 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또는 한 손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한 두 개 이상의 손가락을 모두 제1지골 관절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다. 한 다리를 가로발목뼈관절(lisfranc joint)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라.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마. 한 손의 엄지손가락 기능을 잃은 사람 또는 한 손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한 손가락 두 개 이상의 기능을 잃은 사람 바. 왜소증으로 키가 심하게 작거나 척추에 현저한 변형 또는 기형이 있는 사람 사. 지체(肢體)에 위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정도 이상의 장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시각장애인	가. 나쁜 눈의 시력(공인된 시력표에 따라 측정된 교정시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0.02 이하인 사람 나.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인 사람 다.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주시점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라. 두 눈의 시야 2분의 1 이상을 잃은 사람
청각장애인	가.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60데시벨 이상인 사람 나. 한 귀의 청력 손실이 80데시벨 이상, 다른 귀의 청력 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인 사람 다.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명료도가 50퍼센트 이하인 사람 라. 평형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지적장애인	정신 발육이 항구적으로 지체되어 지적 능력의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하고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것과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상당히 곤란한 사람

이상의 분석 범위에 따라 선정된 분석 모집단과 표본 수는 <표1-5>와 같다.

<표 1-5> 분석 모집단과 표본 수

분석대상	분석자료	분석 모집단	분석 표본 수
조사 시점 18세 이상 66세 미만 18세 이전에 지체, 시각 혹은 청각 및 지적장애가 발생한 지역사회 거주 장애인	장애인 실태조사 2005년, 2011년 및 2017년	2005년 약 53만 명	1,391명
		2011년 약 36만 명	818명
		2017년 약 38만 명	926명
2016년 1차 조사 시점 18세 이상 65세 미만 18세 이전에 지체, 시각 혹은 청각 및 지적장애가 발생한 지역사회 거주 장애인	장애인 고용패널 (2차 웨이브, 1~6차 자료)	1차 조사 시점 약 33만 명	1,202명

주: 분석 모집단은 각 조사의 횡단면 가중치를 적용하여 파악함.

4. 분석 변수

분석에 사용할 변수는 다음 <표 1-6>과 같이 제시했는데, 종속변수는 대학진학 여부, 취업 여부, 결혼 여부 및 결혼 이행이다.

독립변수는 장애특성(장애유형, 장애정도), 인구학적 특성(성, 출생코호트, 연령), 계층(어릴적 가구 경제 수준과 아버지의 교육수준[29]), 인적자본(본인 교육수준, 자격증 보유 여부, 주관적 건강 상태, 종사상 지위, 근로소득) 및 가구특성(가구주 여부, 혼인상태, 미취학 가구원 유무, 공적이전소득 유무, 가구소득) 네 개의 범주로 하여 하위 변수와 변숫값들을 정리하

29) 부와 모의 학력 중 부의 학력만을 분석변수로 삼은 까닭은 계층혼으로 인해 두 변수의 공분산이 커서 함께 투입할 경우 다중공선성이 발생할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였다. 몇 가지 주요 변수의 측정 방법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장애유형은 시각장애와 청각장애를 통합하여, 지체장애, 시각 혹은 청각장애 및 지적장애 3개로 범주화하였다.

장애정도는 2019년 개정된 장애등급제에 따라 심한 장애와 심하지 않은 장애로 범주화하였다. 2019년 이전 6개 등급제로 분류되었던 시기의 경우, 1~3급은 심한 장애, 4~6급은 심하지 않은 장애로 재입력하였다.

출생코호트는 APC 분석에서는 1940년부터 6년을 단위로 코호트를 분류하였고, 대학진학 분석에서는 1950 혹은 1960년생, 1970년생, 1980년생, 1990년생으로 4개 집단으로 분류하여 입력하였다.

어릴적 가구 경제수준은 정확히 만 14세 무렵 주관적으로 인식한 가구 경제 수준에 대한 응답 결과이고 상층의 수가 매우 적어 중상층과 상층을 통합하여, 중상층 이상으로 입력하였다.

종사상 지위는 상용직, 비상용직, 미취업자로 분류하였는데 비상용직은 자영업, 무급가족종사자, 시간제근로자, 임시직근로자로 구성된다.

근로소득과 가구소득 모두 2020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표준화하였으며, 가구소득의 경우, 가구원 수의 제곱근을 나누어 균등화하였다.

<표 1-6> 분석에 사용된 변수

	범주	변수명	변수값	종속 변수				
				장애인실태조사		장애인고용패널조사		
				APC 분석		이항 로짓	패널 프로빗	이산 시간 사건사
				대학 진학	취업/ 결혼	대학 진학	취업	결혼
독립변수	장애 특성	장애 유형	지체장애, 시각 혹은 청각장애, 지적장애	○	○	○	○	○
		장애 정도	심한 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	○	○	○	○	○
	인구 학적 특성	성	남자, 여자	○	○	○	○	○
		출생 코호트	6년 단위 혹은 1950~1960년대,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	○	○		
		연령 및 연령제곱	세 (연속변수)				○	○
	계층	어릴적 가구경제수준	중상 이상, 중, 중하, 하			○	○	○
		아버지의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고등학교, 대학교(2년제) 이상			○	○	○
	인적 자본	본인 교육수준	중졸 이하, 고졸, 대졸 이상		○		○	○
		자격증 유무	있음, 없음				○	
		주관적 건강상태	매우 좋음, 좋음, 나쁨, 매우나쁨				○	
		종사상 지위	상용직, 비상용직(자영업, 무급가족종사, 시간제, 임시직), 미취업					○
		근로소득	로그 연 근로소득(2020년 물가상승률로 표준화)					○
	가구 특성	가구주 여부	예, 아니오				○	
		결혼 여부	예, 아니오				○	
		미취학 가구원 유무	있음, 없음				○	
		공적이전소득 유무	있음, 없음				○	
		가구소득	로그 균등화 연 가구소득(2020년 물가상승률로 표준화)					○

5. 자료의 제약에 의한 분석의 한계

분석의 한계 중 첫 번째는 연구대상이 '지역사회 거주 장애인'에 한정되었다는 것이다. 즉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정도가 심한 혹은 고령 장애인이 분석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때문에 이 연구는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아서 어느 정도 혼자 생활이 가능한 사람들, 또는 장애정도가 심하더라도 아직까지 돌봄을 제공하는 부모의 나이가 젊고 비교적 본인의 나이가 어린 지적장애인이 다수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장애정도와 장애유형을 통제했지만 이러한 표본의 편향성은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결과 해석에 주의를 요구한다.

APC 분석을 위해서 장애인실태조사 2005년, 2011년, 2017년 자료를 활용하였다. APC 분석을 위해서는 일정한 시간 간격을 두고 동일 변수를 측정한 반복 횡단자료(repeated cross-sectional data)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합성 코호트(syntatic cohort) 자료를 생성하여 APC 분석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조사자료의 시간적 범위가 13년이다[30]. 다소 기간이 짧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APC 분석이 가능한 자료 기간의 범위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며, 일부 사회학 연구나(예. Robinson and Jackson, 2001), 다수의 보건학 연구(예. Kim and Kawachi, 2021; Jiang and Kang, 2019 등) 에서 짧은 범위의 기간 자료를 활용한 APC 연구가 생산되고 있다. 앞으로 장애인 실태조사는 3년마다 자료가 생산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 작업은 장애인실태조사를 활용한 초기 APC 분석 연구로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30) 장애인 실태조사는 2005년부터 3년 단위로 2020년까지 자료가 공개되어 있다. 그래서 최장 15년까지 분석 범위의 연장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연구에서는 2005년부터 6년 단위로 2017년까지 3개의 횡단자료를 결합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그 이유는 2008년 자료의 표본이 이 연구의 과소 집계되었고, 분포가 편향됨에 따라 동일한 코호트지만 해당 연도 자료에 의한 결과의 돌출이 심했고, 따라서 결과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는 장애인 ‘내부’에서 작동하는 다양한 사회적 속성들의 교차성을 주로 다루고 있다. 즉, 장애 속성과 다른 사회적 속성 간의 교차성에 대해서는 실증적으로 분석을 하지 못하였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함께 조사한 자료의 경우, 장애인 표본 수가 매우 적었고, 서로 다른 조사자료를 결합하여 사용하는 것은 여러 가지 분석의 문제가 따랐다(예. 표본의 편향성 문제, 측정의 차이 등). 다만, 마지막 장인 결혼의 경우 장애와 경제적 지위가 교차했을 때 결혼에 미치는 효과의 차이를 비장애인 대상의 이론 및 선행연구 결과를 참조하여, 장애와 경제적 지위와의 교차성 개념으로 설명하였다.

제 2 장 한국 장애정책 및 장애담론의 변화

한국 사회는 반세기 만에 압축적 근대화, 산업화와 탈산업화의 동시 진행, 가족 및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였다. 또한, 6.25 전쟁, 군부독재, 민주화, IMF 경제위기, 세계화 등 다양한 정치・경제적 변화 속에서 장애정책과 장애담론이 형성되었고, 변화해 왔다. 거시적 구조변동 못지않게 장애정책과 장애담론은 그 시기를 살아온 장애인의 생애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Shah and Priestley, 2011). 장애정책과 담론의 변화는 장애인의 성년기 주요 생애 경험의 세대 간 차이를 낳는다. 즉, 세대 간 생애 경험의 차이를 분석함에 앞서, 장애인이 생애에서 경험한 장애정책과 장애담론의 내용과 그 변화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제 1 절 자료 및 방법

1. 장애정책

장애 관련 법과 제도는 주로 2차 문헌을 통해 파악하였다. 한국 장애정책의 변화를 고찰한 기존 연구물로 곽정란(2013), 김용득(2004), 김용득・이동석(2019), 이동석(2004), 이성규(2011), 조성은 외(2019)등 있다(<표 2-1> 참조). 곽정란(2013)은 근대화의 관점에서 한국 장애정책의 역사를 5개 시기로 구분하여 손상된 신체가 사회역사적 변화에 따라 어떻게 재정의되어왔는지 논의하고 있다. 김용득(2004), 김용득・이동석(2019)은 정책적 지원의 성격에 따라 5개 시기로 나누어 보고 있으며, 이동석(2004)은 한국의 장애운동 및 제도가 시기별로 어떤 입장의 장애 패러다임을 띠었는지를 프레스틀리(Priestly, 1998)의 장애의 다차원적 접근 모델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이성규(2011)는 대한민국 정부수립 시기부터 장애인복지의 범위가 특수화 단계에서 일반화와 대중화를 거쳐 개별화되는 단계까지의 발전과정을 6개 시기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조성은 외(2019)는 장애정책의 확대과정 및 장애인 인권의 관점에서 이를 5개 시기로 구획하였다.

<table>
<tr><th rowspan="2">시기 구분</th><th rowspan="2">곽정란(2013)</th><th rowspan="2">김용득(2004);
김용득・이동석
(2019)</th><th rowspan="2">이동석(2004),
장애의
다중패러다
임</th><th rowspan="2">이성규(2011)</th><th colspan="2">조성은 외(2019)</th></tr>
<tr><th>장애정책
관점</th><th>장애인 인권
관점</th></tr>
<tr><td>식민지기
・미군정기</td><td>일제강점기: 방치와 격리
수용 그리고 훈육의 시기</td><td>-</td><td rowspan="4">개별적
유물론
우세기</td><td>-</td><td rowspan="3">장애인에 대한
수용 보호 시기</td><td rowspan="3">장애인 인권
무시 시기</td></tr>
<tr><td>1948~1960년</td><td>한국전쟁: 충성을 둘러싼
장애인의 구분</td><td>-</td><td>장애 특수화
단계</td></tr>
<tr><td>1961~1976년</td><td>1960~1970년대: 산업발전,
그리고 장애인에 강요된
인내</td><td>수용・보호
단계</td><td>장애 일반화
초기 및 보호
단계</td></tr>
<tr><td>1977~1988년</td><td rowspan="2">1980~1990년대: 복지
수혜자로서의 장애인</td><td>훈련・교육
단계</td><td>장애 일반화
정착 및 제도
도입 단계</td><td>훈련・교육 중심
장애정책 추진
시기</td><td rowspan="2">장애인 존엄에
대한 형식적
선언 시기</td></tr>
<tr><td>1989~1997년</td><td>제한적인
경제적 지원
단계</td><td>개별적
관념론
우세기</td><td>장애 대중화
초기 및 제도
정착 단계</td><td>장애정책
도입 단계</td></tr>
<tr><td>1997~2007년</td><td rowspan="2">2000년대: 중증장애인 세상
밖으로 나오다</td><td>제한적인
사회적 지원
단계</td><td>사회적
생성주의
우세기</td><td>장애 대중화
성숙 및 제도
발전 단계</td><td>장애정책
확대 단계</td><td>장애인 인권
증진을 위한
사회보장 도입
시기</td></tr>
<tr><td>2007년 이후</td><td>경제적 및
사회적 지원의
파편적
확대 단계</td><td>사회적
구성주의
우세기</td><td>장애 개별화 및
인권성숙사회
준비기</td><td>장애정책 내실화
단계</td><td>장애인 차별
금지 및 인권
증진 제도화
시기</td></tr>
</table>

2. 장애담론

장애담론은 신문기사를 원자료로 토픽모델링을 실시하여 파악하였다. 신문기사는 '장애인', '장애자', '장애아'를 키워드[31]로 하여, 본문에서 '장애' 단어를 반드시 포함하는 기사를 대상으로 하였다. 신문기사 자료는 '중앙일보'에서 발간된 기사에 한정했는데, 그것은 자료의 성격 및 수집 방법과 관련이 깊다. 최근 신문기사 자료는 대부분 디지털화되어 인터넷을 통해 접근이 가능하다. 그런데 대부분의 신문사가 장기간에 걸친 시기의 기사를 디지털 문자화해 놓고 있지 않으며, 디지털 문자화했다 하더라도, 동적 패널로 기사를 관리하는 신문사의 경우 수집된 웹주소에 따라 신문기사에 재접근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중앙일보는 상당히 긴 기간의 기사를 디지털화하고 있으면서, 정적패널로 기사를 관리하고 있어 수집된 웹주소를 통해 원 기사에 재접근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 연구에서는 분석 대상인 신문기사를 넷마이너(NetMinder) 프로그램의 News Data Collector를 통해 수집하였다. 넷마이너의 News Data Collector는 기사의 제목, 내용, 작성자, 발간 일자, 웹주소 등의 정보를 수집한다.

<표 2-1>의 선행연구를 참조하여 시기를 구분하였으며, 시기별로 신문기사를 수집하여 각각 토픽모델링을 실시하여 주요 토픽을 명명하였다. 분석 이전에 기사 자료는 간단한 전처리 과정[32]을 거쳤으며, 분석방법은 블레이, 응, 조던(Blei, Ng & Jordan, 2003)의 LDA(Latent Dirichlet Allocation)이다. 토픽 수는 LDA의 분석결과를 K-means로 클러스터링 했을 때의 실루엣 계수(Silhouette Coefficient) 산출하여, 1에 가장 가까운 토픽 수로 지정했으며, 토픽별로 15위까지의 키워드를 제시하였다. 또한, 시기별 주요 기사의 텍스트를 인용하여 시기별 담론의 특성을 보여주도록 하였다.

---

31) '장애'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도 장애인을 의미하는 다양한 어휘들이 존재하지만(폐질, 병신 등) 이 연구에서는 '장애'라는 표현이 사용된 양상과 맥락을 '장애담론'으로 보고, 발화된 시기부터를 '장애담론'이 시작된 시기로 제한하였다.

32) 반복 등장하는 키워드 삭제: 예) 장애, 장애자, 장애인
유의어 처리: 예) 여성, 여자 -> 여성; 노동, 근로-> 노동
하나의 단어로 정의: 예)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제 2 절 시기 개괄

<표 2-2>를 보면 이들의 시기 구분을 참조하여 시기를 7개[33]로 구분하였고, 장애 패러다임의 관점에서 7개의 시기를 다시 4개로 구분하였다.

식민지기부터 1988년까지의 시기는 강력한 의료모델이 적용되던 시기로, 이 시기에는 직접적인 제도가 부재한 상황에서 장애인에 대한 단순한 수용과 보호가 이루어졌다. 또한, 국가에 의한 공적인 장애인 차별과 배제가 이루어졌고, 비장애인 중심의 환경과 문화에 장애인이 적응하도록 재활과 훈련이 강조되었다. 신문기사에서 표상된 장애인은 동정의 대상일 뿐이었다.

1989년부터 1997년까지의 시기에는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 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형식적 의미에서의 장애인 복지정책이 시행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전혀 실행되지 않아, 여전히 의료모델이 유지되던 시기이다. 신문기사 속에서 장애인은 불쌍한 이웃으로 표상되었다.

1997년부터는 사회모델이 도입되기 시작한 시기이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을 제정되었고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하여 장애 범주를 확대하는 등 장애인에 대한 사회경제적 지원이 시작되었다. 2001년 오이도역 휠체어 리프트 사고는 장애인의 이동권 투쟁에 대한 기폭제로 작용하는 등 이 시기부터 신문기사에서 장애인은 더 이상 타자나 대상이 아닌 주체로서 등장한다.

2007년부터 최근까지는 사회모델 강화기로, 이 시기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되고,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는 등 장애인이 본격적으로 사회로 나오기 시작하였다. 도가니 사건으로 널리 알려진 광주 인화학교의 장애인 성폭력 사건을 계기로 장애인 인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된 한편, 특수학교 설립 및 전장연의 지하철 시위로 알려진 장애인

33) 대부분의 한국 장애정책사 연구가 1960년대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장애인 복지가 제도화되기 시작된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다음 장의 연구 대상인 코호트가 1940-1945년생부터 시작하므로, 그들이 태어난 시기인 식민지기와 미군정기의 장애정책이 실시된 맥락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의 시민권 쟁취 투쟁을 놓고 사회적 갈등이 촉발되었다.

이러한 시기별 특징은 국회의 장애 관련 발의 법안 수 추이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난다([그림 2-1][34] 참조). 의료모델이 우세한 사회에서 장애의 문제는 장애인 스스로가 극복하고 사회에 적응해야 할 문제이므로, 제도화의 요구가 적지만, 사회모델이 도입되고 우세한 시기가 되면서, 장애의 문제는 장애인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할 영역이 된다. [그림 2-1]에서 14대 국회 전까지는 장애관련 법의 발의가 20건 미만이었으나, 15대와 16회에서는 20건 이상, 17대 국회부터는 발의 법안이 급격히 증가하여 20대와 21대 국회에서는 300건 이상이 발의되었다. 이처럼 장애의 문제를 사회구조의 변화를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시도가 크게 증가한 것이다.

자료: 국회의안정보시스템(https://likms.assembly.go.kr/)에서 저자가 직접 계수

[그림 2-1] 국회의 장애 관련 발의 법안 수 추이

중앙일보에서 장애인 관련 기사는 1966년부터 등장한다. 그리고 사회모델 강화기가 시작되는 2007년부터 장애인 관련 기사가 점차 증가하며[35]

34) 9대 국회 전에는 직접적인 장애 관련 법안 발의가 부재하였다.

35) 분석에서 활용된 기사의 수는 다음과 같다.

	1966-1976	1977-1988	1989-1996	1997-2006	2007-2022
분석 기사 수	69	725	1241	916	1663

그 주제가 급격히 바뀐다. 이를 포착하기 위해, 2007년부터의 기사는 3~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시기에 맞추어 3개의 시기로 분할하여 분석하였다. <표 2-3>은 각 시기별 신문기사에서 주로 사용하는 단어를 등장 빈도 순으로 50개 내외로 나열한 것이다. [그림 2-2]는 각 시기별 신문기사에서 사용된 단어를 TF-IDF[36]에 따라 이를 시각화한 것이다. 시기별로 사용된 주요 키워드를 통해 시기별 장애담론의 동향을 파악할 수 있으며, 주목받은 장애 유형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명칭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

강력한 의료모델 시기였던 1966~1977년과 1977~1988년 키워드는 주로 장애인 체육 성과, 특수교육 및 장애인 자선과 관련된 것으로 이루어져 있다. 1966~1977년 시기에는 특히 신체장애자, 특히 '척추 혹은 척수장애인', '소아마비' 등의 장애가 주목받았으며, 이 시기 시각장애인은 '맹인', 청각장애아동은 '농아' 등으로 불렸다.

의료모델이 유지된 1989~1996년 시기에도 여전히 '재활'이 강조되었고, '장애인 복지시설', '장애인 고용 촉진' 등의 키워드가 등장한다. 또한, 1988년 서울 장애자 올림픽의 영향으로 '올림픽'이 주요 키워드로 등장한다. 이 시기에는 장애인 복지법이 제정됨에 따라 법적 장애 유형의 명칭이 '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로 공식화된다.

사회모델 도입기인 1997~2006년 시기 '시각장애'가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이며 중요한 키워드로 등장한다. 복지, 교육, 올림픽, 재활 등이 여전히 높은 순위를 보인다. 한편, '정보', '인터넷', '컴퓨터' 등 정보화 시대의 도입과 함께 장애인의 정보 접근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사회모델이 강화되기 시작하는 2007~2012년에도 여전히 '시각장애'

36) "TF-IDF(Term Frequency - Inverse Document Frequency) 여러 개의 문서로 이루어진 문서 군이 있을 때 어떤 단어가 특정 문서 내에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나타내는 통계적 수치이다. (……) TF(단어 빈도, term frequency)는 특정한 단어가 문서 내에 얼마나 자주 등장하는지를 나타내는 값으로, 이 값이 높을수록 문서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단어 자체가 문서 군 내에서 자주 사용되는 경우, 이것은 그 단어가 흔하게 등장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을 DF(문서 빈도, document frequency)라고 하며, 이 값의 역수를 IDF(역문서 빈도, inverse document frequency)라고 한다. TF-IDF는 TF와 IDF를 곱한 값이다" (위키백과, https://ko.wikipedia.org/wiki/Tf-idf).

가 가장 높은 빈도로 등장한다. 한편 ‘지적장애’라는 키워드가 새롭게 등장한다. 또한, 장애인 ‘센터’가 등장한다. 이 시기에도 여전히 올림픽은 상위 빈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인권’ 키워드가 새롭게 등장한다.

2013~2017년도에도 여전히 ‘시각장애’가 가장 높은 빈도로 등장한다. 그리고 지적장애에 이어 ‘발달장애’가 새로운 장애 유형으로서 등장한다. 평창 동계 패럴림픽과 관련된 키워드가 다수 등장하며, ‘폭행’, ‘노예’와 같은 인권침해 관련 키워드도 등장한다.

가장 최근인 2018~2022년에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가 가장 높은 빈도이자 중요한 단어로 등장한다. 전장연의 지하철 투쟁과 관련된 키워드가 높은 빈도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평창 동계 패럴림픽과 관련된 키워드들이 이전 시기와 비슷하게 여전히 높은 빈도의 중요한 키워드로 등장하고 있다.

제3~6절에서는 시기별로 주요 장애정책 추진 배경, 내용 및 실행 결과, 신문기사 토픽모델링 결과, 주요 기사텍스트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였고, 마지막 절인 제7절에서는 이를 정리 및 요약한다.

<표 2-2> 시기별 장애 패러다임과 주요 특징

장애 패러다임	시기 구분	주요 법률 제·개정	주요 토픽	주요 사건 /장애 운동
강력한 의료모델 시기	식민지기 ·미 군정기	직접적인 제도 부재	-	-
	대한민국 정부수립~1960년	상이군경 및 산업재해 장애인을 위한 법 제정	-	한국전쟁으로 인한 다수의 전쟁 장애인 발생
	1961~1976년	1961년 '생활보호법' 제정	배제와 차별, 동정의 대상	장애인 윤철의 입시 불합격 처분 → 1972년 소아마비 장애인 체능면제
	1977~1988년	1977년 '특수교육법' 제정 1981년 '심신장애자복지법' 제정	타자에서 불쌍한 이웃으로	1987년 민주화 1988년 장애자 올림픽 개최
의료모델 유지기	1989~1997년	1989년 '장애인복지법' 제정 1990년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제정	장애인 없는 장애정책	1995년 장애인 대학입학 특별전형 실시
사회모델 도입기	1997~2006년	1997년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 관한법률' 제정 1999년 '장애인복지법' 개정	적극적 행위 주체로서의 등장	2001년 오이도역 리프트 사고 2005년 도가니 사건 (광주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
사회모델 강화기	2007년 이후	2007년 '장애인차별금지및 권리구제에관한법률' 제정 2008년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비준 장애인연금 도입 2011년 '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 제정 2014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장애인 인권개념의 등장과 투쟁의 본격화	2012~2017 장애등급제 및 부양의무제 폐지 투쟁 2017년 서울 강서구 가양동 서진학교 설립 투쟁 2021년 ~ 현재, 전장연 지하철 투쟁

주: 시기 구분은 곽정란(2013), 김용득(2004), 김용득·이동석(2019), 이동석(2004), 이성규(2011), 조성은 외(2019), 허준기(2022)를 참조함.

<표 2-3> 시기별 장애인 관련 기사에서 등장하는 상위 빈도 단어 (50개 내외)

강력한 의료모델 시기				의료모델 유지기		사회모델 도입기		사회모델 강화기					
1966-1976		1977-1988		1989-1996		1997-2006		2007-2012		2013-2017		2018-2022	
순위	단어	순위	단어	순위	단어	순위	단어	순위	단어	순위	단어	순위	단어
1	척추	1	올림픽	1	복지	1	시각장애	1	시각장애	1	시각장애	1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1	대회	2	복지	2	사회	2	복지	2	복지	2	학교	2	복지
1	교육	3	심신	3	고용	3	학교	3	지원	3	지적장애	3	시위
4	신체	3	대회	4	대회	4	정보	4	센터	4	특수	4	지하철
5	아동	5	신체장애자	5	교육	5	교육	5	브리핑	5	복지	5	발달장애
6	메달	6	사회	6	시설	6	지원	6	학교	6	발달장애	6	패럴림픽
7	체육	7	재활	7	오후	6	사람	7	고용	7	대회	7	체육회
8	선수	8	시설	8	시각장애	8	시설	8	시설	8	평창	8	국민
8	국제	8	교육	9	재활	9	사랑	9	사회	8	사회	9	시각장애
10	런던	10	세계	10	전국	10	청각장애	10	올림픽	10	지원	10	오전
11	특수	11	선수	11	사랑	11	사회	11	학생	11	청각장애	11	지적장애
11	신체장애자	12	전국	12	종합	12	대회	12	노인	12	올림픽	11	사회
13	탁구	13	회장	13	회장	13	휠체어	13	지적장애	13	선수	13	선수
13	정신	14	자선	13	날	13	아동	14	청각장애	14	급	14	전국
15	심신	15	하오	15	자원	15	정신	14	급	15	체육회	15	대통령
16	하오	16	신체	16	올림픽	16	올림픽	16	전국	16	아동	16	기자
16	참가	17	정신	17	학교	17	재활	17	교육	16	세계	17	이준석
18	금	18	아동	18	촉진	18	특수	18	여성	16	경찰	17	대회
19	학교	19	보사	19	관	18	노인	18	아동	19	학생	19	뉴스
19	척수	20	학교	20	봉사	20	전국	18	봉사	20	시설	20	재단
19	전국	20	국제	21	행사	20	오후	21	대회	21	패럴림픽	20	연합뉴스
19	재활	22	참가	22	특수	22	날	22	재활	21	주민	22	지원
19	올림픽	23	종합	23	오전	23	기업	22	관	21	기자	23	체육
19	사회	24	회관	24	노인	24	인터넷	24	충남	24	희망	24	휠체어
25	협회	25	특수	25	청각장애	25	봉사	24	채용	24	뉴스	25	출근길
25	선수단	25	대학	26	개최	26	지체장애	24	공단	26	회장	26	단체
25	사법	27	휠체어	27	지체장애	27	개발	27	활동	26	병원	27	날
25	복지	27	상오	28	협회	28	고용	27	지체장애	26	경찰서	28	평창

강력한 의료모델 시기				의료모델 유지기		사회모델 도입기		사회모델 강화기					
1966-1976		1977-1988		1989-1996		1997-2006		2007-2012		2013-2017		2018-2022	
순위	단어	순위	단어	순위	단어	순위	단어	순위	단어	순위	단어	순위	단어
25	맹인	29	청각장애	29	단체	29	선수	27	문화	29	여성	29	회장
30	회관	29	정부	30	사람	30	학생	27	기자	30	카드	30	윤석열
30	출전	29	방문	31	이사장	30	무료	31	중국	30	체육	30	고용
30	운동	29	밤	32	공단	30	대학	31	서비스	30	정보	32	청각장애
30	여사	29	격려	33	봉사자	33	협회	31	사랑	30	센터	32	밀알
30	박약	34	사업	34	체육	34	치료	31	병원	34	지역	34	여성
35	회장	34	협회	35	방문	35	기자	35	천광청	35	휠체어	34	세계
35	자선	34	체육	36	아동	36	생활	35	제공	36	협의	36	청소년
35	소아마비	34	대통령	37	정부	36	급	35	운영	36	부모	36	대학교
35	세계	34	관	38	무료	38	어린이	35	기업	36	논란	36	경찰
35	병원	39	작품	39	어린이	38	아이	39	어린이	39	왼쪽	39	의원
35	문교부	39	선수단	40	정신	40	회장	39	수화	40	무릎	39	올림픽
35	모금	39	기금	41	내년	40	올해	39	꿈	41	국가	39	오후
35	대통령	42	언어	42	회관	40	센터	39	국제	41	대통령	39	아동
35	금메달	42	전달	43	뇌성마비	40	단체	43	중증장애	41	남성	39	시설
44	환자	42	오후	44	사업	44	차량	43	인권	44	일	39	센터
44	학생	45	청소년	45	지역	45	서비스	43	오후	45	폭행	39	남성
44	자체	45	생활	46	신체	45	내년	43	아이	45	아들	46	차별
44	시각장애	45	사람	47	전달	47	행사	43	사람	45	설립	47	협회
44	상오	45	기능	47	부모	47	소리	43	나사렛	48	치료	47	학교
44	복식	49	어린이	49	직업	49	컴퓨터	43	가족	48	집	47	선수단
44	농아	49	부모	50	국제	49	집	50	일자리	48	오후	47	법원
44	급	49	보호			49	문화	50	왼쪽	48	스키		
44	궁도									48	부부		

강력한 의료모델 시기 Ⅰ(1966~1977년)

강력한 의료모델 시기 Ⅱ(1978~1988년)

의료모델 유지기(1989~1996년)

사회모델 도입기(1997~2006년)

[그림 2-2] 시기별 워드 클라우드(TF-IDF degree 기준) Ⅰ

사회모델 강화기 Ⅰ(2007~2012년)

사회모델 강화기 Ⅱ(2013~2017년)

사회모델 강화기 Ⅲ(2018~2022년)

[그림 2-3] 시기별 워드 클라우드(TF-IDF degree 기준) Ⅱ

제 3 절 강력한 의료모델 시기 (식민지기~1988년)

> “재활이란 (……) 심신장애자들의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직업적 그리고 경제적 유용성을・최대한도로 회복시켜 주어서 스스로의 생활능력을 갖도록하자는 것. 이사업을 보다효과적으로 추진하기위하여 각재활기관과 의사・전문요원등이 하나로 결속한 것이다.” - 중앙일보(1968/12/07) “ “스스로 생활능력갖도록” ”

식민지기부터 1987년까지 시기는 강력한 의료모델이 작동한 시기이다. 식민지기와 미 군정기에는 직접적인 제도가 없이 간헐적 구제와 보호를 빌미로 한 강제수용이 이루어졌다. 대한민국 정부수립부터 1960년까지는 국가의 안보나 발전을 위해 장애를 얻은 상이군경이나 산업재해장애인만을 위한 법 제정이 이루어졌으며, 그 외 장애인에 대한 제도적 지원은 전무 하였다. 1971년부터 1976년에는 시설을 통한 장애인의 수용과 보호와 우생학적 접근에 의한 모자보건법이 시행되는 등 장애인에 대한 배제가 제도화된 시기라고 볼 수 있다. 1977년부터 1988년에 이르러 장애인에 대한 단순한 수용과 보호를 떠나 본격적으로 훈련과 교육이 강조되었다. 하지만, 비장애인 중심의 세상에 장애인이 적응해야 한다는 관점이 강했다.

1. 식민지기・미 군정기

식민지기 장애인에 대한 일제가 실시한 장애정책의 특징은 간헐적이고 주변적인 규휼, 근대적 관점에 입각한 강제수용과 훈육 및 차별이다(곽정란, 2013; 이성규, 2011, 조성은 외, 2019). 곽정란(2013)은 이 시기를 ‘방치와 격리 수용 그리고 훈육의 시기’라고 명명하였다.

식민지기 일제가 실시한 구휼사업은 장애인을 위해 독립적으로 진행된 것이 없었으며, 임시적이고 즉흥적인 성격이 강했다(이성규, 2011:74). 1944년 제정한‘조선구호령’은 생활부조의 대상으로 ‘불구・폐질・질병・상이・기타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해 노동을 하지 못하는 자’를 포함하였다(조성은 외, 2019). 그런데 이는 조선인을 징병과 노무징용에 동

원하기 위한 선무용이었다(이성규, 2011:74). 또한 생활부조 신청을 하면 자산 조사를 하였고, 자산 조사를 하여 가택 보호가 불가능할 때에는 구호시설에 맡겨 보호하도록 하는 등(이성규, 2011) 장애인을 부조하고 보호한다는 명목하에 이들을 강제수용하고 훈육하는 장치로 작용했다.

대표적인 강제수용과 훈육이 이루어진 장소이자 제도가 제생원(濟生院)을 통한 장애인 수용이다(곽정란, 2013:266). 일제는 2011년 제생원규정과 1912년 3월 조선총독부제생원관제(칙령 제43호)에 의해 제생원에서 고아를 수용 및 양육하기 시작했으며, 1913년 4월부터는 맹아자 및 농아자를 수용하기 시작했다(곽정란, 2013:266). 그리고 그들에게 침・구・안마교육을 실시했고, 1914년 안마술・침술・구술 영업취체규칙을 제정하여 그 졸업생들에게 면허를 주기 시작했다(이성규, 2011:74) 이것은 근대적인 최초의 직업재활정책이라 할 수 있다(이성규, 2011:75). 하지만 당시 전체 장애인 수를 고려한다면, 보편화된 제도라고 할 수 없는 특수한 제도였으며(곽정란, 2013:266), 일본에서는 해당 면허를 사용 없게 하는 등 조선인에 대한 차별은 여전히 작용했다(이성규, 2011:75).

장애인에 대한 체계적 교육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1935년 조선인에 의해 설립된 최초의 특수교육기관인 광명맹아학교가 평양에 개교하였다. 광명맹아학교 통학제도와 기숙제도를 병용하였으며, 맹인부아 농아인부로 학제를 편성하여, 일반 교과 외에 직업 교과로 목공・양재・마사지 등을 가르쳤으며, 맹인에게는 점자를 농인에게는 수어를 가르쳤다(이성규, 2011:75).

하지만 각급 학교에서 장애인에 대한 입학거부가 빈번히 발생했고(조성은 외, 2019), 우생학적 접근에 따라 장애인의 태생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고자 하는 시도가 있었다(조성은 외, 2019; 곽정란, 2013: 267). 교육, 고용, 사회활동 등 대부분 영역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사회적으로 당연하게 여겨졌으며, 장애인들은 생계에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다(이동석, 2003).

미 군정기에도 식민지와 별 차이가 없었고, 민간사회사업, 외국의 원조단체, 종교단체 등에 의한 사업이 대부분이었다(이성규, 2011:75-76; 조성은 외, 2019). 한편, 제생원의 맹아부는 1945년 국립맹아학교로 명칭을 변

경하였고, 미군정청 보건후생부 관할로 학부를 재편성하고 학제를 강화한 후 비장애아동과 같은 교육내용과 수준으로 교육을 실시하기 시작했다(이성규, 2011:76).

2. 대한민국 정부수립~1960년

> "국내에는 십육만오천 명에 달하는 민간인신체장애자(맹, 아, 농, 수족절단자)가있는데 그중 팔만육천여 명은 수족 절단자로서 대부분이 전란에 희생 받은 것이라고 하며 이들은 일 할에 불과한 사람들만이 의수족을 착용하고 있어 국가적인 하등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어 신체장애자에 대한 직업보도 및 복지사업책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다" - 경향신문 (1954/11/12) "버림받은 「전재불구자」"

이 시기는 한국전쟁 등으로 부상당한 상이군경 및 산업재해 장애인을 위한 법이 제정된 시기로 국가에 대한 기여 여부에 따라 장애의 인정이 결정되었다. 곽정란(2013)은 이 시기를 '충성을 둘러싼 장애인의 구분', 이성규(2011)는 '장애 특수화 단계'로 명명하고 있다. 이 시기에는 국가에 대한 충성을 증명한, 상이군인과 산업개발 초기 과정에서 장애를 갖게 된 특수한 집단을 위한 지원이 제도화되었다(이성규, 2011:76).

이승만 정권은 1950년 '군사원호법'을, 1951년에는 '경찰원호법'을 제정하였다. 1952년에는 '전몰군경 유적과 상이군경 연금법'을 제정하였고, 1951년 '중앙 상이군인정양원직제'에 의해 상이군인정양원이 설치되었고, 1952년에는 '중앙상이군인직업보도소직제'에 의해 '직업보도원'이 설치되어 상이군인 및 경찰에 대한 직업재활이 실시되었다. 이와 같이 상이군인 및 경찰을 위한 제도가 한국전쟁 중에 실시되었는데, 그 목적은 참전 중인 군인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한 것이었다(곽정란, 2013:269)[37].

---

37) 상이군인에 대한 이러한 조치는 두 가지 배경에서 이루어지는데, 첫 번째는 상이군인들의 무분별한 집단적 행동이 당시 사회문제가 되었고(임덕영, 2008:76), 국가를 위해 헌신하다 장애인이 된 이들이게 보상이 없다면, 이들에게 더 이상의 충성을 요구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이었다(곽정란, 2013:269).

1949년에는 교육법이 제정되면서,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을 설치하도록 하는 규정이 명시된다. 당시 교육법은 맹자, 농아자, 정신박약자, 기타 심신에 장애가 있는 자에게 초등학교, 중학교에 준한 교육과 그 실생활에 필요한 지식 기능을 가르침을 목적으로 하며, 특별시 또는 각 도에 1개교 이상의 특수학교를 설립하도록 하였다(이성규, 2011:83). 1953년부터는 대학 사범과에 특수교육 담당 교사를 양성하기 시작했다. 1959년 맹・농아교육 분리에 관한 대통령령이 공포되었으며,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을 위한 별도의 특수학교가 설립되었다. 이는 이후 특수교육이 영역별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조성은 외, 2019:84)

한편 이시기인 1954년 한국불구자복지협회(현, 한국장애인재활협회)가 설립되었고, 1959년 대한농아협회(현, 한국농아인협회)가 설립되었다.

3. 국가적 배제와 차별, 동정의 대상 (1961~1976년)

(1) 주요 정책

이 시기 장애정책은 시설을 통한 장애인의 수용과 보호에 초점(곽정란, 2013; 김용득, 2004; 김용득・이동석, 2019; 조성은 외, 2019)을 두고 있었으며, 우생학접 접근의 '모자보건법' 이 시행되기도 하였다.

이 시기는 박정희 정권의 장애정책 시기이기도 하다. 박정희 정권은 집권 초기에 1961년 '생활보호법', 1961년 '군사원호보상자 고용법', '군사원호 보상법', '군사원호대상자 임용법', '군사원호대상자 자녀교육보호법' , 1962년 '국가유공자 및 월남귀순자 특별 원호법', 1963년 '산업재해보상법[38]' 등 다양한 사회복지 관련 법들을 제정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군사정권이 필요했던 정치적 정당성을 창출하기 위한 것이었다(곽정란, 2013:270). 그 단적인 예로, 1961년 제정된 '생활보호법' 의 경우 '불구, 폐질, 상이, 기타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해 근로능력이 없는 자' 를 보호 대상에 포함했는데, 실제로 생활보호제도를 실행

38) 한국 최초의 사회보험 제도로 이를 통해 산업재해근로자에 대한 보상과 재활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조성은 외, 2019).

하기 위한 예산이 책정된 것은 1969년에 이르러서였다(이혜경, 1993).

또한, 이 시기에 만들어진 장애인 관련 제도들은 “국가에 대한 충성을 강화하고, 국가 발전 및 경제 발전을 가속화 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들 속에 포함” 되어 있다(곽정란, 2013:270). 오히려 이러한 제도는 제도 밖 장애인을 차별하는 구조로 작용했다. 먼저 군가산점제도는 국방의 의무로부터 제외된 여성과 장애인의 입장에서는 취업을 가로막는 걸림돌로 작용하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산업발전에 기여한 장애인과 그렇지 못한 장애인을 구분하는 성격을 띤다(곽정란, 2013: 271-274). 그리고 모자보건법은 인구 증가가 경제 발전을 저해한다는 판단 아래 가족계획사업의 일환으로 제정된 법인데 그 내용의 일부가 우생학에 근거한 장애인 출생의 근절을 성문화하고 있다(곽정란, 2013:271-274; 김용득, 2004; 김용득・이동석, 2019; 조성은 외, 2019).

이 시기까지 한국에서 부랑인, 아동, 노인 등 사회발전에 기여한다고 볼 수 없는 수많은 소수자에 대한 국가적 조치는 전무했다(곽정란, 2013:274). 다만 외국의 민간 지원단체나 종교단체 혹은 개인이 운영하는 복지시설이 그 빈틈을 메워주고 있었는데, 그마저도 1960년대 중반부터 본국으로 철수하게 된다. 이러한 배경에서 1970년 ‘사회복지사업법’이 제정 및 공포되는데, 장애인 복지 사업은 관리・감독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에 대한 학대와 인권침해 등이 빈번히 발생하게 된다(곽정란, 2013:274)

장애인 교육은 이 시기에 이르러 제도적으로 조금씩 틀을 갖추어가기 시작했다(이성규, 2011:92-95). 1962년 최초의 특수학급이 설치되었으며(조성은 외, 2019), 1963년 교육법이 개정되어 1964년 3월 특수학교 고등부가 설치되었다. 그리고 1967년 9월 특수교육5개년계획이 마련됨에 따라, 통합교육이 시도되기 시작했다. 1962년 특수학교 수는 10개, 재학생 수는 1,242명, 교사 120명에서 5년 뒤인 1967년에는 특수학교 22개, 재학생 수는 3,121명, 교사 280명으로 규모가 각각 약 2.3배 증가한다(이성규, 2011:93). 1974년에는 최초로 ‘정신지체아 초등부 교육과정’이 제정・고시되기도 하였다.

한편, 장애를 이유로 학교에 진학하지 못한 사건이 사회적 관심을 받은 적이 있는데, 장애인 윤철이 학과 시험 만점을 받고도 체능검사 때문에 불합격한 사건이 었다. 비슷한 사건이 계속되자. 소아마비 학생을 위한 체능특전을 마련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었고, 1972년에 이르러 중학교와 고등학교 입학시험에서 장애학생에 대한 체능검사가 면제되었다(김윤정, 1997).

한편 이 시기는 한국전쟁 이후 민간차원의 장애인 단체 및 협회가 결성되고, 국제 교류를 시작한 시기이기도 하다(이성규, 2011:116~118). 1966년 한국소아마비아동특수보육협회(현, 한국소아마비협회)를 설립되었고, 1967년에는 '소아마비 어린이날'이 제정되었다. 1968년에는 한국정신지체인애호협회가 설립되어, 1969년에 국제정신박약인연맹에 가입하였다. 또한 1969년에는 아일랜드에서 열린 '제11차 세계재활협회(Rehabilitation International: RI) 세계대회'에 한국 대표단을 파견했다.

(2) 주요 토픽

이 시기 부터는 본격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기사가 등장하기 시작하여, 토픽 모델링을 실시하였다. 토픽모델링을 실시한 결과, 7개의 토픽이 산출되며 토픽별 키워드는 <표 2-4>와 같다. 그리고 도출된 토픽별 키워드를 통해 토픽 명을 <표 2-5>와 같이 부여하였다. 장애인 체육 성과에 대한 기사(토픽3)가 33%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며, 그 외에 장애인을 위한 자선사업, 모금 등(토픽1, 5, 6, 7)의 토픽이 기사의 주를 이룬다. 국가는 공식적으로 장애인을 배제하거나 차별하였으며(토픽2), 사회적으로 장애인은 동정과 연민의 대상이었다.

<표 2-4> 1966~1976년 장애인 관련 기사의 토픽별 키워드(15위까지)

	Topic-1	Topic-2	Topic-3	Topic-4	Topic-5	Topic-6	Topic-7
1	재활	사법	메달	세계	교육	사회	아동
2	협회	심신	체육	대통령	특수	복지	작품
3	맹인	학생	선수	여사	정신	운동	바자
4	신체장애자	대법원	탁구	병원	아동	신체장애자	학교
5	전국	취소	올림픽	국립	박약	모금	재활원
6	자선	능력	척수	정신	심신	백만인	여사
7	시각장애	여성	참가	거부	학교	걷기	인천
8	지회	군사	선수단	신체장애자	문교부	노동	회관
9	회장	소아마비	출전	정신병	농아	설립	상오
10	단체	인가	금메달	정신장애	판별	참가	명휘
11	법인	대여	궁도	로이터	회관	보사	방자
12	사업	조치	자체	통과	강당	김학묵	혜양
13	패티김	국무	복식	별세	행회	합동	귀국
14	음악	폐업	획득	하원	연합	회장	시설
15	길옥윤	명의	개인전	모나	특수아	대회장	지체장애

<표 2-5> 1966~1976년 장애인 관련 기사에 부여된 토픽 명

	토픽 명	비중 (N=69)
토픽 1	전국장애인재활협회, 자산사업	13%
토픽 2	국가에 의한 장애인 배제와 차별	9%
토픽 3	장애인 체육의 성과	33%
토픽 4	세계의 장애인 관련 소식	9%
토픽 5	정신박약아동 특수교육	19%
토픽 6	신체장애자를 위한 모금 운동	10%
토픽 7	장애아동의 재활을 위한 바자	7%

기사의 본문에서 국가는 장애인을 ‘(잠재적) 범죄자’, ‘무능력자’로 간주하고 이들에 대한 관리와 차별을 당연시 여기고 있다.

> “육군 당국은 전투력 강화와 사고 방지를 위해「문제 사병」실태 기초 조사를 펴고 그 제거 및 예방책을 강구하고 있다. 이 기초 조사에서 육군은 심신장애자를 포함한 사회 누범자·불량배 출신 등 전체의 4.5%가 범죄 가능성자이며 연간 사고 발생율 3.2%(67년도)를 포함한다면 7.7%가 사고 가능성자 및 사고자라고 밝혀졌다.” - 중앙일보(1968/06/01) “「범죄 가능성」4.5%”

“대법원은 14일 심신장애로 직무능력이 없거나 명의 등을 대여해준 사법서사 22명에 대해 인가취소하고 폐업조치토록 했다.” - 중앙일보(1973/04/14) “심신장애자·명의대여자 사법서사 23명 인가취소”

“강교수는 영국이 60년 정신위생법을 만들어 정신병 범법자들을 강제수용 치료해 범행을 예방하고 있음을 밝히고 우리나라에서도 정신장애자들의 범행을 막기 위해 법적조치와 시설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 중앙일보(1976/04/23) “예방 어려운 정신병 환자 재범”

사회적으로도 장애인에 대한 시선은 재활과 교육이 필요한 동정과 연민의 대상이었고, 민간차원의 자선과 모금이 있었을 뿐 제도화된 접근은 부재했다.

“신체장애아동교육훈련비·나환자자녀주택 및 근로청소년 직업보도소 건립기금 마련을 위해 73년이후 네번째 열린 이번 대회는 2천여만원의 성금을 모금했다.” - 중앙일보(1976/04/12) “「백만인모금걷기운동」 성황 만6천명 참가 2천만원 모아”

“삼육아동재활원(원장민영재)이 마련한 제1회 지체장애 아동작품전시 및 자선「바자」회가 7일 상오11시 서울 종로2가 종각지하철전시장에서 열렸다. 3일간 계속될 「바자」회는 근혜양이 개막 「테이프」를 끊었으며 평소 지체장애아동들의 재활에 관심을 보여준 인사들과 시민등 3백여명이 참석, 실의와 역경을 딛고 정교한 작품을 만들어낸데 대해 뜨거운 박수갈채를 보냈다. - 중앙일보(1975/10/07) “불구딛고 연마한 삶의 의지”

이상의 기사본문에서 또한 포착되는 장애담론은 정신장애인과 신체장애인의 구분, 그리고 장애 ‘성인’과 장애‘아동’의 구분이다. 신체장애인의 경우 그나마 사회적 시선이 동정적이긴 하지만 긍정적인 반면, 정신장애인의 경우 사회의 시선, 특히 국가의 시선은 매우 부정적이다. 정신장애인은 ‘범죄가능성자’이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통제와 관리가 필요한 이들이다. 자선과 재활은 ‘신체장애아동’에게만 제한적으로 주어지는 기회로, 정신장애인과 장애성인은 배제된다. 이시기의 장애담론은 이와 같이 결과적으로는 사회적 격리에 이르는 수용과 보호, 우생학적 접근이라는 장애정책의 기조와 결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4. 타자에서 불쌍한 이웃으로 (1977~1988년)

(1) 주요 정책

이 시기 장애정책은 단순히 수용과 보호를 떠나 본격적으로 국가의 장애인에 대한 '훈련 및 교육에 의한 재활'을 강조하였던 시기이다. 하지만 이 시기의 장애정책은 여전히 장애의 원인을 장애인 외부의 사회에 두기보다, 장애인 개인의 문제로 보고 재활과 교육에 의한 장애인의 일반 사회로의 적응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성규(2011)는 이 시기를 '장애 일반화 정착 및 제도 도입단계'라 명명하였고, 곽정란(2013)은 이 시기의 장애인이 '복지수혜자'였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 시기까지 장애의 문제는 개인의 신체적 손상에 있다는 개별적 유물론이 우세하였다(이동석, 2004). 이 기간인 1977년 '특수교육법'이 제정되었고, 1981년 '심신장애자보건법'이 제정되었다.

1970년대는 장애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이 제고된 시기라 할 수 있다(곽정란, 2013:274-275; 김용득, 2004; 김용득·이동석, 2019; 이성규, 2022:118-119). UN은 1971년 '정신지체인의 권리에 관한 선언'을 1975년에는 '장애인의 권리 선언'을, 1976년에는 1981년을 '세계장애인의 해'로 지정하는 등의 결의를 채택하였다(이동석, 2003). 이러한 국제사회의 변화는 한국의 장애 정책에 영향을 미쳤을 것은 분명하다(이성규, 2011:119).

이러한 장애에 대한 국제적 관심은 1960년대부터 시작된 장애 운동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1960년대 후반부터 스칸디나비아 반도를 중심으로 탈시설화 운동과 정상화 운동이 전개되었으며(이성규, 2001), 격리에 반대하는 영국의 신체장애인 운동과 장애인 소득보장운동, 미국의 자립생활운동, 일본의 아오이시바(푸른잔디회) 운동 등이 있었다(곽정란, 2013:275-276). 이러한 운동의 결과 1970년대에 접어들면서 장애정책과 프로그램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는 1980년대 덴마크의 뱅크미켈슨(Bank-Mikkelsen)과 미국의 울펜스버거(Wolfensberger)를 중심으로 시작된 정상화(노멀라이제이션)와 사회통합에 관한 논의로 이어진다(Flynn and Nitsch, 1980; Wolfensberger, 1983). 이러한 논의들은 이후

1990년대 사회적 모델로 발전한다.

이 시기 가장 의미 있는 제도적 변화는 1977년 ‘특수교육진흥법’이 제정된 것이다. 이는 특수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이성규, 2011:127),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의 법리를 최초로 도입했다는 데(김용득, 2004; 김용득・이동석, 2019)에 그 의의가 있다. 그러나 장애인에 대한 학교 측의 입학 거부가 빈번한 이루어져 그 법적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이 어려웠다(김용득, 2004; 김용득・이동석, 2019). 특히 대학 입시에서의 차별은 만연했고, 이에 대한 제도화가 되어있지 않아 장애학생의 선발이 대학의 재량에 달려 있었다.

1981년 세계 장애인의 해를 앞두고, 정부차원에서 장애인 문제를 인식하기 시작했으며, 1981년 ‘심신장애자복지법’이 제정된다[39]. 이 법은 국내 최초의 장애인복지에 관한 종합적인 법률로 이전까지 장애인 시설은 단순 수용과 보호에 머물렀으나, 이 법의 제정에 따라 재자 장애인을 위한 직업재활시설과 이용시설 등이 생겨나게 되었다(김용득, 2004; 김용득・이동석, 2019)[40]. 법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1982년 최초의 장애인복지관인 한국시각장애자복지관과 서울장애자종합복지관이 설립된다(이성규, 2011:134).

한편 곽정란(2013:276)은 심신장애자복지법이 “장애인의 지역사회 참여를 지원하는 법이라기보다 장애인에 대한 수용・생활 시설을 체계화하는 법률”이었다고 비판하였다. 해당 법에서는 심신장애자 복지시설을 “지체자유자재활시설, 시각장애자 재활시설, 청각・언어기능장애자재호라시설, 정신박약자재활시설, 심신장애자요양시설, 심신장애자근로시설, 점자도서관, 점자출판시설”이라고 정의하고 있지만, “점자도서관과 점자출판시설을 제외한 모든 시설이 입소(통원도 포함)시설로 상정”되어 있었기 때문이다(곽정란, 2013: 276). 또한 1983년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되어, 장애인복지사업이 사회복지사업에 포함되게 되면서, 장애인에 대

39) 심신장애자복지법은 1978년 보건사회부가 ‘심신장애자 종합보호대책’을 수립하면서 체계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이성규, 2011:120). 심신장애자 종합보호대책은 보호시설의 확충과 기능 강화, 보건사회부 내에 전담부서의 설치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40) 이는 당시 시점이 전쟁고아의 성장으로 고아원이 장애인 시설로 전환되었던 배경과 맞물린다(이성규, 2011:125).

한 수용・보호 정책은 법적으로 더욱 체계화되었다(곽정란, 2013:276).

심신장애자복지법의 제정은 장애인 고용 영역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김용득. 2004; 김용득・이동석, 2019; 이성규, 2011:123). 장애인의 직업재활에 대한 직접적인 정부의 개입이 시작된 것이다. 1982년 한국장애자재활협회를 통해 장애인의 취업 알선이 있었으며, 1985년부터는 노동부 산하 지사에서 장애인 취업 알선 업무를 병행하게 하였다. 1986년에는 '직업훈련법'을 개정하여 장애인이 일반인을 위한 직업훈련시설에서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게 하였다. 그리고 같은 해에 중증장애인을 위한 보호작업장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자립작업장을 시범 운영하기 시작했다.

1988년 장애자 올림픽 개최를 위해 장애인 복지시설 현대화와 장애인 직업재활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1985년부터 1987년까지 '시설 현대화 계획'이 추진됨에 따라, 장애인 복지시설이 확충되고 증축 및 개축된다. 1978년 내무부의 도시환경시설개선사업으로, 주요 도시의 횡단보도와 도로의 경계석을 낮추는 등, 최초의 장애인 편의시설이 생겨나게 된다. 1985년부터는 올림픽을 앞두고 건축 관련 법에 편의시설 규정이 포함되게 되었다(김용득, 2004; 이성규, 2011).

(1) 주요 토픽

<표 2-6>과 <표 2-7>과 같이 이 시기에는 8개의 토픽이 도출된다. 여전히 장애인은 재활이 필요한 동정의 대상이지만, 장애인 재활에 대한 책임이 '국가'에 있다는 인식이 일어나기 시작했고(토픽4), 장애인이 타자에서 '이웃'으로서 등장하기 시작한다(토픽3). 이 시기에도 여전히 장애인 스포츠에 관한 기사(토픽2, 6, 8)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며, 채용과 입시 장애인 차별에 대한 기사(토픽7)가 등장한다.

<표 2-6> 1977~1988년 장애인 관련 기사의 토픽별 키워드(15위까지)

	Topic-1	Topic-2	Topic-3	Topic-4	Topic-5	Topic-6	Topic-7	Topic-8
1	교육	대회	생활	복지	자선	사회	신체장애자	올림픽
2	정신	전국	청소년	시설	회장	올림픽	대학	대회
3	심신	체육	운동	심신	작품	휠체어	신체	선수
4	특수	대통령	신체장애자	재활	기금	사람	입학	방문
5	아동	국제	사업	사회	신체장애자	인간	불합격	전달
6	학교	올림픽	지급	정부	바자	교양	올해	조직
7	청각장애	선수	불우	보사	심신	봉사	학생	장관
8	상담	참가	걷기	종합	협회	승리	소아마비	오후
9	언어	척수	연금	보호	전시회	창구	법관	세계
10	전화	여사	여성	내년	재활	불편	합격	격려
11	부모	참석	심신	기능	회관	운영	채용	회관
12	하오	상오	보조	직업	복지	용기	시험	성금
13	박약	선수단	가정	고용	세계	불구	문교부	잠실
14	어린이	격려	지체장애	수용	하오	의지	가톨릭	보사
15	복지	하오	상오	대책	호텔	국민	자유자	오전

<표 2-7> 1977~1988년 장애인 관련 기사에 부여된 토픽 명

	토픽 명	비중 (N=725)
토픽 1	장애아동 특수교육, 부모 전화 상담	15%
토픽 2	전국장애인체육대회 및 장애인 올림픽 참가 선수 대통령 격려	10%
토픽 3	불우한 장애청소년 및 장애여성 돕기 운동	9%
토픽 4	정부의 장애인 복지정책	17%
토픽 5	각종 단체의 장애인 자선사업	13%

이 시기에 장애인은 국가로부터 ‘범죄자’, 혹은 ‘무능력자’라는 편견을 벗고, 국가가 이들의 재활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인식이 시작된다.

> “심신장애자들에 대한 사회적편견때문에 고용기피와 불평등한 대우등 냉대를 받고있어 장애자들의 사회진출이나 취업기회가 제대로 주어지지않아 정부의 적극적인 직업재활대책이 필요한것으로 지적됐다.” - 중앙일보 (1980/01/15) ““심신장애자는 서글프다””

또한, 이전에는 장애인이 단순히 동정의 ‘대상’이었다면, 불쌍한 ‘이웃’으로서 혹은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서서히 받아들여지기 시작한다.

> “12월에 접어들면서 장애자나 근로청소년 및 불우여성등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을 돕기 위한 갖가지 자선바자나 무용공연 및 미술전시회등이 잇달아 열린다.” - 중앙일보 (1987/12/02) ““불우이웃 돕는다””

> “장애자들의 아픔을 모두가 함께 이해하고 그들에 대한 사회의 편견과 무관심을 씻어내려는 모임이 마련되었다. (……) 누구에게나 부여된 인간의 존엄성과 삶의 기쁨을 정상적으로 누리지 못하고 이 사회의 그늘진 곳으로 움츠러들 수밖에 없는 장애자들에게 존엄한 인격체로서의 권리를 부여하고 우리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맞아들이기 위해 마련된 이 대회는 2백50만 장애자에 대한 종교·사회적 반성의 한 계기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 중앙일보 (1988/09/07) “장애자의 「그늘」을 벗기자”

입시 차별에 대한 문제의식도 생겨난다. 이전 시기의 장애학생의 대학입학이 원천적으로 차단되었다면, 이시기에는 ‘신체장애학생’에게 우선적으로 대학의 문을 열어준다. 하지만 그 기준은 뚜렷하지 않았고, 대학의 재량에 달려 있었다.

> “대학마다 고심하고 있는 부분은 신체장애자에 대한 문제. 고대·건대·성대·숙대·성신여대등은 입시요강에 신체불구자에 대한 제한여부를 명시하지않았으며 다만 면접때 장애의 심한 정도에 따라 고려키로 했다.” - 중앙일보 (1982/12/03) “사법계”

> “가톨릭의대에 이어 동국대도 86년 입시에서 신체장애를 이유로 불합격시킨 수험생을 구제해주기로 했다.” - 중앙일보 (1986/01/29) “불합격장애자 또 구제”

이 시기 장애정책이 장애의 문제를 장애인 개인의 문제로 보고, 장애인의 훈련과 재활을 강조했듯이 장애인 기사에서도 여전히 ‘재활’이 강조되고 있으며, 재활의 책임이 국가에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실제로 제도적 변화가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장애인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시선도 타자에서 불쌍한 내부자로 조금씩 바뀐다. 하지만 여전히 장애인은 ‘불쌍한’ 사람들이고, 제도적인 복지의 수혜자일 뿐이다. 이 시기의 장애정책과 장애담론 역시 의료모델로 결을 같이 하며, 장애인을 수동적 존재로서 이미지를 표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제 4 절 의료모델 유지기 (1989~1996년)

이 시기는 장애인을 위한 독자적인 정책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시기로(곽정란, 2013:278), 이 시기를 조성은 외(2019)는 '장애정책 도입단계', 김용득(2014)과 김용득·이동석(2019)은 '제한적인 경제적 지원단계', 이성규(2011)는 '장애 대중화 초기 및 제도 정착 단계'라고 명명하였다. 이 시기의 장애정책의 패러다임은 개별적 관념론의 입장이 우세하였다(이동석, 2004). 하지만 사회적으로 정책적 실효성이 거의 나타나지 않았던 시기이다. 실질적으로 이 시기는 의료모델이 여전히 유지되는 시기로 볼 수 있다.

1. 주요 정책

이 시기의 중요한 변화는 심신장애자복지법을 1989년 '장애인복지법'으로 개정한 것과 1990년 '장애인고용촉진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것이다. 이와 같은 변화는 1987년 민주화 운동과 그에 영향을 받아 진행된 장애계 투쟁의 결과로 평가된다(김용득, 2004; 김용득·이동석, 2019; 조성은 외, 2019). 당시 장애계는 장애인 문제가 사회·환경적 문제임을 인식하고 제도 변화를 위해 투쟁하였다. 당시 많은 장애인이 생계 문제와 고용 문제[41]에 직면해있었다(김윤정, 1997)[42]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을 통해 '장애자' 명칭을 '장애인'으로 변경했으며, 장애인 등록제를 실시했다. 장애 유형은 지체, 시각, 청각·언어장애 및 정신지체(현, 지적장애)의 4개로 시작하였으며, 장애발생의 예방, 재활의료, 중증장애인의 보호, 보호자에 대한 배려, 장애인의 교육, 장애인의

41) 당시 장애인 실업은 50% 이상일 것으로 추산된다(이동석, 2003). 장애인 경제활동인구가 전체 장애인의 절반이라고 가정한다면, 고용률은 심각하게 낮은 수준일 것이며, 이는 장애인 가구의 생계에 큰 부담이 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42) 1988년 노태우 정권 당시 대통령 직속 장애자복지대책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심신장애자복지법개정, 장애인의무고용제도도입, 장애인 취업 관련 법령 정비, 장애인 수당 제도 도입, 세금 감면 제도 도입, 이용료 감면 제도 도입 등 11개 부문의 대책안에 대통령에게 제출되었다(이성규, 2011:123).

직업지도, 장애인용 주택 보급, 문화환경의 정비, 경제적 부담의 경감 등을 선언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김용득, 2004; 김용득・이동석, 2019). 초기에는 주로 저소득층에 대한 경제적 지원[43]에 한정되었으나, 점차 저소득층이 아닌 일반 장애인에 대한 경제적 지원[44]으로 확대되었다. 또한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 시설을 장애 유형이 아닌 시설의 이용 형태와 기능을 중심으로 구분하였으며, 지역사회 복지시설의 유형을 보다 구체화하였다[45]. 그 외 이 시기인 1996년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1997년 장애인 공동생활가정(그룹홈)이 국고 지원으로 설치되어 운영되기 시작했다.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의 존엄과 가치 존중과 더불어 차별금지의 원칙을 천명했다는 데에 큰 의의가 있다(조성은 외, 2019). 신설된 제3조 제2항은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 차별을 받지 아니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함을 뜻한다(조성은 외, 2019:531).

(1) 고용 부문

1990년 제정된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촉법)을 통해, '장애인 의무고용제'를 도입하였다. 고용된 근로자가 300인 이상인 사업체의 경우 그 중 2%를 장애인으로 고용하는 제도로, 2%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고용지원금 및 보조금을 지원하고, 2% 미만의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징수하게 하였다. 이에 재계에서는 "장애인 고용이 정상근로자들에게 간접적인 피해를 준다."고 비판하였으며, 1997년 IMF 경제위기 때는 더한 비판을 받아야 했다(정용관, 1998:14). 또한, 이 법이 애초 노동이 가능한 경증장애인을 위한

43) 의료비 지급, 자녀교육비 지급, 보장구 교부, 자금 대여, 생업 지원, 자립훈련비 지급, 생계 보조수당 지급 등

44) 전화요금 감면, 장애인 승용자동차 LPG연료 사용, 국공립박물관, 고궁 및 능원의 장애인 무료 입장, 철도 및 지하철 요금 50% 할인(1991), 국내선 항공료 50% 할인, 지하철 무임승차(1993년) 등

45) 장애인재활시설, 장애인요양시설, 장애인유료복지시설, 장애인이용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점자도서관, 점서 및 녹음서 출판시설

것이었기 때문에, 중증장애인이 취업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매우 어려웠다(곽정란, 2013:279; 조문순, 2001).

강필수(1994)의 자료에 의하면, 1990년대 초반 300인 이상 사업체에서 장애인 근로자 수의 비율이 0.35%로 2%의 절반에도 채 못 미치는 것으로 확인된다. 즉 상당수의 사업주가 장애인을 고용하기보다, 고용부담금을 내는 것을 더 선호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해당 법은 지방자치단체에도 적용되었는데, 1994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장애인 공무원 채용현황을 보면, 장애인 채용률이 단 0.7%로 나타나 기업보다는 다소 높았지만, 지극히 낮은 수준이었다(이성규, 2011:168-169).

(2) 교육 부문

이 시기는 장애인 교육권 확보에 대한 대중의 요구가 거세진 시기라고 할 수 있다(이성규, 2011:170). 특수교육이 조금씩 발전해왔지만, 특수교육기관이 터무니없이 부족했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요구에 따라 1994년 특수교육진흥법이 전면 개정되고, 1997년 초・중등교육법이 제정되어, 두 법률을 통해 특수학교와 특수학급 설치 규정 외에 전공과의 설치, 통합교육 등이 신설되었다. 특히 통합교육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강조하였으며, 통합교육에 대해 일반학교의 장이 응할 의무, 일반 학교에서 통합교육을 위한 편의시설과 교구를 갖출 것 등을 규정하고 있다(이성규, 2011:170-171). 이 외에도 1989년 장애 영역별 교육과정이 편성되는 등의 발전이 있었다.

또한 1995년부터 장애인의 고등교육 기회를 증진 시키기 위해서 '장애인 대학입학 특별전형' 이 실시된다. 당시 장애인들의 대학진학률이 비장애인에 비해 현저히 낮았다. 장애인들이 대학교육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그들이 전문직이나 사회 지도층에 나아가지 못해, 스스로를 대변하거나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했다. 장애인 대학입학 특별전형 도입 결과, 장애인 특별전형으로 대학에 입학한 학생 수는 1995년 113명에서 2020년 993명으로 크게 증가하였다(교육부, 2005:59; 교육부, 2020a:96).

2. 주요 토픽: 장애인 없는 장애정책

<표 2-8>과 <표 2-9>와 같이 이 시기에는 네 개의 토픽이 추출되었으며, 토픽이 장애인 고용촉진(토픽1), 사회복지시설(토픽2), 특수교육(토픽3) 등 대부분이 장애정책과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세부 기사들의 내용을 살펴보면, 그 정책이 얼마나 유명무실했는지 실감할 수 있다.

<표 2-8> 1989~1996년 장애인 관련 기사의 토픽별 키워드(15위까지)

	Topic-1	Topic-2	Topic-3	Topic-4
1	고용	복지	시각장애	복지
2	대회	시설	학교	사회
3	올림픽	사회	교육	자원
4	촉진	전용	특수	봉사
5	전국	차량	사람	오후
6	복지	방문	청각장애	사랑
7	공단	전화	사랑	종합
8	체육	무료	방송	행사
9	이사장	노인	대학	봉사자
10	오후	재활	점자	교육
11	회장	성금	컴퓨터	회장
12	개최	전달	학생	부모
13	재활	지하철	맹인	노인
14	협회	건립	신체	어린이
15	국제	아파트	뇌성마비	단체

<표 2-9> 1989~1996년 장애인 관련 기사에 부여된 토픽 명

	토픽 명	비중 (N=1241)
토픽 1	장애인 고용 촉진, 장애인 스포츠, 재활협회의 국제활동	24%
토픽 2	사회복지시설, 장애인 전용, 재활 성금 전달	23%
토픽 3	시청각장애인, 특수교육, 정보화	25%
토픽 4	사회복지, 자원봉사, 시민운동	28%

"기업체들의 장애인 고용상황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장애인고용촉진법으로 3백명이상 고용 사업장에 대해 장애인고용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기업체들은 장애인 고용을 기피하고있다." - 중앙일보 (1996/04/21) " "'장애인 2% 고용' 지킨곳 11%뿐"

“경기도 포천 산정호수 입구의 공중화장실. 장애자표시만 있지 전용통로는 없다.” - 중앙일보 (1990/10/04) “ “말로만 장애인 용” ”

“김 회장은 『정부가 장애인들에게 지하철 요금을 무료로 해주는 것보다는 지하철을 탈 수 있도록 리프트시설 등을 마련해 주고 공공건물 등의 계단이나 문턱을 장애인도 드나들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 중앙일보 (1992/12/01) “「장애」의 좌절 부부애로 극복”

그리고 이 시기부터는 비장애인의 외부적 시선보다는 장애인 스스로의 목소리를 내는 기회가 많아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장애인들은 스스로를 더이상 불쌍한 타자가 아니며, 비장애인과 다르지 않고 오히려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존재임을 보여주고자 노력하고 있다.

“청각장애로 인한 좌절과 고통을 딛고 일어서 이제는 어엿한 문인으로 자리 잡은 한 여성이 있다. 86년 첫수필집 『몸으로 우는 사과나무』에 이어 올해 두번째 수필집 『그대 피어나라 하시기에』를 낸 심숙자씨(51). 첫 수필집 발간 후부터 고뇌 속에서 방황하는 많은 독자들의 편지를 받고 있다는 심씨는 자신의 글이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세상을 보다 따뜻하게 하는데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며 소박한 웃음을 지었다.” - 중앙일보 (1990/10/04) “ “내 작품 고통받는 사람들에 위로됐으면…” ”

“중증의 신체장애자들도 일반인들 못지 않은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생에 대한 밝은 희망속에 살 수 있음을 보여주려고 노력하는 불수레 사랑나눔회(회장 김인희). 「부부의 뜨거운 사랑을 수레바퀴 삼아 인생을 헤쳐나간다」는 의미로 이름지어진 이 모임은 신체 장애를 극복, 부부애가 충만한 가정을 가진 4백70여 장애인부부가 회원이다.” - 중앙일보 (1992/12/01) “「장애」의 좌절 부부애로 극복”

이 시기 장애계는 민주화에 동참하면서, 사회적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고 그 결과 장애관련 법안이 본격적으로 제정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 실효성이 거의 없었음이 장애인 관련 기사를 통해 명확히 드러난다. 장애인에 대한 차별 금지를 활자화했지만, 생활세계에서의 차별과 배제는 여전했다. 한편 이러한 문제제기 역시 장애인 스스로의 목소리를 통해서였다는

것이 이전 시기와의 차이점이다. 여전히 사회적 인식과 물리적 환경은 장애 배제적이고 장애의 문제를 개인에게 귀속시키는 의료모델이 지배적이었지만, 장애인의 의식은 이러한 인식과 환경에 대한 변화를 촉구하고, 사회의 주체로서 스스로를 조금씩 드러내기 시작했다. 장애정책과 장애담론은 사회모델을 향해 진일보한 한편, 사회적 의식과 물리적 환경은 여전히 의료모델에 머무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제 5 절 사회모델 도입기 (1997~2006년)

장애의 문제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문제로 인식되기 시작한 시기로,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강조하면서 '제1차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이 수립되는 등 장애운동의 이론적 목표였던 사회모델이 실질적 정책으로 구체화 되기 시작한 시기이다. 김용득(2004)과 김용득·이동석(2019)은 이 시기를 제한적 사회적 지원 시기, 이성규(2011)는 장애 대중화 성숙 및 제도 발전 단계, 조성은 외(2019)는 장애정책 확대단계 및 장애인 인권 증진을 위한 사회보장 도입 시기라고 명명하고 있다. 또한 허준기(2022)는 이 시기부터 본격적인 사회적 모델이 한국의 장애정책에 적용되기 시작하였다고 보고 있다. 이동석(2004)은 이 시기를 사회적 생성주의가 우세한 시기로 보고있다. 이 시기에는 1998년 12월 '한국장애인인권헌장'이 제정 및 공포되었으며, 1999년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 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는 등의 변화가 있었다.

1990년대 사회적 모델의 등장 이후, UN을 중심으로 장애인 권리선언이 지속되었으며, 그중 대표적인 것이 UN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EXCAP)가 '아·태 장애인 10년(1993-2002)'을 선포한 것이다. 여기서 '장애인의 완전한 참여와 사회통합'이라는 구호가 제기된다. 즉 '사회통합'이 장애운동과 정책의 화두로서 등장한다.

국민이라면 갖는 모든 권리를 장애인도 가져야 한다는 의식이 고양되면서, 장애인 단체들은 시민단체와 국제단체와의 연대를 통해 외연을 확대하였고, 운동의 내용도 생계보장의 차원을 넘어 다양한 권리의 보장으로 확대되기 시작했다(김용득, 2004; 김용득·이동석, 2019). 장애계는 기존의 복지서비스, 고용, 특수교육에 국한되었던 운동의 범위를 참정권 확보, 편의시설 확충, 지역 정치 참여, 일반교육에서의 차별 철폐, 복지시설의 투명한 운영 등에까지 확대한다.

이러한 배경에서 1998년 국무회의 의결을 대통령이 서명한 '한국장애인인권헌장'이 제정 및 선포된다. 인권헌장은 "장애인이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와 장애인의 사회참여, 평등을 통한 사회통합의 원칙을 제시하

고, 일반 시민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기본 원리”를 제시하였다(조성은 외, 2019). 그러나 “선언적 규정이었을 뿐 국가행정에 어떠한 규제도 가하지 못했기 때문에, 현실에 반영되지는 못하였다”(조문순・이동석, 2012; 조성은 외, 2019 재인용).

1. 주요 정책

이 시기에 가장 큰 변화는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46]’의 실시이다. 이는 주기적으로 장애정책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정책의 통합성을 추구함을 뜻한다(조성은 외, 2019). 1998년부터 2002년 보건복지부, 교육부 및 노동부가 참여하여 ‘제1차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이 실시되었으며. 이는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보장’과 ‘가족, 이웃, 지역사회가 장애인과 함께하는 복지실현’을 목표로 복지 확대, 특수교육 강화, 고용촉진을 추구하였다(보건복지부, 1998; 이성규, 2011:191). 이어서 ‘제2차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이 2003년부터 2007년 보건복지부, 교육인적자원부, 노동부, 정보통신부, 건설교통부가 참여하여 추진되었다. 이는 ‘장애인이 대등한 시민으로 참여하는 통합적 사회실천’을 목표로, 장애정책의 범위를 복지향상, 특수교육 강화, 고용 확대, 정보화 증진, 이동편의 확충, 사회적 인식 개선으로 확장(보건복지부, 2003; 이성규, 2011:192)하였다.

1999년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의 정의를 변경하여 장애 범주를 확대했으며[47], 장애인에 대한 사회경제적 지원을 점차 강화하였다(김용득, 2004; 김용득・이동석. 2019; 조성은 외, 2019). 장애인의 정보접근권 확보를 위한 “수화통역, TV자막, 점자 및 음성도서 등의 제공, 장애유형별 재활서비스 제공, 장애인 생산품의 구매, 재활보조기구의 개발・보급 등의

46) 주요 내용은 <표 3-2> 참조.

47) 2000년부터 뇌병변장애, 발달장애(현, 자폐성장애), 정신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가 추가되었고, 2003년부터 호흡기장애, 간장애, 안면장애, 장루・요루장애, 간질장애(현 뇌전증장애)가 추가되었다. 그리고 2003년 기존 청각・언어장애가 청각장애와 언어장애로 분리되면서 현재의 15개 장애 유형이 되었다(조성은 외, 2019).

시책 시행, 장애인 사용 자동차에 대한 지원, 장애인 보조견의 훈련 및 보급 지원, 장애아동 부양수당 지급에 대한 규정 등” 을 마련하였다(김용득, 2004; 김용득・이동석. 2019; 조성은 외, 2019). 각종 공공요금 할인・감면 등 경제적 지원도 추가되었다.

1997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이 제정된다. 신규 민간 시설의 경우 이 법의 적용을 받았으나, 이미 지어진 시설의 경우에는 적용을 받지 않았고, 공공기관의 경우 7년 이내에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여 급격한 개선은 없었다. 하지만 공공기관 경사로 설치, 장애인 전용 주차장 등은 효과를 거두었다(김용득, 2004; 김용득・이동석, 2019). 1999년에는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양팔 장애인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김용득, 2004; 김용득・이동석, 2019).

2001년 당시, 전체 역사 366곳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곳은 78곳(21.3%)에 불과하였고(장애인 이동권 쟁취를 위한 연대회의, 201:51), 오이도역 리프트에서 추락 사망사고[48] 가 발생하는 등 장애인의 이동권이 보장되지 않았었다. 하지만 오랜 기간 장애계(예. 장애인 이동권 쟁취를 위한 연대회의)의 투쟁 끝에 서울시는 시 예산을 들여 2024년까지 모든 역사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것을 약속했다[49].

(1) 고용 부문

장애계의 장애인고용 촉진에 대한 요구는 점점 커졌지만, 장애인의 고용률은 1990년 제정된 고촉법의 시행 초기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이성규, 2011:205). 특히, 기존의 고촉법이 경증장애인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에 따라, 중증장애인의 고용이 매우 어려웠다. 이 시기에는 중증장애인과 장애여성 고용에 대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기 시작하였다(이성규, 2011:205). 고촉법은 1999년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직재법)’ 으로 전면 개정되었다. 직재법의 주요 내용은 “보건복지부가 노동부

48)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료관 오픈아카이브 (2022) (https://archives.kdemo.or.kr/contents/view/341)

49) 서울시의 경우 2022년 현재, 22개의 역사에 엘리베이터 설치가 되지 않았다(서울교통공사, 2022) (https://mediahub.seoul.go.kr/archives/2003672).

와 함께 장애인 직업재활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 지역사회 중심 직업재활센터 설치, 사회통합 지향적 고용의 확대, 중증장애인을 위한 직업재활과정을 강조” 등이다(이성규, 2011:206). 장애인 공무원이 1만 명에 이르기까지 공무원 공개채용 비율을 5%로 상향 조정하였고, 중증 및 장애여성을 우대하며 장애인에 대한 창업자금을 지원할 수 있게 하였다(이성규, 2011:206). 그러나 여전히 중증장애인의 고용이 미흡했고, 관리체계가 이원화됨에 따라 혼란의 측면도 없지 않았다(이성규, 2011:205-206). 또한, 2002년 개정에서는 의무고용대상 사업체가 300인 이상에서 50인 이상으로 범위가 확대되었고, 2005년 법 개정에서는 경찰, 소방직 등을 제외하고 정부부문의 의무 고용 적용제외율을 단계적으로 폐지하였다(이성규, 2011:206).

(2) 교육 부문

이 시기에는 장애아동에 대한 무상교육이 실시되고, 학교 내 편의시설이 갖추어지기 시작하였다. 2004년 3월부터 일반 유치원에 만 3세 이상의 장애유아가 공・사립 유치원에 들어갈 경우 매월 20만 원씩 학비가 지원되었으며, 2003년 ‘특수교육 발전 종합계획(2003~2007)’에 의거하여 2004년부터 “일반학교 내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지역교육청 단위별 특수교육지원센터 설치・운영 등을 위한 지원을 확대해 모든 장애아동이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교육을 무상으로 받을 수 있게 하였다(이성규, 2011:216-218). 또한, 2008년까지 ‘특수학교 시설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였다(이성규, 2011:216-218).

또한 “장애인 교육권에 대한 대중적 요구가 거세진 시기”라 할 수 있다(이성규, 2011:216). 2001년 ‘특수교육 요구아동 출현율 조사’에 따르면 6세에서 11세까지의 장애아동 중 특수교육을 받고 있는 아동은 39%로 나머지 61%의 장애아동이 일반학교에 재학 중인 것으로 조사되었다(이성규, 2011:216). 따라서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대책 마련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된다(이성규, 2011:217).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이 시기에 ‘장애인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정이 추진된다.

2. 주요 토픽: 적극적 행위 주체로서의 등장

<표 2-10>과 <표 2-11>과 같이 이 시기 발간된 신문기사에서 추출된 토픽은 다섯 개로, 동정과 연민의 시선은 사라졌고, 기사의 주제가 '시청각장애인의 커뮤니케이션(토픽2)', '정보화(토픽4)' 등으로 다양화된다.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깨는 다양한 사례들이 등장하기 시작했고, 장애인 스스로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나서고 이 같은 행위가 사회적 관심을 받기 시작한다.

<표 2-10> 1997~2006년 장애인 관련 기사의 토픽별 키워드(15위까지)

	Topic-1	Topic-2	Topic-3	Topic-4	Topic-5
1	학교	청각장애	시각장애	정보	노인
2	교육	사랑	개발	대회	복지
3	특수	시각장애	전용	시각장애	고용
4	정신	사람	보험	올림픽	봉사
5	아동	무료	복지	지원	지원
6	재활	소리	성공	휠체어	단체
7	학생	방송	인간	인터넷	자원
8	대학	문화	사람	선수	정부
9	시각장애	오후	휠체어	복지	기자
10	시설	이웃	영화	차량	정책
11	치료	행사	시설	전국	생활
12	복지	공연	판매	기업	대통령
13	병원	수화	삼성전자	서비스	내년
14	초등	어린이	불편	통신	위원회
15	지체장애	청각	복제	벤처	의원

<표 2-11> 1997~2006년 장애인 관련 기사에 부여된 토픽 명

	토픽 명	비중 (N=916)
토픽 1	특수학교 장애아동 교육 및 재활, 장애대학생 등	24%
토픽 2	시청각장애인 커뮤니케이션-방송, 수어, 점자 등	22%
토픽 3	장애인을 위한 기업의 기술 개발	15%

1995년 장애인 특례 입학 제도가 실시된 이후, 대학 입시에서의 장애인 차별은 완화된다. 이하 기사는 한 서울대 장애대학생에 대한 기사인데, 이에 기자는 그를 '만나기 까다로운 보통 대학생'으로 묘사하며, 장애인에 대한 그간의 편견을 깨는 사례로 그를 소개한다.

> "김○○(23.서울대 사회학과 3학년)씨는 만나기 까다로운 보통 대학생이었다. 그는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1급 장애인이다. '서울대에 다니는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도 과거에 언론의 취재요청을 받은 경험이 몇 차례나 된다.(……) 그래도 몇 군데 취재를 온 측에서는 굳이 오르막길을 휠체어로 가보라며 사진을 찍었고, 요로결석 때문에 며칠간 고생했었다는 고교 시절 기숙사 사감의 한 마디 말은 '역경을 딛고 일어난 장애인 일화'로 포장했단다." - 중앙일보 (2006/05/05) " " '장애인+서울대생'=일반인 될 줄 알았는데..." "

또한, 이 시기부터 언론은 장애인(혹은 장애인 가족, 단체)을 그들의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적극적 행동하는 행위 주체로서 등장시킨다.

> "장애를 이유로 딸의 유치원 입학을 거부 당한 아버지가 해당 유치원과 교육 당국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했다." - 중앙일보 (2002/10/07) " '유치원 장애아 거부' 진정"

> "대구 동구청이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아양교(동구 입석.효목동)에 설치된 아치형 보도의 철거 등을 권고받고도 1년 넘게 이행치 않아 장애인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대구장애인연맹(DPI) 등 장애인 3개 단체는 "동구청이 국가인권위의 권고를 무시, 아양교의 시설 개선을 하지 않고 있다"며 5일 동구청 출입구에서 1인 시위를 벌였다." - 중앙일보 (2006/02/18) " "아양교 아치형 보도 철거하라" "

이 시기 이루어진 사회모델로의 진입은 외부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장애인 개인 및 단체들의 적극적인 행위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형식적으로 제도화된 자신의 권리를 현실화하기 위해, 장애인은 스스로 세상의 편견을 깨고 나왔고, 적극적으로 권리구제장치인 국가인권위원회를 활용하여, 권리의 정당성과 권리의 현실화를 쟁취하고자 분투하였다. 정책만으

로는 이러한 장애인 스스로의 적극적 행위가 생략되어 있었다면, 장애담론에서 표상된 장애인의 행위성을 통해 그들이 스스로 권리를 가지고자 하였고(권리의 수행성), 그것이 물리적 환경에 반영되어 사회모델로의 이행을 주도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제 6 절 사회모델 강화기 (2007년 이후)

> “21일 오전 전국 장애인 차별 철폐 연대가 장애인 인권 개선을 촉구하며 도심 행진을 벌이면서 충정로 10개 차로를 점거했다. (……) 전국 장애인 차별 철폐 연대는 이날 행진을 통해 장애 등급제·부양의무제·수용시설 등을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장애 등급제를 없애고 장애인 각자의 욕구와 선택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받아야 하며, 국가가 부양의무제로 장애인 부양 의무를 가족에게 떠넘기고 있다는 주장이다.” - 중앙일보 (2017/04/21) ““장애등급제 폐지하라“ 행진 …대선 후보 캠프로 ’진격’”

2007년 이후, 장애계는 급진적으로 변화한다. 장애인의 돌봄과 부양의 일차적 책임은 여전히 개인과 가족에게 있었으며, 가족이 돌볼 수 없는 장애인은 여전히 시설에 수용될 수밖에 없었다. 이에 장애계는 2012년 장애인에 대한 부양과 돌봄 책임이 가족화되어 있는 것(부양의무제)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2021년부터는 장애인의 전적인 탈시설화를 위한 투쟁에 나선다.

1. 주요 정책

제도적으로 이 시기는 “장애 대중의 권리의식 증대와 편의시설 확충”되고, “장애의 사회적 모델과 자립생활모델이 장애계에 퍼짐에 따라 장애인차별금지 및 자립생활 실천을 위한 방안 마련”되어가는 시기(김용득·이동석, 2019)로, 이다. 곽정란(2013)은 이 시기에 비로소 “중증장애인이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되었다고 했으며, 김용득·이동석은 이 시기를 ‘경제적 및 사회적 지원의 파면적 확대 단계’, 이성규(2019)는 ‘장애 대중화 성숙 및 제도 발전 단계’, 조성은 외(2019)는 ‘장애정책 내실화 단계’ 및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 증진 제도화 시기’라고 명명하였다. 또한, 사회적 구성주의의 입장에서 장애가 한국사회에서 사회적 낙인이나 일탈로 여겨지지 않게 하도록, 인권교육 등을 통해 문화적 측면에서도 활발히 장애 운동이 펼쳐졌다(이동석, 2004). 이 시기의 주요 제도적 발전으

로는 2007년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의 제정, 2008년 UN ‘장애인 권리협약’ 비준, 2010년 장애인연금제 도입, 2011년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정이다.

2007년 제정된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김용득・이동석, 2019). 이 법은 다수의 장애인 단체들의 노력에 의해 제정된 것으로, “장애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장애라는 현상에 주어지는 차별을 문제 삼은 최초의 법률”로서 의의를 지닌다(유동철, 2010:234; 곽정란, 2013:280에서 재인용). 부산의 활동가, 학자, 법률가를 중심으로 한 ‘열린네트워크’에서 법안을 마련하였고, 서울의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에서도 2002년 법안을 마련하였다. 2003년 4월 두 법률안을 갖고, 58개 단체가 모여 연합조직인 장애인차별금지법추진연대를 조직하여, 통합법률안을 만들어 법률제정 운동을 펼쳤다. 그러나 법 제정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에 대한 차별은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재원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정당한 편의 제공도 획기적 진전이 없었다(곽정란, 2013:180).

2016년 UN은 “장애인이 모든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완전하고 동등하게 향유하는 것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50개 조항으로 이루어진 ‘장애인 권리협약’을 채택한다. 한국은 2007년 이에 서명하였고, 2008년 국회에서 이를 비준한다. 그러나, 상법 제732조[50]와 충돌한다는 이유로, 권리협약 25조 (e)항의 비준을 유보하였다. 또한 장애인이 인권 침해를 당했을 때, 국내법으로 구제가 안 될 경우, UN 장애인권리위원회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18개 조항으로 이루어진 선택의정서는 비준 13년 만인 2021년 4월이 되어서야, 국무회의에서 통과된다.

2000년도에 들면서 중증지체장애인을 중심으로 한 자립생활운동이 본격화되면서, 장애계는 활동보조서비스 제도를 실시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기 시작했다. 이에 “2007년 4월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하여 자립생활에 대한 장을 신설

50)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로 한다.”

하고 활동보조서비스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장애등급 1급 및 이에 준하는 최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 활동보조사업을 실시”하게 되었으며, 2007년 4월 ‘노인장기요양법’ 통과, 64세 이하 이하의 장애인에 대해서도 장기요양서비스 대책을 마련하도록 결의한다(김용득・이동석, 2019). 2011년 1월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2011년 10월부터 장애인활동지원제도가 전국적으로 도입된다.

2010년부터는 장애인연금 제도가 시행된다. 1988년 도입된 장애연금이 소득비례연금의 성격이라면, 장애인연금은 기초연금의 성격으로, 장애인에 대한 공적 연금에서의 다층체계가 구축되었다(조성은 외, 2019). 이는 기존 장애수당을 포함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소득보장 급여의 성격을 명확하게 나누는 계기가 되었다(조성은 외, 2019). 그러나 장애수당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해 실효성에 의문 제기된다(김용득・이동석, 2019).

‘제3차 장애인정책발전 5개년 계획(2008~2012년)’은 계획의 범위가 범정부 차원으로 확대되어 9개 중앙부처가 참여(관계부처합동, 2008)하기 시작했고, 이후 제4차 계획부터는 ‘장애인정책종합계획’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5년마다 종합계획이 수립되고 있다(관계부처합동, 2013; 2018)[51].

이 시기 장애등록・등급제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 시작되었다(조성은 외, 2019). 기존의 장애 등급제는 의학적 기준에 의해 장애를 판정하고, 이를 등급화하여 급여・서비스를 연계하는 구조로서 초기에는 제도의 확대 및 급여 전달의 효율화에 기여했지만, 최근에 들어서는 낡은 패러다임으로 취급, 장애인의 다변화된 욕구에 부합하지 않는 체계로 평가되었다(조성은 외, 2019). 장애등급제는 UN으로부터 지속적으로 폐지 권고를 받아(김형식・우주형・권오용・유경민・권순지・박규영, 2019:11), 2007~2009년 ‘장애인복지 인프라 개편사업’으로 이어졌지만,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지 못한 채 시범사업과 연구가 지속, 장애계와 정부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다가 2018년 ’제5차 장애인정책 종합계획’에 들어서야 장애등급제 폐지 시점 공식화되고 2019년 7월에 장애등급제 폐지된다(조성은 외, 2019).

51) 상세한 내용은 <표 3-2> 참조.

(1) 고용 부문

제2차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에서 가장 실적이 미흡했던 부분이 고용 부문이다. 장애인 고용율은 2000년도 43.4%에서, 2005년 43.8%로 단 0.4%p 상승했다(이성규, 2011:272). 고용된 장애인 중 중증장애인의 비율은 18.5%로 등록장애인 중 중증장애인 비율인 42.0%에 훨씬 못 미쳤다(이성규, 2011:272). 또한 근로자 50인 이상 기업중 장애인 의무고용율 2%를 지키고 있는 기업은 50.9%에 불과했다(이성규, 2011:272-273).

장애인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정부는 제3차 장애인 정책발전 5개년 계획을 통해, 장애인 고용환경 개선과 고용확대, 장애인 기업활성화 및 창업 촉진, 장애인 직업재활 및 직종 개발, 장애인 생산품 판매 활성화 등의 방향을 제시하고 추진하였다(이성규, 2011:273). 이후 제4~5차 장애인 정책발전 5개년 계획에서도 이러한 기조는 바뀌지 않았으며, 장애인 의무 고용율 상향조정, 공공형 장애인 일자리 확대,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 확충, 중증장애여성 등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단가 인상 등 장애인 고용률을 향상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허준기, 2022:185-188).

(2) 교육 부문

이 시기 특수교육영역에 있어 가장 큰 성과는 2021년 ‘장에인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제정된 것이다. 종래의 특수교육진흥법의 큰 문제점은 그 대상이 초・중등에 한정됨에 따라 장애영유아교육, 고등교육 및 성인교육 영역이 소외되었다는 것이다(이성규, 2011:218). 또한 통합교육을 위한 교육적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장애학생이 교육권을 침해받아도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이 없었다(이성규, 2011:219).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제정된 장애인에 대한 특수교육법은 의무교육 과정을 유치원에서 고등학교까지 확대했으며, 각 대학에 장애학생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장애대학생의 학습의 편의를 제공하도록 했다. 그리고 장애성인의 평생교육시설을 국가와 지자체가 설치 및 운영하도록 하였다. 장애학생의 입학을 거부하거나 장애를 이유로 차별하는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이성규, 2011:226).

<표 2-12> 제1차-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실행 결과

분야별 성과	1차(98-02)	2차(03-07)	3차(08-12)	4차(13-17)	5차(18-22)
종합	발전주의의지속	사회적 시민권 기본토대 마련	사회적 시민권 표면적 확대와 부실함의 공존	계획과 실행 불일치의 문제해결 시도	장애인 당사자주의 강화
슬로건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 보장	장애인이 대등한 시민으로 통합적 사회 실현	장애인의 권리에 기반을 둔 참여 확대와 통합사회 구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	장애인의 자립생활이 이루어지는 포용사회
중간 목표	• 복지 확대 • 특수교육 강화 • 고용 촉진	• 복지향상 • 특수교육 강화 • 고용 확대 • 정보화 증진 • 이동 편의 확충 • 사회적 인식 개선 • 추진체계 및 정보 통계 인프라 구축	• 장애인복지 서비스의 선진화 구현 • 장애인 생애주기별 교육지원체계 구축 및 문화 활동 확대 • 장애인이 일할 수 있는 사회 실현 • 장애 통합적 접근으로의 사회참여 확대와 장애인 권익증진	• 장애인복지·건강서비스 확대 • 장애인 생애주기별 교육 강화 및 문화·체육 향유 확대 • 장애인 경제자립기반 강화 • 장애인의 사회참여 및 권익증진	• 복지·건강 지원 체계 개편 • 경제적 자립기반 강화 • 사회참여 활성화 • 권익 및 안전 강화 • 교육·문화·체육 기회 보장
실행과 계획 불일치 정도	구체적 예산확보 계획의 부재 속 미이행 계획 다수	예산 계획 제시했으나 확보 정도가 작아 이행 정도가 낮음.	활동보조 서비스 등 정책 내실화 부실	성과지표 개발, 중간 평가 시행으로 불일치 정도 줄이려 했으나 체감 정도 낮음.	-
장애인 소득 보장	• 각종 세제 감면 확대를 위주로 생활 안정 지원	•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부양수당 지원 대상 확대하고 금액도 인상	•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장 지원을 위한 장애인 연금제도를 도입	•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를 2배 수준 인상하고 지원 대상을 확대	• 장애인연금 조기 인상 • 중증장애인 기초생활생계급여

분야별 성과	1차(98-02)	2차(03-07)	3차(08-12)	4차(13-17)	5차(18-22)
			• 장애인연금제도 도입 후 수급자 확대		수급자 가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대상 장애인연금 기초 급여액 인상
장애인 고용 보장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기금을 활용하여 중증장애인을 위한 직업재활서비스 제공 • 국가·지자체 및 기업에 대한 장애인 고용의무 부과, 장애인용 작업·편의 시설 설치 지원	• 장애인에게 적합한 근로환경을 완비한 장애인중심의 표준사업장 고용모델 도입 • 고용의무사업체 범위 확대 • 민간부문 적용 제외 직종 폐지, 정부부문 적용제외 직종 축소	• 장애인 의무 고용률 상향조정	• 장애인 의무고용률 상향조정 • 공공형 장애인 일자리 확대,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 확충 등을 통해 장애인 취업 기회 확대	• 노동시장에서 어려움이 큰 중증장애여성 등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단가 인상
장애인 복지 · 건강	• 장애 범주 확대로 복지대상 인구 증가하고 장애인 복지 예산도 증가 • 장애 발생 예방 시책 강화	• 법정 장애에 내부 장애를 포함하여 10종에서 15종으로 확대	• 장애인 정책의 체계적 틀 구축과 대상자 및 수급 범위의 전반적 확대로 장애인 복지 예산의 지속 증가	• 장애등급제 폐지 위한 법 개정 • 장애인 복지 급여 수준 및 대상자 확대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정	• 시군구 장애인 전담 민관협의체와 읍면동 장애인 중심 맞춤형 전달체계 구축

분야별 성과	1차(98-02)	2차(03-07)	3차(08-12)	4차(13-17)	5차(18-22)
장애인 교육 · 문화	• 장애인 특수학교 증가	• 장애인 등에 관한 특수교육법 제정 • 특수교육대상 장애 범위 확대	• 특수교육 대상자 유치원 및 고등학교 과정 의무 교육 실시	• 특수학교(학급) 신·증설, 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대율 제고	• 특수학교 및 학급 확대
		• 장애아 무상 보육료 지원 실시 • 문화바우처 사업을 통한 문화·예술 관람 기회 확대 • 문화예술교육 실시 및 공공문화시설·영화관 등 편의시설 설치	• 장애아동복지 지원법 • 문화바우처 사업의 지속적인 확대를 통한 문화 예술 향유 기회 확대 및 삶의 질 제고	• 전공과 확대를 통해 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 강화 • 장애아동 발달 재활 서비스 및 장애아 가족 양육 지원 서비스 대상 확대	• 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 활성화 방안 수립·발표 • 저소득층 장애인 등의 문화 활동 기회 확대를 위해 문화누리카드 지원금 및 지원 인원 확대
장애인 권익 · 사회 참여	• 장애인시설의 확충 및 재활시설과 이용시설의 연계를 통한 전문 재활 프로그램 제공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을 시행 • 편의시설 확충 국가종합 5개년 ('00~04')을 수립 • 장애인정보화교육장 및 복지관 등에서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제정 • 활동보조서비스제도 도입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 제정 • 여성장애인 대상 여성발전기본법 개정 • UN장애인 권리협약 서명	•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지원 및 가족수발자 부양부담 경감을 위한 장애인 활동 지원제도 도입 • 발달장애인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기반 구축	• 한국수화 언어법, 점자법 제정 • 활동지원 서비스 수급자격 확대 • BF인증 법적 근거 마련 및 인증 의무화로 편의시설 확대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 장애인권익 옹호기관 설치 및	• 장애인 활동지원 시간 확대 •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도입으로 서비스 지원 대상 확대 및 서비스 이용자 증대 • 교통약자 등 이용 편의성이 높은 저상버스 및 특별 교통수단 도입 지속 확대 • 발달장애인 주간

분야별 성과	1차(98-02)	2차(03-07)	3차(08-12)	4차(13-17)	5차(18-22)
	정보화 교육	• 「장애인권리협약」 안에 여성장애인 별도 조항 신설 • 정보격차해소에 관한법률 개정		학대 피해 장애인 쉼터 확충 • 성폭력 피해 여성장애인의 의사소통 지원 등을 위한 진술 조력인 제도 도입	활동·방과 후 활동 서비스 시행 및 지원 확대 • 장애인 학대 가중처벌 근거 마련 등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개정

자료: 허준기(2022: 185-188)

2. 주요 토픽: 장애인 인권개념의 등장과 투쟁의 본격화

(1) 장애인 인권개념의 등장 (2007~2012년)

<표 2-13>과 <표 2-14>와 같이 이 시기 장애인 관련 기사에서는 5개의 토픽이 도출되었고, 특히 장애인의 '인권'이 사회적 관심을 받기 시작했다. 2005년 발각된 청각장애특수학교인 광주인화학교에서 발생한 학대 사건이 2011년 개봉한 영화 '도가니'를 통해 사회의 주목을 받았고, 이후 전국의 장애인 복지시설과 인권실태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다. 이에 비로소 사회적으로 가려졌던 장애인 학대나 인권침해에 대한 다수의 보고가 발견된다.

<표 2-13> 2007~2012년 장애인 관련 기사의 토픽별 키워드(15위까지)

	Topic-1	Topic-2	Topic-3	Topic-4	Topic-5
1	시각장애	고용	올림픽	복지	시각장애
2	학교	지원	시각장애	시설	교육
3	중국	채용	대회	사회	교통
4	천광청	공단	문화	재활	판사
5	인권	일자리	전국	아동	지원
6	사건	기업	수화	어린이	충남
7	영화	브리핑	학생	봉사	서비스
8	성폭행	센터	나사렛	지체장애	휠체어
9	지적장애	올림픽	스포츠	가족	노인
10	여성	취업	학교	병원	브리핑
11	변호사	시각장애	행사	치료	약자
12	도가니	올해	체육	노인	센터
13	청각장애	삼성	오후	지원	정책
14	시간	선수	청각장애	브리핑	천안
15	인화	카페	사랑	활동	운전

<표 2-14> 2007~2012년 장애인 관련 기사에 부여된 토픽 명

	토픽 명	비중 (N=555)
토픽 1	중국 시각장애인 인권변호사 천광청, 여성 지적장애인 성폭행, 영화 도가니(광주 인화학교 사건)	19%
토픽 2	장애인 고용 공단의 기업의 장애인 채용 지원, 장애인 올림픽	20%
토픽 3	장애인 스포츠, 나사렛대학교	20%
토픽 4	장애아동 재활을 위한 사회복지시설, 장애아동 가족지원	24%
토픽 5	시각장애인 최영 판사, 중증장애인 교통지원(장애인 콜택시), 교육지원	17%

"광주광역시 서구의 한 장애인시설. 지적 장애인 1~2급인 중증장애인 26명이 생활하고 있다. 이곳에서 뇌병변장애(1급)를 앓고 있는 유모(17)양은 지난 8년간 가로 1m, 세로 1.7m, 높이 1.5m 크기의 철장에 갇혀 지내야 했다. 철장은 한 사람만 누울 수 있는 크기로, 철제 난간은 청테이프로 감싸져 있었다. 유양은 밥을 먹거나 치료를 받을 때만 이곳에서 나올 수 있었다." - 중앙일보 (2012/02/02) ""1mX1.7m 철장서 8년 갇혀 산 장애인""

"해양경찰청은 최근 수년동안 지적장애인 수십명을 섬 양식장 등지에 팔아넘기거나 어선에 강제로 태워 일을 시키고 임금을 착취해 온 일당 11명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 - 중앙일보 (2012/04/10) "19세 장애인 여관으로 유인해 30년을 강제로…"

한편, 장애인 고용(토픽2)에 대한 주제가 지속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는데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전 시기에 비해 약간 진전된 듯한 모습을 보인다.

" '2010 서울시 장애인 취업박람회' 가 18일 지하철 3호선 학여울역 인근 서울무역전시컨벤션센터(SETEC)에서 열린다. 올해 7회째인 취업박람회는 서울시가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함께 주최한다. 금융회사·대기업, 유망 중소기업 등 250여 업체가 참여해 사무직·생산직·단순노무직 등 1000여 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 중앙일보 (2010/10/15) "18일 장애인 취업박람회"

한켠에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사이의 물리적, 문화적 장벽 허물기 위한 시도도 이루어졌다.

> “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없애기 위해 학교 담장을 허물었습니다.“ 28일 오후 대전시 동구 가오동에 있는 혜광학교(정신지체 장애인 학교)와 가오초등학교 경계 부지. 가오초등학교 박지하(54) 교장은 두 학교를 가로막았던 담장을 없앤 이유를 이렇게 말했다.” - 중앙일보 (2007/05/30) ““담장 허무니 편견도 와르르“”

이 외에도 장애인 스포츠와 관련된 주제(토픽2, 토픽3)가 꾸준히 등장하고 있고, 장애인에 대한 다양한 지원(토픽4, 토픽5)과 장애라는 보이는 천장을 허문 사례(토픽5의 시각장애인 최영 판사) 등이 주제로 등장하였다.

(2) 장애 혐오와의 투쟁 (2013~2017년)

이 시기의 장애관련 신문기사의 토픽모델링 결과는 <표 2-15>와 <표 2-16>과 같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이 개최됨에 따라, 이 시기에는 장애인 동계 스포츠(토픽1)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뜨거웠다. 그리고 여전한 장애인 인권침해(토픽2),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한 님비현상(토픽3), 그 외 잔여적 주제들(토픽4)로 기사들이 구성되었다.

영화 도가니 개봉 이후, 장애인의 인권 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었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국가적 개입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2013년에서 2017년 시기에도 지속적으로 시설에서의 장애인 인권침해 사례가 보고된다.

> “영화 ’도가니’의 배경이 된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으로 폐쇄된 장애인시설을 떠나 새로운 곳에서 지내던 장애인들이 인권을 침해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 중앙일보 (2017/03/21) ““’인화학교 폐쇄’ 옮겨진 장애인시설서도 인권침해“”

그리고 장애인에 대한 혐오가 노골적으로 드러난 시기이기도 하다. 특수학교가 지역 혐오시설로서 여겨지며, 특수학교 신설을 반대하는 님비 현상이 나타났다.

> “서울 강서구 가양동에 장애인 특수학교를 신설하는 문제로 지난 5일 지역주민과 학부모들이 충돌했다. 이날 주민 토론회에서 장애인 부모 20여 명이 무릎을 꿇고 “장애아들도 학교는 가야 하지 않겠느냐”면서 눈물로 호소했다. 특수학교가 들어서면 집값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 반발의 주원인이었다. 무릎 꿇은 장면이 SNS를 통해 확산하면서 사회에 만연한 장애인 혐오의 민낯이 또 한 번 드러났다.” - 중앙일보 (2017/09/09) “특수학교 세우려고 장애인 부모가 무릎 꿇는 현실”

<표 2-15> 2013~2017년 장애인 관련 기사의 토픽별 키워드(25위까지)

	Topic-1	Topic-2	Topic-3	Topic-4
1	대회	지적장애	학교	지원
2	평창	경찰	특수	시각장애
3	올림픽	경찰서	시각장애	희망
4	선수	병원	주민	복지
5	체육회	복지	지역	카드
6	세계	시설	학생	뉴스
7	시각장애	혐의	무릎	대통령
8	패럴림픽	폭행	설립	사회
9	체육	치료	기자	정보
10	발달장애	남성	강서구	음성
11	회장	부부	아동	센터
12	스키	법원	휠체어	주차
13	스페셜	여성	부모	인권
14	개최	선고	교사	텍스트
15	문화	사건	청각장애	발달장애

<표 2-16> 2013~2017년 장애인 관련 기사에 부여된 토픽 명

	토픽 명	비중 (N=580)
토픽 1	평창 동계 패럴림픽	23%

(2) 투쟁의 정쟁화 (2018~2022년)

[표 2-17] 2018~2022년 장애인 관련 기사의 토픽별 키워드(25위까지)

	Topic-1	Topic-2	Topic-3	Topic-4
1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시각장애	복지	패럴림픽
2	시위	복지	지적장애	체육회
3	지하철	사회	여성	대회
4	국민	고용	발달장애	선수
5	오전	대학교	시설	체육
6	대통령	협회	재단	전국
7	이준석	청각장애	경찰	평창
8	출근길	지원	학대	올림픽
9	기자	회장	아동	선수단
10	윤석열	대학	밀알	스포츠
11	뉴스	발달장애	주차	세계
12	의원	재단	살해	국가
13	단체	안내견	법원	영우
14	민주당	공단	지원	발달장애
15	국회	개발	학교	겨울

<표 2-18> 2018~2022년 장애인 관련 기사에 부여된 토픽 명

	토픽 명	비중 (N=528)
토픽 1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출근길 지하철 투쟁을 둘러싼 갈등	26%
토픽 2	장애인의 자립-복지, 고용, 교육-을 위한 사회적 지원	27%
토픽 3	밀알복지재단 사업, 지적장애여성과 발달장애아동 대상 범죄	22%
토픽 4	평창 동계 패럴림픽,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25%

이 시기의 장애관련 신문기사의 토픽모델링 결과는 <표 2-17>와 <표 2-18>과 같다. 이 시기의 기사는 전장연의 지하철 투쟁(토픽1), 장애인의 자립(토픽2), 장애인 대상 범죄(토픽3), 평창 동계 패럴림픽과 한때 화제가 되었던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토픽3)를 주제로 다루고 있다. 특히 토픽1을 구성하는 키워드는 전장연 지하철 투쟁을 둘러싼 핵심 관계자와 투쟁의 내용 및 목표를 담고 있다. 한편 이 시기 기사는 전장연 투쟁을 정치적 쟁점으로서 보고한다. 기사에 의하면, 정치인들은 장애인 투쟁의 본질을 왜곡하고, 정치적으로 활용하고자 한다.

“ “전장연(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 마침내 정부여당을 뻥 뜯는 데 성공했다.” 김재섭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은 지난 14일 페이스북에 이렇게 썼다. 그는 “전장연은 장애인의 이동권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탈시설화’를 요구하며 지하철을 점거하고 운행을 방해하며 출근길 시민의 발을 묶었다. 그러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전장연이 요구했던 탈시설화 예산 요구에 굴복했다”고 했다.” - 중앙일보 (2022/11/16) ““떼쓴 전장연 돈준다“ 논란…증액 예산 6300억 통과 가능성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한 장애인 단체의 출퇴근 시간대 지하철 시위를 ‘불법’으로 규정하면서 조건 없이 이 시위를 중단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 이 대표는 “문재인 정부와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있을 땐 말하지 않던 것들을 지난 대선 기간을 기점으로 윤석열 당선인에게 요구하고 불법적이고 위험한 방법으로 관철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 이에 당장 민주당은 이 대표가 약자에 대한 혐오에 앞서고 있다며 거센 비판에 나섰고, 당내에서도 이 대표 의견에 대한 이견이 나오고 있다.” - 중앙일보(2022/03/28) “국힘 김예지, 장애인에 무릎꿇고 사과...이준석은 “불법 시위“”

한편 이 시기에도 지적장애인과 발달장애인에 폭력과 학대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기사를 통해 드러나고 있으며[52], 자폐 스펙트럼 장애인 변호사 ‘우영우’를 주인공으로 한 드라마가 이슈가 되면서 이와 관련된 여러 기사들[53]이 등장하였다.

조성은 외(2019)는 이 시기의 장애정책이 내실화 단계이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 증진이 제도화되는 시기라고 하였다. 이러한 제도적 진전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의 투쟁은 점점 더 격렬하게 진행되었고,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의 갈등도 가시화되고 있다. 김용득・이동석(2019)은 이를 ‘장

52) 중앙일보 (2022/08/26) “남편 쫓아내고 아내 성폭행…지적장애 부부 울린 10대 ’충격’”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97290#home)
중앙일보 (2022/09/29) “ “대소변 못 가린다” 지적장애 여동생 학대해 숨지게 한 30대 실형”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05592#home) 외 다수.

53) 중앙일보 (2022/07/12) ““그래봤자 자폐잖아“…그래서 되레 판타지 ’우영우’ 만들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86348#home)
중앙일보 (2022/08/03) “’우영우’ 이래서 드라마...천재 자폐인 있어도 인정 못받는 이유”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91689#home)

애 대중의 권리 의식 증대’로 설명한다. 이전 시기까지 장애인은 사회로부터 겪는 배제와 차별을 본인 개인의 문제로 귀속시켰다면, 이 시기에 들어 장애의 문제를 사회의 문제로 인식하기 시작했고, 이 사회에서 자신의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자각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권리의 자각과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 그리고 권리의 제도화는 서로 분리되어 진행되지 않았다. 이 시기에 들어 비로소 장애인은 그들이 제도적으로 권리를 보장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배제되고 차별받아야 하는 가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그들이 사실상 그들이 투쟁하는 것은 사회적 배제와 차별이라는 순화된 표현으로 포장된 짓밟힌 인간성의 문제였다. 장애인은 돌봐준 가족에 의한 살인, 가까운 친인척에 의한 폭행, 시설 혹은 일터에서의 짐승만도 못한 삶으로부터 스스로 보호하고, 벗어나고자 투쟁을 이어가고 있었다.

이 시기 장애정책과 장애 대중의 권리 의식은 사회모델로 크게 진전하고 있지만, 사회 일반의 시선은 여전히 그들이 불쌍한 타자의 자리에 머물고 있다. 장애인은 비장애인에게 ‘불편’을 주지 말아야 하며, 주어진 현실에 안주해야 한다고 여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제 7 절 소결

식민지기부터 1980년대 후반까지 한국의 장애 패러다임은 강력한 의료모델이 지배적이었다. 장애의 원인은 개인의 신체에 있었으며, 장애인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재활을 통해 비장애인 중심의 사회에 적응하는 것만이 사회에 통합되는 방법이었다. 또한, 장애인을 돌보고 부양하는 책임이 온전히 가족에게 있었으며, 가족이 감당하기 어려운 장애인은 시설에 수용될 수밖에 없었다. 식민지기와 미군정기에는 직접적인 장애정책이 부재했으며,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에는 한국전쟁으로 많은 신체장애인이 발생하면서, 상이군경을 위한 법이 제정되었다. 박정희 정권 시기인 1961년부터 1976년 시기에는 생활보호법이 제정되었지만, 장애인에 대한 국가의 시선은 매우 부정적이었고, 국가에 의한 배제와 차별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동정과 연민의 대상이었다. 이후 1977년 특수교육법이 제정되고, 1981년 심신장애자 복지법이 제정되었지만, 정책적 실효성은 거의 없었고, 사회적으로 장애인은 그저 불쌍한 이웃에 불과했다.

1987년 민주화와 1988년 서울 장애자 올림픽 이후에도 장애 패러다임은 그리 바뀌지 않고, 의료모델이 여전히 유지된다. 장애운동의 생존권 및 노동권의 요구가 거세지면서 1989년 장애자복지법이 제정되고, 1990년 고촉법이 제정되지만, 정책적 실효성이 거의 없었다. 기업은 장애인 채용을 거부했고, 각종 장애인을 위한 제도는 허울만 있을 뿐이었다. 한편, 이 시기에는 비로소 언론을 통해 비장애인이 아닌 장애인이 스스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고,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깨고자 노력하는 시도가 엿보였다.

1997년부터 2006년 시기는 해외의 장애운동의 영향으로 사회모델 장애 패러다임이 유입되면서, 국내에 사회모델이 도입되는 시기이다. 이 시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으며,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된다. 그리고 이 시기에는 장애운동이 본격화되는 시기 이기도 하다. 2001년 오이도역 리프트 사고를 시작으로 이동권 투쟁이 시작되었으며, 2005년 광주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이 사회의 주목을 받으며 이후 장애인 인권개념이 등장하는 계기가 된다.

2007년에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제도가 신설되기 시작하면서 사회모델이 강화되는 시기이다. 2008년에는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을 비준하였고, 장애인 연금을 도입했으며, 2011년에는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2014년에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다. 2011년 광주 인화학교 사건을 영화화한 '도가니' 개봉 이후 장애인 인권이 크게 사회적 관심을 받기 시작했다. 하지만 여전히 다수의 중증장애인이 시설에서 혹은 가족 내에서 폭력과 학대의 인권침해를 받는 사례가 허다했다. 장애계는 장애인 가족에 대한 부양책임을 제도화하고 있는 부양의무제 폐지를 위해 투쟁하기도 했고, 특수학교 건립을 놓고 지역주민과의 갈등을 빚기도 했다. 그리고 현재 전장연은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한 시민권 투쟁에 돌입한 상태이다.

이상의 장애인을 둘러싼 환경(장애정책과 장애담론)의 변화는 장애인 스스로의 투쟁을 통해 만들어 온 것이다. 장애계는 선구적으로 1990년대 초반부터 사회모델을 수용했고, 이를 장애운동에 반영했다. 이들의 투쟁이 반영된 장애정책은 그 내용만을 살펴보았을 때, 성장하였고 점차 사회화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여전히 다수의 중증장애인이 시설에서 비인간적 삶을 살아가고 있으며, 이러한 현실을 벗어나고자 몸부림치는 장애인의 투쟁을 사회는 불편한 시선으로 보고 정치인들은 이를 정쟁화하고 있다.

장애인은 긴 시간 동안 이 사회의 성원으로서 인정받지 못했다. 하지만 민주화 이후 점차 성원권을 인정받기 시작했고, 성원으로서 가질 수 있는 당연한 권리의 최소한을 확보하기 위해 최근까지 투쟁을 이어오고 있다. 장애와 비장애라는 경계를 허물고, 성원이라면 누구나 성원으로서 권리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사회 전반의 의식 고양이 촉구된다.

제 3 장 대학진학, 취업, 결혼에 대한 세대효과

앞 장에서는 장애정책과 장애담론을 통해 장애 패러다임의 변화를 살펴보았다면, 이 장에서는 이러한 구조적 변화가 장애인의 성년기 주요 생애 경험-대학진학, 취업 및 결혼-에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실증적으로 밝힌다. 장애인의 성년기 주요 생애 경험은 사회적·역사적 시간에 배태되어 있다. 장애인을 둘러싼 구조적 맥락-여기서는 장애정책과 장애담론-은 장애인 스스로가 투쟁하여 쟁취한 산물이기도 하고, 그것이 장애인 삶의 기회구조를 결정짓기도 한다. 장애인은 그 제약된 기회구조 속에서 분투하며 최선에 의한 행위를 하게 되는데 그 행위의 결과가 생애에 반영된다. 그러한 측면에서 시간적 경과에 따른 장애인의 성년기 주요 생애 경험 양상의 변화는 장애인을 둘러싼 구조적 변화를 포착하는 데에도 유용한 지표가 될 수 있다.

이 장에서는 장애인의 성년기 주요 생애 경험의 사회적·역사적 맥락에 따른 차이를 '세대효과'로 포착하고자 한다. 장애인의 성년기 주요 생애 경험에 미치는 세대효과를 연령-기간-코호트 분석(이하, APC 분석)을 통해 밝힌다. 성년기 주요 생애 경험은 여러 가지 요인 중에서도 시간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 그런데 시간 요인은 살고 있는 시기(기간), 현재 나이(연령), 그리고 태어난 시기(코호트, 즉 세대)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예컨대, 결혼을 예로 든다면, 첫 번째, IMF 경제위기 등으로 해당 시기에는 결혼을 하지 않고, 결혼을 미룰 수 있다(시기 효과). 두 번째, 결혼의 연령 규범이 사회적으로 존재하여 해당 연령대가 되면 결혼할 확률이 높아질 수 있다(연령 효과). 세 번째, 동년배들을 따라 그 세대는 다른 세대보다 더 결혼을 많이 하거나 결혼하지 않을 수 있다(코호트 효과). 이 장에서는 APC 분석방법을 통해 혼재된 시간의 효과를 분해하여 코호트 효과, 즉 세대효과를 추출한다.

제 1 절 자료 및 방법

1. 자료, 대상 및 변수측정

APC 분석을 위해서는 일정한 시간 간격을 두고 동일 변수를 측정한 반복 횡단자료(repeated cross-sectional data)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합성 코호트(syntatic cohort) 자료를 생성하여 APC 분석을 할 수 있다. 이 연구는 장애인실태조사 2005년, 2011년 및 2017년 자료를 사용하여, 18세부터 65세까지 6년 단위의 합성 코호트 자료를 생성하였다. 장애인 실태조사는 2005년부터 3년 단위로 2020년까지 자료가 공개되어 있다. 하지만 이 연구에서는 2005년부터 6년 단위[54]로 2017년까지 3개의 횡단자료를 결합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그 이유는 2008년 자료의 표본이 이 연구의 과소 집계되었고, 분포가 편향됨에 따라 동일한 코호트지만 해당 연도 자료에 의한 결과의 돌출이 심했고, 따라서 결과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다소 분석 기간이 짧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APC 분석이 가능한 자료 기간의 범위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며, 일부 사회학 연구나(예. Robinson and Jackson, 2001), 다수의 보건학 연구(예. Kim and Kawachi, 2021; Jiang and Kang, 2019 등) 에서 짧은 범위의 기간 자료를 활용한 APC 연구가 생산되고 있다. 앞으로도 장애인 실태조사는 3년마다 자료가 생산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 작업은 장애인실태조사를 활용한 초기 APC 분석 연구로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분석대상의 변수별 분포는 다음의 <표 3-1>과 같다. 종속변수는 대학진학 여부, 취업 여부, 결혼 여부이다. 독립변수는 코호트이고 통제변수는 기간과 연령이다. 그리고 종속변수에 따라 추가 통제변수를 다르게 했는데, 대학진학 여부 분석에서는 장애유형과 장애정도만을 추가 통제변수로 사용했고, 취업 여부와 결혼 여부 분석에서는 교육수준을 더해 통제변수로 사용했다.

---

54) 반복 측정된 횡단자료의 조사 간격이 6년 단위로 설정됨에 따라, 분석 코호트와 연령의 단위 역시 6년을 단위로 설정된다.

<표 3-1> 장애인실태조사 분석대상의 성 및 시기별 분포

		남성			여성		
연도		2005	2011	2017	2005	2011	2017
N		869	456	549	522	353	377
코호트	1940-1945년생	16.0			16.5		
	1946-1951년생	15.8	11.6		14.0	14.5	
	1952-1957년생	17.3	15.7	14.0	18.2	16.2	13.0
	1958-1963년생	16.7	16.3	20.8	18.4	18.7	21.2
	1964-1969년생	10.1	16.3	16.6	11.5	13.3	15.1
	1970-1975년생	8.5	11.4	11.5	9.4	13.6	12.5
	1976-1981년생	8.3	9.0	11.7	6.7	8.2	10.1
	1982-1987년생	7.4	10.3	6.4	5.4	6.5	7.7
	1988-1993년생		9.3	9.8		9.1	10.1
	1994-1999년생			9.3			10.3
장애유형	지체장애	36.6	49.9	42.1	38.1	49.0	35.5
	시각 혹은 청각장애	50.4	31.8	23.1	48.3	28.6	22.8
	지적장애	13.0	18.3	34.8	13.6	22.4	41.6
장애정도	심하지 않은 장애	59.6	51.8	42.8	55.6	45.3	38.5
	심한 장애	40.4	48.2	57.2	44.4	54.7	61.5
교육수준	중졸 이하	47.0	40.7	34.6	64.4	49.3	49.6
	고졸	35.6	33.6	45.7	26.3	34.0	32.9
	대졸 이상	17.5	25.8	19.7	9.4	16.7	17.5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2. 분석기법

APC 분석방법은 종속변수에 미치는 시간변수인 연령 효과, 시기 효과 및 코호트 효과를 분해하는 분석방법(Yang and Land, 2013)으로, 성년기 주요 생애 경험 여부에 미친 연령효과와 시기효과를 통제했을 때의 코호트 효과를 밝힐 수 있다. 이를 다중 회귀모형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식 3.1)같다.

$$y^{apc} = \alpha_a + \pi_p + \gamma_c + \beta_0 \quad \text{(식 3.1)}$$

여기서 α_a는 개인들의 연령, γ_c는 코호트에 대한 소속, π_p는 통계적 기간을 의미한다. 그런데 APC 분석방법의 경우 세 독립변수가 갖는 완벽한 선형적 의존관계($a = p - c$)로 인해, 세 효과를 구분하기 어렵다는 식별 문제 (identification problem)이 있다. 식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이 시도되고 있다. 양과 랜드(Yang and Land, 2006)의 HAPC(다층분석), 양과 랜드(Yang and Land, 2013)의 APC-IE(주성분 분석 이용) 등이 바로 그것이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방법은 코호트 효과와 관련된 선형 경향을 연령에 귀속시키기 때문에 예컨대 교육수준과 같은 종속변수를 분석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O' Brien, 2011; Chauvel, 2013).

이 연구는 이러한 식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또 다른 방법인 탈경향화된 APC(Detrended APC, 이하 APCD) 모형과 경향화된 APC (Trended APC, 이하 APCT)모형을 방법으로 채택했다[55]. 이 방법은 루이 샤벨(Chauvel, 2011; 2012)에 의해 개발된 방법으로, 다양한 경험연구에서 안정적인 추정 결과를 보여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Chauvel, 2013; Chauvel and Scröder, 2014; Freedman, 2017 참조).

---

55) 경향화된 APC 모형은 말 그대로 코호트 효과의 경향을 보여준다면, 탈경향화된 APC 모형은 코호트 효과의 경향을 보여주는 동시에 경향에서 벗어나 돌출되는 집단이 누구인지를 보여준다. 이를 통해, 점진적이고 연속적인 역사적 변화가 어떻게 세대에 반영되었는지를 보는 동시에, 특정 역사적 분기점이나 사건이 특정 세대에 영향을 미쳤는지도 확인할 수 있다.

APCD모형은 식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형 경향(linear trends)과 비선형 경향(non-linear trends)을 구분하여 접근한다. 첫 번째 범주는 선형 경향을 기반으로 하고, 두 번째 범주는 선형 경향 주변의 변동(flucturations)에 대한 비선형 경향을 기반으로 한다. 즉, 추정된 변동을 포함하는 연령, 시기, 코호트의 고유한 분해에 반하는 기울기 0 (zero-slope)과 계수합 0 (zero-sum) 파라미터의 제약된 경향을 계산하여 식별의 딜레마를 해결한다(Chauvel, 2011). 즉, 최소한 하나의 계수가 기울기 0의 계수와 차이가 있을 때, APCD 모형은 변이(variations)를 보인다. 즉, 변화의 패턴뿐 아니라 어떤 집단이 경향(trend)을 벗어난 돌출된 집단인지 보여준다. 이 연구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종속변수는 이항변수이므로, 이를 로짓모형으로 분석할 수 있다. 로짓 모형으로 추정할 경우 APCD 모형의 방정식은 다음의 식(3.2)와 같다.

$$Logit(y_i^{apc}) = \alpha_a + \pi_p + \gamma_c + \alpha_0 rescale(a) + \gamma_0 rescale(c) + \beta_0 + \sum_j \beta_j x_j + \epsilon_i$$

(식 3.2)

$$\sum_a \alpha_a = \sum_p \pi_p = \sum_c \gamma_c = 0$$

$$Slope_a(\alpha_a) = Slope_p(\pi_p) = Slope_c(\gamma_c) = 0$$

$$\min(c) = c = \max(c)$$

a : 연령, p : 시기, c : 코호트

$\alpha_a, \pi_p, \gamma_c$: 탈경향화된(detrended) 연령, 시기, 코호트의 벡터

α_0 : 시기 간, 코호트 간 연령의 기울기

γ_0 : 시기 간, 연령 간 코호트의 기울기

β_0 : 상수

β_j : 통제변수의 계수

α_0와 γ_0는 각각 α와 γ를 -1에서 1로 재조정한(resacaled) 값이며 해당 기간 동안 연령과 코호트의 선형 경향(linear trend)을 보여준다. $\alpha_a, \pi_p, \gamma_c$는 연령과 코호트의 경향을 통제했을 때 연령, 시기, 코호트가 경향으로부터 이탈(fluctuation)된 정도를 보여준다. 분석의 안정성을 위해 한 번밖에 측정되지 않은 처음 코호트(1945-1950)와 마지막 코호트(1999-2005)는 분석에서 제외된다. $\beta_j x_j$는 분석에 포함된 장애유형, 장애정도 등의 통제변수이다.

APCT 모형도 APCD와 동일한 방식으로 기간 변동(flucturation)이 통제된다. 그러나 APCT 모형은 γ_c가 장기적 선형 경향을 흡수하지 않고 경향화(trended)된 코호트 효과를 보여준다. 여기서 경향화된 코호트 효과는 다른 변수들의 효과가 통제되는 동안 나타나는 코호트당 변화를 나타낸다. 다시 말해, APCT 모형은 장기적 선형 경향의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 해당 연령에서 기간 변동을 통제했을 때의 코호트 효과를 추정한다. APCT 모형은 코호트 간의 생애 사건의 발생 가능성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설명하지만 그 변화가 코호트 또는 기간효과에서 발생하는 것인지는 알 수 없다. 즉 APCT 모형은 그 추세가 계속될 것인지, 아니면 장기적이고 중대한 변화가 있었는지는 밝힐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예. Chauvel, 2016; Freedman, 2017). APCT 모형의 식은 다음 식 (3.3)과 같다.

$$Logit(y_i^{apc}) = \alpha_a + \pi_p + \gamma_c + \alpha_0 rescale(a) + \beta_0 + \sum_j \beta_j x_j + \epsilon_i \quad \text{식 (3.3)}$$

$$\sum_a \alpha_a = \sum_p \pi_p = \sum_c \gamma_c = 0$$

$$Slope_a(\alpha_a) = Slope_p(\pi_p) = 0$$

$$\min(c) = c = \max(c)$$

제 2 절 분석결과

1. 대학진학: 사회모델의 점진적 실현

(1) 대학진학률 추이

<표 3-2>는 연령, 시기 및 코호트별 대학진학률을 보여준다. 먼저 성별 대학진학률을 살펴보면, 남성이 20.2%, 여성이 13.9%로 남성이 여성보다 대학에 많이 진학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추이는 1994-1999년생을 제외한 모든 연령대, 시기, 코호트에서 나타난다. 이는 여성에 대한 교육차별이 최근까지 유지되었음을 의미한다.

대학진학률은 연령이 적을수록, 최근에 태어난 코호트일수록, 높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18-23세 및 1994-1999년생 집단에서 다소 낮은 대학진학률을 보이는 것은 일부 고등학생과 재수생이 포함된 것에서 기인하였다고 추측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역시 연령 효과인지 코호트 효과인지는 명확히 구분할 수 없다.

[그림 3-1]를 보면 매우 뚜렷하게 최근 코호트로 올수록 대학진학률이 증가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성별로 나누어 보면, 남성의 대학진학률이 전반적으로 여성보다 더 높은 데다 증가 폭도 남성이 여성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높은 구간으로, 남성에서는 1988-1993년생이 18-23세 구간이었을 때 50% 이상의 대학진학률을 보이며, 여성에서는 1982-1987년생이 24-29세 구간이었을 때 약 40%의 대학진학률을 보인다.

그리고 18-23세 구간은 코호트별로 가장 역동적인 대학진학률 변화를 보이고있다. 남성의 경우, 1982-1987년생이 해당 구간에서 약 30%의 대학진학률을 보이다가, 1988-1993년생은 50%에 근접하게 되고, 1994-1999년생은 20%대로 대폭 하락한다. 여성의 경우, 1982-1987년생이 해당구간에서 약 10%의 대학진학률을 보이다가, 1988-1993년생은 40%에 근접하게 되고, 1994-1999년생은 30% 중반의 대학진학률을 보였다.

<표 3-2> 연령, 시기 및 코호트별 대학진학률(%)

	대학진학률	
	남성	여성
	20.2	13.9
18-23세	32.9	28.3
24-29세	38.5	32.3
30-35세	31.1	23.4
36-41세	32.2	19.2
42-47세	16.5	14.7
48-53세	13.6	6.4
54-59세	11.4	7.1
60-65세	7.8	2.7
2005년	17.5	9.4
2011년	25.8	16.7
2017년	19.7	17.5
1940-1945년생	6.5	2.3
1946-1951년생	8.9	4.0
1952-1957년생	11.7	6.0
1958-1963년생	13.7	9.5
1964-1969년생	20.8	9.8
1970-1975년생	27.9	22.2
1976-1981년생	37.6	24.5
1982-1987년생	33.3	25.0
1988-1993년생	42.3	37.1
1994-1999년생	19.6	33.3

주: 남성과 여성의 비율 차이는 $p<0.05$ 수준에서 유의미하였음. 남성과 여성에서 모두 연령, 시기 및 코호트별 비율 차이가 $p<0.05$ 수준에서 모두 유의미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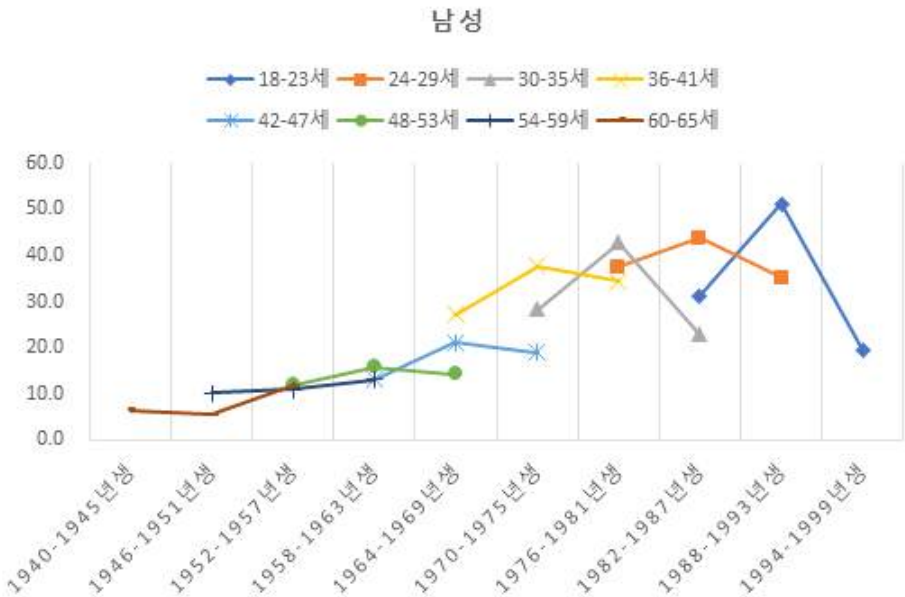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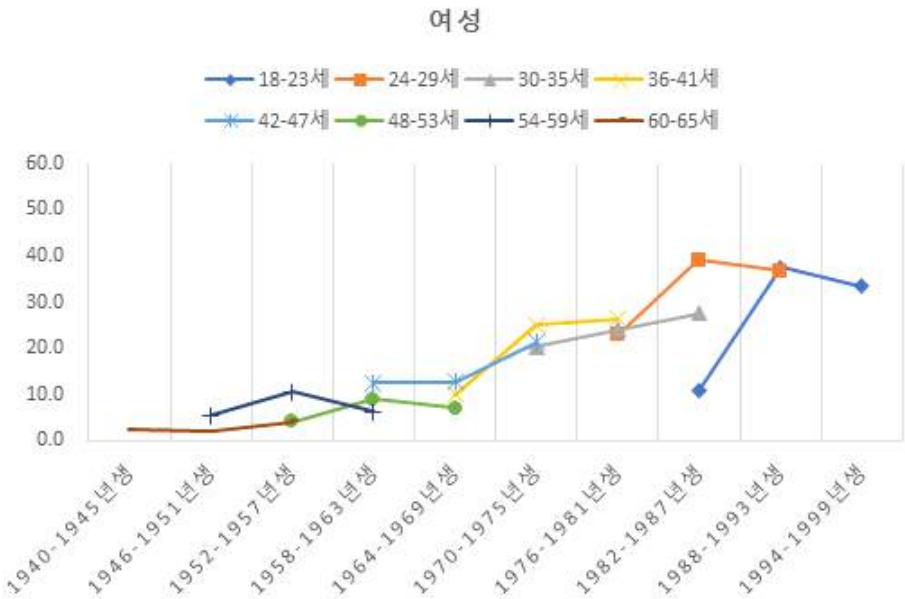

[그림 3-1] 대학진학률 코호트 추이(%)

(2) 코호트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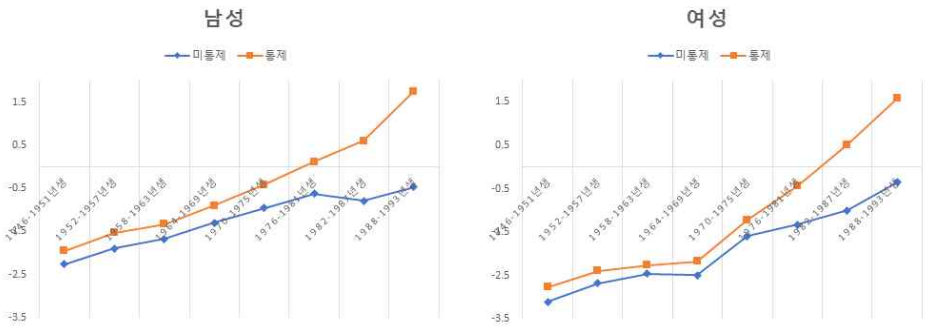

[그림 3-2] APCT 모형으로 추정된 대학진학의 코호트 효과

[그림 3-2]는 경향화된 코호트 효과를 보여준다. 즉, 연령과 기간효과는 통제하되, 코호트의 경향 즉 기울기는 유지한 모형으로 추정한 코호트 효과를 보여준다. 남성과 여성에서 모두 통제변수를 투입했을 때와 투입하지 않았을 때 둘 다 최근 코호트로 올수록 대학진학가능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적극적인 특수교육 정책의 성과라고 보여진다. 그리고 통제변수를 투입했을 때, 그 기울기는 더 커졌다. 이는 장애 특성이 똑같다면, 최근 코호트에 올수록 대학진학이 유리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최근 코호트가 대학진학이 다소 어려움 지적장애인을 상당 부분 포함하고 있는 데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지적장애인의 높은 분포가 대학진학 확률을 다소 낮추는 효과를 일으키는 데 이를 통제할 경우, 대학진학확률은 오히려 더 증가하게 된다.

<표 3-3>은 대학진학에 대한 탈경향화된 APC 모형 분석결과이다. APCD 모형은 APCT 모형에서 확인한 코호트의 경향뿐만 아니라, 그 통계적 유의성 및 경향에서 벗어나는 집단이 누구인지도 파악할 수 있다.

<표 3-6>의 APCD 모형 분석결과를 보면, 코호트 효과의 경향을 더 확실하게 포착할 수 있다. 코호트효과의 기울기를 나타내는 “rescacoh” 항의 계수를 살펴보면, 남성에서 통제변수를 투입하지 않았을 때는 기울기가 유의미하지 않다가, 통제변수를 투입했을 때 기울기가 3.006으로 크게 증가한다. 그리고 여성에서 통제변수를 투입하지 않았을 때는 기울기가 2.201 수준에서 통제변수를 투입했을 때 기울기가 4.831로 크게 증가한다.

<표 3-3> 대학진학에 대한 APCD 모형 분석 결과

	남성		여성	
	미통제	통제	미통제	통제
1946-1951년생	-0.152	0.206	0.107	0.530
1952-1957년생	0.019	0.164	0.163	0.268
1958-1963년생	-0.002	-0.122	-0.013	-0.207
1964-1969년생	0.084	-0.176	-0.437	-0.718**
1970-1975년생	0.148	-0.190	0.080	-0.381
1976-1981년생	0.212	-0.171	-0.035	-0.203
1982-1987년생	-0.236	-0.202	-0.086	0.136
1988-1993년생	-0.072	0.491**	0.220	0.574
18-23세	-0.052	-0.288	-0.638**	-0.976***
24-29세	0.048	0.083	0.114	0.129
30-35세	-0.035	0.095	0.173	0.384
36-41세	0.255	0.455**	0.369	0.491*
42-47세	-0.212	-0.186	0.498*	0.714**
48-53세	-0.108	-0.138	-0.122	-0.059
54-59세	0.080	0.058	0.189	0.149
60-65세	0.024	-0.079	-0.584	-0.832**
2005년	-0.106**	-0.037	-0.119*	-0.083
2011년	0.211**	0.073	0.239*	0.165
2017년	-0.106**	-0.037	-0.119*	-0.083
rescacoh	0.830	3.006***	2.201***	4.831***
rescaage	-0.678**	-0.378	-0.260	0.347
시각 혹은 청각장애 (참조: 지체장애)		-0.085		-0.207
지적장애(참조: 지체장애)		-2.764***		-2.920***
심한 장애 (참조: 심하지 않은 장애)		-0.697***		-0.282
상수	-1.267***	-0.465***	-1.884***	-1.121***
N	1,693	1,693	1,127	1,127

주: *p<0.1, **p<0.05, ***p<0.01

[그림 3-3]은 <표 3-3>의 코호트 효과를 도표로 표현한 것이다. 코호트 효과의 기울기를 0으로 했을 때, 0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만큼, 그리고 그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했을 때 그 집단을 경향에서 벗어난 집단으로 볼 수 있다. 코호트 변수의 계수를 살펴보면(<표 3-3>, [그림 3-3] 참조), 남성과 여성 모두 장애 특성 변수를 통제하지 않았을 때는 돌출되는 집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장애 특성 변수를 통제했을 때, 남성의 경우 1988-1993년생의 대학진학 확률이 경향으로부터 이탈할 정도로 높게 나타났고, 여성의 경우 1964-1969년생의 대학진학 확률이 경향으로부터 이탈하여 매우 낮게 나타났다.

[그림 3-3] APCD 모형으로 추정된 대학진학의 코호트 효과

남성과 여성에서 모두 최근 코호트로 올수록 대학진학 확률이 증가하였다. 특히 남성의 경우 1988-1993년생의 대학진학 확률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는 최근 특수교육 정책의 괄목할 만한 성과로 해석될 수 있다.

여성 역시 최근 코호트로 올수록 대학진학 확률이 증가하지만, 1964-1969년생의 대학진학 확률은 경향에서 이탈하여 오히려 직전 코호트와 비슷하거나 낮은 경향을 보인다. 이는 이들의 세대적 특수성에서 기인했다고 볼 수 있다. 이들이 태어나고 성장한 시기는 박정희 정권 시기로 가장 배제적인 장애정책이 시행된 시기로 볼 수 있다. 해당 시기는 해외 구호단체들이 국외로 송출되고, 경제성장 중심의 제한적 복지 체제가 자리잡기 시작한 시기이다. 게다가 우생학적 모자보건법의 실시, 강력한 남아

선호 사상이 유지되는 가운데 인구정책이 실시되면서, 여성장애아동의 교육권은 소외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였을 것으로 해석된다.

2. 취업: 의료모델의 유지

(1) 취업률 추이

<표 3-4>는 연령, 시기 및 코호트별 취업률을 보여준다. 먼저 성별 취업률을 살펴보면, 남성이 57.2% 여성이 35.7%로 남성이 압도적으로 높다. 연령, 시기 및 코호트별로 남녀간 취업률을 비교했을 때, 1988-1993년생과 1994-1999년생 집단에서 여성의 취업률이 남성의 취업률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그 외 연령, 기간 및 코호트 구간에서는 모두 남성의 취업률이 여성의 취업률보다 높다.

연령별 취업률을 살펴보면, 남성의 취업률은 뒤집힌 U자 형태로, 연령이 증가할수록 취업률도 증가하다가, 36-41세와 42-47세 구간을 정점으로 다시 감소하는 추이를 보인다. 여성의 취업률은 18-23세 구간에서는 25.3%의 낮은 취업률을 보이다가, 24-29세 구간에서는 연령대 중 가장 높은 43.8%의 취업률을 보인다. 그러나 30-35세 구간에서는 급감하여, 29.9%의 취업률을 보이다 점차 상승하여, 48-53세 구간에서는 43.1%의 다소 높은 취업률을 보이다 연령이 증가하면서 다시 감소하는 추이를 보인다. 이는 근대적 여성 생애에서 나타나는 M자형 형태로,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는 30대 초반에 노동시장에서 잠시 이탈했다가, 점차 다시 복귀하는 형태를 보인다.

코호트 취업률도 연령에 따를 취업률 추이와 비슷한 경향을 보인다. 남성의 경유 뒤집힌 U자 형태를 보이며, 여성의 경우 일그러진 M자 형태의 추이를 보인다. [그림 3-4]는 한 코호트가 해당 연령대에 있을 때 각각의 취업률을 보여준다. 남성의 경우는 마찬가지로 뒤집힌 U자 형태를 보인다. 다만 18-23세 구간에서 세 개의 코호트 모두 취업률이 바로 위인 24-29세 구간의 취업률 보다 현저히 낮게 나타난다. 이는 남성에 있어 취업의 사회적 연령규범이 존재함을 추측할 수 있다. 즉 20대 후반에는 반드시 노동시장에 진입해야 한다는 압력이 있을 수 있다[56].

---

56) 장애남성은 장애로 인해 국방의 의무를 면제받는다. 그러므로, 장애남성의 취업 적령기는 비장애남성의 취업의 적령기보다 시기가 빠를 것으로 추측된다.

여성의 경우 18-23세 구간의 코호트별 취업률 증가가 괄목할 만하다. 1982-1993년생의 경우 18-23세였을 때 취업률이 10%에 미치지 못하였으나, 1994-1999년생의 경우 18-23세였을 때 취업률이 40%를 초과했다. 이는 최근의 장애여성을 위한 노동시장정책의 결과로 해석된다. 분석을 통해 좀 더 엄밀한 근거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

<표 3-4> 연령, 시기 및 코호트별 취업률

	취업률	
	남성	여성
	57.2	35.7
18-23세	25.9	25.3
24-29세	50.0	43.8
30-35세	61.6	29.9
36-41세	68.8	33.6
42-47세	67.3	36.3
48-53세	61.5	43.1
54-59세	61.4	38.6
60-65세	48.1	29.6
2005년	55.1	32.0
2011년	59.4	38.2
2017년	58.7	38.5
1940-1945년생	40.3	19.8
1946-1951년생	59.2	36.3
1952-1957년생	57.7	39.3
1958-1963년생	66.0	41.7
1964-1969년생	66.7	37.2
1970-1975년생	66.3	34.7
1976-1981년생	59.6	31.4
1982-1987년생	41.5	25.0
1988-1993년생	35.1	37.1
1994-1999년생	33.3	41.0

주: 남성과 여성의 비율 차이는 $p<0.05$ 수준에서 유의미하였음. 남성과 여성에서 모두 연령, 코호트별 비율 차이가 $p<0.05$ 수준에서 모두 유의미하였으나, 시기별 비율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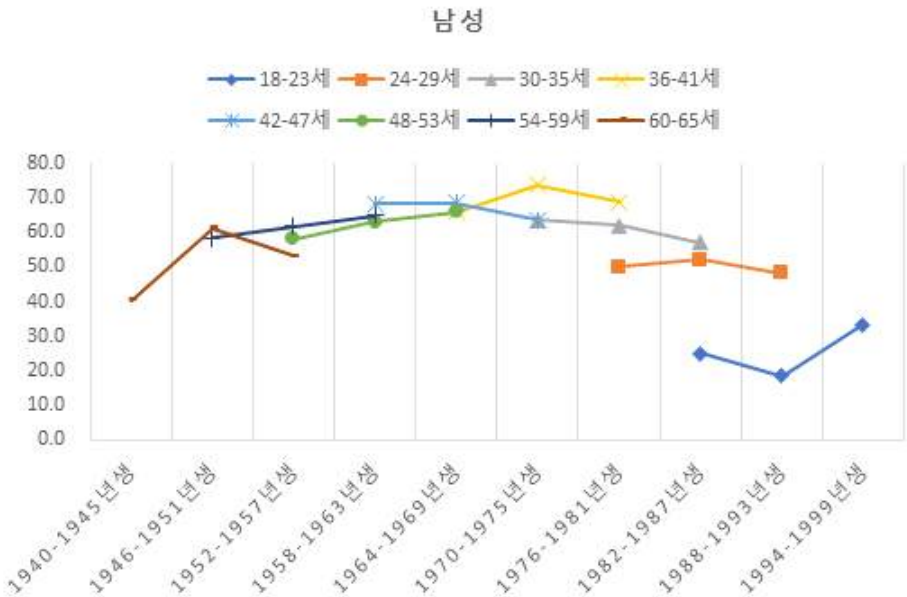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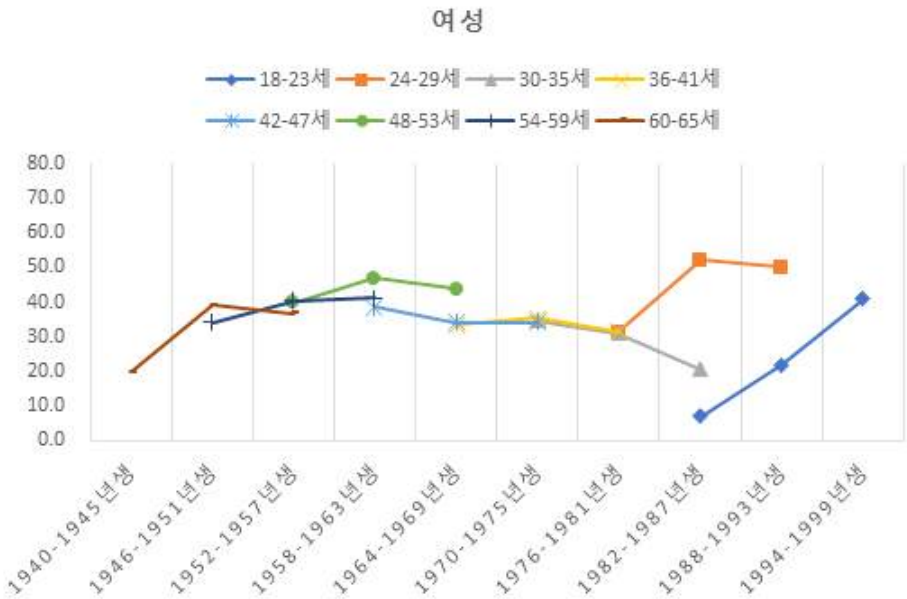

[그림 3-4] 취업률 코호트 추이(%)

(2) 코호트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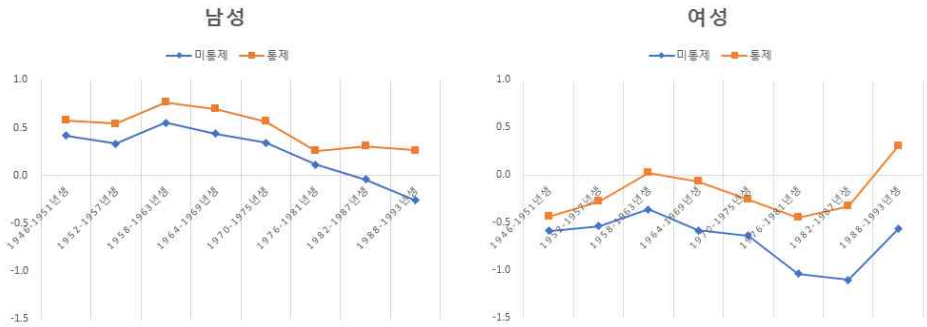

[그림 3-5] APCT 모형으로 추정된 취업의 코호트 효과

[그림 3-5]는 취업에 대한 경향화된 코호트 효과를 보여준다. 남성의 경우 기술통계에서는 뒤집힌 U자형 추이를 보였으나, 연령과 기간을 통제했을 때 그러한 추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남성의 경우 최근 코호트로 올수록 취업 확률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장애 특성과 교육 수준을 통제변수로 투입했을 때 취업 확률은 다소 증가했지만 기울기의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다. 여성의 경우에는 뚜렷한 경향이 나타나지 않았다. 통제변수를 투입하지 않았을 때, 1976-1981년생과 1982-1987년생과에서 취업 확률이 다소 낮게 나타났고, 통제변수를 투입했을 때, 1988-1993년생의 취업 확률이 다소 높았다.

취업에 대한 코호트 경향과 돌출되는 집단이 누구인지 판별하기 위해, APCD 모형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 3-5>와 같다. rescacoh의 계수를 보면 남녀 모두 통제 변수를 투입했을 때와 투입하지 않았을 때 모두 계수가 유의미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즉 취업에 대한 코호트의 경향이 존재한다고 말할 수 없다. 오래전부터 장애인 고용정책을 발전시키고 실시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실효성이 나타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표 3-5> 취업에 대한 APCD 모형 분석 결과

	남성		여성	
	미통제	통제	미통제	통제
1946-1951년생	-0.090	0.005	-0.055	0.006
1952-1957년생	-0.147	-0.115	0.005	0.017
1958-1963년생	0.127	0.090	0.197	0.202
1964-1969년생	0.097	0.048	0.017	0.040
1970-1975년생	0.133	0.059	0.034	-0.170
1976-1981년생	0.039	-0.117	-0.270	-0.309
1982-1987년생	0.016	0.067	-0.259	-0.189
1988-1993년생	-0.174	-0.037	0.331	0.402*
18-23세	-0.869***	-1.046***	-0.806***	-0.879***
24-29세	0.197	0.202	0.739***	0.736***
30-35세	0.396**	0.553***	0.130	0.167
36-41세	0.548***	0.661***	0.101	0.103
42-47세	0.284*	0.303*	-0.031	0.064
48-53세	0.009	-0.045	0.179	0.205
54-59세	-0.140	-0.111	-0.108	-0.114
60-65세	-0.425**	-0.516***	-0.204	-0.282
2005년	-0.029	-0.020	-0.054	-0.062
2011년	0.058	0.039	0.108	0.123
2017년	-0.029	-0.020	-0.054	-0.062
rescacoh	0.014	1.028	0.136	1.430
rescaage	0.567	0.981***	0.448	0.788**
시각 혹은 청각장애 (참조: 지체장애)		0.068		0.254
지적장애 (참조: 지체장애)		-0.684***		-0.537**
심한 장애 (참조: 심하지 않은 장애)		-0.880***		-0.823***
고등학교(참조: 중학교 이하)		0.554***		-0.019
대학 이상(참조: 중학교 이하)		0.614***		0.094
상수	0.242	0.502***	-0.679	-0.194
N	1,693	1,693	1,127	1,127

주: *p<0.1, **p<0.05,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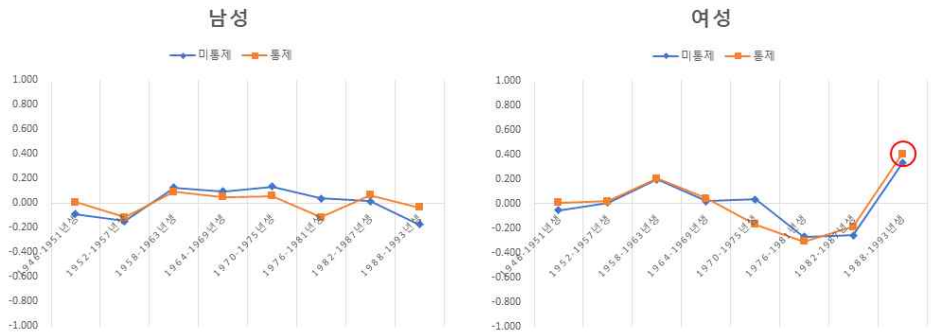

[그림 3-6] APCD 모형으로 추정된 취업의 코호트 효과

하지만 장애 특성과 교육 수준을 통제했을 때, 적극적 포함 세대인 여성 1988-1993년생 코호트의 취업 확률이 다른 코호트보다 크다는 것이 확인된다(<표 3-5>와 [그림 3-6] 참조). 이는 최근의 장애여성 고용정책의 효과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3. 결혼: 비혼화의 심화

(1) 결혼율 추이

<표 3-6>은 남성과 여성의 연령, 시기 및 코호트별 결혼율을 보여준다. 우선 성별 결혼율을 살펴보면, 남성이 62.9%, 여성이 73.0%로 여성의 결혼율이 남성의 결혼율보다 높았다. 그리고 1940-1945년생을 제외한 모든 연령, 시기, 코호트 구간에서 여성의 결혼율이 남성의 결혼율보다 높았다.

결혼율은 연령이 적을수록, 최근에 태어난 코호트일수록 낮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그리고 시작 구간과 끝 구간 사이의 간극이 상당히 크다. 60-65세 구간에서 남성의 결혼율은 93.0% 여성의 결혼율은 95.7%로 대부분이 결혼하였으나, 18-23세 구간에서 남성의 결혼율은 0.6%, 여성의 결혼율은 1.0%로 거의 결혼하지 않았다. 코호트의 경우도 연령과 마찬가지로 시작 구간과 끝 구간 사이의 차이가 약 95%p 내외로 1940-1945년생과

1946-1951년생 코호트는 대부분 결혼하였다면, 1994-1999년생은 전혀 결혼하지 않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60-65세 구간과 1940-1945년생의 결혼율이 높은 것은 코호트 효과로 설명될 것이다. 왜냐하면 해당 코호트는 젊은 시절 보편혼과 결혼의 연령 규범이 지배적인 시대를 살았기 때문이다(최선영, 2020). 18-23세 구간과 1999-2005년생의 결혼율이 낮은 것은 상당 부분 연령 효과로 설명될 것이다. 아직 사회적 혼인 연령에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들이 지속해서 비혼으로 남는다면, 그것은 코호트 효과로 설명될 것이다.

감소 폭에 있어 성별 차이가 있다. 먼저 연령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남성은 거의 일정한 폭으로 감소하는 한편, 여성은 60-65세 구간(95.7%)에서 36-41세 구간(72.6%)까지는 작은 폭으로 감소하다가, 36-41세 구간(72.6%)에서 18-23세 구간(1.0%)까지는 큰 폭으로 감소하는 추이를 보인다.

결혼율의 연령대 간 감소 폭의 성별 차이는 코호트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난다(<표 3-6>과 [그림 3-7] 참조). 남성의 감소 폭은 다소 일정한 반면, 여성은 1970-1975년생을 기점으로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는 우선 보편혼 규범의 와해가 남성에게 일찍이 나타난 것일 수 있으며, 남성의 결혼을 가능하게 하는 상대적 기준이 점차 상향되면서 장애남성의 경우 결혼이 일찍부터 점차 어려워졌을 수 있다. 하지만 여성의 경우에도 결혼을 가능하게 하는 상대적 기준이 상향되면서 결혼이 어려워졌을 수도 있지만, 장애여성의 경우 최근으로 올수록 원가족에게 의존하거나, 결혼을 통해 가족을 꾸리지 않고서도 생계를 꾸려나갈 수 있는 경제적 지원체계가 형성됨에 따라, 결혼을 선택하지 않고 비혼으로 남게 되면서 결혼율이 급격히 낮아졌을 수 있다.

시기 변화도 눈여겨 볼만하다. 12년 사이 남성의 결혼율은 71.8%에서 51.7%로 여성의 결혼율은 81.0%에서 61.3%로 약 20%p 감소한다. 집합적 수준에서도 혼인율이 크게 감소하고 있으며, 보편혼의 규범과 토대가 빠른 속도로 와해해감을 보여준다.

<표 3-6> 연령, 시기 및 코호트별 결혼율

	결혼율	
	남성	여성
	62.9	73.0
18-23세	0.6	1.0
24-29세	12.1	24.0
30-35세	37.7	54.2
36-41세	55.6	72.6
42-47세	71.5	81.6
48-53세	80.4	88.5
54-59세	87.3	95.2
60-65세	93.0	95.7
2005년	71.8	81.0
2011년	59.6	73.7
2017년	51.7	61.3
1940-1945년생	96.4	94.2
1946-1951년생	96.9	97.6
1952-1957년생	87.7	95.5
1958-1963년생	80.3	88.8
1964-1969년생	65.5	82.3
1970-1975년생	48.9	72.2
1976-1981년생	29.2	45.1
1982-1987년생	12.2	18.8
1988-1993년생	4.1	5.7
1994-1999년생	0.0	2.6

주: 남성과 여성의 비율 차이는 $p<0.05$ 수준에서 유의미하였음. 남성과 여성에서 모두 연령, 시기 및 코호트별 비율 차이가 $p<0.05$ 수준에서 모두 유의미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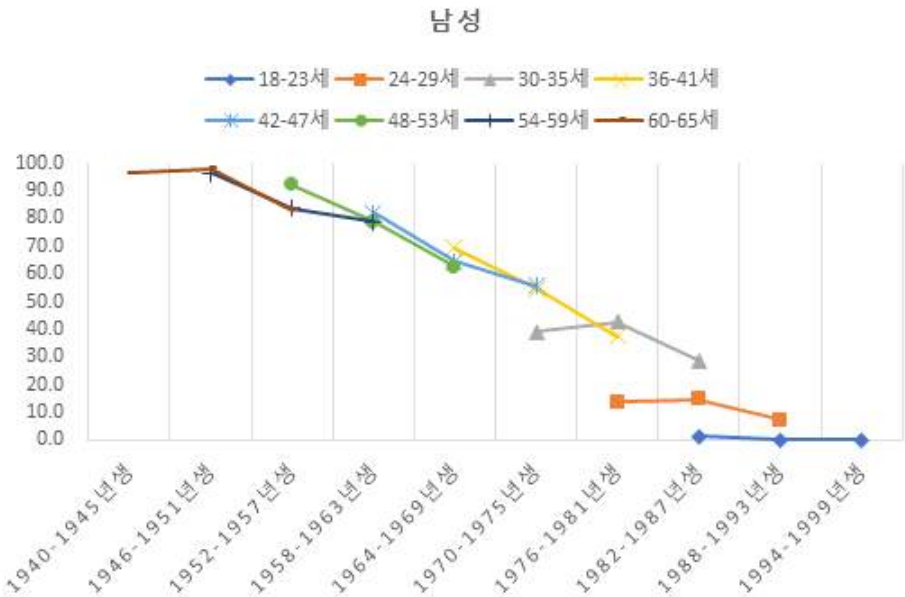

[그림 3-7] 결혼율 코호트 추이(%)

(2) 코호트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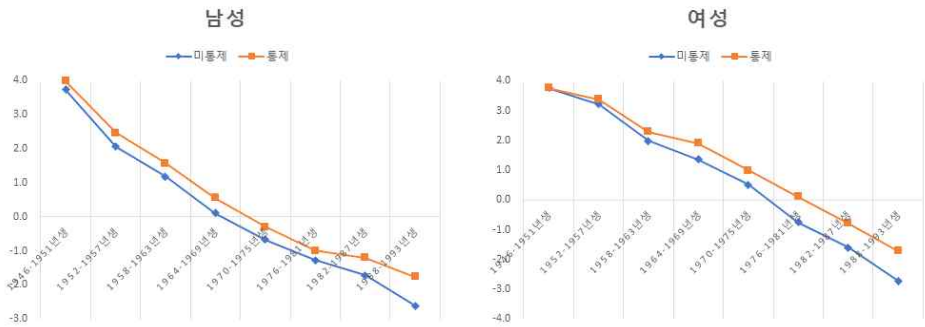

[그림 3-8] APCT 모형으로 추정된 결혼의 코호트 효과

[그림 3-8]은 경향화된 코호트 효과를 보여준다. 연령효과와 시기효과를 통제했을 때 기술통계와 마찬가지로, 최근 코호트로 올수록 결혼 확률이 감소함을 확인할 수 있다. 장애 특성과 교육 수준을 통제했을 때 남성의 경우 모든 코호트에서 결혼 확률이 다소 높아지지만, 최근 코호트로 올수록 감소하는 경향 즉 기울기에는 크게 차이가 없었다. 장애 특성과 교육 수준을 통제했을 때 여성의 경우에도 1946-1951년생을 제외하고 모든 코호트에서 결혼 확률이 다소 높아졌다. 그러나 감소 속도에는 차이가 있었는데, 통제변수를 투입하지 않았을 때 감소 속도가 통제변수를 투입했을 때의 감소 속도보다 더 컸다. 이는 APCD 모형 분석 결과에서 좀 더 자세하게 논의한다.

<표 3-7>은 APCD 모형의 분석결과를 보여준다. 먼저 코호트효과의 기울기를 보여주는 rescacoh항의 계수를 살펴보면, 남성과 여성 모두 통제변수를 투입하거나 투입하지 않았을 때, 모두 음의 값을 보였다. 이는 APCT 모형에서 확인했던 바와 마찬가지로, 최근 코호트로 올수록 결혼 확률이 감소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rescacoh항의 계수크기에 있어 차이가 있었는데, 통제변수를 투입했을 때 계수가 다소 감소하여 결혼 확률의 감소 폭이 감소함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역시 APCT 모델에서 확인했던 부분이다.

<표 3-7> 결혼에 대한 APCD 모형 분석 결과

	남성		여성	
	미통제	통제	미통제	통제
1946-1951년생	0.764***	0.872***	-0.273	-0.376
1952-1957년생	-0.191	-0.085	0.142	0.175
1958-1963년생	-0.227	-0.226	-0.080	-0.032
1964-1969년생	-0.482***	-0.529***	0.184	0.293
1970-1975년생	-0.398**	-0.574**	0.276	0.155
1976-1981년생	-0.158	-0.464*	-0.063	0.070
1982-1987년생	0.379	0.297	0.021	-0.030
1988-1993년생	0.315	0.708	-0.207	-0.254
18-23세	-1.897***	-2.113***	-5.039	-4.840
24-29세	0.318	0.185	2.756	2.505
30-35세	1.022***	1.237***	2.306	2.278
36-41세	1.056***	1.299***	1.635	1.573
42-47세	0.669***	0.744***	0.591	0.730
48-53세	0.234	0.253	-0.289	-0.277
54-59세	-0.437**	-0.441	-0.520	-0.462
60-65세	-0.964***	-1.164***	-1.438	-1.506
2005년	-0.005	0.015	-0.058	-0.068
2011년	0.011	-0.030	0.116	0.137
2017년	-0.005	0.015	-0.058	-0.068
rescacoh	-4.640***	-3.084***	-5.072***	-2.752***
rescaage	1.216***	1.904***	2.854	3.524
시각 혹은 청각장애 (참조: 지체장애)		0.451***		1.375***
지적장애(참조: 지체장애)		-1.527***		-1.094***
심한 장애 (참조: 심하지 않은 장애)		-0.877***		-0.571**
고등학교(참조: 중학교 이하)		0.226		-0.007
대학 이상(참조: 중학교 이하)		0.459*		-0.844***
상수	-0.033	0.368	-0.054	0.504
N	1,693	1,693	1,127	1,127

주: *p<0.1, **p<0.05, ***p<0.01

그렇다면 왜 통제변수를 투입했을 때 결혼 확률의 감소 속도가 감소하는가? 이는 최근 코호트로 올수록 결혼을 잘 하지 않는 집단이 다수 분포했기 때문일 수 있다. 장애 유형으로 보면 지적장애가 그러할 수 있고, 장애 정도로 보면 심한 장애를 가진 사람이 최근 코호트에 올수록 다수 분포하여 그러할 수 있다. 그런데 학력의 경우에는 남성과 여성에서 결혼 확률에 미치는 효과가 다르다. 남성의 경우에는 대졸 이상 학력이 결혼에 양의 효과를 미치지만, 여성의 경우에는 대졸 이상 학력이 음의 효과를 미친다. APCT 효과에서 보였던 통제모형 및 미통제 모형 간 코호트 효과들의 기울기 차이는 이러한 대졸 이상 학력의 효과 차이에서 기인했을 수 있다. 최근 코호트로 올수록 남녀 모두 대학진학자가 증가하는데, 남성의 경우 그것이 결혼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지적장애나 심한 장애로 인한 통제 효과를 상쇄시키지만, 여성의 경우에는 그것이 결혼에 부정적인 방향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지적장애나 심한 장애로 인한 통제 효과에 학력의 효과가 더해져 기울기에 큰 변화가 생긴 것으로 유추된다.

[그림 3-9] APCD 모형으로 추정된 결혼의 코호트 효과

다음으로 코호트 변수들의 추정 계수를 살펴보았다(<표 3-7>과 [그림 3-9] 참조), 먼저 여성의 경우에는 유의미하게 돌출된 집단이 없었다. 즉 여성 집단에서는 결혼 확률 감소 경향에서 크게 벗어나는 코호트가 없었다. 하지만 남성의 경우 돌출된 코호트가 일부 있었다. 통제변수를 투입했

을 때와 투입하지 않았을 때 모두, 1946-1951년생 코호트의 결혼 확률에 미치는 효과는 경향에 벗어날 정도로 큰 정의 효과를 보였다면, 1964-1969년생과 1970-1975년생 코호트의 결혼 확률에 미치는 효과는 경향에 벗어날 정도로 큰 음의 효과를 보였다. 또한, 통제변수를 투입했을 때, 1976-1981년생 코호트의 결혼 확률에 미치는 효과도 유의미하게 음의 효과를 보였다.

1946-1951년생 코호트의 경우, 당시까지 보편혼의 규범이 장애인에까지 강력히 작동했고, 결혼에 필요한 토대를 가질 수 있었던 코호트로 해석된다. 하지만 그 이후 코호트부터는 점차 결혼율이 감소하게 되고, 특히 1964년생부터 1981년생의 경우 감소 경향보다도 훨씬 낮은 결혼 확률을 보인다. 이러한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세대가 성인기로 진입하게 되는 1984년부터 2001년 사이의 한국 상황을 떠올릴 필요가 있다. 해당 시기에는 급속한 화이트칼라화가 진행되었으며, 1997년 IMF 경제위기로 높은 실업률을 기록하였다. 1980년대부터 종래에 있었던 소규모 제조업 등이 해당 시기부터 몰락하기 시작하는데, 그 당시까지 상당수의 장애인이 이러한 소규모 제조업 부문에 종사하고 있었다. 그런데 3차 산업으로 산업구조가 빠르게 재편되고, 화이트칼라화가 진행되었다. 이러한 변화에 대비하지 못한 장애남성의 경우, 결혼 시장에서도 소외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또한 경제위기는 장애인을 노동시장으로부터 더욱 주변화시켰다. 노동시장으로부터의 주변화는 장애남성이 가진 경제적 자원의 질을 하락시키고, 결혼을 지연시키거나 결혼 가능성을 낮추는 방향으로 작동한다(유홍준・현성민, 2010).

제 3 절 소결

장애인을 둘러싼 시기별 사회구조적 맥락의 변화가 장애인의 성년기 주요 생애 경험에 반영되었는가를 살펴보기 위해, 장애인의 성년기 주요 생애 경험-대학진학, 취업 및 결혼-에 미치는 세대 효과를 APC 분석을 통해 확인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통제변수를 투입하지 않았을 때의 생애 과업별 코호트 경향(trend)을 살펴보면, 대학진학 확률은 최근 세대로 올수록 증가하였고(사회모델의 점진적 실현), 취업 확률은 코호트 경향이 나타나지 않았으며(의료모델의 유지), 결혼 확률은 최근으로 올수록 떨어지는 것(비혼화)으로 나타났다. 1976년 특수교육법이 제정된 이래, 특수교육제도가 점차 개선되었고, 1995년부터는 장애인 대학특례입학전형이 실시되는 등 장애인의 대학진학 기회는 점차 늘었다. 고촉법, 직재법 등 장애인 고용에 대한 직접적 제도적 개입도 있었다. 하지만 오늘날 비장애인에게조차 쉽지 않은 노동시장으로의 진입은 장애인에게는 더 어렵다. 이러한 구조적 조건 하에서는 다음 세대 장애인의 삶 역시 여전히 원 가족에게 의존하고 부족한 국가 복지의 보조를 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

장애특성을 통제변수로 투입했을 때, 코호트 효과 경향의 변화가 있었다. 대학진학확률의 증가 효과는 커졌고, 결혼 확률의 감소 효과는 완화되었다. 이러한 장애특성을 통제했을 때, 생애 과업 수행은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는 표본 설계 및 장애인의 수명과 관계가 있다. 표본이 지역사회 거주 장애인만을 조사 대상으로 삼으면서, 시설장애인이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중증 혹은 지적장애인의 경우, 최근 코호트에 많이 분포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중증 혹은 지적장애인이 나이가 들면 그들을 돌보던 부모도 나이가 듦에 따라 이들을 시설에 위탁할 수밖에 없게 된다. 게다가, 장애인의 수명은 비장애인에 비해 짧아(김정석・이진우・노승현, 2017), 조사 대상에 포함된 과거 코호트의 경우 비교적 건강하고 자립한 이들로 구성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분포의 특성이 통제가 되면서, 기울기의 변화가 생긴 것으로 판단된다. 즉 시설장애인을 분석

대상에 포함 시킬 경우, 그리고 중증 혹은 지적장애인의 전적인 탈시설화와 지역사회 돌봄을 통한 자립 생활이 가능해지게 되면 이러한 결과는 다르게 나타날 것으로 추측된다.

경향을 벗어나는(detrended) 세대효과도 발견되었다. 첫 번째 세대효과는 1964-1969년에 태어난 여성에게서 나타났다. 그들의 경우, 박정희 정권이 통치하던 시기에 태어나 성장기를 보낸 코호트로, 다른 코호트에 비해 유독 대학진학 확률이 낮았다. 이는 해외 구호단체의 철수, 선성장후복지라는 정책 기조하에 일반 장애인[57]에 대한 복지가 전무한 상황, 우생학적 모자보건법의 실시에 따른 사회적 차별의 극대화, 그리고 남아선호사상과 여아에 대한 차별이 잔재한 상황에서 출생 수 증가에 따른 인구압력 또한 있었기 때문에, 해당 시기에 태어난 장애여성의 대학진학은 어느 세대보다도 힘들었을 것이다.

그리고 1964-1981년생 남성의 결혼 확률이 다른 세대보다도 낮았다. 이는 급격한 산업구조 변화에 대한 장애남성의 부적응 그리고 경제위기의 효과로 설명된다. 1980년 중후반부터 한국의 산업구조가 3차 산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노동시장의 급격한 화이트칼라화가 진행되었다. 대학설립준칙주의가 실시되는 등 비장애인이 고등교육을 성취하고 화이트칼라로 취업할 수 있는 기회는 늘었지만, 장애인의 경우 고등교육에 대한 포함이 지체됨에 따라 그러한 변화에 적응할 수 없었다. 점차 특수교육제도가 개선됨에 따라 대학진학의 기회는 확보했지만, IMF 경제위기가 닥치면서 고실업과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이 심화 되었다. 이러한 시기에 노동시장에 진입해야 하는 해당 세대의 장애남성들은 안정적 노동 지위를 찾지 못했고, 결혼 시장에서도 배제되었을 것이다. 결혼 적령기마저 놓치게 되자 이 세대 장애남성들은 '미혼'으로 남게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긍정적 세대효과는 1988-1993년생 코호트에서 비로소 나타난다. 1988-1993년생 남성의 대학진학확률이 다른 코호트 보다도 높게 나타났으며, 1988-1993년생 여성의 취업 확률이 다른 코호트에 비해 높게 나타난 것이다. 이는 최근 사회모델로의 장애 패러다임의 변화가 비로소 장애인의

57) 여기서 일반 장애인이라 함은 산업재해나 전쟁 등으로 인해 장애인이 된 사람들 외의 장애인을 뜻한다.

생애에 미세하게 반영된 결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특수교육제도가 개선되고, 대학진학률이 상승한 배경에서 장애여성의 고용기회가 제도적으로 확보됨에 따라 관찰 가능한 현상으로 이해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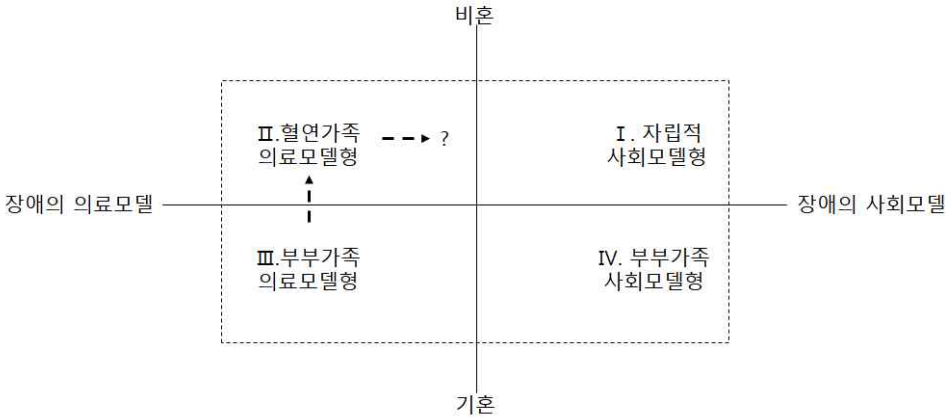

[그림 3-10] 장애인의 성년기 주요 생애 경험 유형의 변화 경로

장애인의 세대별 학력 수준은 조금씩 향상되고 있다. 하지만 노동시장의 성과는 이전 세대나 최근 세대나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학력수준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의료모델이 유지되고 있다. 한편 비혼화는 남녀를 불문하고 심화되는 현상이다. 즉, 세대에 따른 장애인의 생애 유형은 '부부가족 의료모델형' 중심에서 '혈연가족 의료모델형' 중심으로 이행하고 있다([그림 3-10] 참조). 다만, 장애여성 중 가장 최근 코호트에서 취업 효과의 개선이 나타나, '자립적 사회모델형' 으로의 이행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그림 3-10] 참조). 앞서 언급했듯이 자립적 사회모델형은 혈연가족이나 결혼을 통해 형성된 제도 가족에 의존하지 않고, 노동시장 참여를 통해 소득을 획득하여 어느 정도 자립이 가능한 생애 유형이다.

비혼화는 더 이상 거스를 수 없는 사회적 현상이다. 결혼을 통해 형성된 제도가족(배우자와 자녀)을 통해 부양과 돌봄을 받는 것은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장애인에게도 어려운 것이 되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장애인

복지는 혈연가족 중심의 장애인 돌봄을 국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을 택하거나, 더 나아가 장애인의 노동시장 참여와 소득의 보장을 통해 그들의 적극적 자립을 독려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제 4 장 선별된 대학진학, 성별과 계층의 교차성

4장부터는 공시적 측면에서 장애인의 성년기 주요 생애 경험의 사회경제적 기회구조를 분석한다. 4장에서는 부모의 계층에서 학력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통계적으로 검증한다. 또한, 부모의 계층과 성별이 각각 대학진학에 미치는 영향, 부모의 계층과 성별의 상호작용 효과 즉, 부모의 계층과 성별의 교차성을 경험적으로 확인한다.

제 1 절 연구의 배경

한국사회에서 고등교육기회가 점차 보편화[58]됨에 따라 대학 학력의 절대적 가치는 감소했지만(신광영・문수영, 2014), 대학 학력은 취업의 필요조건으로서 여전히 작용하고 있다. 장애인에게 고등교육성취는 단순히 취업의 필요조건을 넘어서 더 큰 의미가 있다. 고등교육을 받음으로써, 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 더 많은 기회를 획득할 수 있으며, 스스로 차별과 배제의 구조를 바꾸고자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다.

하지만 2020년 장애학생[59]의 대학진학률은 약 20%로(교육부, 2020a), 전체 학생의 진학률인 약 74%(교육부, 2020b)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장애인의 고등교육성취는 이러한 수치를 비교하지 않더라도, 비장애인에 비해 어렵다는 것이 이미 잘 알려져 있다(Bento, 1996; Holloway, 2001; Fuller, Bradley and Healey, 2004; Riddell and Weedon, 2006). 교육프로그램이나 교수방법 자체가 장애인에게 적합하지 않거나, 시험의 조건이나 환경이 비장애인의 기준에 맞춰져 평가자체가 장애인에게 불리하기도 하고, 기숙사 시설 등 물리적 환경이 장애인이 대학생활을

58) Trow(2000)는 한 사회의 고등교육단계를 대학진학률을 통해 구분하였다. 그의 고등교육단계 구분에 의하면, 대학진학률 15% 미만은 엘리트 교육(elite education), 15 % 이상 50% 미만은 대중교육(mass education), 50% 이상은 보편교육(univeral education)이다.

59) 엄밀히 말하면, 고등학교 과정에서 특수학교 및 일반학교 특수학급에서 특수교육을 받은 고등학교 졸업생에 해당한다.

하는 데 장벽이 되기도 하여 그들의 교육성취를 어렵게 한다.

기존의 장애인의 고등교육성취에 관한 연구들은 장애인이 극복해야 하는 환경적 조건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몇몇 연구는 장애인의 내재적 속성이 대학진학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하고 있다. 이 연구들을 통해 어떠한 내재적 속성이 장애인으로 하여금 대학교육으로부터 이들을 더 배제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장애특성이나 심리적 요인 등 많은 내재적 속성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젠더와 사회계층은 대학진학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변수이다. 산드라와 호간(Shandra and Hogan, 2009)과 아베베, 헬네스 및 안데네스(Abebe, Helseth and Andenæs, 2019)는 대학진학에 미치는 젠더와 사회계층의 영향을 실증적으로 다루고 있다. 산드라와 호간(Shandra and Hogan, 2009)의 연구는 미국 고등학교 졸업생을 대상으로, 아베베 외(Abebe et al., 2019)의 연구는 노르웨이의 고등학교 졸업생을 대상으로 한다. 그 결과, 두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저학력 부모를 둔 장애학생이 고학력 부모를 둔 장애학생에 비해 대학에 진학할 가능성이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효과에 있어서 두 연구는 정반대의 결과를 보여준다. 산드라와 호간(Shandra and Hogan, 2009)의 연구에서는 장애여성이 장애남성보다 대학에 진학할 가능성이 작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베베 외(Abebe et al., 2019)의 연구에서는 장애남성이 장애여성보다 대학에 진학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이 연구는 한국 장애인의 대학진학에 영향을 미치는 성별과 사회계층 요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앞의 두 선행연구는 장애인의 대학입학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내재적 속성의 효과를 명료화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면, 이 연구는 한국 장애인의 대학진학에 미치는 성별과 사회계층 효과와 그 교차성을 규명하기 위해 양적인 접근을 하는 한편, 사회적 맥락과 이론적 배경을 토대로 분석모형을 정교화하고, 그 결과를 해석하고자 한다.

1. 장애인 고등교육의 팽창

20세기 이후 최근까지 한국을 비롯한 선진국에서 고등교육성취에 있어 가장 큰 변화는 대학교육기회가 크게 확대되었고, 성별 학력격차가 크게 감소하였다는 것이다. 한국의 대학진학률은 1980년까지 30% 이하였으나, 2010년대 이후부터 최근까지 70%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표 4-1> 참조).

대학교육기회가 확대된 배경으로 1980년 대학졸업정원제 실시와 1996년 대학설립준칙주의 도입이 있다(김기헌・방하남, 2005). 대학졸업정원제는 대학 졸업정원보다 입학정원을 많이 선발하여, 졸업시 정원의 제한을 두는 제도였는데 실질적으로 졸업 정원 제한이 적용되지 않아, 대학 학력자의 수를 늘렸다. 그리고 대학설립준칙주의는 정부에서 대학 설립 요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당시 경제성장에 힘입어 노동시장에서 많은 고학력 노동자를 필요로 함에 따라 도입된 것이었다.

<표 4-1> 1970년대 이후 한국 고등교육의 팽창

연도		1970	1980	1990	2000	2010	2020
고등학교 졸업생의 대학진학률(%)		26.9	27.2	33.2	68.0	78.9	72.5
	남학생(%)	24.2	23.9	33.3	70.0	77.5	69.3
	여학생(%)	25.3	22.2	31.9	65.0	80.5	76.1

자료: 교육부(각 년도), 「교육통계연보」

<표 4-2> 장애인특별전형의 실시대학 비율과 입학생 수

연도	1995	2000	2005	2010	2015	2020
장애인특별전형 실시대학* 비율(%)	2.4	15.3	15.3	21.2	23.6	27.5
장애인특별전형을 통해 대학에 입학한 학생 수	113	368	389	652	807	993

*장애인특별전형 실시대학은 실제로 해당 전형을 통해 장애학생의 입학이 이루어진 대학에 한하였음.

자료: 교육부(각 년도), 「교육통계연보」; 「특수교육 연차보고서」를 통해 재구성

한편, 한국에서는 최근 몇십 년 동안 장애인의 고등교육성취 제고를 위한 제도 및 프로그램 차원의 노력이 있었다. 1995년부터 장애인대학입학특

별전형(이하, 장애인특별전형)을 실시하였고, 개별 학교에서는 장애학생(학습)도우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의 노력이 있었다[60]. <표 4-2>는 1995년부터 장애인특별전형을 실시한 대학의 비중과 장애인 특별전형을 통해 입학한 학생 수가 증가했음을 보여준다. 장애인특별전형을 실시대학의 비율은 1995년 2.4%에서 2020년 27.5%로 크게 증가하였고, 장애인특별전형으로 입학한 장애학생 수는 1995년 113명에서 2020년 993명으로 약 9배 증가하였다.

이러한 한국 장애인의 대학진학률의 증가가 비단 제도적 변화에서만 비롯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대학입학률 증가는 한국에 역사적으로 오래전부터 존재하던 한국인의 교육 열망(educational zeal)과 또한 큰 관련이 있다(오욱환, 2000). 한국인들은 오랫동안 학력주의사회, 즉 학력이 사회적 지위를 보장해주고, 부와 명예를 보상해주는 사회를 경험하였다. 이러한 열망이 정치적으로 반영되어 대학진학의 문을 넓이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오욱환, 2000).

또한, 한국의 대학진학률이 크게 증가한 것은 경제성장과 출산율 감소에 따른 가족구조의 변화에서 기인 되었을 수 있다. 2020년 한국의 명목 GDP는 1970년 그것의 약 700배 성장하였다[61]. 1970년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약 5였으나, 2020에는 1 미만으로 크게 떨어졌다[62]. 이는 교육에 투자할 수 있는 국가 및 가구의 재원이 크게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교육투자를 할 학령인구, 부모의 입장에서는 자녀의 수가 크게 감소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교육열망 속에서 출산율 감소는 물론 경제수준이 향상되면서 자녀에 대한 장기적이고 집중적인 교육투자가 가능해졌다. 이러한 열망이 내재된 가운데, 경제적 수준이 향상되고, 출산자녀수의 감소로 인해 자녀에 대한 장기적이고 집중된 교육투자가 가능해지면서, 장애자녀에 대한 부모의 교육투자 역시 증진되었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장애인의 사회참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개선된 것 역시

60)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 설치가 의무화된 것은 2021년 「장애인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제정된 이후이다.
61) 한국은행「국민계정」 1970년, 2020년 , 주요지표(연간지표) (인출날짜: 2022.09.30.)
62) 통계청「인구동향조사」 1970년 2020년, 합계출산율(시도/시/군/구) (인출날짜: 2022.09.30.)

장애인의 고등교육확대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2004년 비례대표제를 통해 장애인 국회의원이 등장한 이래, 현재 국회에서는 300명 중 4명의 장애인이 국회의원으로 적극적인 정치 활동을 펼치는 등 장애인의 정치적 대표성 역시 사회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장애인의 고등교육성취는 더욱 중요한 과제로 여겨지고 있다.

2. 대학진학률의 젠더 역전

한국 여성의 대학진학률 역시 꾸준히 성장하였다. 2010년 여학생의 대학진학률은 남학생의 그것을 추월하였고, 최근까지 남학생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표 4-1> 참조).

국가의 경제 수준은 증가했고 아이들의 수는 감소했다. 이러한 변화는 부모들에게 딸들에게 교육투자를 할 수 있는 여력을 주었다. 게다가 과거에는 아들만이 가족을 대표하고 가계를 물려받을 수 있었지만, 지금은 그러한 남아선호사상이 다소 희미해져 딸의 가치가 높아졌다. 한국에서는 '잘 키운 딸 하나 열 아들 안 부럽다.'는 구호가 한때 유행하기도 했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가 딸에 대한 교육투자를 유도한 것으로 보인다.

복지국가의 발전에 따라 아들의 노부모 부양의무의 가치가 약화 된 것도 딸의 대학진학률 향상에 기여했을 수 있다(Brinton, 1988). 부모가 노후에 자녀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할 필요가 없어지게 되면서, 정서적 부양기능을 하는 딸에게 더 많은 교육투자를 했을 수 있다(Greenhalgh, 1985; Lee, 1998). 이는 앞의 노르웨이 사례(Abebe, Helseth and Andenæs, 2019)와 미국의 사례(Shandra and Hogan, 2009)에서 성별 효과가 반대로 나타난 이유가 된다.

대학교육의 가치가 성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두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한국의 노동시장은 이중화되었고, 대학교육은 점차 안정된 노동시장 지위를 보장하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졌다(신광영・문수연, 2014). 남성에게는 이러한 명제가 그대로 적용된다. 반면 여성의 경우 대학교육의 가치가 노동시장 지위 보장을 넘어, 결혼 시장에서의 경쟁자원으로 활용되기도 한다(Brinton and Lee, 2001). 이처럼 여성의 대학 학력의 의미는 다

소 복합적으로 남성보다 높은 대학진학률을 유지하는 이유가 되기도 한다[63].

제 2 절 이론적 배경과 비장애인 대상 기존 연구 검토

1. 대학진학에 미치는 부모의 계층효과

사회계층연구에 따르면, 비록 고등교육의 양적으로 확대되었다 하더라도, 교육성취에 있어서의 가족배경(예. 계급, 가구소득, 부모의 교육수준 등)에 의한 차이는 유지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모든 계급의 교육기회가 확대되었다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보면, 상층이 교육활동에 수반되는 경제적 부담을 지속적으로 감당할 가능성이 높다(Boudon, 1974). 그리고 "상층계급은 일종의 '방어적 교육투자', 즉 자녀의 교육에 더 많은 비용을 투자하는 차별적 전략을 통해, 그들의 지배적 지위를 방어하고자 한다(Thurow, 1972; 방하남・김기헌, 2002에서 재인용)".

더 나아가 가족배경에 따른 "교육격차는 비용과 이익을 고려한 개인의 합리적 행위의 결과로 설명" 될 수 있다(Breen and Goldthorpe, 1997; Raftery and Hout, 1993; Goldthorpe, 1996; 문수연, 2016에서 재인용). 동일한 교육 열망에도 불구하고 하위 계층은 교육을 지속하는 데 있어 선택권이 제한적인 반면, 중상위 계층은 교육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그에 상응하는 교육적 성취를 달성할 수 있다. (문수연, 2016; 김위정・염유식, 2009; Goldthorpe, 1996) 다시 말해, 자녀교육선택은 사회이동, 사회재생산 등 교육 결과와 관련된 비용과 편익을 판단하여 이루어진다.

가족배경에 따른 교육격차는 문화자본의 효과로도 설명할 수 있다. 부르디외(Bourdieu, 1986)는 제도화된 학교교육에서 지배계급의 문화 상징을 선정하고 평가하는 것은 지배적인 상징을 구현하고 문화자본을 소유한 계

63) 한편 최근 여성의 대학진학률이 남성을 앞지른 이유는 입시제도에서 여학생들이 우위를 점한 점이 지적되고 있다. 내신을 중시하는 수시 전형에서 여학생이 더 유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경향신문, 2021/07/22 "내신 관리 철저한 여학생, 대학진학률 12년째 '우위'" https://www.khan.co.kr/national/education/article/202107222127005).

층에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문화 자본은 어린 시절부터 가정에서의 비공식적인 사회화 과정을 통해 형성된다(문수연, 2016). 가족생활을 통한 일상 속 비공식적이고 비시각적인 교육 경험은 일종의 문화자본이 될 수 있다(문수연, 2016). 어린 시절부터 매일의 교육 관련 경험이 교육과 학업 성취를 둘러싼 특정 계층의 취향과 가치관으로 체화되면서 자녀의 교육성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문수연, 2016). 양육기술, 외국어 능력 등의 인지적 능력 역시 문화자본으로서 자녀의 교육적 성취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장미혜, 2002; 문수연, 2016에서 재인용)

교육성취에 대한 가족배경의 영향력에 대하여 한국에서 이루어진 사회계층연구들이 이를 뒷받침한다(예. 방하남・김기헌, 2002; 2003; 장상수, 2000). 이들 연구들은 모두 교육기회의 확대가 고학력화를 초래했고, 성별 학력격차를 줄이는 데는 기여했지만, 학력성취의 가족의 계층별 차이를 완화시키지는 못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2. 대학진학에 미치는 성별 효과

일반적으로 산업화가 진행됨에 따라 여성의 노동시장 진출이 증가하고, 여성의 교육수익률이 증가하며, 성별 교육격차는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설명은 한국의 경우 산업화에서도 여성의 고용률이 증가하지 않기 때문에 적합하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사회에서 성별에 따른 학업성취도 차이는 크게 줄었으며, 최근 몇 년 동안 여성의 대학진학률이 남성의 그것을 추월하게 된 원인은 무엇인가?

합리적 선택이론에 따르면 부모의 성 선택적 교육투자는 위험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이뤄진다. 한국인들은 IMF 위기와 금융 위기와 같은 경제적 불안을 경험했다. 이에 따라 노동시장지위의 불안정성이 커지면서 부모들은 아들이 대학교육을 받지 않고도 취업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었기 때문에 아들에게 교육투자를 아꼈다. 한편, 여성의 경우 고등교육을 받지 않으면 불안정성이 심화될 수밖에 없었으므로 부모들은 상대적으로 교육에 대한 투자를 유지할 수밖에 없었다.

결혼시장 수익률 가설은 여성의 학력이 결혼시장에서 귀중한 자원으로 여겨져 여성에 대한 교육투자를 증가시킨다는 가설이다. 한국 사회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혼하는 보편적 결혼이 유지되어 왔으며, 대부분의 결혼은 계층 내에서 주선되어 왔다(장상수, 1999; 이명진, 2000). 이 사회에서 딸을 둔 사람들은 자신의 계층을 유지하고 계승하기 위해 딸의 학력에 더 많은 투자를 했을 것이다.

수렴하는 문화성향 가설에 따르면 여성을 평등하게 교육해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과 태도가 확산되면서 여성의 교육수준이 높아졌다. 이러한 교육적 양성평등의 확산은 출산율 감소와 관련이 깊다. 자녀 수가 한두 명이 되면서 성별에 관계없이 자녀들의 가치가 높아졌을 수 있고, 딸들을 위한 교육에 투자를 아끼지 않았을 수도 있다.

가정 배경과 성별이 교육 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한국에서 수행된 경험적 연구는 그러한 주장을 뒷받침한다(예: 방하남・김기헌, 2002; 2003; 장상수, 2000). 이러한 연구들은 모두 교육기회의 확대가 고등교육으로 이어졌고 성별 교육격차 해소에 기여했지만 학력 상 사회계층 간 차이를 완화하지는 못했다고 지적한다.

3. 대학진학에 미치는 성별 계층효과

고등교육의 성별 격차는 좁혀지고 가정환경에 따른 격차는 유지되는 가운데, 가정환경이 남성 집단의 대입에 미치는 영향력은 여성 집단에서도 동일한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다. 성별에 따른 가족배경에 따른 대입의 차이는 부의 극대화 가설, 합리적 선택 이론, 교육에 의한 평등주의로 설명될 수 있다(장상수, 2006).

부의 극대화 가설에 따르면, 가족소득의 변화로 인해 교육성취도의 성별 격차가 계층별로 불균일하게 감소할 수 있다(Becker, 1981; Becker and Tomes, 1986; Behrman and Taubman, 1986). 예를 들어 중산층에서 교육성취도의 성별 차이가 먼저 줄어들수록 여성 교육성취도의 계층 차이는 더욱 커지게 된다.

합리적 선택 이론에 따르면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이 높아짐에 따라 여성의 교육수익률은 남성의 교육수익률에 근접하게 된다(Goldthorpe, 1996; Breen and Goldthorpe, 1997). 이에 따라 교육성과의 성별 차이는 감소하며, 여성의 교육성과의 계층 차이는 남성보다 낮은 수준에서 남성보다 가까운 수준으로 증가한다.

교육에 의한 평등주의 가설은 교육의 문화적 가치가 부모의 태도에 따라 다르게 평가된다고 가정하고, 부모의 태도는 자신의 교육수준과 긍정적인 상관관계를 갖는다. 따라서 고학력 부모들은 저학력 부모들보다 자녀의 교육에 더 많은 자원을 투자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고학력 부모는 저학력 부모보다 평등주의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으며, 딸의 교육에 더 많은 자원을 투자하는 경향이 있다(Buchman, DiPrete and Powell, 2003).

이상의 이론과 가설은 일반적으로 여성 집단 내 계층 간 교육 성취도의 차이가 증가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가족 배경이 여성의 교육 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남성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장상수, 2004; 2006).

제 3 절 자료 및 방법

1. 자료 및 대상

한국고용개발원에서 2016년 실시한 <장애인고용패널조사(Panel Survey of employment for the Disabled)> 2차 웨이브 1차 조사자료를 분석한다. 1차 조사자료만을 분석자료로 사용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이 연구는 장애인의 대학진학여부에 대한 시기적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연령집단별 분석을 통해 세대 간 차이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두 번째, 대학진학 연령인 10대 후반에 해당하는 사례가 너무 적었기 때문에 추적 조사를 통한 시계열(longitudinal)분석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세 번째, 패널조사가 조사를 거듭할수록 표본 누락으로 인해 결과가 편중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연구참여자는 조사 당시 나이가 만 18세 이상이었던 1,204명이다. 이들은 만 18세가 되기 전 장애가 발생한 장애인에 한정됐다. 한국에서는 보통 만 18세 이후에 대학에 입학하기 때문에, 만 18세 전에 장애가 발생한 장애인으로 연구대상을 한정할 때, 장애와 대입의 인과관계가 명확히 드러날 수 있다. 또한 연구참여자의 장애유형을 지체장애, 시각 혹은 청각장애, 지적장애로 제한했다. 장애유형을 세 가지 유형으로 제한한 이유는 다른 유형의 장애인은 사례 수가 적어, 분석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2. 분석기법

분석방법은 이항로지스틱회귀분석(binary logistic regression)이다. 이항로지스틱회귀분석은 종속변수가 2개의 명목형 변수일 때 쓰이는 분석방법이다. 연구에서 분석하게 될 종속변수는 대학진학으로, 변수 값을 이분형인 ‘대학 미진학=0’과 ‘대학진학=1’ 로 나눌 수 있으며, 함수는 다음(식 5.1)과 같다.

$$\ln\left(\frac{p_i}{1-p_i}\right) = \alpha + \sum \beta_k x_k \qquad \text{식(5.1)}$$

독립변수 군에 해당하는 변수들은 사회인구학적 변수(성, 출생코호트), 장애특성(장애유형 및 장애정도) 그리고 가족배경(어릴적 주관적 경제수준, 아버지의 학력)이다. 여기서 어릴적 주관적 경제수준 및 아버지의 학력[64]을 주요한 변수로 분석한다. 분석에 사용된 변수의 분포는 다음의 <표 4-3>과 같다.

64) 부와 모의 학력 중 부의 학력만을 분석변수로 삼은 까닭은 계층혼으로 인해 두 변수의 공분산이 커서 함께 투입할 경우 다중공선성이 발생할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표 4-3> 변수 분포

	N = 1,202
종속변수	
대학진학률(%)	35.4
독립변수	
인구사회학적 특성	
여성의 비율(%)	39.6
출생코호트	
1950년대생 혹은 1960년대생	28.3
1970년대생	24.7
1980년대생	23.8
1990년대생	23.2
장애특성	
장애유형	
지체장애	43.0
시각 혹은 청각장애	34.7
지적장애	22.3
장애정도	
심한 장애	43.3
심하지 않은 장애	56.7
가족배경	
가구경제수준: 주관적인 만 14세 무렵 가구경제수준	
하층	31.0
중하층	35.2
중층	26.8
중상층 이상	7.0
아버지 교육수준	
중졸 이하	56.7
고졸	32.9
대졸 이상	10.4

제 4 절 분석결과

이항로짓모델을 통해, 대학입학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의 영향력을 확인하였다. <표 4-4>와 <표 4-5>에서 *b*는 로짓변수에 대한 설명변수의 효과를 보여주고, Exp(*b*)는 이들의 승산비를 보여준다.

모델 1부터 모델4까지는 로짓모델의 다변량분석 결과를 보여준다. 모델 1은 대학입학과 통제 변수(성별, 출생 코호트, 장애 유형 및 장애 정도) 사이의 연관성을 보여준다. 모델 2는 사회인구학적 변수와 장애 특성을 통제한 후 가족 배경이 대학입학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준다. 모델 3은 14세 전후의 주관적 가구 경제 수준과 성별, 모델4는 아버지의 교육 수준과 성별 등 상호작용 항을 모델 2에 추가한 모델이다. $\chi 2$와 자유도의 차이 등에 기초하여 모델을 비교했을 때, 모델 4가 가장 적합하며 함께 추가된 변수의 통계적 유의성이 입증되었다.

또한 어릴적 가구경제수준과 아버지의 교육수준은 장애인의 대학진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어릴적 가구경제수준이 낮고 아버지의 학력수준이 낮을록 대학에 진학할 확률이 낮았다. 이론적 배경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어릴적 가구경제수준에서 중상층 이상이 대학에 진학할 확률은 하층의 약 3배다. 아버지의 학력이 대졸 이상인 장애인의 대학진학확률은 아버지의 학력이 중졸 이하인 장애인의 3배 이상이다.

성별 효과는 유의미했으며, 장애여성이 장애남성보다 대학에 진학할 확률이 낮았다. 이는 가설과 반대되는 결과이다. 모델4의 Exp(*b*)에 따르면, 100명의 장애남성이 대학에 진학할 때 44명의 장애여성만이 대학에 진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도 모델 1에 가족 배경 변수가 추가되면 여성이 대학에 진학할 확률은 낮아지는데. 이는 성별 효과가 계급효과에 포함된다는 뜻이다. 즉 대학에 진학한 여성들이 주로 상층에 많이 분포한다는 것이다.

<표 4-4> 대학진학 로짓분석 결과(1)

	모형 1			모형 2		
	b	S.E.	Exp(*b*)	*b*	S.E.	Exp(*b*)
성별(참조: 남성)						
여성	-0.387***	0.143	0.679	-0.455***	0.152	0.635
출생코호트(참조: 1950년대생 혹은 1960년대생)						
1970년대생	1.108***	0.192	3.028	0.793***	0.204	2.210
1980년대생	1.891***	0.200	6.626	1.170***	0.221	3.221
1990년대생	2.208***	0.216	9.096	1.372***	0.245	3.943
장애유형(참조: 지체장애)						
시각 혹은 청각장애	-0.001	0.147	0.999	-0.129	0.157	0.879
지적 장애	-2.473***	0.288	0.084	-2.625***	0.306	0.072
장애 정도(참조: 심한 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	0.598***	0.167	1.818	0.550***	0.178	1.733
가구경제수준(참조: 하층)						
중하층				0.551***	0.194	1.734
중층				1.078***	0.208	2.938
중상층 이상				1.242***	0.327	3.462
아버지의 교육수준(참조: 고졸 미만)						
고졸				0.934***	0.175	2.544
대학 이상				1.555***	0.290	4.737
성별*가구경제수준						
여성*중하층						
여성*중층						
여성*중상층 혹은 상층						
성별*아버지의 교육수준						
여성*고졸						
여성*대학 이상						
상수	-1.718***	0.219	0.180	-2.264***	0.258	0.104
사례수	1,202			1,202		
LR $\chi^2(df)$	304.33(7)			417.71(12)		
-2Log Likelihood	1257.287			1144.004		
AIC	1273.387			1170.004		
BIC	1314.121			1236.196		

<표 4-5> 대학진학 로짓분석 결과(2)

	모형 3			모형 4		
	b	S.E.	Exp(*b*)	*b*	S.E.	Exp(*b*)
성별(참조: 남성)						
여성	-0.277	0.312	0.758	-0.819***	0.220	0.441
출생코호트(참조: 1950년대생 혹은 1960년대생)						
1970년대생	0.788***	0.204	2.200	0.787***	0.205	2.196
1980년대생	1.162***	0.221	3.198	1.183***	0.222	3.265
1990년대생	1.374***	0.246	3.953	1.391***	0.246	4.018
장애유형(참조: 지체장애)						
시각 혹은 청각장애	-0.125	0.158	0.883	-0.137	0.158	0.872
지적 장애	-2.624***	0.306	0.073	-2.575***	0.304	0.076
장애 정도(참조: 심한 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	0.554***	0.179	1.740	0.581***	0.179	1.787
가구경제수준(참조: 하층)						
중하층	0.680***	0.244	1.974	0.563***	0.195	1.756
중층	1.131***	0.261	3.100	1.074***	0.209	2.928
중상층 이상	1.236***	0.420	3.443	1.242***	0.328	3.461
아버지의 교육수준(참조: 고졸 미만)						
고졸	0.928***	0.176	2.529	0.682***	0.211	1.977
대학 이상	1.557***	0.292	4.745	1.176***	0.368	3.242
성별*가구경제수준						
여성*중하층	-0.358	0.401	0.699			
여성*중층	-0.142	0.411	0.868			
여성*중상층 혹은 상층	-0.008	0.626	0.992			
성별*아버지의 교육수준						
여성*고졸				0.696**	0.331	2.006
여성*대학 이상				0.902**	0.520	2.464
상수	-2.331	0.280	0.097	-2.167***	0.260	0.115
사례수	1,202			1,202		
LR $\chi^2(df)$	418.67(15)			423.66(14)		
-2Log Likelihood	1143.049			1138.057		
AIC	1175.049			1168.057		
BIC	1256.516			1244.4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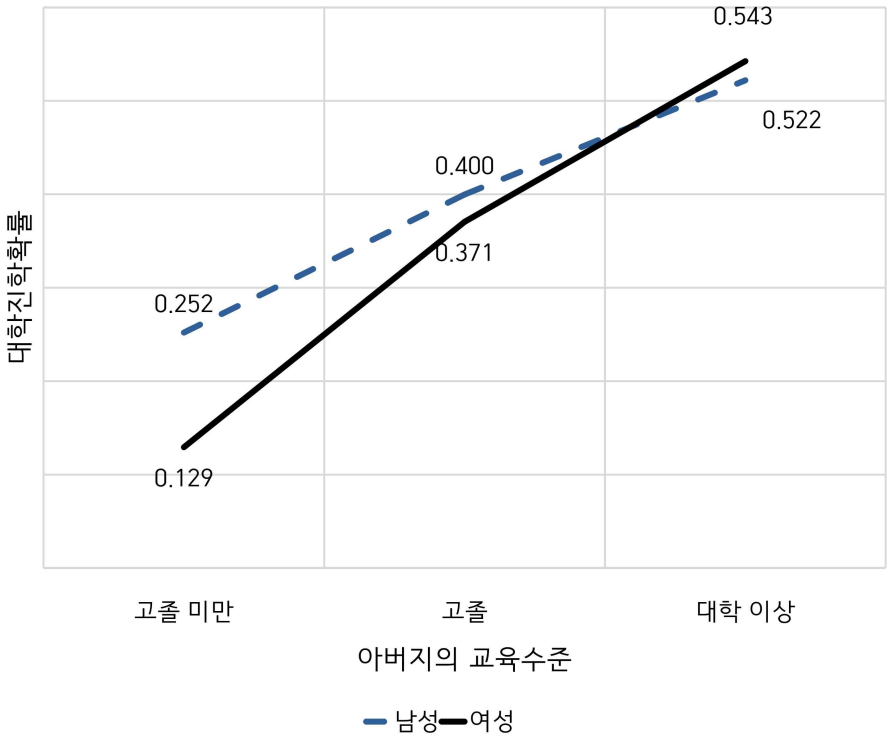

주: : The probabilities are estimated margins at the means of covariates.

[그림 4-1] 성별과 아버지의 교육수준에 따른 대학진학 기대확률

성별과 어릴적 가구경제수준의 상호작용항은 유의하지 않지만(<표4-5>의 모델3 참조), 성별과 아버지의 교육수준의 상호작용항은 유의미했다(<표 4-5>의 모델4 참조). 이는 아버지의 교육수준이 대학진학에 미치는 영향이 성별에 따라 다름을 시사한다. [그림 4-1]은 대학진학에 미치는 성별과 아버지의 교육수준의 상호작용효과를 나타낸 것이다. y축은 아버지의 학력수준 및 성별에 따른 대학진학 확률을 나타낸다. 아버지의 학력 수준이 고등학교 졸업 미만일 때는 여성이 대학에 들어갈 확률이 남성보다 상당히 낮다. 하지만 아버지의 학력이 대학 이상일 때는 여성이 대학에 들어갈 확률이 남성보다 높다. 따라서 아버지의 교육수준이 대입에 미치는 영향은 남성보다 여성에서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제 5 절 소결

이 장은 고등교육의 양적 팽창이라는 배경 하에 장애인의 성별과 계층(가족 배경)이 그들의 대학진학 여부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규명하였다. 이 장은 사회계층이론에 기대어 경험적 연구방법을 통해, 장애인의 대학교육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성별과 가족 배경 그리고 이 두 속성의 상호작용 효과를 밝혔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다른 변수들을 통제한 후에도 계층효과는 유의미했다. 즉 어린 시절 가구소득수준이 낮고, 아버지의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대학에 입학할 가능성이 낮았다. 그리고 성별과 아버지의 교육수준의 상호작용효과가 유의미했다. 즉 장애인의 성별에 따라서 대학입학여부에 미치는 가족배경 효과에 차이가 있었다. 대학입학에 대한 여성의 아버지 학력효과는 남성의 그것보다 컸다. 이는 기존의 사회계층이론과 선행연구를 뒷받침하는 연구결과이다.

교육수준은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매개하여 사회계층이 세습되는 데에 핵심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Blau and Duncan, 1967; Collins, 1979; Lipset and Bendix, 1959; Sewell, Haller and Portes, 1969). 이 연구를 통해 이러한 기존 사회계층이동의 구조가 장애인에게도 적용됨을 부분적으로 확인하였다. 높은 사회적 지위를 지닌 부모에게서 태어난 장애인은 대학교육을 성취할 가능성도 높고 따라서 안정적 직업지위까지 획득할 가능성이 크다. 반면 낮은 사회적 지위를 지닌 부모에게서 태어난 장애인은 대학교육을 성취할 가능성도 낮고 불안정한 경제적 지위에 놓이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는 직업지위에 따른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여부가 장애인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달려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연구결과는 고등교육성취에 있어 장애인이 처한 차별이 성별과 계층의 요소가 교차된 다중 구조임을 보여준다. 아버지의 교육수준이 낮고 가구소득이 낮은 장애여성 경우 대학에 입학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매우 낮다. 소득수준이 낮으면 자녀의 교육에 투자할 수 있는 자본의 양이 절대적으로 제한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모는 선택과 집중을 할 수밖에 없고, 교육수익률이 낮다고 판단되는 장애인인 딸은 장기적 투자대상에서 제외

될 확률이 높다. 특히 학력이 낮은 부모는 교육의 내재적 가치보다는 물질로 환원 가능한 외재적 가치를 중시하기 때문에 교육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장애인 딸의 교육에 투자하기를 꺼려할 것이다.

기존 한국의 장애여성 연구는 장애자녀가 남성인 것 보다 여성인 경우에 부모가 장애자녀를 학교에 안 보내려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오혜경・김정애, 2000). 그런데 부모의 학력이 높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본 연구결과, 아버지가 고학력인 장애여성이 대학에 입학할 확률은 같은 고학력 아버지를 둔 장애남성이 대학에 입학할 확률보다 높았다. 이는 먼저, 교육에 의한 평등주의 가설로 설명이 가능하다. 이 가설에 의하면 교육수준이 높은 부모일수록 성형평인지 수준이 높고, 딸을 대학에 보낼 가능성이 높을 수 있다. 또한 교육수준이 높은 부모일수록 경제적 이윤과 같은 외재적 가치보다는 교육과 같은 내재적 가치에 더욱 중점을 두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고학력 부모는 장애인 딸이 갖게 되는 '장애'와 '여성'이라는 이중적인 사회적 약자의 위치를 직시하고 학력을 통해 이러한 차별을 극복시키고자 딸의 교육에 더욱 투자를 하였을 수 있다. 장애여성으로서의 삶은 장애남성으로서의 삶보다 녹록히 않다. 이러한 현실 인식이 고학력부모로 하여금, 장애인 딸의 고학력성취를 더욱 독려하게 하였을 수 있다.

대학 학력은 노동시장의 참여의 가능성을 높여, '사회모델형'의 생애를 살 수 있는 토대로 작동할 수 있다. 그런데 아버지의 교육수준과 어릴적 가구경제수준으로 포착된 계층적 속성이 장애인의 대학진학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 또한, 대학진학은 성별과 계층에 의해 선별적으로 이루어졌다. 게다가 성별과 아버지의 교육수준은 서로 교차하여 새로운 양상의 구조로 작동했다. 여성의 경우, 부모의 계층에 따라 의료모델형의 삶을 살아갈지, 사회모델형의 삶을 살아갈지가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계층과 성별이 교차했을 때 발생하는 생애 유형의 구획 구조에 대한 깊은 고찰과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

제 5 장 취업에 대한 학력의 매개효과와 연령·학력의 교차성

5장에서는 계층에서 직업 지위로 이어지는 구조를 검증한다. 여기서 계층은 어릴적 가구경제수준과 아버지의 학력으로 측정했고, 직업 지위는 취업 여부로 측정했다. 먼저 계층이 취업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학력이 계층을 매개하여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한다. 또한, 이러한 매개 효과가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지도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연령과 학력의 상호작용 효과 즉, 연령과 학력의 교차성을 살펴본다.

제 1 절 연구의 배경

장애인에게 노동시장에서 지위를 획득하는 것의 의미는 더욱 크다. 경제적으로 자립하여 독립적 정체성을 획득하고 장애로 인한 사회적 배제를 극복할 수 있는 실질적 방법이 노동시장에서 지위를 획득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장애인은 노동시장 지위를 획득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차별과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림 5-1]을 보면, 장애인이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것이 비장애인에 비해 얼마나 어려운가를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전체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70% 이상이지만, 장애남성의 그것은 40~60% 수준이다. 장애남성의 실업률도 점차 감소하고 있긴 하지만, 전체 남성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장애남성의 고용률도 전체 남성의 고용률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이러한 경향은 여성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난다. 전체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50% 내외인 반면 장애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30% 미만이다. 장애여성의 실업률도 전체 여성의 실업률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장애여성의 고용률도 전체 여성의 고용률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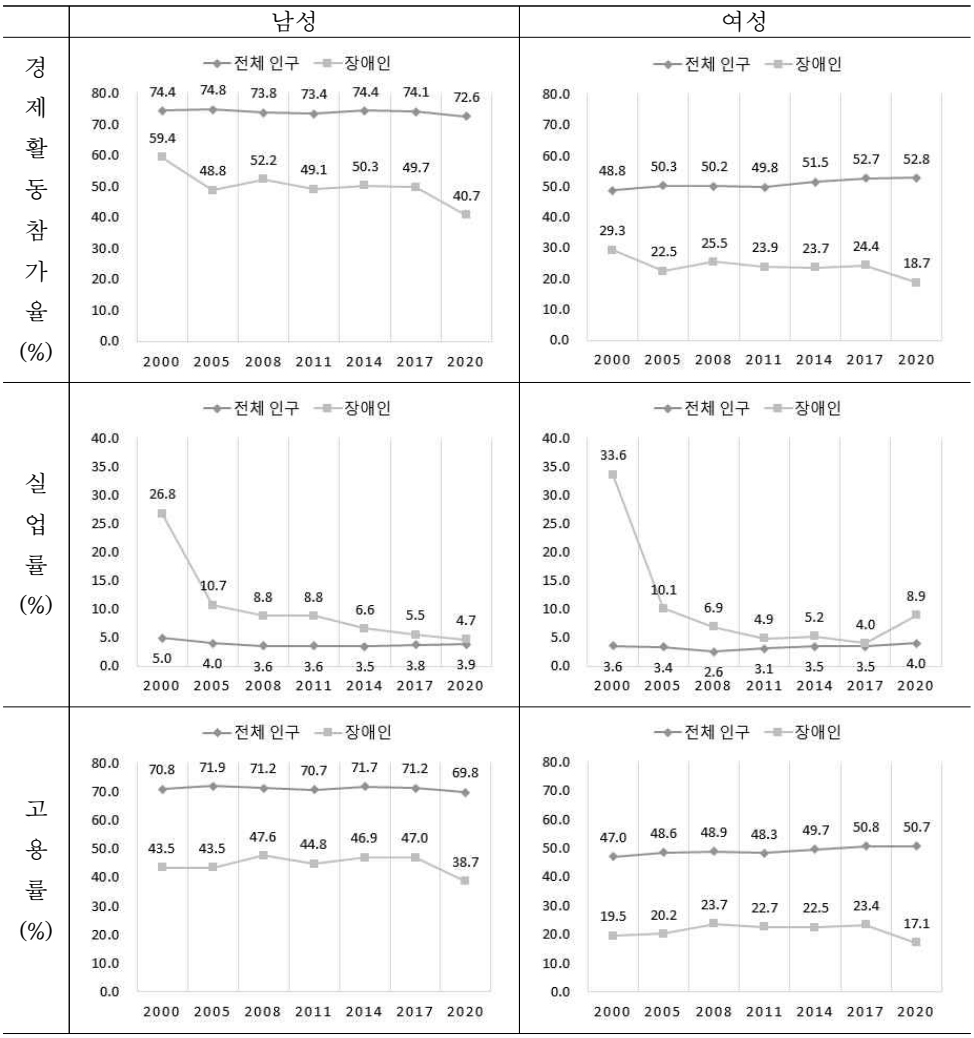

자료: kosis.kr에서 2022년 9월 2일 인출; 전체 인구의 노동지표는 통계청(각 년도)의 「경제활동인구조사」, 장애인의 노동지표는 보건복지부(각 년도)의 「장애인실태조사」

[그림 5-1] 전체인구와 장애인의 성별 노동지표 비교

기존의 장애인의 노동시장 지위획득에 관한 논의들은 주로 장애인이 극복해야 하는 외적 조건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65]. 그러나 최근 국내에서 장애인의 내적 속성이 노동시장 진입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한 연구가 다수 이루어졌다. 이 연구들을 통해 어떠한 내적 속성이 장애인의 노동시장 진입을 어렵게 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경제학 분야에서 다양한 서베이 자료를 활용하여 장애인의 취업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하였다. 이들 연구에서는 장애인의 취업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인구학적 요인, 장애관련 요인, 인적자본 요인, 사회적 지지 요인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

인구학적 요인을 먼저 살펴보면, 여성의 경우 남성보다 취업이 어려우며(유동철, 2000; 정명현, 2003), 기혼인 경우 취업할 확률이 높으며(이선우, 1997; Baldwin and Johnson, 1995), 가구주거나 자녀가 많을수록(백은령・오혜경・전동일, 2007; 이선우, 1997),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을수록(류정진・나운환, 2006; 이선우, 1997; Millet and Sandberg, 2003) 취업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연령이 높을수록 취업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어수봉, 1996; 이선우, 1997)도 있고, 연령이 낮을수록 취업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강동욱, 2004; Kennedy and Olney, 2006)도 있다.

장애관련 요인을 살펴보면, 이선우 외(2001)는 장애 유형에 따라 취업 확률이 다름을 밝혔으며, 강정한・양유민(2013)은 장애 정도가 경증일수록, 중복장애가 없을수록 취업할 확률이 높다고 밝혔다.

인적자본 요인을 살펴보면, 오세철(2004)은 대인관계가 좋을수록 취업에 대한 의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육주혜(2003)는 컴퓨터 활용능력 정도가 높을수록, 오혜경(2002)과 정병오(2010)는 일상생활 도움 필요 정도가 낮을수록 취업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학력과 자격증은 상반된 결과를 보이는데, 학력이 높을수록 취업 확률

65) 교육기회가 점차 확대되었다고 해도 비장애인에 비해 학력수준이 낮은 편으로, 낮은 학력 수준때문에 취업 기회가 제한되기도 한다. 취업 시 장애인으로서 받는 복지 혜택을 포기해야하는 상황이 생기면서 취업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장애인의 업무에 있어 무능할 것이라는 비장애인의 인식이 이들의 취업을 막는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Hasazi, Godon and Roe, 1985; Kirchner and Smith, 2005; Rylance, 1998; Wagner and Blackorby, 1996)

을 높인다고 보는 연구(유동철, 2008)도 있지만, 그 반대인 연구결과(김성희, 2010)도 존재한다. 자격증 역시 보유 여부가 취업 확률을 높인다는 결과(이선우, 1997)가 있는 한편 유의하지 않다는 결과(김동일・김수정・김경선, 2012)도 있다.

사회적 지지는 심리적 요인과 물질적 요인으로 분류할 수 있다. 생활만족도 등의 심리적 지지는 취업 확률을 높이는 반면(심진예・전혜연, 2003; 임효순・이홍직, 2009; Bossé et al., 1987) 이전소득 등의 물질적 지원은 취업 가능성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선우, 1997; 임종호・전동일, 2008). 그 외에 고용서비스와 직업 교육은 취업 확률에 상반된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김동일・김수정・김경선(2012), 노승현(2012), 오세란(2008), 유동철(2000), 이선우(1997) 및 임효순・이홍직(2009)의 경우, 고용서비스와 직업 교육이 유의하지 않거나 부적 효과를 보인다고 밝힌 반면, 조상미・김지나・조정화(2010)는 정의 효과를 보인다고 밝혔다.

이상의 연구들은 장애인의 노동시장 진입에 대한 다양한 변수들의 효과를 검증했지만, 이론적 배경이 부재한 상황에서 탐색적 작업에 그쳤다. 이 연구는 직업 지위를 노동시장 진입 여부, 즉 취업 여부로 단순화하여 측정하고 있지만, 장애인에게는 진입 자체가 특권적 지위일 수 있다. 그러므로 기존의 비장애인의 노동시장 지위획득에 관한 논의를 장애인의 노동시장 진입에 적용하여 분석모형을 좀 더 정교화해나갈 필요가 있다.

제 2 절 이론적 배경과 비장애인 중심 기존 연구 검토

가족배경(family background)이 출발점이고, 노동시장 지위획득(market outcome)이 목표점(destination)이라면 교육성취는 둘 사이를 매개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이다(Hallinan, 1988). “사회적 지위획득과 계층화 분야의 연구에서 제도적으로 주어지는 ‘교육기회’와 개인이 획득하는 ‘교육수준’은 성장, 학교 교육, 사회진출로 이어지는 개인의 생애과정에서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매개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로 관측되어” 왔다(Blau and Duncan, 1967; Collins, 1979; Lipset and Bendix, 2018; Sewell et al., 1969; 방하남・김기헌, 2002에서 재인용).

이를 검증한 유명한 경험 연구로 블라우와 던컨(Blau & Duncan, 1967)의 지위획득모형이 있다. 블라우와 던컨(Blau and Duncan, 1967) 은 ‘교육체계가 자녀의 사회경제적 지위획득을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로부터 자유롭게 할 수 있을 것인가?’란 연구 질문으로 자녀의 직업 지위에 미치는 교육의 부모 계층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연구결과, 남성[66]에 있어서 학력획득(educational attainment)이 부모의 지위(socioeconomic origin)와 획득 지위(attained status)의 가장 강력한 매개요인임을 밝힌다[67].

두 번째 주목해야 할 연구는 1960년대 후반부터 1970년대 초반 위스콘신 모형(Wisconsin model)으로 알려진 시월(Sewell)과 그의 동료들의 연구성과(예. Sewell, et al., 1969 등)이다. 가족의 지위가 부모의 자녀에 대한 기대와 연관이 있다는 측면에서 사회심리학적 요소를 사회이동에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학교에서의 성적, 또래 관계, 교사의 기대 등이 결합되어 학생의 교육 및 직업적 열망을 형성한다는 것이다. 최근에 이는 문화자본의 측면에서 가족의 이점 혹은 약점으로 재개념화되고 있다.

국내의 기존 연구 역시 학력은 부모의 지위를 매개하여 더 나은 직업을 얻게 한다는 다소 상식적인 결과를 보여준다(김기헌, 2002; 김영화・김병

---

66) 당시 연구에서 여성은 연구대상에서 고려되지 않았다.

67) 블라우와 던컨(Blau and Duncan, 1967)은 이를 세대 간 이동(intergenerational mobility)으로 명명하고, 과정을 세 가지 구획(segments)으로 나눈다. 첫 번째는 학력획득, 두 번째는 학교-첫 일자리 이행, 세 번째는 첫 일자리 이후에 일어나는 세대 간 이동이다.

관, 1999; 장상수, 2001; 차종천, 1992; Sandefur and Park, 2007). 장상수(2001)는 코호트별 노동시장 지위획득에 대한 학력효과가 변하지 않았다는 결과와 여성의 노동시장 지위획득에 대한 고등교육효과가 감소하였다는 결과 또한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이론적 배경과 연구결과에 따르면, 장애인의 노동시장 지위획득의 차이 역시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차이 및 가족의 문화자본에서 비롯된 교육적 성취의 차이에서 비롯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기존 장애인 대상 연구는 단순히 취업에 미치는 학력의 효과를 확인하였고,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의 효과 및 학력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지 않았다. 이상의 두 가설이 장애인에 적용되는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

또한 부모의 사회 경제적 지위와 직업지위 간 학력의 매개효과가 여성에게도 나타나는지에 대해서는 비장애인 중심 연구에서도 논쟁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장애여성을 대상으로 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장상수(2001)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코호트별 노동시장 지위획득에 대한 학력효과가 변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여기서 코호트는 연령이 통제되지 않은 것으로 연령별 학력효과라 보아도 무방하다. 여성의 노동시장 지위획득에 대한 대학교육의 효과가 최근 코호트로 올수록 감소했다는 결과도 장애여성에 적용될 수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제 3 절 자료 및 방법

1. 분석 기법

이 연구는 노동시장 진입 여부, 즉 취업 여부를 분석하기 위해 패널프로빗 분석을 실시하였다. 패널프로빗 모형은 패널자료[68]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종속변수가 이항변수(binary variable)일 때 쓰는 모형이다. 종속변수가 이항변수인 경우, 패널로짓모형(penel logit model)도 추정이 가능하다. 두 모형의 차이는 오차항에서 개체특성을 고려할 것인가에서 비롯된다. 패널프로빗모형은 오차항이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하며, 패널로짓모형은 오차항이 로지스틱 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한다. 이 연구는 오차항의 분포가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했다. 또한, 독립변수에 다수의 범주형 변수(더미변수)를 다수 다루고 있기 때문에 패널로짓모형은 적합하지 않아 패널프로빗모형을 분석 방법으로 택하였다.

추정 방정식은 다음과 같다.

$$y_{i,t} = \begin{cases} 1, \text{ if } y^*_{i,t} > 0 \\ 0, \text{ if } y^*_{i,t} \le 0 \end{cases} \qquad \text{(식 6.1)}$$

$$y^*_{i,t} = \alpha + \beta X_{i,t} + u_i + \epsilon_{i,t,}, \ \epsilon_{i,t,} \sim N(0,1) \qquad \text{(식 6.2)}$$

$$\begin{aligned} &\Pr(y_{i,t} = 1 \mid X_{i,t}) = \Pr(y^*_{i,t} > 0) \\ &= \Pr(\epsilon_{i,t} > -\alpha - \beta X_{i,t} - u_i) \\ &= F(\alpha + \beta X_{i,t} + u_i) = \Phi(\alpha + \beta X_{i,t} + u_i) \end{aligned} \qquad \text{(식 6.3)}$$

$$\begin{aligned} &\Pr(y_{i,t} = 0 \mid X_{i,t}) = \Pr(y^*_{i,t} \le 0) \\ &= \Pr(\epsilon_{i,t} \le -\alpha - \beta X_{i,t} - u_i) \\ &= 1 - \Phi(\alpha + \beta X_{i,t} + u_i) \end{aligned} \qquad \text{(식 6.4)}$$

68) 같은 대상을 추적하여 반복 측정하는 종단자료

(식 6.3)에서 $y_{i,x}$는 연구참여자 i의 t시점의 취업 여부를 나타내는 관찰값(observed value)으로서 1 혹은 0의 값을 가진다. 그러나 추정 시에는 $y_{i,x}$가 아니라, 관찰되지 않는 잠재(latent) 변수인 $y^*_{i,x}$가 종속변수로 사용된다. 따라서, 패널프로빗 모형의 추정 방정식은 (식 6.4)이다. $X_{i,t}$는 독립변수의 집합이며, $\epsilon_{i,t}$는 오차항이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정규분포를 따른다. 패널프로빗 모형은 오차항이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하므로, $F(\cdot)$함수는 표준정규분포를 따른다. 따라서, $y_{i,t}$가 1일 확률은 표준정규분포의 누적분포함수(cumulative distribution function)를 통해 구해진다.

프로빗 모형을 추정할 때 먼저 u_i를 고정효과(즉, 추정해야 하는 모수)로 간주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패널의 개체 수가 많고, 패널 그룹별 시계열 관측 개체 수가 작은 경우에는 이에 문제가 있다고 알려져 있으며, 표준정규분포를 적용하는 프로빗 모형에서는 고정효과를 적용하더라도, 오차항 u_i가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고정효과 모형이 적절하지 않다(민인식・최필선, 2012:234). 결론적으로 패널프로빗 모형은 대부분의 경우 확률효과 모형으로 추정하게 된다.

2. 자료, 변수측정 및 분석대상

장애인고용패널 1~6차 자료를 결합하여 사용하였다. 분석대상은 2016년 첫 조사 시점 18세 이상 65세 미만, 18세가 되기 전에 장애가 발생한 장애인, 지체, 시각 혹은 청각장애 및 지적장애인 1,202명이다. 그런데 한 사람의 경우, 본인의 교육수준 변수에서 1차 조사에는 고졸로, 2차 조사부터 5차 조사까지는 대졸 이상으로 응답했다가, 6차 조사에서 다시 고졸로 응답한 사례가 있어 제외하였다. 1,201명이 6년 동안 패널에서 이탈하지 않았다면, 총 7,206개의 사례가 있어야 하나, 패널 이탈로 인해 711개의 사례가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통제변수 군은 인구학적변수(성별, 연령, 연령제곱), 장애특성(장애유형, 장애정도), 가구 특성(결혼 여부[69], 본인 가구주 여부, 미취학 가구원 유무[70], 공적이전소득 유무[71]), 주관적 건강상태이다. 첫 번째 독립변수 군은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의 대리변수인 가족배경 변수로 어릴적 주관적 가구경제수준, 아버지의 교육수준이고, 두 번째 독립변수 군은 본인의 교육수준, 그리고 자격증 유무이다. 성별, 장애유형, 어릴적 주관적 가구경제수준, 아버지의 교육수준은 시불변 변수(time-invariant variable)이고, 나머지 변수는 시변 변수(time-variant variable)이다. 변수 중 주관적 건강상태 문항에서 무응답 혹은 응답 거부가 54건 집계되어, 52개 사례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그 외 다른 변수에서 결측값은 없었다. 이 과정을 거쳐 최종 1,201명, 6,443개의 사례가 분석대상에 선정되었다.

---

69) 결혼 여부 변수의 경우, 기혼이라고 응답했다가 다시 미혼이라고 응답한 사례가 49건 있었다. 이는 설문 문항에서 결혼과 동거를 하나의 답변으로 물었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즉 49개 사례는 동거하다가, 미혼으로 돌아간 사례인 것으로 파악된다. 이 연구는 동거를 사실혼으로 보고, 한번 결혼 또는 동거했다고 응답했다가 그 이후에 다시 미혼이라고 응답한 경우 기혼인 것으로 간주하여 이를 재입력하였다.

70) 미취학 가구원 유무는 가구원의 연령 변수를 통해, 7세 미만의 가구원이 있는 경우로 측정했다.

71) 공적이전소득은 (1)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2)장애인연금/경증장애수당, (3)장애연금(국민연금), (4)장애아동수당, (5)그 외 장애인특별지원금 및 (6)기타 공적이전소득이 있는 있는 경우로 측정했다.

<표 5-1> 변수 분포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전체
N		1,200	1,109	1,069	1,038	1,024	1,005	6,443
취업률(%)		49.3	49.9	50.9	51.8	51.2	54.1	48.9
남성 비중(%)		60.4	59.4	59.8	60.0	59.9	59.9	59.9
연령(세)	평균	37.4	38.7	39.7	40.9	41.8	42.8	40.1
	표준편차	12.3	12.3	12.4	12.4	12.5	12.4	12.5
	최소	18	19	20	21	22	23	18
	최대	64	65	66	67	68	69	69
장애유형(%)	지체장애	43.0	43.2	41.9	42.4	42.6	43.2	42.7
	시각 혹은 청각장애	34.8	34.5	34.9	34.5	33.9	33.6	34.4
	지적장애	22.3	22.4	23.2	23.1	23.5	23.2	22.9
장애정도(%)	심하지 않은 장애	56.8	56.5	55.9	55.8	55.5	56.2	56.1
	심한 장애	43.2	43.5	44.1	44.2	44.5	43.8	43.8
기혼자 비중(%)		45.2	46.6	48.0	49.3	51.0	52.6	48.6
가구주 비중(%)		39.7	46.6	45.7	44.7	43.8	50.0	44.9
미취학자녀 있는 경우 비중(%)		9.0	8.5	7.3	6.3	6.1	5.5	7.1
공적이전소득 있는 경우 비중(%)		37.4	42.8	44.6	43.9	46.5	48.9	43.8
주관적 건강상태	평균	2.643	2.646	2.581	2.622	2.591	2.593	2.614
	표준편차	0.667	0.587	0.630	0.584	0.640	0.625	0.624
	최소	1	1	1	1	1	1	1
	최대	4	4	4	4	4	4	4
가구경제수준(%)	하층	31.0	31.2	31.9	32.0	31.2	30.7	31.3
	중하층	35.3	35.7	35.6	35.7	36.2	36.5	35.8
	중층	26.8	26.2	26.0	25.9	26.4	26.4	26.3
	중상층 이상	7.0	6.9	6.6	6.5	6.3	6.5	6.6
부의 학력(%)	중졸 이하	56.8	57.6	58.3	58.4	58.2	58.2	57.9
	고졸	32.8	32.1	31.8	31.8	32.1	31.6	32.1
	대졸 이상	10.3	10.3	9.9	9.8	9.7	10.2	10.0
본인 학력(%)	중졸 이하	24.6	24.3	24.1	23.6	23.8	23.2	24.0
	고졸	49.0	49.3	49.1	48.1	47.2	46.9	48.3
	대졸 이상	26.4	26.4	26.8	28.3	29.0	30.0	27.8
자격증 보유한 비중(%)		27.6	29.0	29.4	31.0	31.3	32.2	30.0

<표 5-2> 시변 변수(연속변수와 이분형 변수)의 기술통계

변수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관측치
취업	overall	0.511	0.500	0	1	N = 6443
	between		0.445	0	1	n = 1201
	within		0.233	-0.322	1.344	T-bar = 5.3647
연령	overall	40.126	12.524	18	69	N = 6443
	between		12.406	18	66.8	n = 1201
	within		1.673	37.126	43.126	T-bar = 5.3647
연령제곱	overall	1766.918	1053.612	324	4761	N = 6443
	between		1033.699	324	4465.2	n = 1201
	within		141.055	1397.718	2115.518	T-bar = 5.3647
심한 장애	overall	0.439	0.496	0	1	N = 6443
	between		0.495	0	1	n = 1201
	within		0.035	-0.395	1.272	T-bar = 5.3647
결혼한 적 있음	overall	0.486	0.500	0	1	N = 6443
	between		0.488	0	1	n = 1201
	within		0.103	-0.347	1.320	T-bar = 5.3647
가구주임	overall	0.449	0.497	0	1	N = 6443
	between		0.448	0	1	n = 1201
	within		0.221	-0.384	1.283	T-bar = 5.3647
미취학 가구원 있음	overall	0.072	0.258	0	1	N = 6443
	between		0.232	0	1	n = 1201
	within		0.125	-0.762	0.905	T-bar = 5.3647
공적이전소득 있음	overall	0.438	0.496	0	1	N = 6443
	between		0.425	0	1	n = 1201
	within		0.262	-0.395	1.271	T-bar = 5.3647
주관적 건강상태	overall	2.614	0.624	1	4	N = 6443
	between		0.482	1	4	n = 1201
	within		0.405	0.780	4.614	T-bar = 5.3647
자격증 보유함	overall	0.449	0.497	0	1	N = 6443
	between		0.448	0	1	n = 1201
	within		0.221	-0.384	1.283	T-bar = 5.3647

<표 5-1>에 변수의 연도별 및 전체 분포를 제시하였고, 이어서 <표 5-2>에 시변 변수 중 연속변수와 이분형 변수의 기술통계를 제시하였다. 먼저 관측치에서 N은 사례 수, n은 패널 개체 수, T-bar는 패널 개체별 시간 변수의 관측치 수[72]이다.

기초통계량이 overall, between, within 세 가지로 나누어 제시되어 있는데, overall는 전체 사례 6,443개의 기초통계량이다. between은 패널 그룹 간의 개념으로, 평균을 예로 든다면, 1,201 패널 각각의 6년 평균의 평균[73]이다. within은 패널그룹 내의 개념으로, 예컨대, within의 평균은 $(X_i - \overline{X}_i)$의 평균을 대상으로 구한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X - \overline{X}_i)$의 총합은 항상 0으로, $(X_i - \overline{X}_i)$에 overall의 평균인 $\overline{X}$를 더해, $(X_i - \overline{X}_i + \overline{X})$의 평균[74]을 구한다.

72) 식은 다음과 같다.

$$\overline{T} = \frac{1}{n}\sum_{i}^{n} T_i$$

73) 식은 다음과 같다.

$$\overline{X}_{between} = \frac{1}{n}\sum_{i=1}^{n}\frac{1}{T}\sum_{t=1}^{T} X = \frac{1}{n}\sum_{i=1}^{n}\overline{X}_i$$

74) 식은 다음과 같다.

제 4 절 분석결과

전체 그리고 남성과 여성을 나누어 취업 여부를 종속변수로 패널 프로빗 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우선, 모형 1-1부터 모형 3-5까지 모두 ρ값(오차항의 분산에서 u_i의 분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모두 80% 이상으로, 패널의 개체특성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영가설인 ρ=0를 기각할 수 있어, 개체특성을 고려한 확률효과모형이 적절하다. 개체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합동(pooled) 프로빗 모형과의 비교에서도 모형 1-1부터 모형 3-5까지의 모든 모형에서 확률효과모형이 적절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5-3>는 전체 집단의 대상으로 한 분석이다. 우선, 통제변수만 투입한 모형1-1을 보면, 남성이 여성보다, 연령이 많을수록 취업 확률이 높으며 하지만 취업 확률이 연령이 증가할수록 증가하다가 어느 시점에 다다르면 다소 감소하는 음의 기울기의 2차 함수의 관계를 갖는다. 시각 혹은 청각장애인이 지체장애인보다 취업 확률이 높으며, 심하지 않은 장애인인 경우, 결혼한 경우, 가구주인 경우, 공적이전소득이 없는 경우,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은 경우 취업 확률이 높았다. 지적장애인 경우는 지체장애인 경우와 취업 확률의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았고, 미취학 가구원이 있느냐 없느냐도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았다.

다음으로, 취업 여부에 미치는 가족배경의 효과를 살펴보면, 모형1-1에 어릴 적 주관적 가구경제수준 변수 및 아버지의 교육수준 변수를 투입한 결과(모형1-2), 가구경제수준이 중층일 때, 그리고 아버지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취업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족 배경 변수는 취업 여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5-3> 취업 여부에 대한 추정 결과(전체)

		모형 1-1	모형 1-2	모형 1-3	모형 1-4	모형 1-5
성별	남성	1.297***	1.283***	1.065***	1.064***	1.094***
	(참조: 여성)	(0.177)	(0.177)	(0.172)	(0.172)	(0.174)
연령		0.243***	0.252***	0.157***	0.154***	0.203***
		(0.036)	(0.036)	(0.035)	(0.036)	(0.042)
연령 제곱		-0.003***	-0.003***	-0.002***	-0.002***	-0.002***
		(0.000)	(0.000)	(0.000)	(0.000)	(0.000)
장애 유형	시각 혹은 청각	0.393**	0.341*	0.302	0.307*	0.282
	(참조: 지체)	(0.190)	(0.190)	(0.186)	(0.186)	(0.187)
	지적	-0.303	-0.249	0.409	0.409	0.430
	(참조: 지체)	(0.275)	(0.275)	(0.271)	(0.271)	(0.274)
장애 정도	심한	-1.228***	-1.199***	-1.020***	-1.015***	-1.045***
	(참조: 심하지 않은)	(0.215)	(0.215)	(0.207)	(0.207)	(0.208)
결혼 여부	예	1.019***	1.025***	0.959***	0.961***	0.993***
	(참조: 아니오)	(0.176)	(0.177)	(0.176)	(0.176)	(0.178)
가구주 여부	가구주임	0.940***	0.965***	0.903***	0.899***	0.905***
	(참조: 아님)	(0.111)	(0.112)	(0.111)	(0.111)	(0.112)
미취학 가구원	있음	-0.116	-0.117	-0.150	-0.145	-0.154
	(참조: 없음)	(0.189)	(0.189)	(0.190)	(0.190)	(0.191)
공적이전소득	있음	-0.635***	-0.612***	-0.574***	-0.576***	-0.575***
	(참조: 없음)	(0.091)	(0.091)	(0.091)	(0.091)	(0.091)
주관적 건강 상태		0.466***	0.457***	0.438***	0.439***	0.441***
		(0.066)	(0.066)	(0.066)	(0.066)	(0.066)
가구경제수준	중하층		0.221		-0.034	-0.024
	(참조: 하층)		(0.208)		(0.203)	(0.204)
	중층		0.470**		-0.003	0.015
	(참조: 하층)		(0.237)		(0.233)	(0.234)
	중상층		0.263		-0.304	-0.276
	(참조: 하층)		(0.377)		(0.370)	(0.372)
부의 학력	고졸		0.354*		-0.094	-0.077
	(참조: 중졸 이하)		(0.210)		(0.208)	(0.210)
	대졸 이상		0.644**		-0.043	-0.061
	(참조: 중졸 이하)		(0.326)		(0.321)	(0.323)
본인 학력	고졸			1.014***	1.027***	2.270***
	(참조: 중졸 이하)			(0.210)	(0.214)	(0.664)
	대졸 이상			2.376***	2.411***	4.209***
	(참조: 중졸 이하)			(0.261)	(0.270)	(0.785)
자격증 보유	있음			0.859***	0.873***	0.877***
	(참조: 없음)			(0.160)	(0.161)	(0.162)
연령*고졸						-0.0283*
						(0.015)
연령*대졸 이상						-0.0447**
						(0.018)
상수항		-6.105***	-6.894***	-6.416***	-6.285***	-7.846***

그런데 추가로 본인의 교육수준 변수와 자격증 보유 여부 변수를 투입했을 때(모형1-4), 가족 배경 변수의 효과가 거의 없어지거나, 유의미하지 않게 된다. 즉, 인적자본인 학력과 자격증 보유의 효과가 가족 배경 효과를 매개하여, 취업 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게다가 인적자본 변수만 모형1-1에 투입한 모형1-3과 가족배경 변수와 인적자본 변수를 함께 투입한 모형1-4를 비교했을 때, 모형의 질이 거의 개선되지 않아, 모형1-3이 취업 여부를 설명하는 가장 효율적인 모형이라고 볼 수 있다.

모형1-5는 모형1-4에 연령과 본인 교육수준의 상호작용항을 추가한 것이다. 그 결과 상호작용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고학력일수록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취업 확률이 증가하는 폭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시각화하여 표현한 것이, [그림 5-2]이다. 그림을 보면, 세 학력 범주에 따른 기울기는 확실히 차이가 있다. 그러나 초기 취업 확률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고졸 이하의 학력자가 대졸 이상 학력자의 취업률을 따라잡는 것은 다소 어려울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 중졸 이하 학력자의 기울기가 가장 큰 이유 즉 나이가 들수록 취업 확률이 다른 집단보다 크게 증가하는 이유는, 저학력에서 비롯된 빈곤 문제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도 보인다. 고학력일수록 젊은 시절 노동시장에서의 기회가 많고, 자산을 축적하거나 사회안전망을 통해, 취업하지 않고 노후를 보낼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저학력자의 경우 나이가 들더라도 최소한의 공적이전소득 외의 소득원을 획득하기 힘들어 취업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여기서 연령은 연령효과와 세대효과가 혼재되어 있어 해석하는 데에 주의가 요구된다. 앞서 설명했듯이,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학력 간 취업 확률의 격차가 감소한다고도 볼 수 있고, 최근 세대로 올수록 학력에 의한 취업 확률의 격차가 증가했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이전 세대의 경우, 학력에 따른 취업의 격차가 적었지만, 최근 세대의 경우 저학력자에게 취업의 문턱이 더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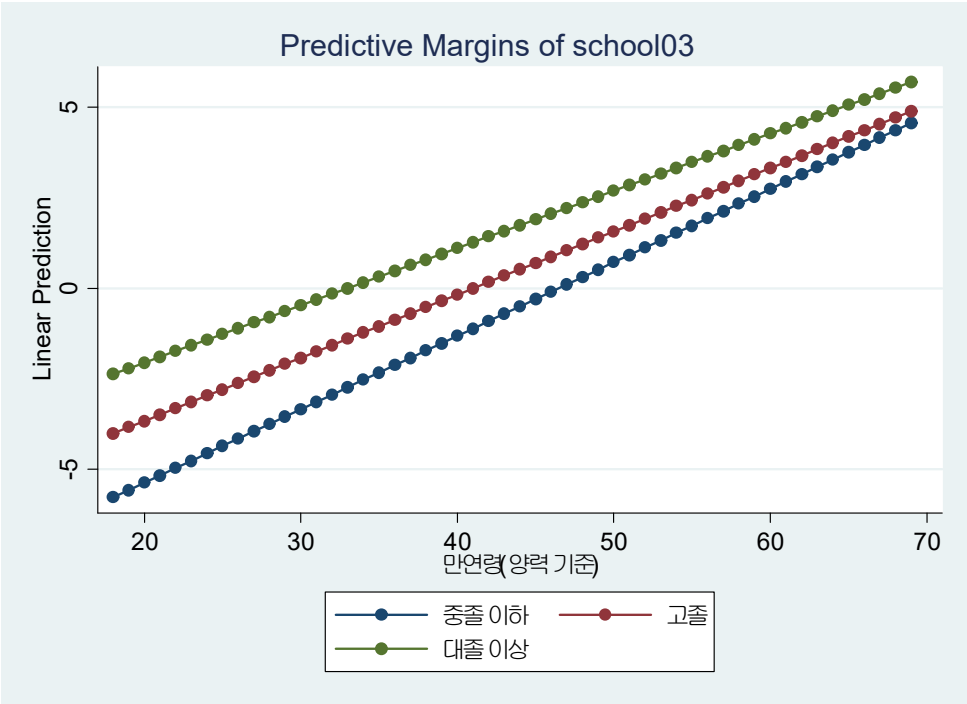

[그림 5-2] 연령에 따른 학력별 취업의 한계효과(전체)

<표 5-4>는 남성의 취업 여부에 대한 변수들의 효과를 보여준다. 우선 전체를 대상으로 한 모형1-1과 남성을 대상으로 한 모형2-1을 비교해보면, 다른 변수들의 효과는 모두 유사했으나, 미취학 가구원이 있는 경우, 취업 가능성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2-2에서 가족배경 변수가 취업 여부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면, 어릴적 주관적 가구경제수준이 높을수록 취업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남성 역시 본인의 인적자본 변수(본인의 학력과 자격증 보유 여부)를 투입했을 때(모형2-4), 어릴적 주관적 가구경제수준 변수의 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본인의 인적자본 변수의 효과가 가족배경 변수의 효과를 매개한 것으로 파악된다.

<표 5-4> 취업 여부에 대한 추정 결과(남성)

		모형 2-1	모형 2-2	모형 2-3	모형 2-4	모형 2-5
연령		0.303***	0.300***	0.225***	0.216***	0.229***
		(0.045)	(0.046)	(0.047)	(0.047)	(0.054)
연령 제곱		-0.004***	-0.004***	-0.003***	-0.003***	-0.003***
		(0.001)	(0.001)	(0.001)	(0.001)	(0.001)
장애 유형	시각 혹은 청각	0.502**	0.496**	0.385	0.424*	0.425*
	(참조: 지체)	(0.238)	(0.240)	(0.250)	(0.251)	(0.249)
	지적	0.466	0.550	0.999***	1.038***	1.100***
	(참조: 지체)	(0.342)	(0.343)	(0.362)	(0.363)	(0.366)
장애 정도	심한	-1.358***	-1.359***	-1.190***	-1.202***	-1.273***
	(참조: 심하지 않은)	(0.275)	(0.275)	(0.285)	(0.285)	(0.287)
결혼 여부	예	1.450***	1.429***	1.294***	1.296***	1.327***
	(참조: 아니오)	(0.224)	(0.225)	(0.234)	(0.234)	(0.235)
가구주 여부	가구주임	0.970***	0.997***	0.919***	0.917***	0.936***
	(참조: 아님)	(0.154)	(0.155)	(0.158)	(0.158)	(0.159)
미취학 가구원	있음	0.764*	0.718*	0.734*	0.714*	0.689*
	(참조: 없음)	(0.393)	(0.393)	(0.407)	(0.407)	(0.406)
공적이전소득	있음	-0.731***	-0.707***	-0.656***	-0.654***	-0.660***
	(참조: 없음)	(0.123)	(0.123)	(0.125)	(0.125)	(0.125)
주관적 건강 상태		0.626***	0.615***	0.581***	0.579***	0.581***
		(0.089)	(0.089)	(0.091)	(0.091)	(0.091)
가구경제수준	중하층		0.635**		0.389	0.410
	(참조: 하층)		(0.259)		(0.272)	(0.271)
	중층		0.714**		0.249	0.283
	(참조: 하층)		(0.295)		(0.311)	(0.311)
	중상층		1.242**		0.620	0.681
	(참조: 하층)		(0.503)		(0.518)	(0.519)
부의 학력	고졸		-0.027		-0.345	-0.290
	(참조: 중졸 이하)		(0.255)		(0.269)	(0.268)
	대졸 이상		0.106		-0.358	-0.343
	(참조: 중졸 이하)		(0.417)		(0.435)	(0.435)
본인 학력	고졸			1.213***	1.198***	1.143
	(참조: 중졸 이하)			(0.295)	(0.301)	(0.838)
	대졸 이상			2.375***	2.358***	3.895***
	(참조: 중졸 이하)			(0.361)	(0.374)	(1.010)
자격증 보유	있음			0.842***	0.839***	0.835***
	(참조: 없음)			(0.213)	(0.214)	(0.214)
연령*고졸						0.004
						(0.019)
연령*대졸 이상						-0.0445*
						(0.024)
상수항		-6.872***	-7.455***	-7.498***	-7.337***	-7.780***
		(0.953)	(1.010)	(1.021)	(1.062)	(1.341)
Observations		3,860	3,860	3,860	3,860	3,860

모형2-4에 연령과 학력의 상호작용항을 투입했을 때(모형2-5), 중졸 이하 학력자와 고졸 학력자 사이에 연령 증가에 따른 취업 확률의 차이가 없지만, 대졸 이상 학력자의 경우 연령 증가에 따른 취업 확률의 기울기가 중졸 이하 학력자보다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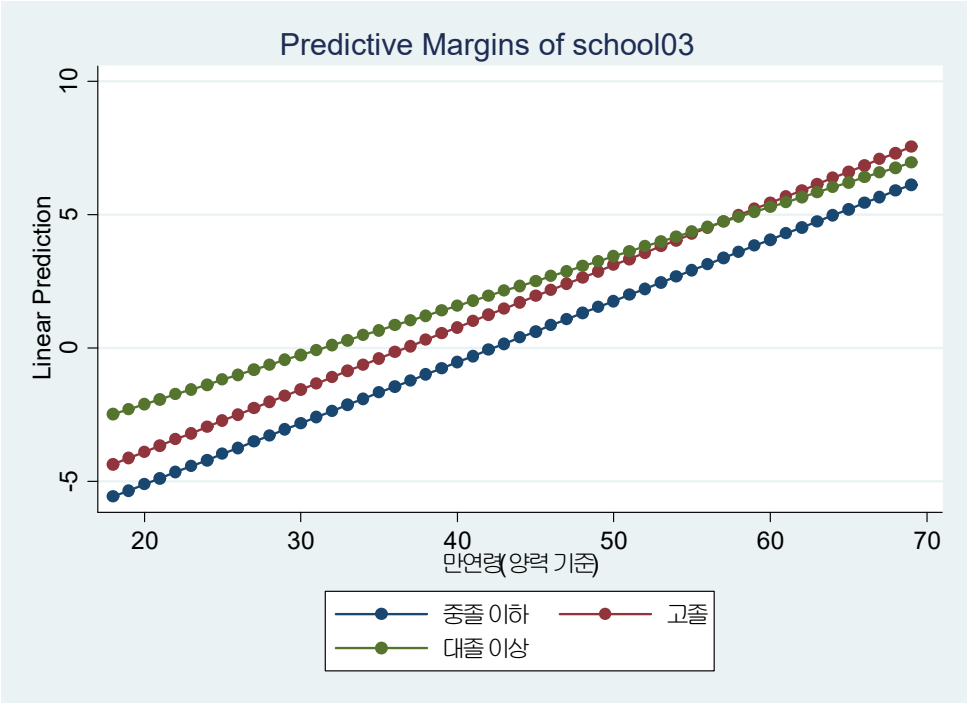

[그림 5-3] 연령에 따른 학력별 취업의 한계효과(남성)

남성의 학력에 따른 연령별 한계효과를 [그림 5-3]에 제시하였다. 중졸 이하 학력자와 고졸 학력자 사이의 취업 효과의 폭은 연령 증가에 따라 좁혀들지 않았지만, 대졸 이상 학력자의 취업의 한계효과는 50대 후반 고졸 학력자의 그것 이하로 떨어진다. 그 이유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대졸 학력자가 그보다 학력이 낮은 사람들에 비해 노후에 취업하지 않아도 되는 유리한 조건을 마련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표 5-5>은 여성을 대상으로 취업 여부에 미치는 변수들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이다. 모형1-1을 보면, 여성은 전체 및 남성을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모형1-1과 모형2-1)와 다르게 시각 혹은 청각장애인인 경우 지체장애인과 취업 여부에 대한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은 반면, 지적장애인인 경우 지체장애인보다 취업 확률이 낮았다. 또한, 결혼 여부가 취업에 미치는 효과가 유의미하지 않았다. 미취학 가구원 유무가 미치는 효과가 모형1-1에서는 유의미하지 않았고, 모형2-1에서는 긍정적인 효과를 미쳤다면, 모형3-1 여성에게는 부정적인 효과를 미쳤다. 이와 같은 결과는 가족 내 성역할 분리가 장애인에게도 적용됨을 의미한다. 남성은 생계를 위해 취업을, 여성은 자녀를 돌보기 위해 집에 머무는 현상이 장애인에게도 나타남을 보여준다.

모형 3-2는 가족배경 변수를 투입한 모형이다. 남성과 다르게, 어릴적 가구경제수준 변수가 아닌 아버지의 교육수준 변수가 유의미하게 정의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경우, 아버지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취업 확률이 높았다. 또한 어릴적 가구경제수준이 가장 높은 중상층일 때, 오히려 취업확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의 경우 경제적 자본만이 취업 여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한편, 여성의 경우에는 경제적 자본뿐만 아니라, 문화 자본이 취업 여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모형3-4는 모형3-2에 본인의 학력과 자격증 보유 여부 변수를 투입한 모델인데, 전체를 대상으로 한 모형과 마찬가지로, 아버지 교육수준의 효과는 교육수준의 매개효과로 사라졌지만 중상층 가구수준효과는 유지되었다. 높은 교육수준이 취업 확률을 높이는 것은 맞지만, 여성의 경우 가구경제수준이 중상층 이상인 경우에는 굳이 경제활동을 하지 않아도 삶을 영위할 수 있으므로 비롯된 결과로 해석된다.

그리고 모형3-3과 모형3-4에서 본인의 학력과 자격증 보유 여부 변수를 투입했을 때, 연령 효과가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는 연령, 즉 세대에 따른 학력 격차가 큼에 따라 학력변수가 연령효과를 흡수한 것으로 파악된다.

<표 5-5> 취업 여부에 대한 추정 결과(여성)

		모형 3-1	모형 3-2	모형 3-3	모형 3-4	모형 3-5
연령		0.163***	0.175***	0.086	0.080	0.180***
		(0.056)	(0.056)	(0.054)	(0.054)	(0.069)
연령 제곱		-0.002***	-0.002***	-0.001*	-0.001*	-0.002***
		(0.001)	(0.001)	(0.001)	(0.001)	(0.001)
장애 유형	시각 혹은 청각	0.153	0.072	0.167	0.159	0.118
	(참조: 지체)	(0.302)	(0.296)	(0.270)	(0.266)	(0.266)
	지적	-1.416***	-1.327***	-0.498	-0.524	-0.551
	(참조: 지체)	(0.427)	(0.425)	(0.408)	(0.404)	(0.406)
장애 정도	심한	-0.970***	-0.953***	-0.798***	-0.804***	-0.781***
	(참조: 심하지 않은)	(0.321)	(0.316)	(0.291)	(0.288)	(0.287)
결혼 여부	예	0.168	0.233	0.316	0.311	0.326
	(참조: 아니오)	(0.289)	(0.287)	(0.279)	(0.277)	(0.278)
가구주 여부	가구주임	0.692***	0.712***	0.713***	0.705***	0.704***
	(참조: 아님)	(0.163)	(0.162)	(0.161)	(0.160)	(0.160)
미취학 가구원	있음	-0.416*	-0.394*	-0.437*	-0.409*	-0.444*
	(참조: 없음)	(0.231)	(0.232)	(0.228)	(0.227)	(0.228)
공적이전소득	있음	-0.521***	-0.506***	-0.482***	-0.498***	-0.507***
	(참조: 없음)	(0.136)	(0.136)	(0.133)	(0.133)	(0.133)
주관적 건강 상태		0.285***	0.285***	0.286***	0.300***	0.310***
		(0.098)	(0.098)	(0.097)	(0.097)	(0.098)
가구경제수준	중하층		-0.456		-0.627**	-0.570*
	(참조: 하층)		(0.323)		(0.295)	(0.296)
	중층		0.062		-0.323	-0.304
	(참조: 하층)		(0.370)		(0.338)	(0.338)
	중상층		-1.122*		-1.405***	-1.307**
	(참조: 하층)		(0.573)		(0.533)	(0.535)
부의 학력	고졸		0.783**		0.183	0.116
	(참조: 중졸 이하)		(0.351)		(0.322)	(0.324)
	대졸 이상		1.101**		0.151	0.079
	(참조: 중졸 이하)		(0.498)		(0.465)	(0.468)
본인 학력	고졸			0.575**	0.599**	3.286***
	(참조: 중졸 이하)			(0.292)	(0.292)	(1.081)
	대졸 이상			2.049***	2.101***	4.019***
	(참조: 중졸 이하)			(0.377)	(0.386)	(1.243)
자격증 보유	있음			0.810***	0.840***	0.845***
	(참조: 없음)			(0.240)	(0.239)	(0.240)
연령*고졸						-0.064***
						(0.024)
연령*대졸 이상						-0.041
						(0.028)
상수항		-3.279***	-3.957***	-3.600***	-3.215***	-6.189***
		(1.157)	(1.221)	(1.135)	(1.175)	(1.737)
Observations		2,583	2,583	2,583	2,583	2,5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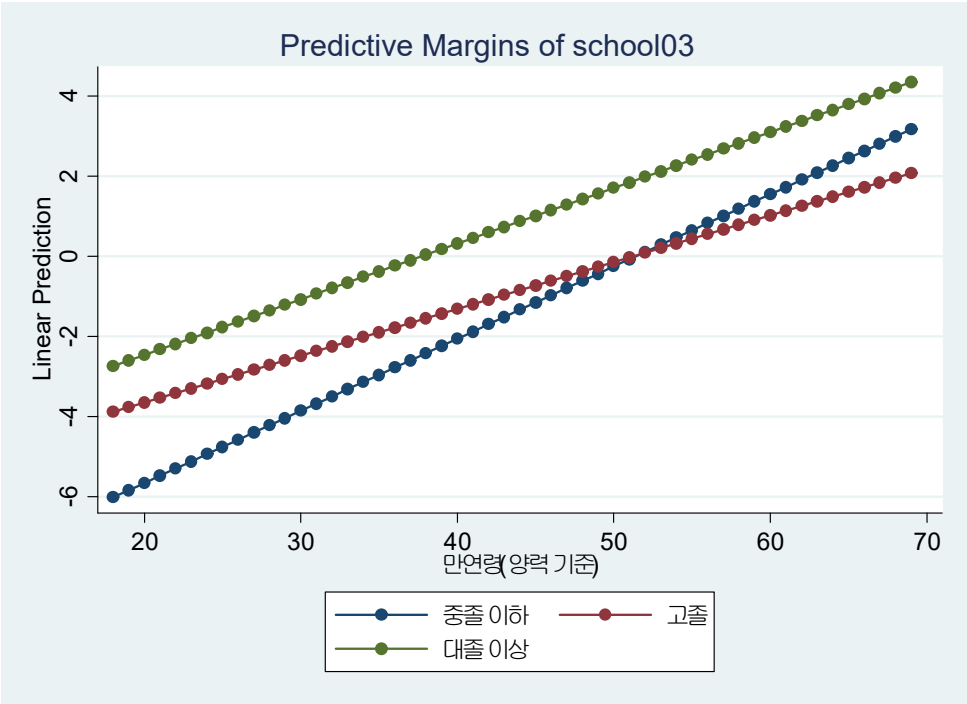

[그림 5-4] 연령에 따른 학력별 취업의 한계효과(여성)

한편 모형3-4에 교육수준과 연령의 상호작용항을 투입했을 때, 대졸 이상 학력자와 중졸 이하 학력자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지만, 고졸 학력자와 중졸 이하 학력자의 차이는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5-4]를 보면 좀 더 선명하게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연령 초기에는 고졸 학력자와 중졸 이하 학력자의 취업 확률의 격차가 꽤 크지만, 50대 초반부터는 중졸 이하 학력자의 취업 확률이 고졸 학력자의 그것을 추월한다. 이러한 결과는 저학력자가 나이가 들수록 취업을 유지해야 하는 경제적 어려움에 봉착해 있음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세대로서 이를 해석한다면, 과거 세대의 경우 중졸 이하 학력자가 고졸 학력자보다 더 취업을 많이 했거나 비슷했지만, 최근 세대의 경우 고졸 학력자가 중졸 학력자보다 더 취업을 많이 했다고 할 수 있다.

제 5 절 소결

분석결과, 계층변수인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장애인의 취업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의 경우 어릴적 가구경제수준이, 여성의 경우 아버지의 교육수준이 중요하게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성별 차이는 장애인의 성별 노동시장 진입에 있어서 남성의 노동시장 진입에는 경제적 자본이 더 중요한 한편, 여성의 노동시장 진입에는 문화자본이 더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 전체를 대상으로 한 분석모형에서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본인의 교육수준을 함께 투입했을 때,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변수의 효과가 더 이상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부모의 사회적 지위 효과를 매개하여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성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었는데, 남성의 경우 어릴적 가구경제수준 효과를 본인의 교육수준이 매개하는 한편, 여성의 경우 아버지의 교육수준을 본인의 교육수준이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매개하는 변수는 달랐지만, 남성과 여성에서 모두 본인의 교육수준이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매개하여 노동시장 진입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노동시장 진입에 미치는 학력효과는 연령에 따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분석 집단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전체를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는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학력의 효과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는 중졸과 고졸 사이에는 연령별 학력효과의 차이가 없었지만, 대졸과 중졸 사이의 학력효과의 차이는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는 대졸과 중졸 사이의 연령별 학력효과의 차이가 없었지만, 고졸과 중졸 사이의 학력효과의 차이는 유의미했고, 50대 초반을 기점으로, 중졸의 취업에 미치는 효과가 고졸의 취업에 미치는 효과를 추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장애여성의 대학교육이 노동시장 진입에 미치는 효과는 감소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시장으로의 진입은 타고난 가족 배경과 이를 매개한 교육수준에 의해 선별적으로 이루어진다. 이는 종속변수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장애인 중심으로 이루어진 지위획득모형(Blau & Duncan, 1967)과 국내의 기존 연구결과(김기헌, 2002; 김영화・김병관, 1999; 장상수, 2001; 차종천, 1992; Sandfur and Park, 2007)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이는 장애인이 노동시장 지위를 획득하는 것 역시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종속되어 있다는 다소 상식적인 결론이다. 계층 차별적 교육기회구조는 노동시장 기회구조까지 결정짓는다. 한편 남성의 노동시장 진입에는 경제적 자본이 더 중요한 한편, 여성의 노동시장 진입에는 문화자본이 더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제3장의 연구결과와 연장 선상에 있다. 여성의 대학진학에 있어서 아버지의 학력이 중요했듯이, 여성의 노동시장 진입 역시 아버지의 학력이 영향을 미친다. 고학력 부모일수록 장애를 가진 딸의 교육과 노동시장 진입을 독려함으로써, 장애를 가진 딸이 자립할 수 있는 경제적 토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다.

교육수준은 연령과 교차하여 노동시장 진입의 차이를 만든다. 노동시장에 처음 진입하게 되는 연령 초기에는 학력 간 노동시장 진입 효과의 격차가 뚜렷하게 나타나다가, 연령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그 효과는 감소한다. 하지만 대학교육의 효과를 고졸이나 중졸 학력이 추월하지는 못한다. 이는 장상수(2001)의 비장애인 중심 연구결과와는 다소 다른 결과이다. 물론 종속변수의 차이를 무시할 수는 없지만, 비장애인과 장애인에 작동하는 학력과 연령의 상호작용 효과가 서로 다름을 의미한다. 즉, 학력, 연령, 장애는 서로 교차하여 노동시장 진입에 각기 다른 효과를 낸다. 그런데 저학력자의 노동시장 진입이 나이가 듦에 따라 증가하는 경향을 좋게만 바라볼 수는 없다. 이는 한국사회의 노후보장시스템이 노동시장에서의 지위에 종속되어 있기 때문이다. 저학력자의 노동시장 지위는 처음부터 배제되거나, 불안정하거나, 안정적이라도 저임금일 가능성이 크다. 열악한 노동시장 지위에서 비롯된 노후보장시스템으로부터의 배제는 이들을 노후에도 지속적으로 일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다.

예상대로 학력은 장애인이 노동시장으로 진입하는 데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 또한, 이들의 노동시장 진입에 학력이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매개하였다. 학력은 노동시장 진입에 남성의 경우 어릴적 가구 경제수준을, 여성의 경우 아버지의 교육수준을 매개하였다. 장애인의 노동시장 진입에 미치는 학력과 연령의 교차성 또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고학력 아버지를 둔 고학력 장애여성의 경우 취업하여, '사회모델형'의 삶을 살 가능성이 크고, 저학력 아버지를 둔 저학력 장애여성의 경우 취업이 어려워 타인에 의존적인 '의료모델형'의 삶을 살 가능성이 크다는 결론을 뒷받침한다. 또한, 어릴적 유복하게 자란 고학력 장애남성의 경우 취업하여 '사회모델형'의 삶을 살 가능성이 크고, 어릴적 가난하게 자란 저학력 장애남성의 경우 '의료모델형'의 삶을 살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이러한 성년기 주요 생애 경험의 양상의 차이는 성별에 따라 나이가 들수록 감소한다. 성별 계층효과의 차이를 반영한 교육제도의 개선과 교육-노동시장 연계 체제의 정비, 연령에 따른 생애주기별 고용제도 및 소득보장제도의 개선 등 정책적 대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제 6 장 결혼에 대한 직업 지위의 효과

6장에서는 장애인의 결혼 이행에 미치는 다양한 사회경제적 변수의 효과를 확인한다. 우선,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결혼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 이를 통제했을 때 학력 및 직업 지위가 결혼 이행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한다. 직업 지위는 종사상 지위와 근로소득을 통해 측정하였다. 또한, 성별에 따라 직업 지위가 결혼 이행에 미치는 효과가 어떻게 다른지를 밝힌다. 즉 직업 지위와 성별의 교차성을 확인한다.

제 1 절 연구의 배경

결혼의 형태와 의미는 역사적으로 변해왔고 사회마다 차이가 있지만, 인간이 결혼을 통해 친밀성의 욕구를 충족하고, 사회에 통합되어 재생산을 실천해왔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았고 어느 사회에나 비슷하다(김미선・신유리・김정석, 2020:78). 최근 적극적으로 결혼을 하지 않는 생애인 '비혼' 이 하나의 생애 패턴으로 등장하긴 했지만, 여전히 결혼의 기능과 역할을 강조되고 있으며(박호강・박충선・정영숙, 1999), 결혼은 인간의 보편적 권리로서 그 가치를 제도적으로 보장받고 있다.

장애인에게 결혼은 더 큰 의미가 있을 수 있다. 크래프트(Craft, 1983)는 장애인들이 결혼을 통해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새로운 위치를 점할 수 있다고 하였다. "장애인에게 결혼은 친밀성 욕구의 충족과 재생산의 의미를 넘어 사회통합과 정상화를 의미" 한다(김미선・신유리・김정석, 2020:79). 오혜경(2009; 2011)은 장애인의 결혼율이 "장애인의 정상화 또는 자립의 수준을 파악하는 중요한 지표" 이며, "장애인에 대한 간접적인 차별이 제거되고 이들이 정상적인 사회적 지위를 차지한다면 비장애인과 비슷한 결혼율을 보일 것" 이라고 보았다[75].

---

75) MacCabe(1993)와 김미선・신유리・김정석(2020)은 지적장애인이 특히 결혼으로부터 배제되고 있다고 밝혔다. 역사적으로 우생학적 접근에 따라 장애인의 결혼과 재생산을 우려하는 사회적 여론(Olsson, 1999; Haage, Lotta Vikström and Lundevaller 재인용)이 존재하기

지금까지 국내에서 이루어진 장애인의 결혼에 관한 연구는 단순히 집계를 보여주는 연구(김명수, 2017; 김성희 외, 2017), 장애인들의 결혼생활 만족도를 계량적으로 분석하려는 시도(이성규, 2014; 오혜경, 2011), 장애인들에게 결혼의 개별실천과 의미를 심층적으로 포착하려는 노력 등(김미옥・박미숙・박현정, 2015; 신유리・김정석, 2020; 유창민・오혜인, 2016; 이미선, 2015)이 있었다. 김미선・신유리・김정석(2020)은 성별과 장애 유형에 따른 결혼 이행의 차이를 밝히기도 하였다.

하지만 이상의 연구들은 이론적 배경이 부재한 상황에서, 장애인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를 차이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한계가 있다. 기존 비장애인 중심의 이론과 경험 연구를 검토하여 모형을 정교화하여 장애인들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결혼 이행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탐구할 필요가 있다.

도 했고, 장애인의 결혼을 금지하는 법이 존재하기도 했다(MacInnes, 2011; Sitlington and Frank, 1990). 오늘날에는 장애인을 무성적(asexual) 존재로 보는 인식, 장애인의 낮은 성적 자신감, 사회로부터의 분리됨 (MacInnes, 2011; Sitlington and Frank, 1990) 등으로 많은 장애인이 여전히 결혼으로부터 배제되고 있다.

제 2 절 이론적 배경과 비장애인 중심 기존 연구 검토

한국에서는 비혼과 만혼이 저출산의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본격적인 결혼 이행에 대한 학문적 관심이 시작되었다. 결혼 이행이 감소하는 현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가설과 이론들이 제기되었다. 결혼에 대한 의식과 태도의 변화, 성별에 따른 경제적 기반의 변화, 결혼의 안정성에 대한 인식, 성관계를 가질 기회 혹은 비제도적 남녀 간 결합(union formation)의 확산이 바로 그것이다.

이 중에서도 상당 부분의 이론과 경험 연구들이 개인이 처한 경제적 상황이 결혼 이행에 크게 영향을 미치며, 그 효과가 남녀 간에 차별적임에 주목하고 있다. 베커(Becker, 1981)의 성역할 전문화 모형이론(gender role specialization theory)과 킬리(keeley, 1977)의 경제자립가설(economic independence theory)에 따르면, 남자가 돈을 벌고, 여자가 가사를 담당하는 성별분업을 바탕으로 한 사회에서 남성은 고소득일수록 결혼 이행 가능성이 큰 반면, 여성은 결혼을 통한 효용이 낮게 때문에 고소득일수록 결혼 이행 가능성이 작다. 반면 오펜하이머(Oppenheimer, 1988; 1997)의 경력 진입모형(career entry model)이나 배우자 탐색기간연장 모형(extended spouse search model)은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도 노동시장에서의 전망이 중요시되면서 경제 전망이 밝은 여성일수록 결혼 이행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한다.

한국의 경우, 여성의 학력 수준이 높아지고, 상대적으로 남성의 노동시장지위가 불안정해지면서 성별분업에도 조금씩 균열이 생기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 속에서도 국내의 경험 연구는 여전히 베커의 논의가 오펜하이머의 논의에 비해 우세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김정석(2006)은 미혼남녀의 결혼의향을 분석하였는데, 취업이 남성에게는 유의하게 결혼의향확률을 높이는 반면, 여성에게는 유의하지 않았다. 윤자영(2012) 역시, 취업과 정규직 근무가 남성의 결혼이행 위험을 높인 반면 여성의 그것은 낮추었다고 밝혔다. 한편 최필선・민인식(2015)은 취업이 남성과 여성 모두 결혼 이행 위험을 높이는 변수였지만, 취업자 내에서 소득의 크기는 남성의 결혼 이행 해저드만을 유의하게 높인다는 사실을 밝혔다.

제 3 절 자료 및 방법

1. 분석기법

초혼 이행을 종속변수로 결혼 시기를 분석하기 위해 이산시간 사건사 분석[76]을 실행한다. 사건사 분석은 사건 발생 기간의 분포에 대한 가정, 자료 및 사건의 특성에 따라 여러 가지 모형을 사용할 수 있는데, 이 연구가 사용하는 장애인패널조사자료는 연 단위로 초혼 이행을 측정하고 있으며, 초혼사건이 비반복적 단일사건이란 점에서 이산시간 사건사 분석(discrete-time hazard model)을 선택하였다.

이산시간 사건사분석은, 조건부 위험률(conditional hazard rate)을 추정하는데, 조건부 위험률은 해당 구간까지 사건을 경험하지 않은 연구대상이 해당 구간에서 사건을 경험할 위험률을 뜻한다. 이 조건부 위험률의 수식은 다음의 (식 7.1)과 같다(Singer and Willet, 2003; Allison, 2014).

$$h(t_{ij}) = \Pr[T_i = j / T_i \geq j] \qquad \text{(식 7.1)}$$

i : 사건에 노출된 위험집단(risk set) 소속인 각 개인

j : 특점 시점

T_i : i가 사건을 경험하는 시점

$h(t_{ij})$: 개인 i가 특정 시점 j까지 사건을 경험하지 않았을 때 j시점 사건을 경험할 확률

$$\hat{h}(t_j) = \frac{nevents_j}{natrisk_j} \qquad \text{(식 7.2)}$$

76) 횡단자료를 통해 초혼연령을 종속변수로 하는 OLS모형의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를 가진다. 첫째, 결혼을 경험한 사람들만 대상으로 초혼 시기를 분석할 경우, 이후 초혼으로 이행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 분석에서 제외된다. 즉, 우측절단(right-censoring)의 문제가 발생한다. 둘째, 초혼 시기에 영향을 미치는 시변 변수(time-variant variable)가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힘들다. 사건사 분석은 종단자료를 활용하여, 시간에 따른 변화 요인의 영향을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식 7.2)를 보면, 이산시간 사건사분석은 조건부 위험의 모수를 j 시점에서 발생한 사건을 위험집단에 속한 개체 수로 나눠준 값으로 추정한다. 즉 j 시점에서 발생한 초혼 이행 수를 초혼 이행 가능성이 있는 미혼 집단에 속한 개체 수로 나누어준다. 그 이유는 j시점에 초혼 사건에 노출되려면 j시점까지 초혼을 경험하지 않아야 하고, 이 방식으로 조건부 위험률을 추정함으로써 초혼을 경험하지 않았지만, 관측중단 혹은 패널 이탈(attrition)으로 인해 이후의 결혼 이행 여부를 알 수 없는 우측절단 사례들이 분모에 포함되어 분석에 고려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연구에서는 승산(odds)의 로그인 로짓 연결 함수(logit link function)를 통해 조건부 위험률을 추정한다. 조건부 위험률은 0 이상 1 이하의 값을 지니므로, OLS 추정법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개인-시간 단위 자료에 대한 로짓 분석을 통해 이산시간 사건사 분석 모형의 추정치를 구할 수 있다(Allison, 2014). 결혼 위험률과 같이 확률이 작을 때, 독립변수의 승산은 해당 변수가 결혼 위험률에 미치는 배수적 효과(multiplicative effect)를 의미하기 때문에 로짓모형은 결과를 해석하기 용이하다(Xie et al, 2003).

이 연구에서 사용하는 위험률 추정식은 다음의 (식 7.3)과 같다.

$$\log\hat{h}(t_j) = [a_o + a_1 t_j + a_2 t_j^2] + [b_1 X_1 + b_2 X_{2j}] \qquad \text{(식 7.3)}$$

$\log\hat{h}(t_j)$: j시점 위험률 추정치의 로짓, 승산에 로그를 취한 값($\log(\frac{\hat{h}(t_j)}{1-\hat{h}(t_j)})$)

t: 시간(연령)

t_j: 위험집단 진입 이후 특정 기간(duration)이 지난 특정 시점 j

t^2: 연령 제곱

X_1: 시불변(time-invariant) 독립 혹은 통제변수

X_{2j}: 시변(time-varying) 독립 혹은 통제변수

(식 7.3)에서 위험률 추정치$\hat{h}(t_j)$는 최대우도(Maximum Likelihood) 추정법으로 도출하며, 우도추정 함수는 로짓모형의 우도추정 함수와 비슷한 형태를 보인다(Allison, 1982: 74-75). 개인 i표기를 제외한 이유는 개인 간 위험률 차이보다, 독립변수(X)에 따른 집단 간 차이에 주목하기 때문이다. 연령 제곱 항(t^2)이 있는 이유는, 기존 연구에서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결혼 위험이 증가하다가 다시 감소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2. 자료, 변수측정 및 대상

이 연구는 장애인고용패널 1~6차 조사자료를 결합하여 분석하였다. 2016년 1차 조사 시점 18세 이상 65세 미만이며, 18세 이전에 장애가 발생한 지체, 시각 혹은 청각 및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한다. 이상의 조건으로 선별된 1,202명 중 2016년 제1차 조사 시점 미혼인 660명을 시작으로, 초혼 이행 여부를 관찰하였다[77].

이산시간 사건사분석은 연 단위 개인-시간(person-year) 자료를 활용하고, 개인별로 조사에 참여한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절단(truncation) 및 중도절단(censoring) 사례가 발생하며, 이에 대한 기술이 필요하다.

먼저, 1차 조사 시점 당시, 이미 초혼으로 이행거나, 이후라도 18세 이전에 초혼으로 이행한 사람은 좌측중도절단(left-censoring)되어 분석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 연구는 1차 조사 시점 당시 초혼으로 이행한 사례와 그 이후 초혼으로 이행한 사례 간에 초혼 이행 확률이 체계적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그리고, 1차 조사 당시 18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의 경우, 그 이전의 기록이 분석자료에 포함되지 않는데 이는 좌측 절단(left-truncation)된 기록된다. 이 같은 경우, 추정에 편의를 가져오지 않는다(Singer and Willet, 2003).

---

77) 앞의 취업여부 분석에서도 언급했듯이, 결혼 여부 변수의 경우, 기혼이라고 응답했다가 다시 미혼이라고 응답한 사례가 있었다. 이는 설문 문항에서 결혼과 동거를 하나의 답변으로 물었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즉 동거하다가, 미혼으로 돌아간 사례인 것으로 파악된다. 이 연구는 동거를 사실혼으로 보고, 한번 결혼 또는 동거했다고 응답했다가 그 이후에 다시 미혼이라고 응답한 경우, 기혼인 것으로 간주하여 이를 재입력하였다.

조사 기간 중 즉 2016년부터 2021년 사이 조사에 참여했지만, 결혼을 경험하지 않은 경우, 중도에 조사에서 완전히 이탈한 경우는 우측중도절단(right-censoring)된 것으로 간주한다. 이 두 집단은 초혼 이행 위험에 체계적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고 가정하여 추정에 편의가 생기지 않는다(Singer and Willet, 2003; Allison, 2014). 이 연구의 분석대상인 1차 조사에서 미혼이었던 660명은 6차 조사까지 단 한 명도 이탈하지 않아, 후자에 의한 우측절단이 발생하지 않았다.

이 연구의 분석대상인 1차 조사에서 미혼이었던 660명은 6차 조사까지 단 한 명도 이탈하지 않았다. 즉, 구간절단(interval-trunction) 혹은 구간중도절단(interval-censoring)이 발생하지 않았다.

이어서 사용된 변수의 정의와 측정방법을 설명하겠다.

먼저 종속변수인 초혼 이행 여부는 각 년도 조사의 혼인상태의 변수를 통해 측정하였다. 미혼인 경우 0, 유배우, 이혼, 별거, 사별의 경우 1로 입력하였다. 이탈했다가 재진입한 경우, 직전 조사의 혼인상태를 유지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직전 조사의 혼인상태 변숫값을 입력하였으나, 1차 조사부터 6차 조사까지 미혼이었던 사람들의 경우 조사에서 완전히 이탈한 경우가 없었고, 유배우로 이행한 이후의 이탈은 분석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분석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시간 변수(t)는 연령에 17을 빼준 변수와 그 제곱 값을 변수로 사용하였다. 18세 이후 초혼 이행 사건의 경험까지 소요된 시간을 의미한다. 또한, 초혼 이행 위험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다가 특정 연령을 기점으로 다시 감소하는 역의 2차 함수의 형태를 띠기 때문에 제곱 항을 포함시켰다. 시간 변수는 분석모형에서 통제변수로 간주하였다.

독립변수는 크게 장애특성, 부모 혹은 원가족의 사회경제적 지위, 그리고 본인의 사회경제적 지위로 구분된다. 장애특성은 장애 유형과 장애 정도로 구성되며, 부모 혹은 원가족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14세 무렵 주관적 가구경제수준(이하, 가구경제수준), 아버지의 교육수준 및 가구소득으로 구성된다. 본인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교육수준, 종사상 지위 및 근로소득으로 된다.

장애 유형, 가구경제수준(14세 무렵 주관적 가구경제수준), 아버지의 교육수준은 시불변 변수로 1차 조사 때 측정이 이루어진 이후 변숫값이 변하지 않는 시불변 변수(time-invarient variables)이다. 장애 정도, 교육수준, 종사상 지위, 가구소득 및 근로소득은 시변 변수(time-varient variables)이다. 시변 변수의 경우, 결측이 있는 경우 직전년도 측정치를 입력하여 사례 수를 최대한 확보하였다.

장애 정도는 2021년 공개된 1~6차 통합자료에서 생성된 '중증 여부' 변수를 사용하였다. 해당 분류는 장애인고용촉진법 및 직업재활법에 근거한 분류로, 결측이 없었다.

교육수준은 중졸 이하, 고졸, 대졸 이상으로 범주화하였다. 취업 장에서도 언급했듯이, 한 사람의 경우 대졸에서 고졸로 이행했다고 응답하여, 응답 혹은 입력의 오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분석에서 제외하였다[78].

주요 독립변수인 종사상 지위는 상용직, 비상용직, 미취업으로 재범주화하였다. 비상용직은 임시직, 일용직, 자영업자 및 무급가족종사자를 포함한다. 결측은 없었다.

가구소득은 이전 연도의 총 가구소득에 가구원 수의 제곱근을 나눈 개인 균등화 가구소득이며, 2020년 물가를 기준으로 표준화하였고, 로그를 취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가구소득이 없는 경우 로그를 취할 수 없는데 이 경우에는 0을 입력하였다. 가구소득의 경우 소수의 결측이 있었는데, 이는 이전 년도의 가구소득을 묻고 있어, 결혼이행자의 경우 가구의 재구성으로 인해, 결측인 경우가 많았다. 사례수 확보를 위해, 결측인 경우에는 이전 연도의 응답 값을 재입력했으며, '모름'이나 '무응답'인 경우에는 사례를 제외했다.

종사상 지위 외 또 하나의 주요 독립변수인 근로소득 역시 이전 연도를 기준으로 하며, 2020년 물가를 기준으로 표준화하였고, 로그를 취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소득이 없는 경우 0을 입력하였다. 결측인 경우에는 이전 연도의 응답 값을 재입력했으며, '모름'이나 '무응답'인 경우에는 사례를 제외하였다.

78) 6차 조사까지 미혼을 유지한 사람이기 때문에, 6개의 사례가 제외되었다.

1차년도 미혼인 660명 중 23명이 결측 및 입력 오류로 인해, 분석에서 제외되어, 최종 637개 사례가 분석대상으로 선정되었으며, 개인-시간 단위로, 3,392사례가 포함되았다.

제1차 조사 시점 미혼인 637명 중, 제6차 조사까지 169명(26.5%)이 초혼으로 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79]. 다음의 <표 6-1>은 매년 조사에서 초혼으로 이행한 수와 미혼으로 남은 사람들의 수를 보여준다.

<표 6-1> 미혼으로 남은 사람과 초혼으로 이행한 사람 수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합계
미혼으로 남은 사람	637	579	540	510	489	468	3,223
초혼으로 이행한 사람	0	58	39	30	21	21	169
합계	637	637	579	540	510	489	3,392

변수별 분포는 다음 <표 6-2>와 같다. 미혼으로 남은 사람들은 마지막 6차 조사를 기준으로, 초혼으로 이행한 사람들은 초혼으로 이행한 연도의 조사를 기준으로 한 분포이다.

79) 참고로, 이들 중 장애인과 결혼한 사례는 2건이었다.

<표 6-2> 변수의 기술통계

		전체 N=637
여성 비중(%)		31.0
연령(세)	평균	34.8
	표준편차	10.0
	최소값	19.0
	최대값	66.0
장애 유형(%)		
	지체장애	34.7
	시각 혹은 청각장애	29.4
	지적장애	35.9
장애 정도(%)		
	심한 장애	58.6
	심하지 않은 장애	41.4
가구경제수준(%)		
	하층	28.9
	중하층	35.0
	중층	29.4
	중상층 이상	6.7
아버지 교육수준(%)		
	중졸 이하	44.4
	고졸	41.1
	대졸 이상	14.4
연 가구 소득(만 원) (물가상승률 반영, 개인균등화)	평균	2153.4
	표준편차	1414.2
	중위값	1964.7
	최소값	0.0
	최대값	9528.3
교육수준(%)		
	중졸 이하	17.6
	고졸	52.9
	대졸 이상	29.5
종사상 지위(%)		
	미취업자	42.1
	비상용직	38.5
	상용직	19.5
연 근로 소득(만 원) (물가상승률 반영, 취업자만)	평균	2000.7
	표준편차	1300.8
	중위값	2214.0

제 4 절 분석결과

성, 종사상 지위, 학력 및 근로소득 구간에 따른 초혼 이행 생명표를 도표로 작성하였다. 먼저 [그림 6-1]의 성별 초혼이행 생명표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20대에서 60대에 걸쳐 초혼 이행일 일정한 속도로 진행된다. 즉 대체로 비장애인의 초혼 이행의 시기는 20대 후반과 30대 초반에 집중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본 연구의 경우, 40대 이후에도 지속해서 초혼 이행이 이루어졌다. 성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20대와 30대에서는 여성의 초혼 이행 속도가 빠르다가, 40대를 기점으로 남성의 초혼 이행 속도가 여성의 그것보다 다소 빨랐다. 하지만 그 차이가 유의미한지는 파악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60대 중반 이후에도 계속 미혼으로 남을 확률을 생애미혼율이라고 할 때, 여성의 생애미혼율이 남성보다 다소 높았다. 이는 김미선・신유리・김정석(2020)의 연구결과와 다소 상반되는 결과이다. 해당 연구는 남성의 생애미혼율이 여성의 그것보다 높았기 때문이다. 이는 결혼의 기간효과로 파악된다. 최근에 결혼하는 사람들의 경우, 여성보다 남성이 결혼으로 더 많이 이행했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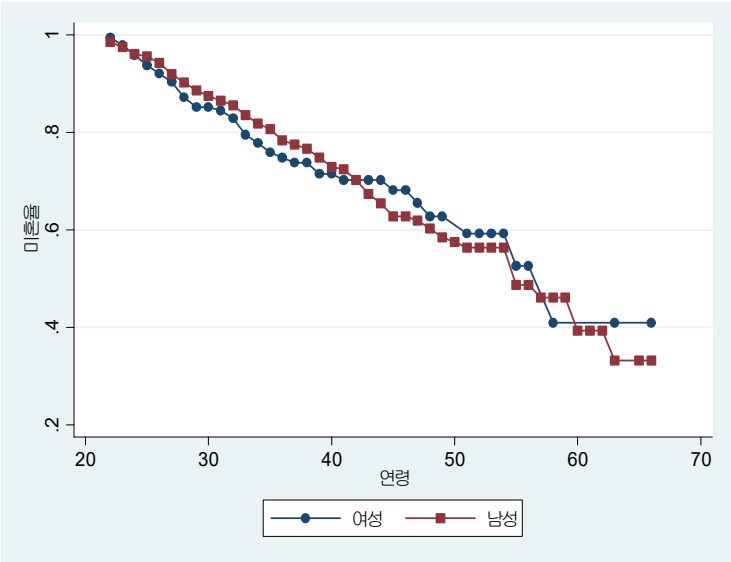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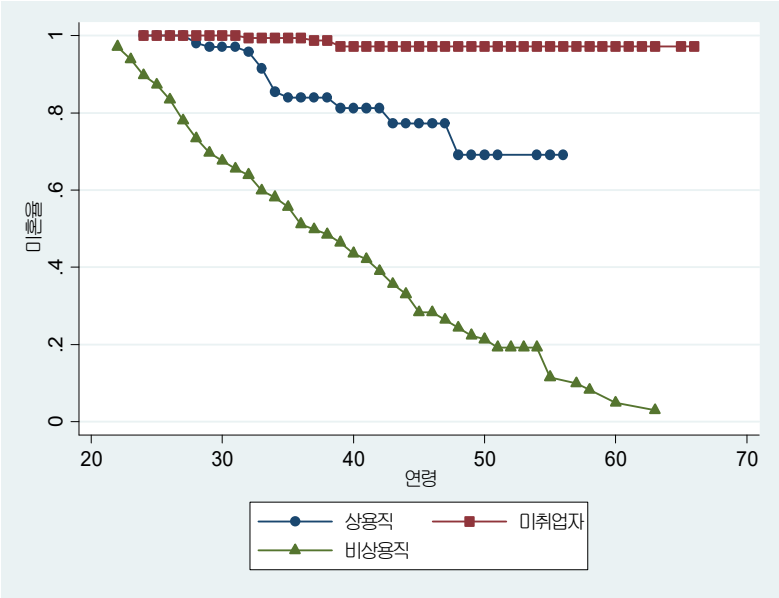

[그림 6-2] 종사상 지위별 초혼 이행 생명표

다음은 종사상 지위별 초혼 이행 생명표이다([그림 6-2] 참조). 해당 생명표는 종사상 지위에 따른 초혼 이행의 차이를 매우 명확하게 보여준다. 미취업자의 경우 나이가 들어도, 초혼 이행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한편 기대와 다르게 상용직보다 비상용직의 초혼 이행 속도가 더 빨랐고, 생애미혼율도 0에 가까웠다. 게다가 상용직의 50대 후반 미혼율은 약 70%에 달했다.

[그림 6-3]은 교육수준별 초혼 이행 생명표이다. 종사상 지위만큼은 아니지만, 뚜렷한 초혼 이행 경향의 차이를 보여준다. 초기 이행 속도는 고졸 학력자가 빠르지만, 30대 초반부터는 대졸 이상 학력자의 이행 속도가 더 빨라진다. 중졸 이하 학력자의 초혼 이행 속도는 가장 느리며, 생애미혼율도 높다. 생애미혼율은 중졸이하, 고졸, 대졸 이상 순으로 나타난다.

근로소득 구간에 따른 차이도 크다([그림 6-4] 참조). 먼저 이행 속도를 보면, 처음에는 2천만 원 이하 소득자의 이행 속도가 빠르지만, 30대를 초반을 지나면, 2천만 원 이상인 사람의 이행 속도가 빨라지면서, 50대 후반 미혼율이 0에 달한다. 한편 근로소득이 없는 사람들의 경우 생애미혼율이 거의 절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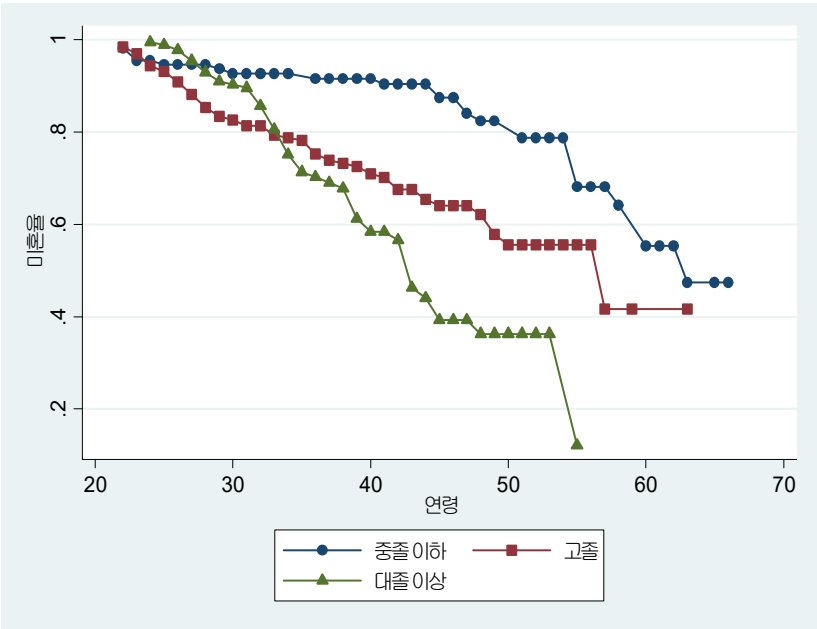

[그림 6-3] 교육수준별 초혼 이행 생명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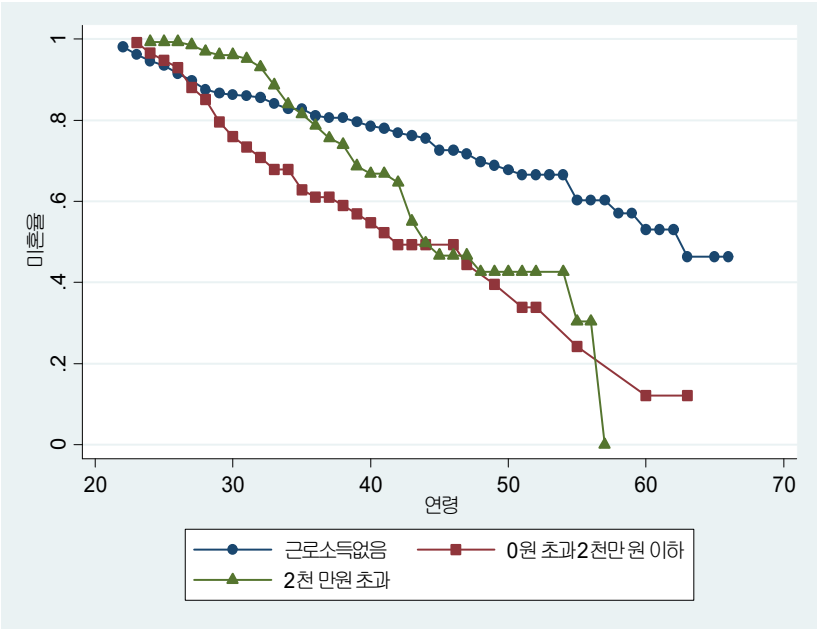

<표 6-3>과 <표 6-4>는 초혼 시기에 대한 사건사 분석 결과이다[80]. 먼저 기본 분석모형인 모형1을 보면, 생명표에서 살펴보았던 결과와 비슷하게 성별 초혼 이행 위험의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령효과도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는 연령 변화에 따라서 초혼 이행 위험에 차이가 거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연령제곱도 차이가 없었는데, 이는 어떠한 연령을 기점으로 연령효과가 반대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리하면, 남녀별 이행 위험의 차이가 있다 보기 힘들고, 결혼이 집중되게 발생하는 연령, 즉 결혼적령기도 본 분석 대상인 장애인 그리고, 2016년에서 2021년 사이에 초혼으로 이행한 초혼 코호트에서는 관찰되지 않는다. 한편 지적장애인의 초혼으로의 이행 위험이 지체장애인의 그것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장애 정도에서의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다음으로 모형2는 모형1에 가족배경 변수를 투입한 것이다. 가족배경 변수(가구경제수준과 아버지의 교육수준)는 앞의 대학진학이나 취업 여부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지만, 초혼 이행 위험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3은 모형1에 본인의 교육수준, 종사상 지위 및 로그임금소득 변수를 투입한 모형이고, 모형4는 모형 2에 본인의 교육수준, 종사상 지위 및 로그임금소득 변수를 투입한 모형이다. 그런데 두 모형의 적합도(AIC와 BIC)를 비교했을 때, 모형3이 더 적합한 것으로 나타나, 모형 3을 중심으로, 변수의 효과를 설명하고자 한다.

모형1과 마찬가지로, 모형3에서도 성별, 연령, 연령제곱의 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지적장애인의 경우, 지체장애인보다 초혼 이행 위험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심한 장애인 경우 심하지 않은 장애인보다 초혼 이행 위험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흥미로운 것은 인의 교육수준, 종사상 지위 및 로그임금소득 변수의 효과이다.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종사상 지위가 안정적일수록, 로그임금소득

80) 종사상 지위와 근로소득이 초혼 이행에 미치는 효과는 성별에 따라서도 다를 수 있다(김정석, 2007; 윤자영, 2012; 최필선・민인식, 2015). 통계적으로 이를 검증하는 방법이 이상적이지만, 사례수가 적고, 초혼 이행에 대한 성별 효과가 유의하지 않은 데다, 남성 미혼자 중 초혼으로 이행한 사례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좀 더 정교한 모형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어려웠다.

이 높을수록, 이행 확률이 높을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결과는 다르게 나타났다. 먼저 중졸 이하, 대졸, 고졸 순으로 초혼이행 위험이 높았다. 이는 초혼 이행 생명표와도 다소 다른 결과인데, 직업지위 변수들의 통제 효과로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추측된다.

다음으로 종사상 지위의 효과를 살펴보면, 미취업자의 초혼 이행 확률이 가장 낮았고, 다음이 상용직 그리고 비상용직 순으로 나타났다. 비상용직의 초혼 이행 확률은 상용직의 약 8배로 상당히 높았다. 비상용직에 있는 사람들이 다른 종사상 지위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많이 초혼으로 이행하는 것은 결혼이 장애라는 제약 속에서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합리적 선택 행위이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미취업자는 노동시장 진출을 통해 스스로를 책임질 수도 없고, 결혼하려 해도, 배우자에게 부담을 줄 수 있는 처지이기 때문에 초혼으로 이행하기 어려운 조건에 처해있다. 비상용직은 노동시장에 진출하긴 했지만, 그 불안정성으로 인해, 안정적 삶의 기반을 확보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 비상용직의 경우 이러한 불안정성을 보완하려는 전략의 일환으로써 결혼을 적극적으로 택한 것으로 보인다. 같은 맥락에서 상용직은 비교적 안정적 노동시장 지위를 확보하고 있지만, 또 다른 타자를 책임지기에는 부담이 크다. 새로운 가족을 꾸리고 나아간다는 것은 또 다른 위험(risk)을 떠안는 것일 수 있다. 즉 상용직인 사람들에게 결혼은 합리적 선택이 아닐 수 있다.

종사상 지위와 비슷한 맥락에서 로그 연 근로소득이 높을수록 초혼이행 위험이 낮았다. 고소득 장애인의 경우, 장애로 인한 제약에 가족을 부양해야 한다는 책임이 부과된다면, 부담해야 하는 위험이 배가될 수 있다. 하지만 저소득 장애인의 경우, 결혼은 빈곤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유일한 선택지가 될 수 있다[81].

81) 이는 높은 가구소득이 초혼이행 위험을 낮추는 것과도 상관이 있다. 일단 가구소득은 근로소득을 반영하고 있어 같은 방향성을 띨 가능성이 크다. 또한 가족의 입장에서도 경제적으로 이미 자립한 장애인이 결혼으로 인한 위험을 떠안게 되는 것을 원치 않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그 위험이 가족의 위험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표 6-3> 초혼 이행에 대한 사건사 분석 결과(1)

	모형 1			모형 2		
	b	S.E.	Exp(*b*)	*b*	S.E.	Exp(*b*)
성별(참조: 여성)						
남성	0.183	0.177	1.201	0.199	0.178	1.220
연령	-0.031	0.028	0.969	-0.025	0.028	0.976
연령제곱	0.000	0.001	1.000	0.000	0.001	1.000
장애유형(참조: 지체장애)						
시각 혹은 청각장애	0.089	0.185	1.093	0.063	0.189	1.065
지적 장애	-0.457*	0.249	0.633	-0.424*	0.251	0.654
장애 정도(참조: 심하지 않은 장애)						
심한 장애	0.248	0.200	1.281	0.274	0.202	1.315
가구경제수준(참조: 하층)						
중하층				-0.163	0.214	0.850
중층				0.022	0.228	1.022
중상층 혹은 상층				0.351	0.347	1.420
아버지의 교육수준(참조: 중졸 이하)						
고졸				0.141	0.203	1.151
대졸 이상				0.084	0.289	1.088
로그 연 가구소득				-0.074	0.058	0.929
교육수준(참조: 중졸 이하)						
고졸						
대졸 이상						
종사상 지위(참조: 상용직)						
미취업						
비상용직						
로그 연 근로소득						
상수	-2.715***	0.296	0.066	-2.323***	0.499	0.098
사례수	3,392			3,392		
LR $\chi^2(df)$	22.49(6)***			27.09(12)***		
-2Log Likelihood	1320.702			1316.097		
AIC	1334.702			1342.097		
BIC	1377.606			1421.777		

주: *p<0.1, **p<0.05, ***p<0.01

<표 6-4> 초혼 이행에 대한 사건사 분석 결과(2)

	모형 3			모형 4		
	b	S.E.	Exp(*b*)	*b*	S.E.	Exp(*b*)
성별(참조: 여성)						
남성	0.143	0.200	1.154	0.187	0.202	1.206
연령	-0.020	0.032	0.980	-0.009	0.033	0.991
연령제곱	0.000	0.001	1.000	0.000	0.001	1.000
장애유형(참조: 지체장애)						
시각 혹은 청각장애	-0.232	0.208	0.793	-0.234	0.213	0.791
지적 장애	-1.009***	0.297	0.365	-0.981***	0.300	0.375
장애 정도(참조: 심하지 않은 장애)						
심한 장애	-0.521**	0.233	0.594	-0.526**	0.235	0.591
가구경제수준(참조: 하층)						
중하층				-0.409*	0.247	0.664
중층				-0.127	0.254	0.881
중상층 혹은 상층				-0.261	0.386	0.770
아버지의 교육수준(참조: 중졸 이하)						
고졸				-0.018	0.215	0.982
대졸 이상				0.156	0.306	1.169
로그 연 가구소득				-0.187***	0.071	0.829
교육수준(참조: 중졸 이하)						
고졸	-0.774***	0.276	0.461	-0.759***	0.281	0.468
대졸 이상	-0.578*	0.304	0.561	-0.449	0.319	0.638
종사상 지위(참조: 상용직)						
미취업	-3.551***	0.601	0.029	-3.557***	0.603	0.029
비상용직	2.085***	0.291	8.045	2.165***	0.295	8.715
로그 연 근로소득	-0.178***	0.027	0.837	-0.160***	0.029	0.852
상수	-1.284**	0.513	0.277	-0.026	0.683	0.975
사례수	3,392			3,392		
LR $\chi^2(df)$	444.52(11)***			454.46(17)***		
-2Log Likelihood	898.6749			888.7308		
AIC	922.6749			924.7308		
BIC	996.225			1035.056		

주: *p<0.1, **p<0.05, ***p<0.01

앞의 각주에서 언급했듯이, 앞서 이루어진 비장애인 중심의 선행연구에 따르면, 직업 지위(종사상 지위 및 근로소득)가 초혼 이행에 미치는 효과는 성별에 따라서 다르다(김정석, 2007; 윤자영, 2012; 최필선・민인식, 2015). 하지만 이를 사건사 분석으로 검증하기는 자료의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생명표 기법을 통해 이를 부분적으로 확인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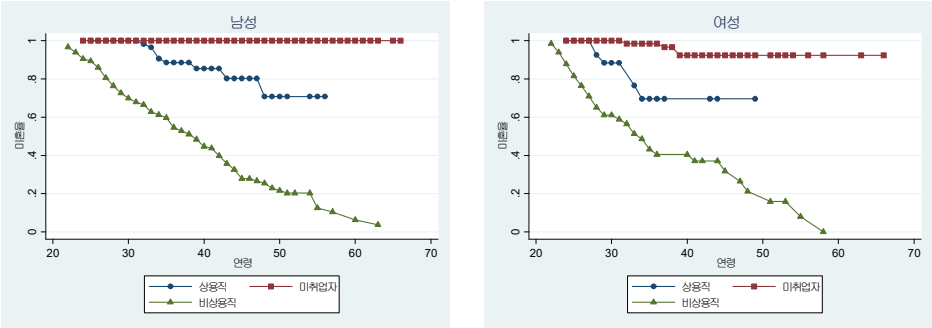

[그림 6-5] 성별 종사상 지위에 따른 초혼 이행 생명표

[그림 6-5]는 성별 종사상 지위에 따른 초혼 이행 생명표이다. 이는 최필선・민인식(2015)의 결과와는 부분적으로 일치하지만, 김정석(2007)과 윤자영(2012)의 연구결과와는 다른 결과를 보여준다. 최필선・민인식(2015)은 취업이 남녀 모두에서 초혼 이행 위험을 높인다고 하였다. 동일한 결과가 해당 생명표에서도 관찰된다. 김정석(2007)은 취업이 결혼 의향에 미치는 효과가 남성에게만 유의했고, 여성에게는 유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제시된 생명표는 남성과 여성 모두에서 취업에 여부에 따라 초혼 이행의 차이가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윤자영(2012)은 안정적인 노동시장 지위가 남성의 초혼 이행 위험은 높이지만, 여성의 초혼 이행은 오히려 낮추었음을 밝혔다. 하지만 제시된 생명표는 안정적인 노동시장 지위보다, 불안정한 노동시장 지위가 오히려 초혼 이행의 가능성을 높였고, 성별 경향의 차이가 크게 없는 것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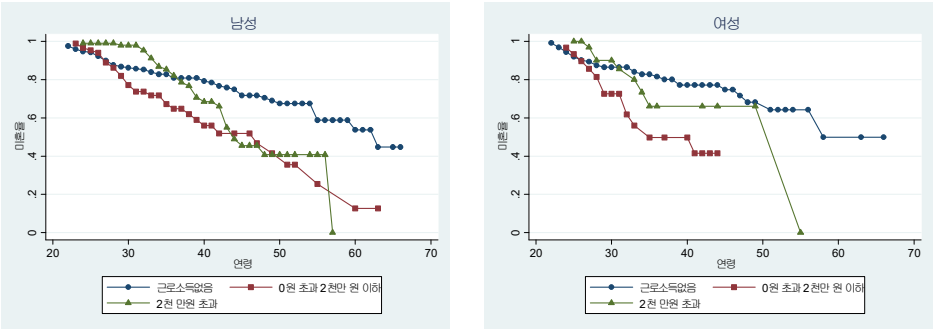

[그림 6-6] 성별 근로소득에 따른 초혼 이행 생명표

최필선・민인식(2015)은 취업이 초혼 이행에 미치는 영향에서 더 나아가 취업자 내에서 소득의 크기가 결혼 이행 위험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그들은 취업이 남성과 여성 모두 초혼 이행 위험을 높이는 변수임을 밝혔다. 그리고 취업자 내에서 소득의 크기는 남성의 초혼 이행 위험만을 유의하게 높임을 밝혔다. 하지만 제시된 [그림 6-6]의 성별 근로소득에 따른 초혼 이행 생명표를 보면, 40대 초반까지 남녀 모두에서 소득이 0원 초과 2천만 원 이하인 집단이 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집단보다 초혼 이행 속도가 더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40대 중반 무렵의 미혼율을 보더라도, 남성의 경우 소득 크기에 따른 차이가 거의 없었고, 여성의 경우, 소득이 많은 집단에서 오히려 미혼율이 높게 나타났다.

제 5 절 소결

2016년 미혼인 사람을 대상으로, 2021년까지의 초혼 이행을 사건사 분석한 결과, 성별과 가족배경에 따른 초혼 이행의 차이가 없는 한편, 교육수준, 종사상 지위 및 근로소득에 따른 초혼 이행의 차이가 있었다. 먼저 교육수준에 있어 중졸 이하, 대졸, 고졸 순으로 초혼이행 위험이 높았다. 다음으로 종사상 지위의 효과를 살펴보면, 미취업자의 초혼 이행 확률이 가장 낮았고, 다음이 상용직 그리고 비상용직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 비장애인 중심 선행연구와는 차이가 있다.

이상의 결과를 장애인의 성년기 주요 생애 경험 유형에 적용해보면, 상용직 취업자의 경우, 타인에게 비교적 의존적이지 않은 '자립적 사회모델형'의 삶을 살 가능성이 크고, 비상용직 취업자의 경우, 결혼하여 '부부가족 사회모델형'의 삶을 가능성이 크다. 한편, 미취업자의 경우, '혈연가족 의료모델형'의 삶을 살 가능성이 크다. '부부가족 의료모델형'의 삶은 본 분석대상에서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사이먼(Simon, 1964)은 합리성(rationality)을 "'주어진 조건과 제한요인들에 의해 부과된 제약 안에서 주어진 목적 성취에 적합한 행동양식'으로 정의"한다(임의영, 2014 재인용). 장애인들의 이러한 결혼 행동은 장애라는 제약과 속한 경제적 지위의 교차성 하에 이루어진 합리적 선택의 결과일 수 있다. 비장애인 중심 선행연구 결과와 본 분석결과와의 차이는 비장애인을 중심으로 형성된 성별 분업 체계를 장애인에 곧바로 적용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장애인의 결혼 이행 행동은 여성 내부 차이의 논리로 해석하는 것이 설명력이 있다. 이는 베커(Becker, 1981)와 킬리(keeley, 1977)의 논의와도 관련이 있다. 남성과 여성이라는 구도를 장애인과 비장애인이라는 구도로 대입시켰을 때, 결혼은 여성의 자립을 방해하는 요소이다. 즉 '자립'의 측면에서 안정적인 고소득 장애인의 경우, 결혼을 통한 효용이 낮기 때문에 결혼이행 가능성이 작다. 한편 경제적 지위가 불안정한 저소득 장애인의 경우, 결혼을 통해 의존적 삶을 택하는 것이 합리적 선택일 수 있다.

한편, 미취업자의 경우 초혼이행의 기회 자체가 거의 주어지지 않는다. 성별 분업의 논리가 적용되면서 성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여성의 경우 집안일을 하면서, 남성에게 경제적으로 의존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제한적으로 주어지지만, 남성의 경우 배우자를 부양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지 않은 경우, 결혼기회가 전혀 주어지지 않는다. 이들의 경우 전 생애를 '미혼'으로 살면서, 절대적으로 혈연가족에게 의존하며 사회적으로 고립될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 장애인의 결혼 이행이 직업 지위에 의해 선택적으로 이루어짐을 확인하였다.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이들의 경우 결혼으로 인한 위험부담을 회피하는 개인화된 삶을 선택하였고,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이들의 경우, 결혼을 통해 경제적 안정을 확보하려는 가족화 전략을 취함을 확인하였다. 개인화든 가족화든 이들의 선택은 주어진 제약 속 최선의 합리적 선택이었다. 한편 노동시장으로부터의 배제는 결혼으로부터의 거의 완벽한 배제를 의미했다. 이들은 교육-취업-결혼 세 단계에 걸쳐 연쇄적으로 배제되었다. 앞서 언급했듯이, 이들을 부양하고 돌보아 줄 혈연가족이 없어진다면, 이들은 시설에 수용될 수밖에 없다. 이들을 사회적으로 포함하기 위해서는 혈연가족을 넘어 다양한 '사회적 가족'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변화가 필요해 보인다.

제 7 장 결 론

제 1 절 요약

이 연구는 지역사회 거주 장애인을 대상으로, 이들의 성년기 주요 생애 경험인 대학진학, 취업, 결혼의 기회가 장애정책 및 장애담론과 맞물려 시기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였고, 사회경제적 조건에 의해 어떻게 구조화되는지를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기존의 장애인 생애 연구는 미시적 관점에서 장애인의 성년기 주요 생애 경험의 차이를 개인의 특성으로만 설명하는 개인적 환원주의에 그쳤었고 이에 대한 이론적 접근이 부재하였다. 이 연구는 장애인의 대학진학, 취업, 결혼을 구조적 제약 속 개인의 합리적 선택으로 보고, 그 기회구조를 밝히고자 하였다.

장애담론에 대한 분석은 장애정책이라는 제도변화가 어떻게 장애인의 생애 경험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연관되었는지 확인하였다. 먼저, 장애정책과 신문기사를 통해 도출된 장애담론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 장애인 내부의 의식과 형식적 측면에서의 장애정책 내용은 '의료모델'에서 '사회모델'로 변화하였지만, 사회일반의 의식과 사회적 관행은 여전히 '의료모델'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대학진학, 취업, 결혼 등의 성년기 주요 생애 경험이 세대 간에 얼마나 달라졌는지를 살펴본 결과, 장애인의 학력 향상에도 불구하고 노동시장 성과의 개선이 없었고, 비혼화 경향이 심화됨에 따라 세대별 주된 생애과정 유형은 '부부가족 의료모델형'에서 '혈연가족 의료모델형'으로 바뀌었을 뿐 여전히 의료모델에 머물고 있었다. 한편, 최근에 태어난 여성 코호트에서 노동시장 성과에 있어 약간의 개선이 보이는데 이는 최근의 장애여성 고용정책의 성과로도 보이며, 부분적으로 '자립적 사회모델형'으로의 변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어서 각 성년기 주요 생애 경험인 대학진학, 취업, 결혼 이행에 작동하는 개인의 속한 사회경제적 배경과 그 교차성의 기회구조를 밝혔다. 그

결과, [그림 7-1]과 같이 어릴적 경제적 수준과 아버지의 학력과 같은 부모의 계층이 학력을 결정지으며, 학력은 부모의 계층을 매개하여, 직업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취업 상태에 따라 결혼 이행 확률은 차이가 있었는데, 고용 지위가 불안정한 비상용직의 경우 결혼이행 확률이 가장 높았던 반면, 비교적 안정적인 상용직 취업자의 경우 결혼이행 확률이 비상용직보다 낮았다. 한편 미취업자의 경우 결혼이행 가능성이 거의 없었다.

즉, 종래의 '부부가족 의료모델형' 의 중심의 생애과정 유형은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라 '자립적 사회모델형(상층, 고학력, 상용직)', '부부가족 사회모델형(중층, 중간학력, 비상용직)', '혈연가족 의료모델형(하층, 저학력, 미취업)' 으로 분화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부모 계층과 성별을 교차했을 때, 성년기 주요 생애 경험 유형이 분화되기도 한다. 저학력 부모를 둔 장애여성은 같은 조건의 장애남성보다 혈연가족 의료모델에 속할 가능성이 크다. 한편 고학력 부모를 둔 장애여성은 같은 조건의 장애남성보다 자립적 사회모델형이나 부부가족 사회모델형에 속할 가능성이 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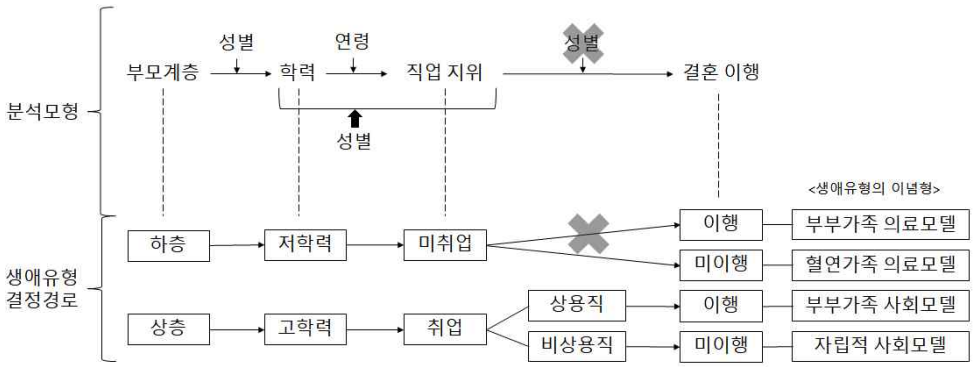

[그림 7-1] 장애인의 성년기 주요 생애 경험 유형의 분화 경로

제 2 절 함의 및 제언

한국의 장애정책이 사회모델로 변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담론과 장애인의 생애를 관찰했을 때, 한국의 장애 패러다임은 여전히 의료모델에 머물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장애인의 교육수준은 점차 향상되고 있지만, 장애인의 취업률은 거의 개선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의 여성 코호트에서 약간의 진전이 있었을 뿐이다. 사회모델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물리적 장벽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장벽인 사회인식을 허물기 위한 다양한 교육적・문화적 접근이 필요하다. 또한, 저조한 장애 복지 현실 속에서 진정한 의미의 사회모델이 실현되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장애인 복지지출 규모를 지속 늘리고, 실질적인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직업 재활과 고용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이 매우 제한적이다(OECD, 2010). 장애인 고용 할당제나 단순한 소득지원을 넘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장애인 고용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장애인의 성년기 주요 생애 경험에서 계층화의 양상이 뚜렷하게 확인되었다. 계층에 따라 성년기 주요 생애 경험 유형은 뚜렷하게 분화된다. 또한, 장애에 계층, 성별 등의 다른 속성이 중첩되었을 때, 또 다른 양상의 불평등이 발생한다. 이러한 장애인의 성년기 주요 생애 경험 기회구조의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접근 또한 필요하다.

기존의 장애인 고등교육정책은 장애인의 장애특성에만 기초하여 장애인의 성별과 계층 속성에 주목하지 못하였다. 최근으로 올수록 부모들의 교육수준이 향상되었고,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또한 점차 개선되고 있다. 장애인을 위한 보편적 입시제도 즉, 장애인특별전형이 있다 해도,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장애인 집단과 그렇지 못한 장애인 집단이 있을 수 있다. 이 연구는 그 중에서도 장애인의 계층에 따라 고등교육 진입에 차별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이 연구는 이미 주어진 제도적 혜택에 대한 접근성의 형평성 제고가 필요함을 제안한다. 장애인특별전형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하층장애대학생에 대한 대학등록금 및 생활비 지원 등이 이루어진다면, 계층에 따른 장애인의 고등교육 진입차별이 다소 완화될 수 있

다. 또한, 하층장애여성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다. 하층장애여성은 장애, 하층, 여성이라는 삼중차별 하에 놓여있고, 교육마저 받지 못한다면, 최하위의 사회적 약자로서 기본적인 인권조차 보호받기 힘들고 각종 물리적 및 사회적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오혜경・김정애, 2000). 이에 하층장애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인 사회적 지원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노동시장으로의 진입을 증진하기 위해서 우선 장애인의 교육수준을 높이는 것이 시급하다. 그러하기 위해서는 교육단계에서부터 소외된 이들에 대한 포함이 우선되어야 한다. 초・중등 단계의 특수교육에서의 개선이 필요하고, 대학진학에 있어 하층 장애인에 대한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교육-노동시장 연계 체제가 정비되어야 한다. 장애를 이유로 교육을 더 이상 받기 힘든 장애인이라도, 학력과 관계없이 진입할 수 있는 노동시장이 마련되어야 한다. 즉, 중졸은 중졸대로, 고졸은 고졸대로 진입할 수 있는 교육수준과 연계된 노동시장이 마련되어야 한다. 최근 전공과가 신설되어, 장애학생이 고등학교 졸업 이후에 학교에 소속될 수 있는 기간이 연장되긴 했지만, 전공과를 마친 후 이들이 본격적으로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장애인을 위한 안정적이고, 소득을 확보할 수 있으며, 사회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한편, 연령에 따른 생애주기별 고용제도 및 소득보장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저학력 고령자의 노동시장 참여는 자발적이라기 보다는 생계를 위한 어쩔 수 없는 것일 수 있다. 성인 초기 노동시장으로부터의 배제는 생애에 누적되어, 노년을 빈곤 위험에 빠뜨린다. 빈곤 상태에 놓여있는 장애노인에 대한 소득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

결혼 이행은 가족형성으로 발생되는 위험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제도적 지원이 이루어짐으로써 진전될 수 있을 것이다.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이들의 경우 결혼으로 인한 위험을 회피하는 개인화된 삶을 선택하였다.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이들의 경우 가족화를 통해 경제적 위험을 회피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이들 모두 결혼으로 인한 위험, 즉 경제적 부양, 신체적 돌봄, 출산 및 양육 등의 가족적 책임을 수행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공통으

로 인식하고 있을 것이다. 이러한 가족의 책임으로 간주하는 것들을 사회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돌봄의 사회화는 장애인의 가족형성 부담을 낮출 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 전반의 재생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도 반드시 필요한 부분일 것이다.

한편 교육, 노동시장 및 결혼 이행 경험으로부터 완벽히 배제된 다수의 장애인이 존재한다. 교육으로부터의 배제는 노동시장으로부터의 배제로 이어졌고, 노동시장으로부터의 배제는 결혼 이행으로부터의 거의 완벽한 배제로 이어졌다. 이들은 일생을 혈연가족에 의존하거나 혼자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마저도 힘들어지면 시설에 일신을 의탁하게 된다. 실제로 이 연구의 분석대상에서조차 배제된 많은 장애인이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다. 탈시설화와 자립생활운동의 결과 일부 장애인의 경우 다시 지역사회로 나와 사회에 통합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서는 장애인을 위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이 실시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전적인 지원을 받아 성공적으로 자립한 사례는 소수에 불과하다. 성공적 자립을 위해서는 적극적 탈시설화 정책이 시행되고, 포괄적 재정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재열(2021:170)은 사회적 포함을 증진하기 위해서 “국가의 제도적 역량을 강화하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고 생활세계 내에서 상호작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져 공동체 소속감과 신뢰가 높아져야 하고, 일상 속에서 사회적인 단절을 극복”해야 한다고 하였다. “공식적 제도와 절차 마련에 그치지 않고, 개인들 간의 친밀하고 지속적인 관계가 실질적인 사회적 유대감으로까지 발전할 수 있어야 사회적 포함이 완성”된다고 하였다(이재열, 2021:171). 그러하기 위해서 사회적으로 배제된 이들을 위한 “다양한 연결형 사회자본의 확장이 필요”하고, 그 과정을 그는 ‘사회적 관계와 다리놓기’라고 하였다(이재열, 2021:170-171). 그의 논의대로, 장애인의 사회적 포함을 위해서는 제도적 접근만으로는 부족하다.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의 경계를 허물고, 소통할 수 있는 적극적 장의 마련이 필요하다. 그 적극적 소통이 일어날 수 있는 장(場)이 학교, 노동시장, 가족이다. 이러한 사회적 장에 장애인의 보편적 진입이 가능하도록 장애인의 성년기 주요

생애 경험의 기회구조를 고려한 실질적이고 세밀한 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국내 문헌

강동욱 (2004) “장애인 취업·임금차별에 관한 계량적 분석” 《한국사회복지학》 56(2): 121-144.

강정한·양유민 (2013) “사회적 연결망의 동원이 장애인의 취업과 임금수준에 미치는 영향” 《장애와 고용》 23(2): 29-51.

강필수 (1994) 《사업체의 장애인고용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강남대학교 사회복지전문대학원 사회복지학과 박사학위논문.

곽정란 (2013) “근·현대 장애인복지 제도를 통해 본 한국 장애인의 역사” 조한진 편저 《한국에서 장애학 하기》 서울: 학지사, pp. 263-288.

관계부처합동 (2008) 《제3차 장애인정책발전 5개년 계획》.

_____ (2013) 《제4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_____ (2018)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교육부 (2005)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_____ (2020a)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_____ (2020b) 《교육통계연보》.

김경진 (2004) “청각장애 대학생의 문화 실태 연구” 《언어치료연구》 13(4): 23-39.

김기헌 (2002) 《한국사회의 교육체계와 첫 일자리 진입: 학교-직업 이행의 제도덕 결정 요인들》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 박사학위논문.

김동일·김수정·김경선 (2012) “학교 직업교육이 장애인의 취업 및 임금에 미치는 영향” 《장애와 고용》 22(3): 5-23.

김명수 (2017) “장애인 결혼에 관한 소고” 《홍익법학》 18(4): 177-198.

김미선 (2008) “장애대학생의 대학 내 지원에 관한 당사자들의 인식 및 요구” 《특수교육연구》15(2): 121-136.

김미선・박중휘 (2010a) “대학에서의 학업지원에 대한 시각장애 대학생의 인식과 요구” 《시각장애연구》 26(1): 25-41.

_____ (2010b) “시각장애 대학생의 휴학과 복학에 관한 사례연구” 《시각장애연구》 26(4): 227-244.

김미선・신유리・김정석 (2020) “장애인의 결혼이행: 장애유형 및 남녀차이.“ 《통계연구》 25(2): 78-100.

김미옥 (2002) “여성장애인의 삶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청소년기와 장년기의 체험을 중심으로” 《한국가족복지학》 10: 9-36.

김미옥・박미숙・박현정 (2015) “지적장애인 부부의 결혼생활에 관한 질적 사례연구” 《한국가족복지학》 47: 167-191.

김민영・홍성두 (2016) “발달장애 고교 졸업생의 성인생활에 관한 질적 연구” 《평생학습사회》 12(4): 79-100.

김성희 (2010) “장애인의 취업결정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비영리연구》 9(1): 137-167.

김성희・이민경・오욱찬・오다은・황주희・오미애・김지민・이연희・강동욱・권선진 (2020) 《2020년 장애인 실태조사》 세종: 보건복지부.

김성희・이연희・오욱찬・황주희・오미애・이민경・이난희・오다은・강동욱・ 권선진 (2017) 《2017년 장애인 실태조사》세종: 보건복지부.

김소라 (2007) 《고학력 비혼여성의 독신문화에 관한 연구》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 석사학위논문.

김수희・정종화・문송애 (2017) “중증지체장애인 J씨의 고용경험에 관한 생애사 연구”《한국장애인복지학》 38: 181-211.

김영화・김병관 (1999) “한국 산업화 과정에서의 교육과 사회계층 이동” 《교육학연구》 37(1): 155-172.

김용득 (2004) “한국 장애인복지 변천과 대안 담론 모색” 《한국장애

인복지학》 1: 147-178.
김용득・박숙경 (2008) “지적장애인의 거주시설 유형별 자기결정 경험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60(4): 79-103.
김용득・이동석 (2019) “장애인정책의 현황과 전망” 김용득 편저 《장애인 복지: Inculive Society를 위한 상상》 서울: 이엠(EM) 커뮤니티, pp. 208-235.
김위정・염유식 (2009) “계급간 사교육비 지출 격차에 관한 연구: 합리적 행위이론의 관점에서” 《한국사회학》 43(5): 30-61.
김윤정 (1997) “우리나라 장애인운동의 역사적 전개에 관한 고찰”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석사학위논문.
김은실・손현동 (2009) “장애대학생의 취업스트레스에 관한 질적 (CQR) 연구” 《청소년학연구》 16(10): 149-178.
김정석 (2006) “미혼남녀의 결혼의향 비교분석” 《한국인구학》 29(1): 57-70.
김정석・곽정란・김미선・박세경 (2022) “텍스트마이닝을 활용한 장애인 돌봄 연구의 동향” 《특수교육 저널: 이론과 실천》 23(2): 91-122.
김정석・이진우・노승현 (2017) “장애인의 기대여명과 신규장애인등록률: 연령별 사망률에 근거한 탐색적 산출“ 《통계연구》 22(2): 53-66.
김진호 (2004) “충남지역 특수학교 발달장애 졸업생의 성인생활 실태 연구” 《특수교육 저널: 이론과 실천》 5(3): 225-247.
남춘호・남궁명희 (2012) “생애과정의 탈표준화 경향에 대한 경험적 연구: 성인기이행의 구조변동을 중심으로” 《지역사회연구》 20(2): 91-128.
노승현 (2012) “고령장애인의 취업 및 취업형태 결정요인에 관한 종단적 연구” 《장애와 고용》 22(3): 51-82.
류정진・나운환 (2006) “장애인 취업예측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보》 40(2): 167-193.
문수연 (2016) “교육 불평등 변화 양상 분석: 중간계급 및 코호트 분석

을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50(5): 141-171.
문혜진 (2010) “생애과정 관점에 대한 고찰과 적용: 성인으로의 이행과정에 대한 탐색적 분석” 《사회복지연구》 41(3): 349-378.
민인식・최필선 (2012) “STATA 패널데이터 분석” 서울: 지필미디어.
박경수 (2007) “장애인복지서비스 패러다임과 실천 동향” 김용득・김진우・유동철 편저 《한국 장애인복지의 이해》, pp. 291-311.
박기남 (2011) “20-30 대 비혼 여성의 고용 불안 현실과 선택” 《한국여성학》 27(1): 1-39.
박숙경 (2016) “한국의 장애인 탈시설 현황과 과제” 《지적장애연구》 18(1): 205-234.
박승희・박현숙・박지연・이숙향 (2012) “발달장애인의 성공적 성인기 전환에 영향을 준 요소와 전환 지원방안에 관한 질적 연구” 《특수교육학연구》 47(2): 141-175.
박재홍 (2001) “세대연구의 이론적・방법론적 쟁점” 《한국인구학》 24(2): 47-78.
_____ (2003) “세대 개념에 관한 연구: 코호트적 시각에서” 《한국사회학》 37(3): 1-23.
박호강・박충선・정영숙 (1999) 《현대사회의 성・ 결혼・ 가족》 경북: 대구대학교출판부.
박희찬 (2013) “지적장애인 고등학교 졸업 이후 전환 실태와 개선 방안” 《지적장애연구》 15(2): 1-24.
방하남・김기헌 (2002) “기회와 불평등: 고등교육 기회에 있어서 사회계층간 불평등의 분석” 《한국사회학》 36(4): 193-222.
_____ (2003) “한국사회의 교육계층화: 연령코호트간 변화와 학력단계별 차이” 《한국사회학》 37(4): 31-65.
백은령・오혜경・전동일 (2007) “여성장애인의 취업실태와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직업재활연구》 17(1): 223-248.
보건복지부 (1998) 제1차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https://www.mohw.go.kr/react/gm/sgm0704vw.jsp?PAR_MENU_I

D=13&MENU_ID=1304080103&page=1&CONT_SEQ=372576&PAR_CONT_SEQ=355949).

_____ (2003) 제2차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 (https://www.mohw.go.kr/react/gm/sgm0704vw.jsp?PAR_MENU_ID=13&MENU_ID=1304080103&page=1&CONT_SEQ=372577&PAR_CONT_SEQ=355949).

손지영・정소라・김동일 (2011) “국내 장애학생 고등교육의 연구동향과 과제” 《특수교육학연구》 45(4): 157-178.

신광영・문수연 (2014) “계급, 젠더와 대학생 사교육” 《산업노동연구》 20(1): 31-64.

신선숙・김득연 (2019) “여성발달장애인의 결혼에 대한 부모의 인식연구” 《발달장애연구》 23(2): 73-95.

신유리・김경미・김동기・유동철 (2013) “1950, 60년대생 장애여성의 생애사 연구: 사회적 배제 경험 중심으로” 《사회과학논총》 15: 89-118.

신유리・김정석 (2020) “장애여성들의 성과 사랑, 그리고 결혼: 생애구술사자료를 통한 현상학적 이해” 《한국인구학》 43(3): 55-76.

심진예・전혜연 (2003) 《신장장애인의 직업준비에 관한 연구》 서울: 장애인직업안정연구원.

어수봉 (1996) “한국의 장애인 노동시장 분석” 《장애와 고용》 6(1): 23-37.

오세란 (2008) “장애인의 취업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정책》 34: 255-275.

오세철 (2004) “장애대학생과 비장애대학생의 취업욕구 분석” 《지체중복건강장애연구 (구 중복・ 지체부자유아교육)》 44: 21-44.

오혜경 (2002) “여성장애인의 경제활동 실태 및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비판사회정책》 13: 113-146.

_____ (2009) “장애인의 결혼생활과 정책과제” 《보건복지포럼》 153: 37-45.

_____ (2011) “장애인의 결혼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국장애인복지학》 14: 51-68.
오혜경・김정애 (2000) 《여성장애인과 이중차별》서울: 학지사.
유동철 (2000) 《노동시장의 장애인 차별 영향분석: 지체장애인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박사학위논문.
_____ (2008) “장애인 취업알선 서비스가 고용의 질에 미치는 영향” 《장애와 고용》 18(1): 5-26.
_____ (2010) “장애인연금 도입의 의의와 향후 과제” 《보건복지포럼》 6: 40-45.
유창민・오혜인 (2016) “여성 지적장애인의 결혼과정과 결혼생활의 의미에 관한 질적 사례연구” 《한국장애인복지학》 34: 5-33.
유홍준・현성민 (2010) “경제적 자원이 미혼 남녀의 결혼 연기에 미치는 영향” 《한국인구학》 33(1): 75-101.
육주혜 (2003) 《정보기술분야 장애인 직업능력개발과 노동시장 연계 방안》경기: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고용개발원.
윤자영 (2012) “노동시장통합과 결혼 이행” 《한국인구학》 35(2): 159-184.
이나영 (2014) “한국사회의 중층적 젠더 불평등: ‘평등 신화’와 불/변하는 여성들의 위치성” 《한국여성학》 30(4): 1-45.
이동석 (2003) 《Priestly의 장애 이론 유형에 따른 한국 장애인 제도 및 운동의 변천에 관한 연구》 성공회대학교 시민사회복지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석사학위논문.
이동석 (2004) “장애학의 다중 패러다임과 한국 장애인복지의 성격-장애인복지법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56(3): 227-251.
이명진 (2000) “한국사회의 선택혼: 시기별 추이와 국제비교” 《한국사회학》 34(여름호): 297-323.
이미선 (2015) “청각장애인 부부의 결혼생활 경험” 《한국사회복지학》 67(3): 125-150.
이병희・장지연・윤자영・성재민・안선영 (2010) 《청년기에서 성인기로

의 이행과정 연구 Ⅰ: 우리나라의 청년기에서 성인기로의 이행 실태》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이상직 (2020) 《전환기 성인 이행 경로의 변화: 1970-1984년 코호트의 교육・노동・가족이력》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 박사학위논문.

이선우 (1997) “장애인의 취업 및 취업형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분석: 프로빗을 이용한 분석” 《한국사회복지학》 33: 287-313.

이선우・김성희・임정기・권선진・유동철・이계존 (2001) 《장애유형별 고용현황과 직업재활방안》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성규 (2001) 《장애인 복지 정책과 노말라이제이션》서울: 홍익재.

_____ (2011) 《한국 장애인 복지 발달사》 서울: 집문당.

이성규 (2014) “장애유형, 장애정도 및 경제활동상태와 결혼생활만족도의 관계: 고용패널데이터를 활용한 장애인의 일상생활 차별경험의 매개효과” 《한국사회복지학》 66(4): 281-306.

이숙향 (2010) “국내 중등 통합교육 연구의 동향 및 향후 과제 고찰” 《특수교육 저널: 이론과 실천》 11(3): 339-369.

이순미 (2014) “생애과정의 복합적 탈근대화와 가족화와 개인화의 이중적 과정: 1955-1974년 성인기 이행 배열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48(2): 67-106.

이은미・백은령 (2010) “지적장애자녀의 생애주기에 따른 가족경험 및 지원 욕구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질적연구》 4(2): 63-91.

이재열 (2021) “제4장 제3절 사회적 포용” 박준 외 저 《국가포용성지수 개발 연구》 세종: 경제인문사회연구회, pp. 150-173.

이정기・안성우・백유순 (2002) “발달 장애 고등부 졸업생의 취업 및 사회 적응 실태 추적 조사 연구” 《발달장애연구》 6(2): 213-229.

이혜경 (1993) “권위주의적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복지국가의 발달: 한국의 경험” 《한국사회복지학》 21: 162-191.

임덕영 (2008) 《한국 자본주의 이행시기의 부랑인 및 부랑인정책에 대한 고찰: Marx이론을 중심으로》 성공회대학교 일반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석사학위논문.

임성택 (2012) “장애인 생활시설에서의 인권 침해, 그 현황과 대책“ 《저스티스》 128: 7-59.

임의영 (2014) “H. A. Simon의 제한된 합리성과 행정학” 《행정논총》 52(2): 1-35.

임종호・전동일 (2008) “시각장애인의 취업영향요인: 2005년 장애인실태조사 자료를 중심으로” 《시각장애연구》 24(2): 105-124.

임효순・이홍직 (2009) “지적장애인의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장애와 고용》 19(3): 27-50.

장경섭 (2009) 《가족, 생애, 정치경제: 압축적 근대성의 미시적 기초》 서울: 창비.

장미혜 (2002) “사회계급의 문화적 재생산: 대학간 위계서열에 따른 부모의 계급구성의 차이” 《한국사회학》 36(4): 223-251.

장미혜・정해숙・마경희・김여진・김연화・서연경 (2011) 《청년기에서 성인기로의 이행과정 연구 II: 성인기 이행의 성별차이 연구》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장상수 (1999) “한국 사회의 교육수준별 혼인 유형과 그 변화” 《한국사회학》 33(여름호): 417-448.

_____ (2000) “교육 기회의 불평등: 가족 배경이 학력 성취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학》 34(가을호): 671-708.

_____ (2001) 《한국의 사회이동》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_____ (2004) “학력성취의 계급별・성별 차이” 《한국사회학》 38(1): 51-75.

_____ (2006) “여성의 고등교육 이수기회: 누가 왜 딸을 대학에 보냈는가?” 《한국사회학》 40(1): 127-156.

전상진 (2002) “세대사회학의 가능성과 한계 - 세대개념의 분석적 구분 -” 《한국인구학》 25(2): 193-230.

_____ (2004) “세대 개념의 과잉, 세대연구의 빈곤: 세대연구 방법에 대한 고찰” 《한국사회학》 38(5): 31-52.

정명현 (2003) “장애인의 장기실업 특성요인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대학원 재활과학과 박사학위논문.

정민섭 (2021) “복지국가 장애인 정책의 유형화에 관한 비교사회정책 연구: OECD 27 개 국가 소득보장과 고용정책을 중심으로“ 《비판사회정책》 (71): 359-389.

정민우・이나영 (2011) “ ‘가족’의 경계에 선 청년세대: 성별화된 독립과 규범적 시공간성” 《경제와사회》 89: 105-145.

정병오 (2010) “여성장애인의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복지행정논총》 20: 143-174.

정용관 (1998. 4. 21.) “장애인고용 기업에 맡겨야” 《동아일보》, p.14.

조문순 (2001) 《장애인직업정책 결정과정의 참여자 갈등에 관한 연구: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개정과정을 중심으로》성공회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석사학위논문.

조문순・이동석 (2012) 《장애인 문화 그 전망과 개선방안》안산: 국립특수교육원.

조상미・김지나・조정화 (2010) “취업장애인의 임금 결정 요인” 《장애와 고용》 20(3): 75-96.

조성은・이방현・고경환・김수진・김회성・안수란・오욱찬・유재언・이아영・임정미・이동석・길현종・김조설・양재진・윤홍식・이주영・최원규・최요한・김재현 (2019). 《한국 사회보장제도의 역사적 변화 과정과 미래 발전 방향》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윤경 (2003) “중도장애 학생의 성인기로의 성공적인 전환을 위한 계획과 실행 과정 및 과제” 《직업재활연구》 13(1): 235-260.

조은별・서효정 (2020) “발달장애학생의 성공적인 성인기 전환을 위한 자기결정 및 직업준비도 분석: 중학생, 고등학생 및 전공과 학생을 중심으로” 《특수아동교육연구》 22(3): 117-139.

조주희・조홍중 (2012) “경도장애의 의미: 뇌성마비 여성 S의 생애 내러

티브 탐구를 중심으로” 《특수교육학연구》 46(4): 141-166.
조한진 (2013) “장애의 이론적 틀” 조한진 편저 《한국에서 장애학하기》, 서울: 학지사, pp. 41-106.
주윤정・양종민 (2020) “질병 스티그마와 젠더의 교차성: 한센인들의 사회적 차별과 가족내 차별 경험” 《가족과 문화》 32(1): 193-222.
차종천 (1992) “남성 세대간 사회이동에 대한 상호연관모형 분석” 《한국사회학》 25(겨울호): 155-175.
김형식・우주형・권오용・유경민・권순지・박규영 (2019) 《유엔장애인권리협약 해설 복지에서 인권으로》 경기: 어가.
최옥순・김영일 (2009) “지체장애학교 중도, 중복장애 졸업생의 학교교육에 대한 경험과 졸업 후 삶에 대한 질적 연구” 《지체중복건강장애연구 (구 중복・ 지체부자유아교육)》 52(1): 1-26.
최필선・민인식 (2015) “청년층의 취업과 임금이 결혼이행에 미치는 영향: 이산시간 해저드 모형의 응용” 《한국인구학》 38(2): 57-83.
카를 만하임(Mannheim, K.) (2020) 이남석 (역) 《세대 문제》 책세상.
톰 셰익스피어(Shakespeare, T.) (2013) 이지수 (역) 《장애학의 쟁점: 영국 사회모델의 의미와 한계》 서울: 학지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한국장애인패널조사》 (https://edi.kead.or.kr/Contents.do?cmd=_051A&mid=213)
한우리 (2018) “교차로에 선 여자들, 1968년, 미국” 김보영, 나영, 황주영, 한우리 저 《교차성 X 페미니즘》 서울: 도서출판여이연, pp. 11-48.
한준 (2001) “한국노동패널 특집: 최적일치법을 이용한 남녀간 직업 배열의 분석” 《노동경제논집》 24(1): 149-176.
허석재 (2015) “세대연구의 경향과 쟁점” 《미래정치연구》 5(1): 21-47.
허준기 (2022) 《한국 장애정책의 형성과 궤적: 사회적 시민권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 박사학위논문.
홍찬숙 (2019) “교차성 논의의 이론화 및 방법론적 쟁점: 사회학적 수용

및 유럽에서의 수용을 중심으로” 《젠더와 문화》12(1): 7-39.

2. 국외 문헌

Abebe, D. S., Helseth, S., and Andenæs, R. (2019) “Socio-economic Gradients and Disability during the Transition to Young Adulthood: a Longitudinal Survey and Register Study in Norway” *International Journal of Disability, Development and Education* 66(1): 99-110.

Allison, P. D. (2014) *Event history and survival analysis: Regression for longitudinal event data* London: SAGE.

Alwin, D. F. (2013) “Life Course, life cycle, life history, life span and life stage” in A. L. C. Runehov and L. Oviedo (eds.) *Encyclopedia of Sciences and Religions* Dordrecht: Springer Netherlands, pp. 1167-1167.

Arnett, J. J. (2004) *Emerging Adulthood: The Winding Road from the Late Teens through the Twentie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Baldwin, M. L., and Johnson, W. G. (1995) “Labor market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with disabilities” *Industrial Relations: A Journal of Economy and Society* 34(4), 555-577.

Beck, U. (1995) *Risk Society: Towards a New Modernity* London: SAGE.

Beck, U., and Beck-Gernsheim, E. (2002) *Institutionalized Individualism and Its Social and Political Consequences* Ann Arbor: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Becker, Gary S. (1981) *A Treatise on the Family*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Becker, G. S., and Tomes, N. (1986) “Human Capital and the Rise and Fall of Families” *Journal of Labor Economics* 4(3, Part 2),

S1-S39.

Behrman, J. R., and Taubman, P. (1986) "Birth Order, Schooling, and Earnings" *Journal of Labor Economics* 4(3, Part 2), S121-S145.

Bento, R. F. (1996) "Faculty Decision-making about Reasonable Accommodations' for Disabled College Students" *College Student Journal* 30(4): 494-501.

Billari, F. C., and Liefbroer, A. C. (2010) "Towards a New Pattern of Transition to Adulthood?" *Advances in Life Course Research* 15(2-3): 59-75.

Blau, P. M., and Duncan, O. D. (1967) *The American Occupational Structure* New York: John Wiley & Sons.

Blei, D. M., Ng, A. Y., and Jordan, M. I. (2003) "Latent dirichlet allocation" *Journal of Machine Learning Research* 3(Jan): 993-1022.

Bossé, R., Aldwin, C. M., Levenson, M. R., and Ekerdt, D. J. (1987) "Mental Health Differences among Retirees and Workers: Findings from the Normative Aging Study." *Psychology and Aging*, 2(4): 383-389.

Boudon, R. (1974) "Educational Growth and Economic Equality" *Quality and Quantity* 8(1): 1-10.

Bourdieu, P. (1986) "The Forms of Capital" Richardson, J. (eds.) *Handbook of Theory and Research for the Sociology of Education* Westport, CT: Greenwood, pp. 241-58

Breen, R., and Goldthorpe, J. H. (1997) "Explaining educational differentials: Towards a formal rational action theory" *Rationality and Society* 9(3): 275-305.

Brinton, M. C. (1988) "The Social-institutional Bases of Gender Stratification: Japan as an Illustrative Case"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4(2): 300-334.

Brinton, M. C., and Lee, D.-J. (2016) "Gender-role Ideology, Labor Market Institutions, and Post-industrial Fertility"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42(3): 405-433.

Brisenden, S. (1986) "Independent Living and the Medical Model of Disability" *Disability, Handicap & Society* 1(2): 173-178.

Buchmann, M. (1989) *The Script of Life in Modern Society: Entry into Adulthood in a Changing World* Chicago, Illinois: University of Chicago Press.

Buchmann, Claudia, Thomas A. DiPrete, and Troy A. Powell. 2003. "Do Rises in Parental Resources Explain the Growing Female Advantage in U.S. Higher Education?" *A paper presented at the meeting of the Research Committee on Social Stratification(RC28) of the International Sociological Association*, held in Tokyo, March 2003.

Bude, H. (2000) "Die biographische Relevanz der Generation." in M. Kohli and M. Szydlik (eds.) *Generationen in Familie und Gesellschaft* Opladen: Leske & Budrich, pp. 19-35

Chauvel, L. (2011) "Age-period-cohort Detrended APC-D Model" (http://www.louischauvel.org/apcdmethodo.pdf)

_____ (2012) "APCD: Stata Module for Estimating Age-period-cohort Effects with Detrended Coefficients" (https://econpapers.repec.org/software/bocbocode/s457440.htm)

_____ (2013) "Welfare Regimes, Cohorts and the Middle Classes" in J. Gornick and M. Jantti (eds.) *Income Inequality: Economic Disparities and the Middle Class in Affluent Countries*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pp. 115-141.

_____ (2016) *Age-Period-Cohort with Hysteresis APC-H Model / A Method*, Luxembourg: University of Luxembourg.

Chauvel, L., and Schröder, M. (2014) "Generational Inequalities and

Welfare Regimes" *Social Forces* 92(4): 1259-1283.

Cheatham, L. P., and Randolph, K. (2022). "Education and Employment Transitions among Young Adults with Disabilities: Comparisons by Disability Status, Type and Severity" *International Journal of Disability, Development and Education* 69(2): 467-490.

Clausen, J. S. (1991). "Adolescent Competence and the Shaping of the Life Course"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6(4): 805-842.

Coleman, J. S. (1961) *The Adolescent Society* Glencoe, Illinois: Free Press.

Collins, R. (1979) *The Credential Society: An Historical Sociology of Education and Stratification* New York: Academic Press.

Cornwell, B. (2015) *Social Sequence Analysis: Methods and Application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Craft, A. (1983). "Sexuality and Mental Retardation: A Review of the Literature" *Sex Education and Counselling for Mentally Handicapped People* Maryland: University Park Press, pp. 1-37

Driedger, D. (2003). "In Sickness and Employment: Women Living and Working with Chronic Illness" *Resources for Feminist Research* 30(1-2): 125-136.

Elder Jr, G. (1968) *Life Course Dynamics. Trajectories and Transitions* New York: Cornell University Press.

_____ (1998) "The Life Course as Developmental Theory" *Child Development* 69(1): 1-12.

Flynn, R. J., & Nitsch, K. E. (1980) "Normalization, Social Integration and Community Services" *International Journal of Rehabilitation Research* 3(4): 605.

Fogt, H. (1982). *Politische Generationen: Empirische Bedeutung und theoretisches Modell* Opladen: Westdeutscher Verlag.

Freedman, M. (2017). *Are Recent Generations Catching Up or Falling*

Behind? Trends in Inter-Generational Inequality (No. 689) LIS Working Paper Series.

Fuller, M., Bradley, A., and Healey, M. (2004) "Incorporating Disabled Students within an Inclusive Higher Education Environment" *Disability and Society* 19(5): 455-468.

Giddens, A. (1990) *The Consequences of Modernity* Cambridge: Polity.

_____ (1992) *The Transformation of Intimacy: Sexuality, Love and Eroticism in Modern Societies*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_____ (2000) *Runaway world: How globalization is reshaping our lives* London: Profile Books.

Glenn, N. D. (2005) *Cohort analysis* London: Sage.

Goldthorpe, J. H. (1996) "Class analysis and the reorientation of class theory: the case of persisting differentials in educational attainment" *British Journal of Sociology* 47(3): 481-505.

Greenhalgh, S. (1985) "Sexual Stratification: The Other Side of "Growth with Equity" in East Asia"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11(2): 265-314.

Haage, H., Vikström, L., & Häggström Lundevaller, E. (2017). "Disabled and Unmarried?: Marital Chances among Disabled People in Nineteenth-century Northern Sweden" *Essays in Economic & Business History*, 35(1): 207-238.

Hallinan, M. T. (1988) "Equality of Educational Opportunity" *Annual Review of Sociology* 14: 249-268.

Haage, H., Vikström, L., and Häggström Lundevaller, E. (2017) "Disabled and Unmarried?: Marital Chances among Disabled People in Nineteenth-century Northern Sweden" *Essays in Economic & Business History* 35(1): 207-238.

Hasazi, S. B., Gordon, L. R., and Roe, C. A. (1985) "Factors Associated with the Employment Status of Handicapped Youth Exiting High

School from 1979 to 1983" *Exceptional Children* 51(6): 455-469.

Hogan, D. P., and Astone, N. M. (1986) "The Transition to Adulthood" *Annual Review of Sociology* 12: 109-130.

Hollingshead, A. B. (1949) *Elmstown's Youth; the Impact of Social Classes on Adolescents* New York: John Wiley & Sons.

Holloway, S. (2001). "The Experience of Higher Education from the Perspective of Disabled Students" *Disability & Society* 16(4): 597-615.

Janus, A. L. (2009) "Disability and the Transition to Adulthood" *Social forces* 88(1): 99-120.

Jiang, J., and Kang, R. (2019) "Temporal Heterogeneity of the Association between Social Capital and Health: an Age-period-cohort Analysis in China" *Public Health* 172: 61-69.

Keeley, M. C. (1977) "The Economics of Family Formation" *Economic Inquiry* 15(2): 238-250.

Kennedy, J., and Olney, M. F. (2006) "Factors Associated with Workforce Participation among SSDI Beneficiaries" *Journal of Rehabilitation* 72(4): 24-30.

Kertzer, D. I. (1983) "Generation as a Sociological Problem" *Annual Review of Sociology* 9: 125-149.

Kim, N.-H., and Kawachi, I. (2021). "Age Period Cohort Analysis of Chewing Ability in Korea from 2007 to 2018" *Scientific Reports* 11(1): 1-7.

Kirchner, C., and Smith, B. (2005) "Transition to What? Education and Employment Outcomes for Visually Impaired Youths after High School" *Journal of Visual Impairment & Blindness* 99(8): 499-504.

Lang, R. (2001) "Understanding Disability from a South Indian perspective" Presented at *14th Annual Conference of the*

Society of Disability Studies Winnipeg, Canada.

Lee (1998) *Women's Education, Work, and Marriage in Korea* Seoul: Seoul National University Press.

Leplège, A., and Hunt, S. (1997) "The Problem of Quality of Life in Medicine" *Jama* 278(1): 47-50.

Lesthaeghe, R. (2010) "The Unfolding Story of the Second Demographic Transition"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36(2): 211-251.

Lesthaeghe, R., and Jolly, C. (1995) "The start of the sub-Saharan fertility transition: Some answers and many questions" *Journal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7(1): 25-45.

Lipset, S. M., and Bendix, R. (1959) *Social Mobility in Industrial Society*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McCabe, M, P. (1993) "Sex Education Programs for People with Mental Retardation" *Mental Retardation* 31(6): 377-387.

MacInnes, M. D. (2011) "Altar-bound? The Effect of Disability on the Hazard of Entry into a First Marriage" *International Journal of Sociology* 41(1): 87-103.

Mayer, K. U. (2004) "The Paradox of Global Social Change and National Path Dependencies: Life Course Patterns in Advanced Societies" Woodward, A. E., and Kohli, M. (Eds.) *Inclusions and exclusions in European societies* London: Routledge, pp. 103-124.

McCabe, M, P. (1993). "Sex Education Programs for People with MentalRetardation". Mental Retardation, 31(6), 377-387.

Millet, P., and Sandberg, K. W. (2003) "Locus of Control and Its Relationship with Vocational Rehabilitation of Unemployed Sick Leaves in Sweden" *Journal of Vocational Rehabilitation* 19(1): 59-66.

O'brien, R. M. (2011) "Constrained Estimators and Age-period-cohort

Models" Sociological Methods & Research 40(3): 419-452.

OECD (2010) *Sickness, Disability and Work: Breaking the Barriers: A Synthesis of Findings across OECD Countries.*

Oliver, M. (1996) *Understanding Disability: From Theory to Practice* New York: St. Martin's Press.

Olsson, Ingrid (1999) *Att leva som lytt: Handikappades levnadsvillkor i 1800-talets Linköping* Ph.D. dissertation, Linköping University.

Oppenheimer, V. K. (1988) "A Theory of Marriage Timing"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4(3): 563-591.

_____ (1997) "Women's Employment and the Gain to Marriage: The Specialization and Trading Model" *Annual Review of Sociology* 23: 431-453.

Priestley, M. (1998) "Constructions and Creations: Idealism, Materialism and Disability Theory" *Disability & Society* 13(1): 75-94.

Raftery, A. E., and Hout, M. (1993) "Maximally Maintained Inequality: Expansion, Reform, and Opportunity in Irish Education, 1921-75" *Sociology of Education* 66(1): 41-62.

Reindal, S. M. (2000) "Disability, Gene Therapy and Eugenics-a Challenge to John Harris" *Journal of Medical Ethics* 26(2): 89-94.

Riddell, S., and Weedon, E. (2006) "What Counts as a Reasonable Adjustment? Dyslexic Students and the Concept of Fair Assessment" *International Studies in Sociology of Education* 16(1): 57-73.

Robert, P. M., and Harlan, S. L. (2006) "Mechanisms of Disability Discrimination in Large Bureaucratic Organizations: Ascriptive Inequalities in the Workplace" *The Sociological Quarterly* 47(4): 599-630.

Robinson, R. V., and Jackson, E. F. (2001) "Is Trust in Others

Declining in America? An Age-period-cohort Analysis" *Social Science Research* 30(1): 117-145.

Rothman, J. C. (2010). "The Challenge of Disability and Access: Reconceptualizing the Role of the Medical Model" *Journal of Social Work in Disability & Rehabilitation* 9(2-3): 194-222.

Ryder, N. B. (1985) "The Cohort as a Concept in the Study of Social Change" in Mason, W. M., and Fienberg, S. (Eds.) *Cohort Analysis in Social Research: Beyond the Identification Problem* New York: Springer, pp. 9-44.

Rylance, B. J. (1998) "Predictors of Post-high School Employment for Youth Identified as Severely Emotionally Disturbed" *The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32(3): 184-192.

Sandefur, G. D., and Park, H. (2007) "Educational expansion and changes in occupational returns to education in Korea" *Research in Social Stratification and Mobility* 25(4): 306-322.

Settersten Jr, R. A., Furstenberg, F. F., and Rumbaut, R. G. (2008). *On the Frontier of Adulthood: Theory, Research, and Public Policy,* Chicago, Illinois: University of Chicago Press.

Sewell, W. H., Haller, A. O., and Portes, A. (1969). "The Educational and Early Occupational Attainment Proces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34(1): 82-92.

Shah, S., and Priestley, M. (2011). *Disability and Social Change: Private Lives and Public Policies* Bristol: Policy Press.

Shanahan, M. J. (2000). "Pathways to Adulthood in Changing Societies: Variability and Mechanisms in Life Course Perspective," *Annual Review of Sociology*, 26: 667-692.

Simon, H.A. (1964) "Rationality" In J. Gould and W.L. Kolb (Eds.) *A Dictionary of the Social Sciences* New York: Oxford Univerisity Press, pp. 573-574.

Glencoe, IL: The Free Press.

Singer, J., and Willet, J. (2003) *Applied Longitudinal Data Analysis: Modeling Change and Event Occurrence*, New York: Oxford University.

Sitlington, P. L., and Frank, A. R. (1990) "Are Adolescents with Learning Disabilities Successfully Crossing the Bridge into Adult Life?" *Learning Disability Quarterly* 13(2): 97-111.

Stone, E. (2001). "A Complicated Struggle: Disability, Survival and Social Change in the Majority World" In Priestley, M (Eds.) *Disability and the Life Course: Global Perspective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 50-63.

Thurow, L. C. (1972) "Education and economic equality" *The Public Interest* 28: 66-81.

Van de Kaa, D. J. (1987). "Europe's Second Demographic Transition" *Population Bulletin* 42(1): 1-59.

Wagner, M. M., and Blackorby, J. (1996). "Transition from High School to Work or College: How Special Education Students Fare." *The Future of Children* 6(1): 103-120.

Wells, T., Hogan, D. P., and Sandefur, G. D. (2003) "What Happens after the High School Years among Young Persons with Disabilities?" *Social forces* 82(2): 803-832.

Wolfensberger, W. (1983) "Social Role Valorization: A Proposed New Term for the Principle of Normalization" *Mental Retardation* 21(6): 234.

Yang, Y., and Land, K. C. (2006) "A Mixed Models Approach to the Age-period-cohort Analysis of Repeated Cross-section Surveys, with an Application to Data on Trends in Verbal Test Scores" *Sociological Methodology* 36(1): 75-97.

_____ (2013) *Age-period-cohort Analysis: New*

Models, Methods, and Empirical Applications New York: Taylor & Francis.

<부록> 장애인 성년기 주요 생애 경험 유형의 단층(斷層)

부록에서는 시퀀스 분석을 통해, 장애인의 성년기 주요 생애 경험을 유형화하고, 유형별 사회경제적 특성을 파악한다. 서론에서 언급했듯이, 장애인의 성년기 주요 생애 경험 유형 측정은 대학진학, 취업, 결혼의 경험 여부를 통해 이루어지며, 각 측정 방식과 정의는 제1장의 <표 1-3>과 같다.

시퀀스 분석을 위해 한국고용개발원에서 2016년 실시한 <장애인고용패널조사(Panel Survey of employment for the Disabled)> 2차 웨이브 1~6차 조사자료를 결합하였다. 시간 축은 조사 시기(연 단위)이다. 통상 나이를 시간 축으로 해야 세대 간 비교가 가능하지만, 시간 축을 조사시기로 한 이유는 조사 기간이 짧고 조사 이전의 이력을 파악할 수 있는 변수를 조사가 포함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짧은 한 코호트의 6년간의 이력을 추적하기에는 사례 수가 너무 적었다.

단위를 연 단위로 한 이유도 취업 외 사건(대학진학과 결혼)이 발생한 월 단위의 시점정보를 담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었다. 하지만, 2016-2021년에 걸친 시간 동안 여러 코호트의 생애 단계에 따른 생애 유형의 정체 혹은 변화 양상을 살필 수 있고,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장애 특성 및 가족 배경의 효과를 분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상의 자료의 한계에 의해 본 분석은 본문에 포함될 수 없었기 때문에 부록에 그 결과를 첨부하게 되었다. 하지만 장애인 생애 유형의 단면을 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1. 자료 및 방법

(1) 분석기법

① 시퀀스 분석

생애 유형을 도출하기 위해, 시퀀스 분석을 활용한다. 시퀀스 분석이란,

시계열 자료에서 사례의 상태 변수의 변화 이력을 통해 시퀀스를 구성하여 패턴을 찾고, 그 패턴을 비교하여 분류하는 절차와 기법을 통칭한다(Cornwell, 2015).

패턴을 찾기 위해서는 우선 시퀀스 간의 거리를 측정해야 하는데, 이때 활용되는 방법이 Abbott이 제안한 최적일치법(optimal matching method)이다(Abbott, 1995). 예컨대 생애 상태 이력이 A사례(1-1-1-7-7-6)와 B사례(1-1-1-7-6-4)가 있다면, 각 시점에서 상태를 몇 번 교체(substitution), 삽입(insertion) 혹은 삭제(deletion)해야, 두 사례가 일치하는가에 따라서 두 시퀀스 간의 거리를 계산하는 것이다. 네 번째 시점까지 A와 B 두 사례의 생애 상태는 같지만, 다섯 번째 시점부터는 상태가 달라진다. 이를 일치시키기 위해서는 다섯 번째 시점 7과 6을, 여섯 번째 시점 6과 4를 서로 교체시켜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교체를 하면 할수록 비용이 늘어난다. 최적 일치법은 이 시퀀스 짝의 배열을 일치시키는 가장 저렴한 비용이 드는 조작을 찾아서, 그 조작에 들어간 비용을 토대로 시퀀스 간의 거리를 계산한다(한준, 2001).

그런데 삽입과 삭제의 경우 서로 대칭적이며, 많은 연구자가 비용에 1을 부여하고 있는데 문제는 교체 비용에 어떠한 값을 부여할 것인가이다[82]. 이론이나 기존 연구를 바탕으로 교체 비용을 부여할 수도 있지만, 자료를 토대로 전환 확률(transition rate)을 통해 이를 계산할 수 있다(Halpin, 2017). 이 연구는 거리에 기반하여 전환 확률의 행렬을 생성하여 교체 비용을 부과하였고, STATA의 니들맨-분쉬 알고리즘(Needleman-Wunsch algorithm) 플로그인을 활용하여 시퀀스 간의 최적 일치 거리를 계산했다.

최적 일치 거리를 구했다면, 이를 토대로 군집분석을 할 수 있다. 이 연구는 와드 연결법(ward’s linkage)으로 군집을 도출하여, 덴드로그램과 의미 해석을 기반으로 군집 수를 결정하였다.

82)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상직(2020:49-51) 참조

② 다항로짓

시퀀스 분석을 통해 도출된 생애 유형을 종속변수로 다항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다. 다항로지스틱회귀분석(이하, 다항로짓)은 종속변수가 3개 이상의 명목형 변수일 때 쓰이는 분석방법이다. 이 연구에서 설정한 생애 유형은 5개 이로, 유형1을 범주로 삼을 때 다항로짓 모형은 유형1 대비 유형2 ($\log(\pi 2/\pi 1)$), 유형1 대비 유형3($\log(\pi 3/\pi 1)$) 등을 사용하게 된다. 이 연구에서 추론하고자하는 다항로짓분석모델 함수 함수는 다음과 같다. 개인 i가 어떠한 생애 유형에 속할 확률을 p_{ij}라하고 $\pi_{ij} = (\frac{p_{ij}}{1-p_{ij}})$(odds)라고 할 경우, 다항로짓모형에서의 종속변수 y_{ij}는 이행 유형 범주 간의 오즈비(odds ratio)의 자연대수형태를 취하게 된다. X_{ij}를 y변수와 β_{ij}계수를 통해 선형적 관계를 갖는 독립변수군으로 설정할 경우 다음 (식 2.1)과 같이 분석모형을 표현할 수 있다.

$$Y_{ij} = \log(\frac{\pi_{ij}}{\pi_{iJ}}) = \alpha + \sum \beta_{ij}\chi_{ij} \qquad (j = 1, \cdots, J-1) \qquad \text{(식 2.1)}$$

이 모형을 이용하여 $J-1$개의 로짓 방정식으로 이루어져 있는 각 방정식의 서로 다른 모수들을 추정한다. 즉 기준 범주와 짝지어진 종속변수들의 명목 범주에 따라서 효과가 다양하게 나타나게 된다. 본 연구에서 α_t는 상수항의 모수(parameter)이며 β_j는 회귀계수(regression parameter)이다.

(2) 자료, 대상 및 변수측정

한국고용개발원에서 2016년 실시한 <장애인고용패널조사(Panel Survey of employment for the Disabled)> 2차 웨이브 1~6차 조사자료를 결합하여 분석하였다. 앞서 연구대상에서 소개했듯이 이 분석의 연구대상은 만 18세가 되기 전 장애가 발생한 장애인으로, 1차 조사 당시 나이가 만 18세 이

상 65세 미만이었던 1,202명이다. 장애유형은 지체장애, 시각 혹은 청각장애 및 지적장애에 한정했다.

앞서 언급했듯이 시간 축은 조사 시기(연 단위)이다. 통상 나이를 시간 축으로 하는 경우가 많지만, 조사 기간이 짧고 조사 이전의 이력을 파악할 수 있는 변수를 포함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짧은 한 코호트의 6년간의 이력을 추적하기에는 사례 수가 너무 적었다. 단위를 연 단위로 한 이유도 취업 외 사건(대학진학과 결혼)이 발생한 월 단위의 시점정보를 담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었다. 하지만, 2016-2021년에 걸친 시간 동안 여러 코호트의 생애 단계에 따른 생애 유형의 양상을 살필 수 있고,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인구학적 배경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종속변수인 생애 사건의 상태 변수를 생성하기 위해서 각 시기의 대학진학 여부, 취업 여부, 결혼 여부 변수를 활용하였다(<부록-표 1> 참조). 대학진학 여부와 결혼 여부는 한 번 응답하면 이후에 이루어지는 조사에서도 변하지 않는 변수이기 때문에, 패널이 이탈한 경우에도 이전 조사의 응답을 입력하여 사례를 제외하지 않았지만, 취업 상태는 매년 변할 수 있기 때문에, 패널에서 이탈하여 취업 상태를 확인할 수 없는 사례는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취업 이력을 파악할 수 없는 250명을 제외하여 952명이 최종 분석대상으로 선정되었다.

독립변수 군에 해당하는 변수들은 사회인구학적 변수(성, 코호트), 장애특성(장애유형 및 장애정도) 그리고 가족배경(어릴적 주관적 경제수준, 아버지의 학력)이다. 이 변수들은 항상적 변수이기 때문에, 1차 조사의 변숫값을 사용했고, 패널 이탈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 분석에 사용된 변수의 분포는 다음의 <부록-표 2>와 같다.

<부록-표 1> 생애 상태 변수 분포(%)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전체
N		952	952	952	952	952	952	5,712
1	미진학-미취업-미혼	23.7	22.9	22.4	21.6	22.0	21.3	22.3
2	미진학-미취업-결혼	15.6	16.0	16.2	16.4	16.5	16.0	16.1
3	미진학-취업-결혼	16.3	16.0	16.0	15.9	15.8	16.4	16.0
4	진학-취업-결혼	12.8	13.2	13.6	13.9	14.0	14.5	13.7
5	미진학-취업-미혼	10.9	11.2	11.2	11.9	11.5	11.8	11.4
6	진학-취업-미혼	9.7	10.0	10.2	9.9	10.0	10.7	10.1
7	진학-미취업-미혼	8.7	8.5	8.4	8.2	8.0	7.0	8.1
8	진학-미취업-결혼	2.3	2.2	2.1	2.3	2.4	2.3	2.3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부록-표 2> 그 외 변수 분포(%)

	N = 952
인구사회학적 특성	
여성의 비율(%)	40.1
코호트	
1950-1969년생	30.6
1970-1979년생	24.5
1989-1989년생	23.8
1990-1999년생	21.1
장애특성	
장애유형	
지체장애	42.9
시각 혹은 청각장애	33.8
지적장애	23.3
장애정도	
심한 장애	43.8
심하지 않은 장애	56.2
가족배경	
가구경제수준: 주관적인 만 14세 무렵 가구경제수준	
하층	30.9
중하층	37.0
중층	26.1
중상 혹은 상층	6.1
아버지 교육수준	

2. 분석결과

(1) 생애 상태 이행 이력 유형화

[부록-그림 1]은 생애 상태 이행 이력을 남성과 여성으로 나누어 나타낸 것이다. 가로 선 하나하나가 개별 사례의 상태 이력이다. 남성의 경우 6년 동안 미진학-미취업-미혼 상태(남색)를 유지한 사람들이 가장 많고, 여성의 경우 6년 동안 미진학-미취업-결혼 상태(주황색)를 유지한 사람들이 가장 많다. 진학-취업-결혼 상태(회색)와 진학-미취업-결혼 상태(자주색)를 오가는 사례, 미진학-취업-결혼 상태(연보라색)와 미진학-미취업-결혼 상태(주황색)를 오가는 사례가 보인다. 결혼은 했으나, 불안정한 노동지위에 놓인 사람들의 사례로 해석된다. 미진학-취업-미혼 상태(진녹색)에서 미진학-미취업-미혼 상태(남색)로 이행한 사례도 관찰된다. 진학-미취업-미혼 상태(갈색)와 진학-취업-미혼 상태(연녹색)를 오가는 사례도 관찰된다. 이들은 모두 결혼하지 않았고 불안정한 노동시장 지위에 놓여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다음은 코호트별 생애 이력이다([부록-그림 2] 참조). 1950-1969년생 코호트의 경우, 미진학-취업-결혼 상태(연보라색)와 미진학-미취업-결혼 상태(주황색)를 6년 동안 유지한 사례가 대다수를 차지한다. 진학-취업-미혼 상태(연녹색) 및 진학-미취업-미혼 상태(갈색)를 이력에 포함한 사례는 거의 없다. 1970-1979년생 코호트의 경우, 진학-취업-결혼 상태(회색)를 6년 동안 유지한 사례가 가장 많다. 1980-1989년생 코호트의 경우, 다양한 상태 이력을 가진 사례가 다수 분포하고 있으며, 1990-1999년생 코호트의 경우, 진학-미취업-미혼 상태(갈색)에서 진학-취업-미혼 상태(연녹색)으로 이행한 사례가 일부 관찰된다. 그리고 눈여겨볼 만한 것은 미진학-미취업-미혼 상태를 6년 동안 유지한 사례가 나이가 많은 코호트로 가더라도 크게 감소하지 않고, 전 코호트에 걸쳐 상당수 분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의 경우 장애로 인해 시간이 경과 되더라도 생애 상태 이행의 제약을 받는 사람들로 해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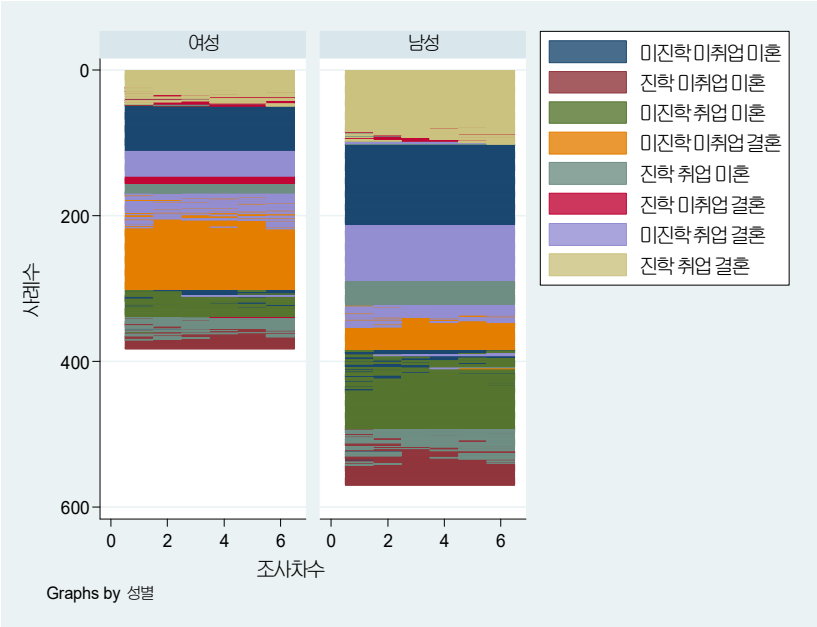

[부록-그림 1] 생애 상태 이행 이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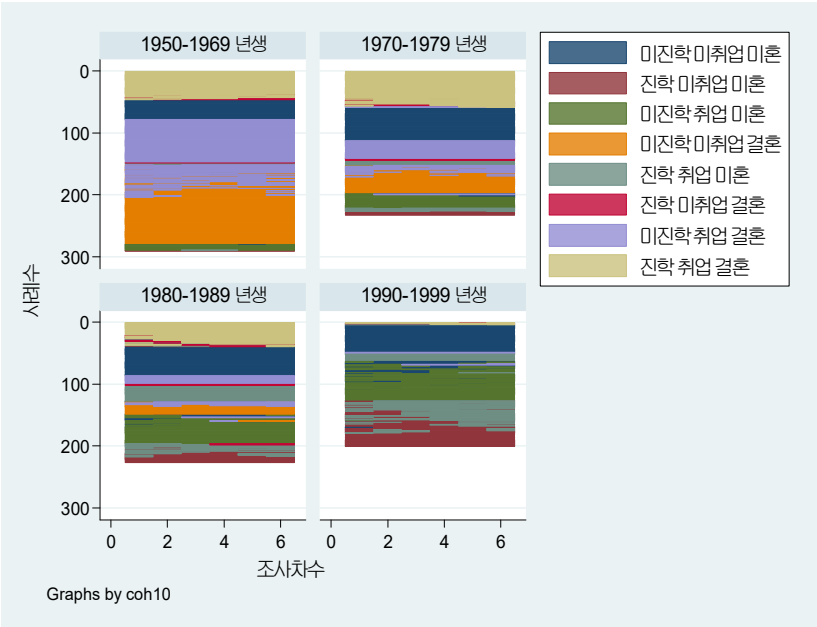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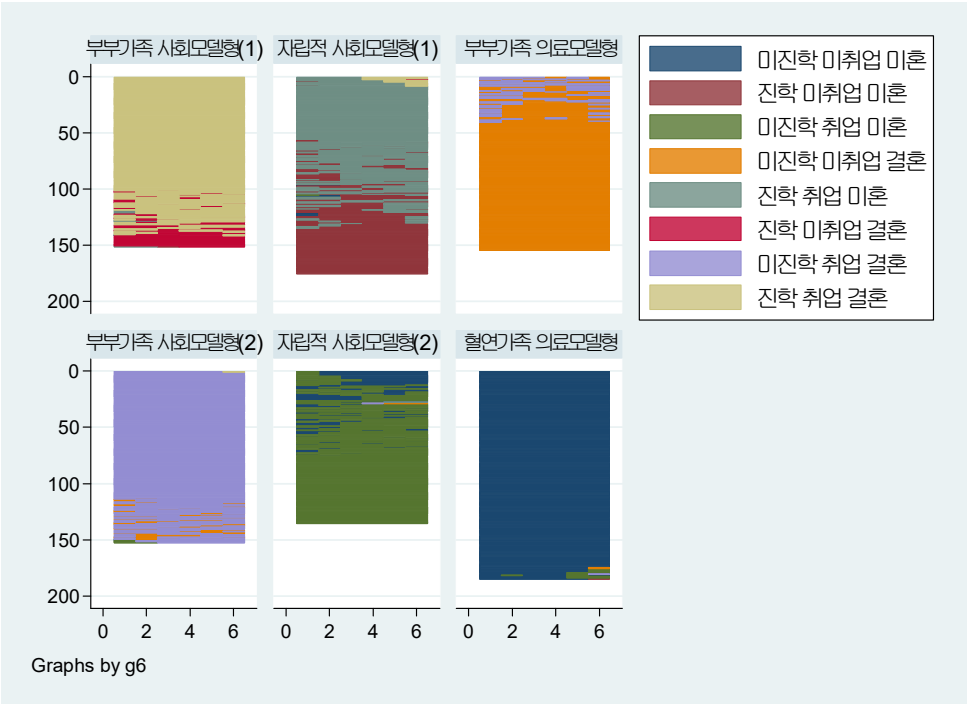

[부록-그림 3] 생애 유형별 특징

생애 상태 이행 이력을 6개의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6개 유형별 특징은 [부록-그림 3]과 같다. 유형별 특징에 장애인의 성년기 주요 생애 경험 유형을 반영하여 6개 명칭에 대한 이름을 부여하였다. 첫 번째 유형은 '부부가족 사회모델형(1)' 이다. 부부가족 사회모델형(1)은 대부분 대학에 진학하였고, 취업도 하고 결혼도 한 유형이다. 이들은 결혼 그리고 노동시장 참여를 통해서 동시에 위험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유형이다. 두 번째 유형은 '자립적 사회모델형(1)' 이다. 자립적 사회모형(1)은 대부분 대학에 진학하였고, 점차 노동시장에도 진입하고 있다. 소수이긴 하지만, 점차 결혼 이행도 하고 있다. 이들은 개인의 노동시장 참여를 통해 위험을 최소화하고 점차 결혼을 통해서도 안전을 보장받을 것을 추구한다. 세 번째 유형은 '부부가족 의료모델형' 이다. 이 유형의 다수는 대학에도 진학하지 않았고, 취업도 하지 않았지만 결혼은 한 사람들이다.

이들은 결혼을 통해서만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유형이다. 네 번째 유형은 '부부가족 사회모델형(2)'이다. 이들은 대학에는 진학하지 않았지만, 취업하였고, 결혼도 한 사람들로 대부분 구성되어 있다. 이 유형은 대학진학을 하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노동시장 지위가 불안정할 가능성이 있다. 다섯 번째는 '자립적 사회모델형(2)'이다. 이들은 대학에 진학하지는 않았지만 취업은 했고, 결혼은 하지 않은 유형이다. 이들 역시 대학을 진학하지 않아 노동시장 지위가 불안정할 가능성이 크다. 이들 중에서는 6년 사이 결혼으로 이행한 사람들도 없다. 마지막 유형은 '혈연가족 의료모델형'으로 대부분 어떠한 생애 사건도 일어나지 않은 유형이다. 이들의 경우 대학진학, 취업, 결혼을 모두 하지 않았기 때문에, 혈연가족(주로 부모)에게 의존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2) 생애 유형의 특징

변수별 생애 유형의 분포는 <부록-표 3>과 같다. '부부가족 사회모델형(1)'은 1970-1979년생 코호트, 지체장애인, 심하지 않은 장애, 중층 이상의 어릴 적 가구경제수준에 아버지의 학력이 고졸에 많이 분포하고 있다, 지적장애인에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 유형이다. '자립적 사회모델형(1)'은 남성, 1980년 이후에 태어난 코호트, 시각 혹은 청각장애인, 심하지 않은 장애, 중층 이상의 어릴 적 가구 수준에 고졸 이상의 아버지 학력에 많이 분포하고 있다. '부부가족 의료모델형'은 여성, 1950-1969년생 코호트, 시각 혹은 청각장애인, 심하지 않은 장애인, 중층 이하, 중졸 이하의 저 학력에 많이 분포하고 있다. 아버지의 학력이 대졸 이상인 사람들에서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부부가족 사회모델형(2)'는 1950-1969년생 코호트, 심하지 않은 장애, 어릴적 가구경제수준이 하층, 아버지의 교육수준이 중졸 이하에서 많이 분포하고 있다. 1990-1999년생에서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자립적 사회모델형(2)'는 1980-1999년생 코호트, 지적장애인에 많이 분포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혈연가족 의료모델형'은 남성, 1970년 이후 코호트, 지적장애인, 심한 장애, 어릴적 가구 경제 수준이 하

층이고 아버지의 학력이 중졸 이하인 저학력 부모에게서 많이 나타난다.

다항로짓모형을 통해 이러한 유형별 차이를 좀 더 선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부록-표 4> 다항로짓모형은 '혈연가족 의료모델형'을 준거집단으로 하였다. 각 독립변수의 범주에 속했을 때 해당 유형에 속할 가능성이 더 큰지 아니면, 준거집단에 속할 확률이 더 큰지를 판별하고, 그 확률의 상대적 크기를 오즈비(Exp(b))로 계산하여 제시하고 있다.

먼저 '혈연가족 의료모델형' 대비 '부부가족 사회모델형(1)'에 속할 확률을 살펴보면, 성별은 두 유형에 속할 가능성의 차이를 만들지 못한다. 하지만 다른 모든 특성은 어느 유형에 속할지에 대한 차이를 만든다. 최근에 태어난 코호트일수록 '혈연가족 의료모델형'보다 '부부가족 사회모델형(1)'에 속할 확률이 낮다. 오즈비를 통해 설명하자면, 1959-1969년생 100명이 부부가족 사회모델형(1)에 속할 때, 1990-1999명은 단 3명이 '부부가족 사회모델형(1)'에 속한다. 지체장애인 100명이 '부부가족 사회모델형(1)'에 속할 때, 지적장애인 단 3명에 이에 속한다. 심한 장애인 1명이 '부부가족 사회모델형(1)'에 속할 때, 심하지 않은 장애인은 1,057명 속한다. 어릴적 가구경제수준이 높을수록, '부부가족 사회모델형(1)'에 속할 가능성이 높은데, 중상층 이상이 '부부가족 사회모델형(1)'에 속할 가능성은 하층의 약 6.7배이다. 아버지의 교육수준은 고졸일 때 '부부가족 사회모델형(1)'에 속할 가능성이 높다. 아버지의 교육수준이 고졸일 때 '부부가족 사회모델형(1)'에 속할 확률은 중졸 이하일 때의 약 5배이다.

다른 유형 역시 '혈연가족 의료모델형' 대비 및 변수의 참조 범주 대비 오즈비로 자세히 설명할 수 있다. 하지만 자세한 서술은 생략하고 주요 경향을 간단히 제시하고자 한다.

'자립적 사회모델형(1)'은 성별에 의한 확률 차이는 없다. 다만, 최근 코호트로 올수록 '혈연가족 의료모델형'보다 속할 가능성이 훨씬 커진다. 시각 혹은 청각장애인, 지체장애인, 지적장애인 순으로 '자립적 사회모델형(1)'에 속할 가능성이 크다. 심한 장애보다는 심하지 않은 장애에서 나타날 확률이 높고, 하층보다는 중하층 이상에서 나타날 확률이 높다.

또한, 아버지의 학력이 높아질수록 해당 유형에 속할 가능성이 크다.

‘부부가족 의료모델형’은 남성보다는 여성에서 주로 나타나는 유형이다. 최근 코호트로 올수록 해당 유형에 속할 가능성이 작아진다. 즉 고령 여성이라면, ‘혈연가족 의료모델형’보다 해당 유형에 속할 가능성이 크다. 지체장애보다는 시각 혹은 청각장애에서 나타날 확률이 높으며, 심하지 않은 장애인일 경우 해당 유형에 속할 가능성이 크다. 하층보다는 중하층이 속할 가능성이 크지만, 계층이 높아진다고 해서 속할 가능성이 커지지는 않는다. 아버지의 학력이 대졸 이상인 경우 속할 가능성이 작다.

‘부부가족 사회모델형(2)’는 성별에 따라 어느 유형에 속할지에는 차이가 없다. 하지만 ‘부부가족 의료모델’과 마찬가지로, 최근 코호트로 올수록 해당 유형에 속할 가능성이 작아지는 유형이다. 시각 혹은 청각장애, 지체장애, 지적장애인 순으로 해당 유형에 속할 가능성이 크고, 심하지 않은 장애인일 경우 해당 유형에 속할 가능성이 크다. 가족배경 요인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립적 사회모델형(2)’는 남성일 때, ‘혈연가족 의료모델형’보다 속할 가능성이 큰 유형이다. 1980년대 이후 코호트부터는 해당 유형에 속할 확률이 커진다. 장애 유형 간에는 차이가 있다고 보기 힘들고, 심하지 않은 장애인의 경우 심한 장애인보다 해당 유형에 속할 가능성이 크다. 어릴적 가구경제수준의 영향은 받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며, 아버지의 학력이 고졸일 때 해당 유형에 속할 가능성이 크다.

독립변수별로 어느 유형에 속할 가능성이 큰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남성일 경우 ‘자립적 사회모델형(2)’, 여성일 경우 ‘부부가족 의료모델형’에 속할 가능성이 크다. 최근 코호트로 올수록 두 ‘자립적 사회모델형(1)과 (2)’에 속할 가능성이 크고, 과거 코호트로 갈수록 두 ‘부부가족 의료모델형’에 속할 가능성이 크다. 시각 혹은 청각장애인은 ‘자립적 사회모델형(1)’과 ‘부부가족 사회모델형(2)’에 속할 가능성이 크고, 지적장애인의 경우 ‘혈연가족 의료모델형’에 속할 가능성이 크다.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혈연가족 의료모델형’에 속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어릴적 가구경제수준이 높을수록, ‘부부가족 사회모델형(1)’에 속할 가

능성이 크고, 아버지의 학력이 고졸인 경우, ‘부부가족 사회모델형(1)’과 ‘자립적 사회모델형(2)’, 대졸 이상인 경우 ‘자립적 사회모델형(1)’에 속할 가능성이 크다.

<부록-표 3> 변수별 생애 유형의 분포(%)

		부부가족 사회모델형(1)	자립적 사회모델형(1)	부부가족 의료모델형	부부가족 사회모델형(2)	자립적 사회모델형(2)	혈연가족 의료모델형	비고
성별	여성	14.4	15.7	29.3	14.4	9.2	17.0	$\chi^2(5)=85.7$***
	남성	16.8	20.2	7.4	17.0	17.5	21.1	
코호트	1950-1969년생	16.8	1.7	35.7	31.6	3.4	10.7	
	1970-1979년생	25.8	9.4	14.6	17.2	10.3	22.8	$\chi^2(15)=448.1$***
	1980-1989년생	17.6	26.0	7.1	7.9	20.3	21.2	
	1990-1999년생	1.0	44.3	0.0	1.0	27.4	26.4	
장애유형	지체장애	22.3	18.4	16.7	19.9	10.5	12.3	
	시각 혹은 청각장애	18.3	25.5	21.1	18.9	8.7	7.5	$\chi^2(10)=290.0$***
	지적장애	0.5	8.1	8.1	4.5	28.8	50.0	
장애정도	심한 장애	5.3	15.4	12.5	9.6	19.9	37.4	$\chi^2(5)=221.9$***
	심하지 않은 장애	24.1	20.8	19.1	20.9	9.7	5.4	
가구경제수준	하층	8.5	9.5	21.8	20.8	14.6	24.8	
	중하층	13.1	17.3	18.5	17.9	16.2	17.1	$\chi^2(12)=113.9$***
	중층	24.6	25.4	9.3	9.7	12.9	18.2	
	중상층 이상	32.8	39.7	3.5	6.9	5.2	12.1	
부의 교육수준	중졸 이하	12.2	8.2	24.1	23.1	11.4	21.1	
	고졸	23.2	28.5	5.7	6.4	19.5	16.8	$\chi^2(8)=218.9$***
	대졸 이상	14.4	48.9	1.1	3.3	14.4	17.8	
전체		15.9	18.4	16.2	16.0	14.2	19.4	

주: *$p<0.1$, **$p<0.05$, ***$p<0.01$

<부록-표 4> 생애 유형에 대한 다항로짓분석 결과

	(참조: 혈연가족 의료모델형)														
	부부가족 사회모델형(1)			자립적 사회모델형(1)			부부가족 의료모델형			부부가족 사회모델형(2)			자립적 사회모델형(2)		
	b	S.E.	Exp(*b*)	*b*	S.E.	Exp(*b*)	*b*	S.E.	Exp(*b*)	*b*	S.E.	Exp(*b*)	*b*	S.E.	Exp(*b*)
성별 (참조: 여성)															
남성	-0.259	0.288	0.772	0.176	0.275	1.192	-2.014***	0.290	0.133	-0.390	0.276	0.677	0.451*	0.260	1.570
코호트 (참조: 1950-1969년생)															
1970-1979년생	-0.252	0.359	0.777	1.084*	0.572	2.956	-1.459***	0.346	0.232	-0.977***	0.333	0.376	0.548	0.457	1.730
1980-1989년생	-0.771*	0.421	0.463	2.154***	0.570	8.619	-1.961***	0.427	0.141	-1.417***	0.409	0.242	1.373***	0.458	3.947
1990-1999년생	-3.493***	0.829	0.030	2.788***	0.588	16.248	-16.910	445.400	0.000	-3.373***	0.800	0.034	1.465***	0.476	4.328
장애유형 (참조: 지체장애)															
시각 혹은 청각장애	0.482	0.332	1.619	0.698***	0.334	2.010	1.176***	0.343	3.241	0.792**	0.326	2.208	0.319	0.367	1.376
지적장애	-3.491***	1.070	0.030	-2.184***	0.412	0.113	-0.376	0.437	0.687	-1.076**	0.454	0.341	0.073	0.374	1.075
장애정도 (참조: 심한 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	2.358***	0.357	10.570	1.497***	0.337	4.468	1.471***	0.351	4.354	1.740**	0.331	5.697	1.584***	0.373	4.874
가구경제수준 (참조: 하층)															
중하층	0.643*	0.359	1.902	0.660*	0.346	1.935	0.541*	0.316	1.718	0.442	0.305	1.556	0.156	0.287	1.169
중층	0.959**	0.382	2.609	0.323	0.376	1.381	-0.249	0.397	0.780	-0.288	0.376	0.750	-0.390	0.341	0.677
중상층 이상	1.897***	0.674	6.666	1.195*	0.641	3.304	-0.088	0.955	0.916	0.456	0.778	1.578	-0.800	0.783	0.449
아버지의 교육수준 (참조: 중졸 이하)															
고졸	1.623***	0.347	5.068	0.951***	0.326	2.588	0.108	0.404	1.114	0.111	0.378	1.117	0.592**	0.294	1.808
대졸 이상	0.843	0.591	2.323	1.582***	0.482	4.865	-1.918*	1.147	0.147	-0.593	0.758	0.553	0.573	0.473	1.774
상수	-1.585***	0.477	0.205	-3.247***	0.621	0.039	1.053***	0.407	2.866	0.171	0.401	1.186	-2.386***	0.521	0.092
사례수	952														

주: *p<0.1, **p<0.05, ***p<0.01

3. 소결

세대별 분포(앞의 <부록-표 3> 참조)를 바탕으로 장애인 생애 유형의 변화 경로를 파악하였다([부록-그림 4] 참조). 1950~60년대생의 경우 상당수가 부부가족 의료모델에 속하다가, 1970년대생의 경우 부부가족 사회모델형 혹은 혈연가족 의료모델형으로 분화된다. 1980~90년대생에 들어서는 다수가 자립적 사회모델형에 속하고, 일부가 혈연가족 의료모델형에 속하게 된다. 이들 중 소수만이 부부가족 사회모델형으로 이행하고 있다.

한국 장애인의 성년기 주요 생애 경험 유형은 출생코호트 분포에 따르면, 부부가족 의료모델형에서 부부가족 사회모델형을 거쳐, 자립적 사회모형으로 변화하고 있다. 하지만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없고, 결혼을 통해 형성된 가족에게 의지할 수도 없는 이들의 경우 혈연가족 의료모델형에 속하게 된다. 결국, 최근 코호트에서는 자립적 사회모델형과 혈연가족 의료모델형으로 분화되어 공존하는 양상으로 귀결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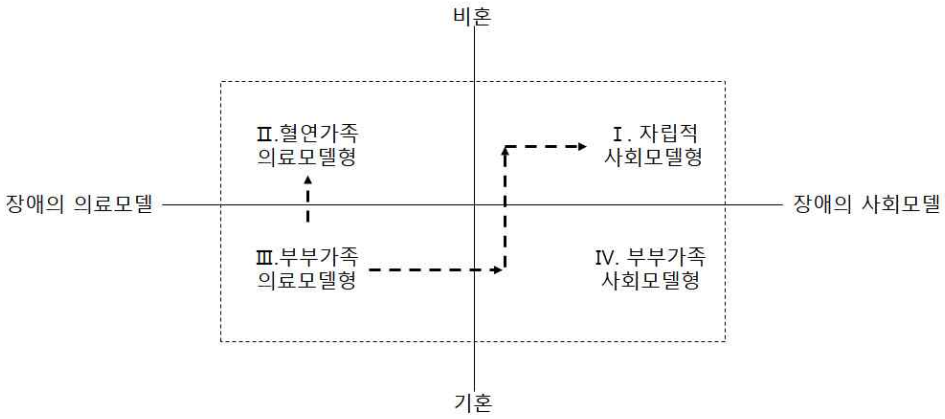

[부록-그림-4] 세대 분포에 따른 장애인 생애 유형의 변화 경로

이상의 분석에서 도출된 결론은 연령을 통제하지 않은 채 코호트별 분포에 따라 장애인의 성년기 주요 생애 경험의 세대별 변화를 유추한 것이다. 좀 더 명확한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연령을 통제했을 때, 즉 서로

다른 세대가 동일한 연령대에 속했을 때의 생애 유형을 도출하여 코호트별 분포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이러한 한계로 인해, 본 분석은 본문에서 제외하여 부록에 싣게 되었다. 다만, 이러한 장애인 생애 분석에 시퀀스 분석이 시도되었음을 밝히고 싶었고, 앞으로 좀 더 정확하고 엄밀한 장애인 생애과정 연구를 위해서 장기간에 걸친 패널 조사 혹은 회고력(retrospective data) 조사가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한다.

Abstract

Opportunity Structure of the Disabled's Major Life Experiences in Adulthood - Focusing on College Entrance, Employment, and Marriage

Kim, Miseon

Department of Sociology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eal how the disabled' s major life experiences of adulthood, such as college entrance, employment, and marriage, have changed over time in line with disability policy and disability discourse and are structured by socioeconomic conditions. Existing studies regarding life experiences in adulthood for the disabled were limited to personal reductionism, which explained the differences in the major life experiences of the disabled in adulthood from a micro perspective only with individual characteristics, and there was no theoretical approach to this. This study aims to clarify the opportunity structure by viewing the disabled's college entrance, employment, and marriage as rational choices of individuals under structural constraints.

From the life course perspective, the major life experiences of the

disabled in adulthood differ depending on the historical background; thus, they display big differences between generations. In addition, major life experiences in adulthood, such as college entrance, employment, and marriage, were categorized into the following four ideal types by reflecting the paradigm of disabilities - the social and medical model - and the changes of importance of family in society. The people included in the "self-reliant social model" are the people who have lived independently from blood-related families to some extent through participation in the labor market based on high education even if they are not married. The people included in the "blood-related family centered medical model" are the ones who are difficult to marry while being alienated from the labor market due to low education and have no choice but to depend on blood-related families. In the case of the blood-related family centered medical model, if there is no blood-related family to support and care for, he or she is likely to entrust themselves to a facility. The people included in the "conjugal family centered medical model" are those who do not participate in the labor market but can be protected by their spouses or children. The people included in the "social model with conjugal family" are engaged in the labor market and are married so that they can be protected by both the labor market and the family.

The analysis of disability discourse provides an opportunity to reveal how the institutional change of disability policy is related to the social perception of the life experiences of the disabled. As a result of examining the change in disability policy and disability discourse derived through newspaper articles, it was evidently discovered that the disability policy content changed from a medical model to a social model, but the general consciousness and social practice by seeing through disability discourse remained in the medical model.

As a result of examining how different the disabled' s life experiences of adulthood such as college entrance, employment, and marriage opportunities have changed between generations, there has been no improvement in labor market performance despite the improvement of the disabled's academic background. In addition, as the trend toward remaining single intensified, the main life tendency for each generation has changed from "conjugal family centered medical model" to "blood-related family centered medical model." On the other hand, there is a slight improvement in labor market performance in the recently born cohort of women, which seems to be the result of the recent employment policy for women with disabilities, partially suggesting a change to the "self-reliant social model."

By analyzing the socioeconomic background and the structure of the intersectionality operating in college, employment, and marriage opportunities, the family background, such as the economic level of childhood and the father's education, seems to have consequential influences on college entrance. The interaction effect between sex and the father' s education is significant. Women with disability and low-educated fathers were less likely to enter college than men with disability and low-educated fathers, but women with high-educated fathers were somewhat more likely to enter college than men with disability and high-educated fathers.

The family background was found to influence employment status through educational attainment, whereas there were slight differences in sex. In the case of men, their employment status is influenced by the economic level of childhood, but in the case of women, it is influenced by the father's education level. The difference in effects by educational level according to age differed among the analysis groups. When targeting all or men, the difference in the effect of each educational

level on employment status decreased as the age increased. On the other hand, when targeting women, the difference in the effect of each educational level on employment status did not decrease as the age increased.

The analysis of the transition of marriage until 2021 for unmarried people in 2016 shows there is no difference in the probability of marriage transition according to sex and family background, while there is a difference in the probability of marriage transition according to occupational status and earned income. Non-regular workers with unstable employment status have the highest probability of marriage transition, while regular workers with relatively stable employment status have a lower probability of marriage transition than non-regular workers. Meanwhile, in the case of unemployed people, there is little possibility of marriage transition. Additionally, the people with the higher earned income are likely to have the lower probability of marriage transition. Using this data, the intersectionality of occupational status and sex or earned income and sex for marriage transition could not be discovered.

Despite the change from the medical model to the social model at the level of disability policy, it was found that the disability paradigm in Korea remains in the medical model when observing disability discourse and generational effects of the disabled' s major life experiences. Therefore, various educational and cultural approaches are needed to change not only physical barriers but also social awareness, which is an invisible barrier, to transform the disability paradigm into the practical social model. Moreover, it is necessary to prepare a more active employment policy for the disabled.

In addition, the major types of life experience in adulthood are divided from the "conjugal family centered medical model" to the "self-reliant social model"(upper class, high-educational attainment, and regular

worker), the “social model with conjugal family“(middle class, mid-educational attainment, and non-regular worker), and the “blood-related family centered medical model“(lower class, low-educational attainment, and the unemployed) depending on socioeconomic background. Like the non-disabled, the pattern of stratification is also clearly discovered in the major types of life experiences of the disabled in adulthood. In addition, when other attributes such as class, sex etc., overlap the disability, another aspect of inequality occurs. An approach is needed to alleviate inequality in the structure of opportunities for the major life experience in adulthood for the disabled.

Keywords : The Disabled, College Entrance, Employment, Marriage, Life Experience Type, Intersectionality

Student Number : 2014-30055

이 논문은 서울대학교 기초학문분야 학문후속세대
지원 사업의 지원을 받아 작성되었습니다.